

ISSN 1226-1548

史學志

제 66 집

단 국 사 학 회

2025년 6월

단국사학회 임원

회 장 : 심 재 훈(단국대)	연구위원 : 김 경 현(고려대)
총무이사 : 이 중 수(단국대)	연구위원 : 최 희 재(단국대)
섭외이사 : 백 종 오(한국교통대)	감 사 : 김 현 수(단국대)
연구이사 : 윤 욱 (부산대)	감 사 : 김 영 제(단국대)
연구이사 : 김 우 진(한중연)	

편집위원회

위 원 장 : 심 재 훈(단국대)	위 원 : 김 혜 진(한국외대)
위 원 : 이 정 빈(경희대)	위 원 : 이 현 주(단국대)
위 원 : 임 경 화(중앙대)	위 원 : 김 재 윤(영남대)
위 원 : 김 한 신(경남대)	위 원 : 최 선 아(명지대)
위 원 : 손 성 욱(창원대)	

『史學志』 단국사학회의 학회지로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됩니다.
원고 게재를 원하는 분은 학회 홈페이지의 '출판 및 심사 규정', '투고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 마감일은 발간일 기준 6주 전입니다.

발표나 논문 게재를 원하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총 무 이 사 이종수(단국대): skandb@dankook.ac.kr
편 집 간 사 이창현(단국대): dkhistorysociety@gmail.com

학회 홈페이지 : <http://www.dkhistory.re.kr>

史學志

제 66집

일반논문

조선 초기(15세기) 사족의 신분	계승범	1
해방 직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통시대 국토 재현	임종명	41
히타이트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구약성서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	유윤종	79
기층의 국가권력: 관잠서(官箴書)를 통해서 본 남송시기 국가의 역량	이석희	111
피타고라스 정리와 서학중원설에 대한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의 견해	방 인	151
남북전쟁 이후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변화와 그 특징	양홍석	221

편집자 노트

이번 호는 총 6편의 논문이 게재 확정되었다. 한국사 2편과 고대 근동사와 서양사, 동양사 각각 1편씩, 동서양을 아우르는 지식 교류사 논문 1편이다.

지난 호에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3분과의 구분 없이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과 달리 이번 호는 한국사 논문 두 편을 전면에 배치했다. 계승범이 신분제 연구의 뜨거운 감자인 15세기까지 “사족”의 양인 신분설을 재검토하고, 임종명은 해방 직후 이른바 “국토 민족주의” 고조에 따른 역사 교과서의 전통 시대 영토 확정 문제를 다룬다. 두 편 모두 비판적 논지가 뚜렷하여 권두 논문으로 적절해 보인다.

나머지 네 편은 연대순으로 배치했다. 고대 근동 연구자인 유윤종은 기원전 14~13세기 히타이트 문헌과 구약성서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전염병 관련 서사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미국 럿거스대학의 송대사 전문가 이석희는 남송의 국가 역량에 회의적인 통설에 반하여 주로 송~명대의 관잠서(官箴書)들을 비교 분석하여 남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한다. 이 교수의 논문을 계기로 이번 호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역외신설(域外新說)”이라는 코너를 신설한다.

방인의 연구는 서학중원설(西學中原說)－중국에 전해진 서양의 과학 지식이 원래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설－의 전개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프랑스 국적 예수회 신부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가졌던 관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수학을 통한 동서 문화 교류사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홍석은 남북전쟁과 링컨의 노예해방을 거치며 일어난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상실 문제를 자본주의와 연관하여 검토한다.

2025년 6월 27일

편집위원장

조선 초기 사족의 신분

계 승 범*

I. 머리말	
II. 신분 구분 요소들	IV. 중종 대 全家徙邊刑 기사에 나오는 사족
III. 태조~성종(1392~1494) 연간 사족의 용례	V. 맺음말

초록

15세기 지배 신분층의 성격을 놓고 1970년대부터 학계에서는 논쟁이 자못 뜨거웠다. 하지만 신분 개념과 방법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반상제 학설과 양천제 학설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하다. 조선 초기(15세기)에 士族이라 불린 집단의 신분이 과연 良人이었는지, 그래서 15세기에는 양천제 학설에서 주장하듯이 혈통에 기초한 특권 신분층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초기에도 사족은 양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별개의 신분이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15세기 조선 초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해주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족”의 용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근대 사회의 신분 구조를 논할 때 흔히 활용하는 非법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런 프리즘으로 사족의 용례를 살폈다. 그 결과, 조선 초기의 사족은 애초부터 일반 양인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층이었음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아울러 중종 대(1506~1544) 조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全家徙邊刑 관련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사족의 의미도 천착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학계 일부에서 주장한 바, 곧 15세기까지는 사족이 특별 신분층이 아니라 양인 신분이었는데, 중종 대에 이르러 법적으로 양인과 다른 특권 신분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학설이 사료 오독에 따른 심각한 오류임을 논증하였다.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nocon@sogang.ac.kr

I. 머리말

조선왕조의 지배엘리트를 부른 호칭은 크게 양반, 사대부, 사족 세 가지다. 조선시대에는 지배엘리트 층이 다양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세 호칭은 사실상 모두 같은 부류를 가리킨다. 세 용어 사이에는 용례 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질의 지배엘리트를 총칭하는 용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양반이나 사족 내지는 사대부라 불린 이들의 사회신분(social status, 이하 신분이라 칭함)이 良人으로 불린 이들과 같았는지 달랐는지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이 논문의 취지는 간단하다. 조선 초기(15세기)에 사족이라 불린 특정 집단의 신분을 실록의 용례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조선 중·후기(16~19세기) 사족의 신분에 대해서는 학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양반(사족)이 일반 양인과는 달리 태생적으로 상위의 신분이었다는 이해가 압도적이다. 그렇지만 초기(15세기)의 신분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크게 둘로 갈린다. 먼저, 조선왕조 건국 직후부터 이미 사실상 양반(사족·사대부)-중인-상인-천인 등과 같이 네 개의 수직적 신분이 구조적으로 존재했다고 보는 전통적 견해가 있다. 이와는 달리, 15세기에는 良人和 賤人 두 개의 신분뿐이었다가 16세기에 와서야 양반(사족)이 특권화하면서 4단계의 신분 구조로 변했다는 수정주의적 견해도 있다. 15세기 신분제와 관련해서는 전자를 班常制 학설로, 후자를 良賤制 학설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학술 논쟁의 결말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로 자기주장을 고수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¹⁾

그런데 이 논쟁은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 15세기의 실록 용례를 조사하여 분석하면 쉬이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논쟁이 장기화하며 평행선을 달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분’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신분의 개념을 나름대로 명쾌히 제시하고 논지를 전개한 연구

1) 반상제·양천제 논쟁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 비평으로는 계승범, 「양반사회 개념의 탄생과 확산, 그 사학사적 고찰」, 『한국사학사학보』 47 (2020) 참조.

가 의외로 적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 논쟁이 겹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신분(제) 관련 기존 논의를 신분 구분 요소(기준)에 중점을 두어 정리한다. 그 바탕 위에서, 조선 초기 지배엘리트를 지칭한 양반·사대부·사족 세 용어 가운데 사족의 용례를 신분에 초점을 맞춰 살핀다. 세 용어 가운데 사족을 고른 이유는 단순하다. 양반은 이미 기존 논쟁에서 술하게 등장했으며 가장 핵심어였다. 따라서 그것을 답습하기보다는 다른 호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대부 용례가 훨씬 많으나, 신분제 논쟁에서는 비켜나 있었다. 이에 비해 사족은 16세기의 신분제와 관련해서도 학계에서 술하게 거론하였다. 특히 15세기 신분제가 양천제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16세기부터는, 또는 적어도 17세기부터는 반상제로 변했다는 통설을, 즉 사족이 특권 계층화하였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사족의 용례를 살피고자 한다.

조선 초기에 사족은 양인과는 다른 별도의 지배 신분이었을까? 그렇다면 전통적 반상제 학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테다. 아니면 15세기로 한정해 볼 때 사족은 그저 양인 신분 내의 상위 계층이었을까? 그렇다면 양천제 학설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구도이기에, 조선 초기(15세기) 사족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기에 특정 지배 신분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그동안 학계에서 신분을 구분하는 요소로 어떤 것들을 활용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핀다. 이에 기초하여, 15세기 상황을 전하는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사족 용례를 분석한다. 특히 양인과의 차별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조선 초기 15세기의 사회신분제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논란이 뜨거웠던 15세기 신분제 논쟁이 어느 정도 결론을 얻는다면, 한국의 사회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II. 신분 구분 요소들

역사학자들이 신분 개념을 명확히 합의한 적은 없다. 다만 근현대 사회의 여러 계급(class)이나 계층(stand, stratum) 관련 이론이 활발하던 사회학 분야의 영향을 받아 전근대 신분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은 뚜렷하였다. 따라서 신분적 위계질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동원하였다. 법제적 요소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법률 규정이나 국가에서 부과한 직역 등 법제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접근한 연구도 적지 않다. 신분 개념 이해에 보이는 이런 차이야말로 1970~80년대에 학계를 달군 반상제·양천제 논쟁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²⁾

1970년대에 시작하여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조선 초기 양반의 성격 관련 논쟁은 고려·조선 왕조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주제였다. 동시에 신분 구조 이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조선왕조의 주인공인 양반이 고려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성격의 관료적 지배층이라면, 신진사대부의 조선왕조 개창은 한국 문명이 귀족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상당히 진일보했음을 의미한다.³⁾ 관료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세를 벗어나 근세로 진입했다는 설명 틀이 바로 그런 이해의 소산이다. 따라서 15세기 신분제를 지배층인 兩班 vs. 피지배층인 常賤(양인·천인) 구도 곧 兩班常制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양인(양반·중인·상인) vs. 천인의 구도 곧 良賤制로 파악하는지에 따라 조선왕조의 성격 및 그 지배 세력인 양반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바로 이 때문에, 양반의 성격 문제는 15세기 신분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명의 발전적 진화과정을 설명하는

2) 계승법, 같은 논문 (2020), II장 참조. 현재 이 논문의 2장 내용은 그것을 보강한 것이다.

3) 신진사대부 학설이 한때 학계를 풍미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고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사 검토로는 허준, 「조선왕조의 건국과 건국 주체 세력: 신진사대부론을 둘러싼 국내외 학계의 주요 쟁점」, 『서강인문논총』 71 (2024) 참조.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초기 연구는 대개 반상제 학설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대개 개설서가 이를 주도하였다. 혈통을 중시한 고려시대 귀족과는 달리 조선의 양반은 혈통에 기초한 음서보다 실력을 우선한 과거를 훨씬 더 중시했지만, 그래도 일반 양인과는 엄연히 다른 세습적 지배 신분층으로, 다른 말로 귀족적 성격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한 지배 신분층으로 양반을 이해한 것이다.⁴⁾ 다만 이런 통설에 의문을 제기한 한영우의 논문이 1971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다. 그는 양반은 양인 신분 내에서 관직을 가진 자를 이르는 명칭일 뿐이지 특권 신분 계층의 의미는 없었다면서, 조선 초기의 신분 구조를 양천제로 파악하였다.⁵⁾

그렇지만 통설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송준호와 이우성의 논문에 이어,⁶⁾ 1980년에 이성무는 조선 초기 양반의 성격을 천착한 최초의 학술 저서를 출간하였다. 그 핵심은 조선 초기부터 양반은 신분 구조에서 최상층에 위치하여 관직과 군역 등에서 많은 특권을 누린 특권지배층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당시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모든 인민을 良과 賤으로 대별하였다. 그렇지만 양인 신분 안에서도 혈연·직업·거주지·토지소유 등의 非법제적 다양한 조건에 따라 또 다른 신분 구분이 있었다. 양반·중인·常人 등이 바로 양인 내에 엄존한 별도의 신분이었다.⁷⁾ 요컨대, 양반은 조선 초기부터 특권 지배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조선 초기의 양반이 양인과는 엄격히 다른 특권적 지배 신분이었음을 보충군 入役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전형택의 연구도⁸⁾ 같은 맥락이었다.

4)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기백, 『한국사 신문』 (서울: 일조각, 1967) 이래 개정판(1976), 신수관(1990), 한글판(1999) 등 일련의 개설서를 꼽을 수 있다.

5) 한영우, 「조선초기의 상급서리 ‘成衆官」, 『동아문화』 10 (1971).

6) 송준호,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I)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69 (1976); 이우성, 「이조 사대부의 기본성격」, 『민족문화연구의 방향』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7)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서울: 일조각, 1980).

8) 전형택, 「보충군 입역규례를 통해 본 조선초기의 신분구조」, 『역사교육』 30:31 (1982).

그런데 1983년 한영우는 자신의 양천제 학설 논문들을 모은 학술 저서를 출간하면서 학계의 논쟁을 본격화시켰다. 그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신분은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분하였고, 그 둘 이외의 다른 신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常人 농민을 포함한 양인 신분층은 모두 仕宦權이 있었으며, 법제적으로 볼 때 양인 내에서 계층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양반도 벼슬길에 실제로 오른 有職者를 이르는 명칭이었을 뿐이며, 신분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양인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조선 초기(15세기)만 해도 조선은 양반이라는 특정 계층이 지배한 사회가 아니었다. 모든 양인 계층이 다 같이 참여한 개방사회이자, 중세를 벗어난 근세 사회요, 문벌주의와 귀족적 요소를 탈피한 양인 사회였다. 양반이 중인·상인·천인과는 구별되는 특권지배층을 가리키는 의미로 바뀌는 것은 16세기부터 나타나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야 확인해졌다.⁹⁾ 이는 결국 조선 초기의 양반은 특권 신분층이 아니었으며, 양인 신분층이 동등한 신분 지위를 누렸다는 주장으로, 기존 통설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송준호는 士族·庶人·良賤·貴賤 등의 용례를 조선 초기의 기록에 집중하여 검토한 후, 庶·良·賤 등은 언제나 사족이라 불린 최상위 특권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만 쓰였음을 논증하였다. 사족은 곧 양반을 이르므로, 조선 초기에도 지배 신분 계층으로서의 양반은 엄존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¹⁰⁾ 이듬해(1984) 이성무도 조선 초기에 국한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양인이 결코 단일 신분이 아니었다고 확인하였다. 국가에서 국역 부과를 위해 법률적으로 파악한 양인 신분 내에도 다양한 신분층이 존재하였으며, 그 최상위가 바로 양반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¹¹⁾ 같은 해 정두희는 법률 요소만 강조한 한영우의 양천제 학설이 과연 사실이라면, 유독 조선 초기(15세기)에만 특정 지배 신분층이 없는, 그래서 조선의 15세기는 세계사 맥락에서 볼 때 매우

9)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3).

10) 송준호, 「조선양반고: 조선조사회의 계급구조에 관한 시론」, 『한국사론』 4 (정신문화연구원, 1983).

11) 이성무, 「조선초기 사회신분사연구의 재검토」, 『역사학보』 102 (1984).

예외적으로 특이한 사회였는가, 라고 반문하였다.¹²⁾

1987년에는 양천제 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유승원은 세습적인 법제적 차등을 신분의 지표로 삼아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에 따르면, 벼슬에 나갈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모든 양인에게 주어졌으며, 천인에게서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신분 구조를 양천제로 보았다. 이에 덧붙여, 그는 양인과 천인 사이에 존재하던 권리의 차이는 身役이라는 의무에서도 차이가 현저했음을 들어, 양천의 구분이 엄연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한영우의 양천제 학설 및 有職者로서의 양반 개념을 지지하였다.¹³⁾ 같은 해 영어권 학계에서는 최영호가 조선 초기 양반을 양인 신분 내에서 관직을 가진 자에 대한 호칭으로 파악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양인층 내에서는 교육이나 과거 응시 및 사환권에서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초기 신분 구조를 양천제 틀에서 파악하였다.¹⁴⁾ 이렇듯, 양천제 학설은 기존의 반상제 학설과 대립하며 학계에 뿌리를 내려갔다.

그런데 이런 양천제 학설은 계속 비판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형국이라면,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부 사회학자도 동참한 점이다. 비판자들의 논조를 보면, 학자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지적은 신분·계층·계급·양인 등의 신분제 관련 연관어의 개념 설정 문제였다. 한 예로, 한 사회의 신분 구조를 법률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양천제 학설 지지자들이 신분을 지나치게 법제적 의미로 규정한 채 조선 초기 신분 구조를 재단했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¹⁵⁾ 요컨대, 15세기에 양반이나 사족이

12) 정두희, 「조선 전기」, 『역사학보』 104 (1984).

13) 유승원, 『조선초기 신분제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7). 한편, 유승원 역시 양반이 특권 신분 계층으로 자리 잡는 시기를 사림파의 득세와 관련하여 16세기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유승원, 「조선시대 ‘양반’ 계급의 탄생에 대한 시론」, 『역사비평』 79 (2007) 참조.

14) Yŏng-ho Ch'oe, *The Civil Examinations and the Social Structure in Early Yi Dynasty Korea, 1392-1600* (Seoul: Korean Research Center, 1987).

15)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990년대 양천제 학설의 약점을 지적한 학자들은 대개 이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승중, 「신분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 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한희숙,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총』 34 (1988); 김필동, 「신분 이론

과연 일반 양인과 같은 신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학자가 적어도 과반이다. 특히 사회학계나 법학계에서도 대체로 양천제 학설에 부정적이다.¹⁶⁾

그렇지만 양천제 학설도 확산을 멈추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향촌의 사족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朝鮮中期’론과 맞물려 유행하면서, 조선 전기(15~16세기) 신분 문제의 핵심 주제어가 양반에서 사족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가운데 2001년에 나온 김성우의 연구는 15세기 신분 구조를 국역체제와 관련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로 사족을 세습적 특권 신분층이 아니라, 양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층 양인’이었다고 강조하였다.¹⁷⁾ 그러나 사족의 용례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 1991); 이태진, 『조선시대의 양반: 개념과 연구 동향』, 『학예지』 3 (육군사관학교, 1993); 지승중, 『조선 전기 사회사 연구의 동향: 가족·향촌사회·신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등을 참조.

- 16) 대표적 예외로는 사회학자 김영모를 들 수 있다. 그는 현대사회의 계층 질서를 논하면서 명예·상징·관습·자본·예절 등의 비법제적 요소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분은 다양한 요소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실천 집단이었다.(김영모, 『현대사회 계층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참조. 즉 법적 지위보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신분 구조를 부각하였다. 법적으로 평등한 현대사회의 계층을 다루었기에,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Max Weber나 Pierre Bourdieu의 사회학 계층 이론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작 조선시대의 신분을 고찰하면서는 ‘의외로’ 양인과 천인의 구분이라는 법제적 요소만 강조하였다. 심지어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률제도”라고 고까지 확인하였다.(김영모, 『조선 지배층 연구』, 서울: 고현, 1962 & 2002; 김영모, 『조선·한국 신분계급사』 서울: 고현, 2013, 5쪽에서 재인용) 그가 『문과방목』이나 호적상의 직역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신분 문제에 접근한 방법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계층과 신분이 물론 같은 용어는 아니다. 그렇지라도 계층과 교집합이 큰 신분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이 애초 제시한 ‘사회학적’ 신분 개념과는 사뭇 다른 법제적 기준만으로 조선시대 신분 문제를 바라본 점은 몹시 의아하다. 신분은 계층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사회학의 계층 이론과는 별개로 조선의 신분제를 연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기본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점은 학술적으로 치명적이다. 내가 보기에, 조선의 신분제를 법제적 시각으로만 보고자 한 그의 첫 연구가 1962년에 나온 점을 고려할 때, 김영모의 저런 방법론은 이후 한영우를 비롯해 양천제 학설을 지지하던 역사학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준 듯하다.

양인을 가리키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김성우는 양천제 학설을 따르면서도, 사회적 관습에 따른 반상제의 모습 또한 중층적으로 존재했다고 보았다.¹⁸⁾ 하지만 이런 절충론은 사족을 경제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의 견해가 모순임을 노정할 뿐이다.

같은 해(2001) 이병휴는 양반의 개념을 통시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반상제 학설과 양천제 학설을 모두 소개하되 어느 쪽에도 특별한 비판은 가하지 않았다.¹⁹⁾ 이는 1990년대의 사족 연구와 함께 양천제 학설이 힘을 얻던 연구 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중립적 태도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3~2003년에 걸쳐 출간한 『한국사』의²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는 반상제 학설과 양천제 학설의 양립 현상을 잘 보여준다. 다만, 『한국사』에서 신분을 다루면서 ‘양반’과 ‘양인’의節을 달리해 기술한 점으로 볼 때, 전체 구성에서는 반상제 학설을 따른 것 같다.

이렇듯,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반상제·양천제 학설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며 공존하였다. 다만, 같은 양천제를 논할지라도 세부적으로는 결을 달리하는 연구가 나오는가 하면, 양천제의 문제를 비판한 연구도 이어졌다. 최이돈에 따르면, 조선 건국의 한 이념이던 양천제가 이미 태종 대(1410~1408)에 이르러 광의의 양인과 협의의 양인으로 분화했다.²¹⁾ 15세기 초에 이미 양인 내에 존재한 다른 신분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16세기 또는 후기부터 양인 신분이 서로 다른 신분층으로 분화하며 굳어지면서 반상제로 변했다는 전통적 양천제와는 꽤 다른 주장이다. 조우영은 신분제의 근간을 법률 규정보다는 사회관습법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17)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서울: 역사비평사, 2001).

18) 김성우, 같은 책, 37-46쪽.

19) 이병휴, 「양반이란 무엇인가」, 『한국사 시민강좌』 29 (2001).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 양반관료국가의 사회신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21) 최이돈, 「조선초기 협의의 양인의 용례와 신분: 역리와 엄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1 (2009); 최이돈, 「조선초기 서얼의 차대와 신분」, 『역사학보』 204 (2009).

있다면, 양천제 학설의 연구 방법론을 비판하였다.²²⁾ 한편, 2009년 한 학술지에서 논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학설에 대한 비평논문 세 편을 실었으나,²³⁾ 그 셋을 함께 놓고 보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뿐 새로운 차원의 학술 논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신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나 합의도 없이 반상제-양천제 학술 논쟁이 어언 40년 동안 이어지며 평행선을 달리는 현실은 학계의 불행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 지배층이 자신들의 신분을 법으로 스스로 규정한 사례가 몹시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조선 초기 지배 엘리트층의 신분을 논하면서 지나치게 법제적 요소에 의존하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다. 양천제 학설에서도 16세기부터는 혹은 늦어도 조선 후기(17~19세기)에는 양반·사족이 일반 양인과는 다른 특권 신분층으로 부상했다고 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조선 후기에 양반의 신분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자료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분에 접근하는 기준 잣대를 달리한다는 치명적 문제를 드러낸다.

한편, 역사학에서 바라보는 신분 요소로는 세습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를 포함하여 인류 역사상 사회적 차별이 없는 문명은 없었다. 다만 그런 차별이 후천적 요인, 다른 말로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초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차별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분과가 바로 사회학이다. 사회학의 계층 이론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화국(republic)이나 국민국가(nation-state) 등장 이전의 현상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학에서는 신분 문제를 논하면서 태생적 세습 요소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태생적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분제가 엄연했고 사회적 유동성(mobility)도 지금보다는 현저히 낮았던 왕조 시대일수록 세습적(hereditary)·선천적

22) 조우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23) 박진훈, 「조선 兩班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 『한국사연구』 146 (2009); 김성우, 「양천제설의 대두와 조선 초기 사회구조 이해」, 『한국사연구』 146 (2009); 한희숙, 「조선초기 양천제론의 정립 의미」, 『한국사연구』 146 (2009).

(ascribed) 요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역사학에서 보는 신분 구분 잣대로는 법제적 요소 외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 및 선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듯이, Marxist의 계급(class) 개념도 불법제적·경제적 요소를 중시한 결과이다. 신분을 구분할 때 법제적 요소가 일차적으로 주요 기준임은 분명하다. 특히 법률로 규정한 예속민(예: 노비)과 그런 규정이 흔치 않은 자유민(예: 평민)을 구분하는 잣대로는 유용하다. 그러나 법 규정을 초월해 실재한 최고 지배 신분층을 파악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요즘 한국 사회에 “新신분제 사회”가 도래했다느니 “금수저·흙수저”니 하는 담론이 회자하는 맥락도 신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불법제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법적으로는 엄연히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분제가 없어야 함에도, 태생적 요소와 불법제적 요소가 신분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이자 지표로 작동한다는 공감대가 여전히 넓음을 잘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신분 구분 요소를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해 사족의 용례를 직접 살피고자 한다. ① 법률적 용례이다. 법으로 제정한 것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② 공간적 분리(segregation) 용례다. 신분을 구분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요소이다. ③ 처벌의 차등화이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피의자가 어떤 출신(태생적 신분)인가에 따라 처벌의 완화와 강화와 같이 처벌 상의 차이를 두는 것도 신분 구분의 주요 현상이자 기준이다. ④ 지배 엘리트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덕목이나 복식 등 格調도 중요하다. 이 또한 신분 질서와 차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다. ⑤ 통혼권이다. 특히 특권지배층의 통혼권은 같은 신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 외에도 불법제적 신분 구분 요소는 많다. 심지어 음식 섭취 면에서도 양반과 평민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가볍게 건드린 영어권 저서도 있다.²⁴⁾ 학술 저서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24) Michael J. Pettid, *Korean Cuisine: An Illustrated History* (Chicago:

III. 태조~성종(1392~1494) 연간 사족의 용례

이제 조선 초기(15세기) 사족의 용례를 신분 개념과 관련해 살펴보자. 실록에서 사족을 원문 검색하면 태조~예종(1392~1469) 연간에는 모두 49건, 성종 연간(1469~1494)에는 195건이 나온다. 모두 244건인데, 성종 연간에 급증하는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 이런 급증 현상은 아무래도 “사림운동”이 본격화하던 성종 때 시대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지만,²⁵⁾ 지금 여기서는 일단 용례 분석에 집중한다.

244건에 달하는 15세기 사족의 용례는 어떤 패턴을 보일까? 흥미롭게도, 거의 다 2장에서 살핀 신분 구분 요소와 관련이 있다. 사실상 모두 신분 문제와 관련하여 사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모두 “신분”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므로, 여기서 그 244건의 용례를 모두 제시할 필요는 없다. 신분 구분 요소별로 용례를 직접 살피는 방식이 더 유용하겠다. 다만 성종 대(1469~1494)보다는 되도록 15세기 전·중반의 용례에 집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종 대는 “조선 초기”라는 시대성이 적잖이 약해진 시기라는 반론이 가능할 테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신분 구분의 다섯 요소를 구체적 사료를 통해 확인해 보자.

법률적 구분 사례

a-1: 權知成均學諭 李馨期는 본디 定山縣의 아전으로, 그 가문의 계통을 숨기고 土族이라 가칭하고, 경자년 과거에 등과하였다. 이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탄핵하기를, “벼슬길에 나와서는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교묘히 가식하여 조정을 기망하였으니, 만약 그대로 벼슬하게 한다면 간교하고 꾸며대는 무리들이 뒤를 이어 생길 것입니다. 청컨대, 법에 의거해 벌하고, 본래대로 아

Reaktion Books, 2008).

25) “사림운동”에 대해서는 계승범, 『중종의 시대: 조선의 유교화와 사림운동』 (서울: 역사비평사, 2014) 참조.

전 역에 복무하게 하며, (그를) 보증하여 친거한 金南秀와 尹會宗도 법대로 논죄하소서.”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형기의 紅牌만 빼앗고, 나머지는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²⁶⁾

위의 사료는 1422년(세종4년) 지방의 아전으로서 사족이라 사칭하고 경자년(1420) 과거에 급제한 이형기의 합격을 취소하고 다시 본래 鄉役으로 돌려보낸 내용이다. 일단 이 자료를 통해, 지방의 향리 신분 그대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면, 굳이 신분을 속일 필요가 없었을 테다. 따라서 이 자료는 세종 시대에 非사족 향리의 과거 응시가 막혀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형기가 당시 鄉役을 수행 중이었으므로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는 아마도 향역 기간 중이 아니라면 향리도 얼마든지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는 반론일 테다. 그러나 양반·사족은 그런 제한이 전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하는 것 외에는 출세할 길이 없던 조선에서 향리라는 향역 때문에 과거 응시를 막은 점은 명백히 법제적 신분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양인 신분인 향리의 문과 응시가 불가능했는데도, 과연 “양인이면 누구나”라는 주장을 쉽게 할 수 있을까?

a-2: 생원 시험관 卞季良 등이 尹粹 등 백 명을 뽑았다. 初試 (치르는) 날에 開場할 때 金寬이라는 자가 大駕 앞에 꿇어앉아 말하기를, “신은 善州 사람입니다. 지금 三館(성균관·예문관·校書館)에서 신의 祖系가 卑賤하고 寒微하다 하여 쫓아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불쌍히 여겨 곧 성균관 掌務를 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의 祖系가 만일 良賤을 辨明할 정도가 아니라면 시험을 치르게 하라고 하였다. 김관이 응시했으나, 끝내 합격하지 못하였다.²⁷⁾

26) 『세종실록』 11卷, 3年 1月 16日(기묘) 5번째 기사. “權知成均學諭李馨期 本定山縣吏 匿其世係 冒稱士族 乃登庚子科. 至是憲府劾曰 仕進之初 巧飾虛僞 欺罔朝廷 若令從仕 則姦巧冒濫之徒 繼蹤而起 請依律科罪 從本定役 其保舉金南秀尹會宗皆論如法. 上命奪馨期紅牌 餘皆勿論”

27) 『태종실록』 15권 8년 2월 8일 정해(1). “丁亥 生員試員卞季良等 取尹粹等百人 初試日開場 有金寬者跪駕前曰 臣善州人也 今三館以臣祖系卑微見黜 上憐之 卽召成均掌務曰 此人祖系 如非辨明良賤者 可令赴試 寬得赴試 竟不中”

위 자료는 양인 신분인데도 초시(생원시)에 응시할 수 없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관이라는 자는 그제 억울하여 어가로 달려와 호소하였다. 이때 그가 왕에게 아뢴 내용을 보면, 그가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핵심 이유는 祖系, 곧 아마도 4조의 계통이 비천하고 한미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왕(태종)은 그가 양인인지 천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시험을 보게 하라고 명하였다. 국왕의 이런 지침에 따라 김관은 응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당시 실상은 무엇일까?

위 a-2는 15세기에 양인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사료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국왕은 양천 구분이 모호할 정도가 아니라면 응시를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경국대전』의 취지에 따른 관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관이 과장 입구에서 쫓겨난 이유는 조상이 비천하고 한미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도 왕의 지침이 내리자 김관의 응시는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사료에 나오는 “卑賤”과 “寒微”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적어도 천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양천의 경계에 처한 상황을 뜻하는 의미도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양천 구분이 애매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시험관들이 왕명을 따라 김관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았을 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관의 집안이 비천하고 한미할지 언정 그가 양인임은 시험관도 다들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양인임이 분명한데도 시험관들은 왜 그를 입구에서 내쫓은가이다. 또한 그렇다면 위 사료에 나오는 “비천”과 “한미”의 진짜 의미가 문맥상 무엇이였을까, 라는 점이다. 두 단어는 김관이 천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반·사족과는 달리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일반 양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최선이다.

『경국대전』이 사안에 따라 처리할 내용(방향)을 시시콜콜 명시한 법률은 아니다. 헌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굳이 말하자면 大綱를 밝힌 기본 법전일 뿐이다. 오히려 위 a-2 사료를 보면, 당시 생원시 과장 입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응시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입장(응시

자격) 가부를 결정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즉 현장에서는 조계가 시원치 않은 자는 응시 자체를 막았던 것이다. 김관은 마침 국왕이 현장에 임재 하였기에 저런 호소라도 통할 수 있었지만, 당시 조선 8도에서 호소조차 해보지 못한 채 과장 입구에서 눈물을 삼킨 ‘김관’이 얼마나 많았을까?

a-3: 생원 巴山君 趙得琳의 先妻에게서 낳은 아들 趙成이 科擧를 보려고 하였으나, 三館에서 錄名해 주지 않았다. 이에 조득림이 아뢰기를, … 승지 등이 의논하기를, “조득림의 전처 및 그 아들 趙成과 趙贊은 이미 良人이 되게 해주었으므로 조성이 科試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만 세조께서 사족인 尹沈의 딸을 얻도록 명하시어 이제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조성과 조찬을 嫡出로 논하면 윤씨가 낳은 아들이 도리어 庶子가 됩니다. 禮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 등이 의논하기를, “科擧의 법으로는 비록 사족일지라도 대대로 흠결이 있으면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世祖께서 특별히 조득림에게 명하여 윤씨를 嫡妻로 얻게 하고 벼슬길에 통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미 아들이 있으니 전처의 아들은 비록 양인일지라도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御書로 예조에 傳旨하기를, “조득림의 아들 조성과 조찬은 특별히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라.” 하였다. 조득림은 바야흐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²⁸⁾

a-4: 장령 俞鎭이 사헌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 趙得琳은 본래 賤人이었는데, 世祖朝에 공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명하여 사족의 딸인 尹氏를 얻게 하셨습니다. 前妻에게서 낳은 아들 趙成은 조득림이 천인일 때의 소생이고 그 어미도 천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과거에 나아감을 허락한다면, 윤씨가 낳은 아들은 장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청컨대, 과거 응시를 허락하지 마소서. … 왕이 말하기를, “… 조득림도 또한 功臣이므로, 다 그子弟를 許通하였다. 이제 ‘윤씨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였다. 俞鎭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尹氏의 아들을 미리 염려해서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禮로는 한 집에 두 嫡妻가 없는 데, 이제 윤씨가 이미 조득림의 적처가 되었는데도 趙成이 허통되면 적자들

28) 『예종실록』 7권 1년 8월 1일 임자(2). “巴山君趙得琳先妻子成 欲赴擧 三館不許錄名 得琳啓曰 … 承旨等議曰 得琳前妻及其子成嶺 已許爲良 成當赴試 但世祖命(聚)〔娶〕土族尹沈之女 今旣生子 若成嶺論以嫡 則尹氏之子 反爲庶子 令禮曹議啓何如? 高靈君申叔舟 … 等議曰 科擧之法 雖土族有世累 則不許赴試 世祖特命得琳 娶尹氏爲嫡 將通仕路 今已有子 前妻之子 雖良勿許赴試 御書傳旨禮曹曰 趙得琳子成嶺 特許赴試 得琳方嬖幸”

이 항거하는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²⁹⁾

위 두 사료에 나오는 조득림은 노비 출신 무인으로서 癸酉靖難에서 공을 세워 세조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다. 오로지 세조의 特恩으로 사족의 딸을 처로 맞이했고, 그 아들 또한 본래는 과거 응시가 불가함에도 오로지 세조의 특별한 조치로 허락받은 사례이다. 이는 과거제도의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을 보여주는 증거에 가깝다. 특히 이들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승지들이 조득림의 전처소생 아들들에 대하여 “已許爲良, 成當赴試”라고 함 점으로 보아, 良人이면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런 원론적 원칙이 과거시험을 치르는 현장에서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동시에 보여준다. 심지어 양인이라도 3館의 녹명을 받지 못하면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이라는 신분 지위가 응시 자격의 충분조건이 아니었기에, 조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늘 의견이 분분하였다.

둘째, 출신이 미천한 조득림의 신분을 세탁해 주기 위해 세조가 취한 방법이 바로 조득림을 사족의 딸과 혼인케 한 일이었다. 이는 15세기 당시 이미 사족이라는 집단이 신분 차원에서 일반 양인과는 다른 지배 신분층이었음을 에둘러 보여준다.

셋째, 조득림의 전처소생 아들들은 허통을 받아 이미 양인이 되었는데도, 국왕의 특별 허가를 받고서야 응시할 수 있었다. 왜 특명이 필요했을까? 이미 양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응시할 때마다 일일이 상소하여 국왕의 特恩을 입어 응시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당시에는 양인 신분일지라도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29) 『예종실록』 7권 1년 8월 3일 갑인(1). “掌令俞鎮將本府議啓曰 … 趙得琳本賤人 有功於世祖朝 特命娶士族女尹氏 前妻子成 乃得琳賤時所生 其母亦賤 今許赴試 則尹氏子 將何以處之 請勿許赴舉 … 上曰 亨孫事 勿復言 子炯等事 言之是也 然子光既有大功 得琳亦功臣 故皆許通其子弟 今言尹氏子出則何以處之 何歟? 鎮對曰 臣等非預慮尹氏子而啓也 禮家無二嫡 今尹氏既爲得琳嫡妻 而成得許通 則恐有抗嫡之弊”

넷째, 서얼의 문과 응시 불가는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도 엄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서얼 차별은 굳이 관련 법규나 기존 연구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경국대전』 반포 전에도 서자는 사족과 同類가 될 수 없었다.³⁰⁾ 특히 孽子가 아닌 庶子라면 엄연히 양인 신분인데도 문과 응시를 법으로 막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양인이라면 누구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양인 신분인데도 문과에 응시할 수 없어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를 그저 예외로 쉽게 간주하고 무시할 수 있을까? 서자만이 아니었다. a-1에서 확인한 이형기도 신분은 양인이었다. 요컨대, 엄연한 양인 신분인 향리와 서자가 응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양인이 모두 같은 신분층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이뿐이 아니다. 벼슬을 할 수 있다는 仕宦權 여부는 신분 구분의 주요 잣대이므로, 그럴수록 그 활용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신라의 골품제를 논할 때 학계에서는 진골이나 6두품을 서로 다른 ‘신분’으로 부른다. 사환권은 있었으나 유리천장이 법제적으로 엄연했기에, 대개 그것을 신분 구분의 주요 요소로 본다. 그래서 진골과 6두품은 별개의 신분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왜 유독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술한 유리천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분 구분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저 “계층”이 달랐을 뿐이라며 모호하게 넘어갈까? 심지어 태생적 조건 때문에 문과 응시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았다면, 그것이 “신분” 차별임은 자명하다. 이런 게 신분 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 과연 차별일까?

非법제적 신분 구분 요소들

b-1: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환궁한 뒤에 溫井의 正廳과 東西寢室 및 남북의 上湯은 모두 다 봉하여 잠그고, 그 나머지 집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욕하게 하라. (다만) 남북의 다음 탕은 土族 男婦들에게 목욕하게

30) 『세종실록』 120권 30년 5월 20일 갑진(1). “大司憲尹炯等上疏曰 分莫嚴於嫡庶 惡莫大於臧汚 故庶孽不齒於土族 臧吏累及於子孫 所以重名分勸廉恥 誠古今之大防也”

하라. 남북 빈 땅에 있는 탕에도 집을 짓고, 또 월대 밑에 더운 물이 솟아나는 곳에도 우물을 파고 집을 지어, 大小男婦가 모두 목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³¹⁾

위 사료의 내용은 세종이 온천욕을 마치고 환궁하면서 내린 명령이다. 그 골자는 왕과 왕족이 사용하던 上湯은 (주상께서 친히 몸을 담근 신성한 곳이니) 아예 폐쇄하되, 나머지 탕은 그 지역 사족을 위해 개방하고, 사족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는 노천탕에 따로 집을 지어 개방하라는 것이다. “士族男婦”와 “大小男婦”가 정확히 대구를 이루는 문장 구조로 보아, “대소남부”는 사족 층에 들지 못하는 그 지역 일반 양인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이는 왕이 사용하던 온천 공간을 제외한 다른 온천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되, 사족과 非사족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간을 분리한 조치다. 주지하듯이, 인류 역사에서 볼 때 공간 분리(segregation)야말로 신분 차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b-2: 형조에 전지하기를, 금후로 士族의 부녀가 죄를 범하여, 그 죄가 收贖에 해당하면 잡아다가 문초하지 말게 하라, 고 하였다.³²⁾

위 사료는 부녀로서 범법하여 처벌 대상이되 그 형량을 贖錢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 특별히 사족의 부녀를 굳이 직접 잡아 와 문초하지 말라는 지침이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속전의 판결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그 부녀를 소환하여 ‘포토 라인’에 서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良人婦女”라고 하지 않고 “士族婦女”라고 한 점이 흥미롭다. 사족이 아닌 일반 양녀라면 소환하여 포토 라인에 세워도 좋다는 의미이기에 분명한 대구를 이룬다. 이는 최고 신분층인 사족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래서 여타 양인과는 달리 처벌을 감해주는 사례의 전형

31) 『세종실록』 60권 15년 4월 16일 기해(1). “傳旨忠清道監司曰 還宮後 溫井正廳 與東西寢室南北上湯子 竝皆封鎖 其餘間閣 許人入浴 南北次湯子 使士族男婦沐浴 南北虛地湯子造家 又月臺下溫水湧出處 掘井造家 令大小男婦皆得沐浴”

32) 『세종실록』 23권 6년 2월 12일 무오(3). “傳旨于刑曹曰: “今後士族婦女犯罪應收贖者, 毋得拿來取招”

이다.

b-2: 대사헌 尹璠이 아뢰기를, “柳殷之는 그 누이가 일찍이 淫行으로 인하여 극형을 당했으나, 마땅히 경계하고 삼가며 후손을 훈계해야 할 터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그 子孫이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을 자행하여 행실이 금수와 같았습니다. (이에) 그 온 집안을 (조정에서) 내쫓아 족히 인심을 통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불러들였다가 갑자기 관직을 제수하셨습니다. 신은 혹시라도 士族이 이것을 본받고 忌憚하는 바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知司諫 黃守身도 아뢰기를, 유은지는 世族인데도 음행을 창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척인 申綱의 딸도 그를 본받아서 추행이 있었습니다. 綱은 職秩이 비록 낮지만 역시 世族입니다. 이 (유은지와 신강) 두 족속을 내쫓아서 종신토록 同類로 삼지 못하게 하시면, 무릇 사족의 집에서 누가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³³⁾

위 사료는 사족 집안인 유은지와 심강 가족을 영원히 사족과 동류로 취급할 수 없다(不齒)는 내용이다.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사자를 특정 신분 집단에서 추방하는 벌은 인류 문명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분을 강등하여 庶人이나 奴婢로 삼는 처벌은 중국과 한국에서 흔한 일이었다. 같은 음행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당사자가 사족이라면 사족 집단에서 내쳐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천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위 사료에 나오는 放黜의 실제 결과는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일반 서인 또는 양인 신분으로 강등됨을 의미한다고 해야 합리적일 테다. 요컨대, b-1과 b-2 사례와 같이 동일 사안인데도 당사자가 사족일 경우 처벌 경감이나 강화 등 여타 양인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이 또한 동서고금 역사에 두루 보이는 보편적인 신분 구분 현상이다.

c-1: 예조에 傳旨하셨다. 가난하고 곤궁하여 시기를 넘기고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은 內外 친족이 함께 (신부의) 단장 품목을 준비하여 혼기를 놓치지

33) 『세종실록』 87권 21년 12월 4일 무인(2). “大司憲尹璠啓 柳殷之 其妹曾以淫行被極刑 宜其警飭 以訓後嗣 又於往歲 其子孫大肆淫穢 行同禽獸 故闔門放黜 足快人心 未幾召還 俄而拜職 臣恐士族或有效此 無所忌憚也 知司諫黃守身亦啓 柳殷之世族也, 而倡導淫行 故其姻家申綱之女 亦效此而有醜行 綱職秩雖卑 亦世族也使黜此二族 終身不齒 則凡士族之家 孰不警懼哉 …”

않도록 하라. 그 가운데 가난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士族의 딸은 관청에서 곡식을 지급하라. 만약 까닭도 없이 기한을 넘기는 사람이 있으면, 主婚人을 논죄하는 법이 이미 법령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무식한 무리가 (여식의) 나이를 꾸며 숨겨서 혼기를 어기는 한탄스러운 일이 있으니, 나는 심히 우려스럽다. 禮典을 거듭 밝혀 中外에 깨우쳐 일러서 혼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³⁴⁾

위 사료는 집안이 가난하여 여식의 혼기를 놓쳤다면, 사족에게만 특별히 시혜를 베풀라는 지침이다. 가난한 사정은 일반 양인 집안이 훨씬 심할 텐데도, 국가에서는 사족을 양인과 완전히 분리하여 결혼 비용을 충당하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특히 “士族之女”와 “無識之徒”가 좋은 대구를 이루는 문장 구조라서 흥미롭다.

c-2: 예조에서 아뢰었다. 京中の 各部와 성 밖 10리에 혹 전염병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가 한꺼번에 죽어도, 가난해서 구호할 수도 없고 매장할 수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士族이면 벼슬의 유무를 물론하고 쌀 2석과 면포 1필을 주고, 庶人이나 賤口는 쌀 1석과 正布 1필을 지급하게 하소서. (주상께서 그대로) 따랐다.³⁵⁾

위 사료도 일반 양인과는 달리 사족만 시혜를 더 베풀 사례이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을 통해, 15세기 전반 세종 재위 당시 사족은 벼슬 여부와는 무관한 특별 신분 계층이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士族”을 “庶人賤口”와 명확히 구분하여 우대한 점이 흥미롭다. 친구야 천인이라 보먼 되지만, 서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일반 평민 곧 양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맥락이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공유하는 “庶人”의 의미도 그러하다.

34) 『세종실록』 69권 17년 9월 29일 정유(5). “傳旨禮曹 貧乏過時 不能婚嫁者 令內外親共備資粧 俾不失時 其中貧乏尤甚士族之女 官給米穀 如有無故過限者 主婚人論罪之法 已載令甲 無識之徒 冒年隱晦 以致愆期之嘆 予甚慮焉 申明禮典 曉諭中外 俾不失時”

35) 『세종실록』 72권 18년 4월 5일 신축(3). “禮曹啓 京中各部及城底十里 或因疫癘 父母兄弟 一時俱歿 貧乏無救 不能埋葬者 士族 則勿論職之有無 給米二石 絲布一匹 庶人賤口 則給米一石 正布一匹 從之”

15세기 전반 세종 대가 신분적으로 양천제 사회, 곧 양인과 천인 두 신분뿐이던 사회였다면, 어떻게 c-1과 c-2와 같은 기록이 가능했을까? 심지어 사족은 벼슬 유무와도 상관없는 최고 상위 계층이었는데도 말이다. 동시대 명나라의 紳士가 시험을 통과한 자(license holder)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의 士族은 시험 합격과는 무관한 태생적 최고 신분층이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특별한 우대 정책 또한 전근대 사회의 신분 구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d-1: 예조에 전지하시었다. … 지금의 士族은 모두 佛道가 거짓임을 알기에 삭발하는 사람이 드물다. 다만 愚民은 習俗에 젖어서, 혹은 身役 면제를 노려 중이 된 사람이 자못 많다. 전의 그릇된 점을 뉘우쳐 깨닫고 도로 俗人이 되려 해도, 軍役(부담을)을 꺼려 머리털을 기를 수 없다. … 임자년 11월 초4일 이후부터 도첩이 없이 중이 된 자는 군역 면제 범위에 있지 않게 하라.”³⁶⁾

위 사료를 통해, 15세기 전반 세종 때 불교에 경도되는 정도가 士族과 愚民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족이 유교 학습을 통해 사리분별력을 기른 데 비해, 그래서 불교에 미혹되지 않는 데에 비해, 백성(民)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 그저 군역 면제라는 눈앞의 이익을 좇아 출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족”과 확연히 대구를 이루는 “우민”은 어떤 부류를 가리킬까? 문자적으로는 “어리석은 민”이지만, 사족이 아닌 일반 양인을 총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컨대 d-1 사료는 행동거지로써 사족을 여타 民과 구분한 사례인데, 특정 상위 집단에게만 격조 높은 품격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일도 신분 구분의 한 기준이다.

d-2: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천지(구분)는 만물의 근본이고, 남녀의(有別)은 人倫의 시작입니다. … 근래에 甘同 등 두세 放恣한 여인의 濁亂이 매우 심했습니다. … 사대부의 집은 예의가 있는 곳입니다. 남녀가 태어나면 아

36) 『세종실록』 57권 14년 8월 4일 경인(3). “傳旨禮曹 … 今之士族 皆知佛道誕妄 鮮有剃髮者 唯愚民狃於習俗 或窺免身役 爲僧者頗多 慮有悔悟前非 欲還歸俗 而憚於軍役 不能長髮 … 自壬子十一月初四日以後 無度牒爲僧者 不在免軍之限”

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규문 안에서 父子・閨門・君臣・尊卑・貴賤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아서 문란하지 않는 (범)입니다. … 본조에서는 士族婦女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수레를 타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행동을) 삼가게 함이 지극히 엄합니다. (이는) 閭巷婦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³⁷⁾

위 사료는 부녀가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보여주는데, 얼굴을 가리고 수레를 이용하라는 규정을 사족 부녀에게만 강제하였다.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이에 비해, “여향의 부녀”에게는 그런 격조를 요구하지 않던 당시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준다. 이 또한 격조 높은 행동을 사족에게만 적용한 사례로, 특히 “士族婦女”와 “閭巷婦女”라는 구분이 극명하게 대구를 이룬다. 후자가 일반 양인 부녀를 가리키는 의심의 여지도 없다. 요컨대, d-1과 d-2 모두 사족이기에 특별히 구별해 지켜야 할 덕목이나 복장 규정(dress code)을 전한 기록이다. 신분에 따라 언행의 격조나 옷차림 규정을 달리하는 것 역시 인류문명의 보편적 현상이다.

e-1: 士族 처녀 26인을 사정전에 모으고, 주상께서 親臨하여 간택하였다. 장차 義昌君의 처를 삼으려 함이다.³⁸⁾

e-2: 姜孟卿에게 명하여 士族子弟를 간택하게 하였다. 장차 정안옹주의 배필을 삼으려 함이다.³⁹⁾

통혼권도 신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위에 제시한 두 사료는 그것을 보여주는 일부일 뿐이다. 모두 조선 왕실에서 통혼권을

37) 『세종실록』 62권 15년 12월 4일 계축(6). “司憲府上疏曰 天地萬物之本 男女人倫之始 … 近來甘同等二三恣女 濁亂尤甚, … 士大夫之家 禮義所在 男女生而有室有家 自閨門之內 以至父子君臣尊卑貴賤 粲然不紊, … 本朝士族婦女 出必蔽面乘輿 古今之禁防至嚴 非閭巷婦女之比也 …”

38) 『세종실록』 84권 21년 3월 17일 을묘(1). “聚士族處女二十六人於思政殿 上親臨選揀 將以妻義昌君也”

39) 『단종실록』 4권 즉위년 10월 21일 기유(1). “命姜孟卿 擇士族子弟 將配貞安翁主也”

사족으로 국한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사족은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조선 내 유일한 집단이었다. 이런 점만 보아도, 사족이 여타 양인과는 엄연히 다른 신분층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신분과 관련하여 조선 초기(15세기) 실록에 나오는 사족의 용례를 보면, 모두 일반 양인과는 확연히 다른 지위를 누리거나 강요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허다한 非법제적 요소를 통해, 사족과 양인이 전혀 다른 신분적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족은 초시를 통과한 자(license holder)나 관직을 가진 자의 의미도 아니었다. 사족은 그저 태어나면서 사족이었고, 사족 집안 구성원은 부녀를 포함해 모두 사족이었다. 이런 용례가 조선 초기에 수도룩하다. 따라서 결론은 자명하다. 조선 초기에도 일반 양인과는 다른 최고 상위 신분층 곧 사족이라 불린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IV. 중종 대 全家徙邊刑 기사에 나오는 사족

이 정도에서 이 논문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나, 16세기 전반 중종 대에 조정을 달군 한 논쟁을 추가로 살필 필요가 있다. 향촌에서 수령을 겁박하거나 향민에게 횡포를 부린 자, 곧 武斷鄉曲의 죄를 범한 자는 그 가족을 모두 변방으로 이주케 하는 全家徙邊刑에 처한다는 법령이 있었다. 그런데 전가사변형을 놓고 벌어진 조정 논의에 “사족”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양천제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족이 이때부터 법으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동안 사족은 특권 신분층이 아니라 그저 상층 양인이었는데, 이때 이르러 마침내 양인과는 다른 신분으로 분리되었고, 사족과 양인을 가르는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바로 전가사변형 기사에 나오는 사족 용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사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다. 이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자.

40) 대표적으로, 앞서 다룬 김성우의 연구 참조.

f-1: … 體察使從事官 柳義臣이 아뢰었다. “전의 (入居)事目을 보면, 조금이나마 사족에 관계된 자는 모두 抄定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무과 급제자의 아들로 徙民 (대상)에 든 자는, 李蕃孫 한 명뿐입니다. 그 정리가 애매한 것 같지만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收議함이 어떻겠습니까?” (주상께서) 의논하라고 전교하셨다. 영의정 박원종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 좌의정 유순정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입거사목 안에 문과 출신 子壻를 抄定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므로 변손 또한 抄錄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거 (대상)은 전례가 모두 庶民이고, 사족에 관계되면 모두 뽑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正科 출신은 사람들이 모두 은총과 영광으로 여깁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그 門閥을 정표하여 영화롭게 합니다. 이번손이 문과 출신자의 子壻로서 입거를 면하지 못한다면, 정과 출신을 은총으로 대우하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권장하는 방법과도 혹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의정 성희안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이번손의 호소는 아버지의 급제를 빙자해서 입거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예가 진실로 없었습니다. 다만 土로서 조정에 이름이 오르는 데는 과거를 통하여 나가는 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제왕은 반드시 정표하여 다르게 (대우)해서 사람들에게 (급제를) 흠모하여 각자 근면히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한 正科人 아들을 용납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장함이 어찌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영구한 법식으로 삼아도 좋을 듯합니다.” (주상께서) 성희안의 의논을 따랐다.⁴¹⁾

위 사료에 따르면, 入居(徙邊) 대상자는 이전부터 모두 庶民이며, 士族에 관계되는 자는 모두 빠졌다. 그런데 이번손이라는 자는 부친이 급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입거 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아마도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테고, 그에 따라 이번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조정에서 논의하였다. 결과는 자명하였다. 사족은 원래 전가사변에서 한 등급 감해

41) 『중종실록』 10권 4년 11월 28일 병술(1). “… 體察使從事官柳義臣啓曰 “觀前事目 則稍干於士族者 皆不抄定 今以文武科之子 與於徙民者, 只一李蕃孫 其情理似曖昧 不能擅改 收議何如 傳曰 其議之 領議政朴元宗議曰 … 左議政柳順汀議曰 入居事目內 無文科出身子壻勿抄之語 故蕃孫亦與抄錄 然入居例皆庶民 若干於士族 則皆不抄 況正科出身 人皆以爲寵榮 至如中原 則旌表其門閥 以寵之 蕃孫以文科出身人之子壻 不得免入居 則正科出身寵待之意安在 其於勸獎之方 亦或有乖 右議政成希顔議曰 蕃孫之訴 欲藉父及弟 以免入居 前此固無是例 但土之策名于朝 莫貴於由科舉而出者 故歷代帝王 必旌異之 使人欽慕以自勉 容今一正科人之子 用勸其餘 豈非美意乎 仍爲永式似當 從希顔議”

주는데, 하물며 급제자의 아들인 이번손의 이름이 (실수로) 대상자 명부에 들었다고 하여 그대로 입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일단 사족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 급제자의 자제가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f-2: 홍문관 부제학 蔡紹權 등이 상소하여 時弊 다섯 조목을 아뢰었다. … 이에 (주상께서) 승정원에 전교하셨다. “疏에서 논한 사안은 내일 삼정승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 거기에 士族人的 全家徙邊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鄉曲을 武斷한 자를 죄주는 이유는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려 함이다. … 이를 의논하라.”⁴²⁾

위 사료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여준다. 먼저 士族의 全家徙邊刑은 불가함을 포함하여 홍문관은 시폐 다섯 개의 시정을 건의하였다. 그러자 중종은 士族人일지라도 향촌을 無斷한 죄를 범했다면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을 밝히면서 다시 논의하라고 명했다. f-1(1509년)에 따르면 사족은 전가사변형에서 면제받는(감형받는) 것이 이전의 규례인데, f-2(1519년)에서는 사족의 전가사변형은 불가하다는 홍문관의 상소가 올라왔다. 이는 북방 사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던 중종 대가 무르익으면서 사족인데도 점차 入居 명단에 오르는 사례가 적잖이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논의를 보면 이런 정황이 더욱 잘 드러난다.

f-3: 영의정 남곤, 좌의정 이유청, 우의정 권균 등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 士族의 자손은 入居시킬 수 없다는 사안은 그 말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강제로 入居하라고 명한다면 蔭功者의 자손은 모두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죄를 지어 入居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몸소 죄를 입어야 마땅합니다. … 당초 입거할 때 鄉曲을 武斷한 자에 대한 조목을 이미 세웠으니, 설사 衣冠子弟일지라도 어찌 그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 (향곡을 무단한) 부류에 들었지만, 주상께서 그를 위해 (정상을) 참작하신다면 오히려 가하겠습니까.

42) 『중종실록』 52권 19년 10월 8일 기해(3). “弘文館副提學蔡紹權等上疏 陳時弊五條 … 仍傳于政院曰 疏中所論事, 明日其召三公議之 … 其曰 士族人全家徙邊不可者 其罪武斷鄉曲者 乃所以爲民除害 … 以此議之可也”

(하지만) 미리 常式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두려워 조심하는 것이 없어서 법에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⁴³⁾

위 사료는 삼정승이 이튿날 올린 논의 내용이다. 삼정승은 먼저 사족의 입거 불가가 원칙상으로는 마땅하다고 인정하였다. a-1에 보이는 이전의 규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민 정책 때문에 입거 대상에 든 경우라면, 사족의 입거가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경우라면, 비록 衣冠子弟라 해도 처벌을 감해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물론 왕이 정상을 참작하여 면제해 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로 법을 제정하지는 말고, 그때그때 진정이 올라오면 사안별로 논의하여 인용하거나 기각하자는 결론이다. 여기서도 “衣冠子弟”가 “士族”의 부분집합임을 한 번 더 기억해 두자.

f-4: 의정부가 논의하였다, “孫蘭直 사안은 당초에 한 고을의 공론에 따라 뽑아서 轉啓한 것이라 진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고을 儒生 60여 명이 또 聯名하여 (손난직이 억울하다고) 상소했습니다. (이) 또한 어찌 虛事이겠습니까? … 그러나 이미 결정한 죄인데 다시 고친다면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본받게 되어 시끄러울 것입니다. 兵籍이 틀린 경우, 생원·진사에 게는 특별히 全家(入居)는 감해줍니다. 손난직을 이 律대로 定罪한다면, 악을 징계함에 족하고 유생들도 (나라에서) 권장하는 뜻을 알 것입니다.” 주상께서 전교하셨다. “아뢴 바가 합당하다. 생원·진사에서 어찌 손난직 혼자 뽑혔겠는가? 한결같이 죄를 감해줌이 가하다. 또한 士族婦女도 아울러 들여 보내고 있는데, 사족이나 그 부녀는 노비가 아니면 살림을 해나갈 수 없다. (그런데도) 만약 入居하라고 명한다면 하인들이 강포해져서 누가 오래도록 순종하고 도망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나무하고 물을 길다가 流離할 터이니 변방을 채우는 본뜻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족들 또한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생원과 진사 및 사족 집안 사람(士族之人)으로서 뽑힌 자들에게는 모두 次律로 죄줄이 어떠한가? 이를 다시 의논하라.”⁴⁴⁾

43) 『중종실록』 52권 19년 10월 9일 경자(2). “領議政南袞 左議政李惟清 右議政權鈞等議啓曰 … 士族子孫不可入居事 此言似當 然國家勒令入居 則一應有蔭子孫皆得免矣 若作罪入居 則不然 有罪者自當被罪 … 當初議入居時, 武斷鄉曲之條已立, 雖衣冠子弟, 豈可不罪其罪乎? 若其子弟入其類 而自上斟酌爲之 則猶可也 若預爲常式 人無所畏戢 有虧於法矣 …”

위 사료는 초시에 합격한 손난직이라는 자가 향촌에서 죄를 지어 전가사변 대상에 들었다가 조정 논의를 통해 면제된 사례이다. 기사에 따르면, 손난직은 억울하다면서 향리의 유생 60여 명을 등에 업고 적어도 두 번 이상 조정에 호소하였다. 의정부는 이미 결정된 일인데 이제 와 고쳐 주기도 애매하지만, 유생들의 연명 상소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고는 손난직이 마침 초시 합격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군적을 속인 죄를 범했을 경우라도 진사나 생원은 전가사변 형벌에서 감형한다는 규례를 적용하자는 결론을 내었다.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그러자 중종은 흔쾌히 수용하였다. 더 나아가 부녀까지 포함하는 全家徙邊刑을 사족에게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까지 지적하면서 이 사안도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의정부에서는 이를 뒤 아래와 같이 회계하였다.

f-5: 의정부가 의논하여 아뢰었다. “애초 入居 조항을 마련할 때 공신이나 당상관으로 律에 해당하는 사람도 모두 의견을 내도록 명하였습니다. 만일 모두 가려서 면해준다면 (그것을 보고) 陳訴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주상께서 교시하시기를 ‘士族의 사람(士族之人)을 모두 전 가족을 極邊에 이주시킨다면, 그 奴僕들이 도망하여 흩어져버릴 테니 마침내는 반드시 곤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상의 교시는 지당합니다. 만일 文武科 출신자의 자제 및 內四祖와 外四祖에 모두 顯官이 있는 사람은 全家徙邊 바로 아래 등급의 律로 죄준다면, 반드시 다들 주상 전하의 덕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생원이나 진사인 데도 역시 (입거 명단에) 들어간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孫蘭直 같은 사람은 역시 (입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文案이 없으므로 부득히 고찰하여 아뢰 수 없습니다. 손난직이 진사이기 때문에 면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자연히 그 예에 따라 면제해야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44) 『중종실록』 55권 20년 8월 14일 신축(2). “政府議 孫蘭直事 初以一鄉公論 抄之轉啓 固非偶然 而其邑儒生等六十餘人 又連名上疏 亦豈虛事也 … 然已定之罪 更改則人皆効此 而紛紜矣 軍籍差錯者 生員進士則特減全家 蘭直若以律定罪 則足以懲惡 而儒生等亦知勸獎之意矣 傳曰 所啓宜矣 生員進士 豈獨孫蘭直被抄耶 一樣減罪可也 且士族婦女 亦竝入送 士族之人及婦女 非奴婢 不能爲生理 若令入居 則下人強暴 誰肯久從 而不逃乎 必至於負薪汲水 未免流離 非但無實邊之意 士族之人不亦辱乎 生員進士及士族之人被抄者 竝以次律罪之何如 其更議之”

전교하셨다.⁴⁵⁾

의정부가 논의하여 올린 위 주문을 보면, 의정부에서는 중종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 진사 손난직의 전가사변형을 면제해주고, 앞으로는 진사나 생원은 모두 그렇게 처리하자는 의견을 상달하였다. f-3 자료에서 보였던 원칙적인 태도와는 달리 f-4와 f-5에서는 중종의 의사에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었다. 또한 위 자료의 문맥을 보면, “士族之人”이 곧 “文武出身之人子弟及内外俱有顯官者” 또는 “生員進士” 등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님을 쉬이 간파할 수 있다. 사족 집안사람을 모두 입거하게 하면 문제가 많다는 중종의 교시를 듣고, 의정부에서는 사족 집안 중에서 입거 형벌을 면해줄 대상으로 “문무과 출신자의 자제”와 “친·외가 4祖 중에 모두 현관이 있는 자” 그리고 본인이 “생원이나 진사인 자”를 특별히 선정하였다. 즉 이 세 조건 중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족이라도 전가사변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학의 집합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족이 전체 집합이라면, 세 조건은 각기 사족의 부분집합인 셈이다. 사족의 부분집합은 이 밖에도 허다하였다. 이 점을 f-5 사료가 생생히 증언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위 자료의 내용을 국가에서 사족의 범주를 법으로 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처벌 대상이 된 사족들을 모두 법대로 처벌하면 곤란하니, 그들 가운데 특정 그룹을 다시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전가사변형을 감해주자는 내용이 바로 f-5의 실제 핵심 내용이다. 며칠 후에는 중종이 또 이런 교시를 하였다.

f-6: 전교하셨다. “일전에 의정부의 뜻은 내외 (4조)에 모두 현관이 있는 자라야 全家徙邊을 면할 수 있다고 운운하였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쪽에 현관이 없는 자는 (전가사변)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에만 현

45) 『중종실록』 55권 20년 8월 16일 계묘(4). “政府議啓曰 入居初磨鍊時 功臣堂上官 在律應擬之人 皆令取稟 若皆分揀 則陳訴必多矣 然昨日上教謂 士族之人 竝徙全家于極邊 其奴僕逃散 終必受辱 上教至當 若以文武出身之人子弟 及内外俱有顯官者 罪之以全家次律 則必多蒙上德矣 上教謂 生員進士 亦有被抄 如孫蘭直者 則亦可免也 但他人則以無文案 故不得考啓矣 蘭直以進士爲免 則他人自當例免矣 傳曰知道”

관이 있어도 역시 士族이니, 양편의 四祖 가운데 한쪽에라도 현관이 있으면 면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⁴⁶⁾

내외 4조 가운데 한쪽에만 현관이 있는 자도 엄연히 사족인데, 한쪽에는 현관이 없다는 이유로 전가사변형에 처한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전가사변을 면해 줄 사족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 잡는 게 좋겠다는 의미다. 요컨대 원문 “雖一邊有顯官, 亦士族也”라는 중종의 말이 내포한 의미는 “一邊有顯官”이 士族의 하한선을, 곧 良人和 구분되는 경계선을 규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 f-5의 “內外俱有顯官者”에 대하여 “一邊有顯官者”도 여전히 당당한 사족인데, 그들만 굳이 감형에서 제외한다면 과연 타당하겠느냐는 의미다. f-4와 f-5 사료에서 중종과 의정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야말로 이점을 생생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사료를 근거 삼아 16세기 중종 대에 이르러서야 사족이 법에 따라 양인과 다른 신분으로 구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심각한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f-7: 삼정승이 아뢰었다. “士族人の 入居는 未便할 듯합니다. 內外 四祖에 모두 顯官이 있는 자는 응당 면제해야 하기에 병조가 그런 公事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延僊은 그의 증조가 곧 佐命功臣입니다. 비록 내외 4조에 모두 현관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좌명공신의 후손은 사족임이 분명하니 응당 면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특별한 恩典이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전교하셨다. “병조의 事目에 오직 양편에 모두 현관이 있는 사람이라야 면제하게 되어 있고, 한편의 사조에만 현관이 있는 자는 그런 부류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다만 (연정은) 府院君의 후손이니 응당 면해줌이 가하다. 병조에 말해주고 의정부에 (그런 식으로) 보고하게 하라.”⁴⁷⁾

46) 『중종실록』 55권 20년 8월 21일 무신(2). “傳曰 前日政府之意 內外俱有顯官者 得免全家云 若然則一邊無顯官者 不得免矣 雖一邊有顯官 亦士族也 兩邊四祖中一有顯官 則許免何如 其更議以啓”

47) 『중종실록』 56권 20년 윤12월 17일 신미(3). “三公啓曰 士族人入居 似爲未便 內外俱有顯官者應免 故兵曹爲此公事矣 今者延僊曾祖 乃佐命功臣 雖非內外俱有顯官者 然佐命之後 則其爲士族明矣 似可應免 而此是特恩 未敢擅便 敢啓 傳曰 兵曹事目 唯兩邊俱有顯官者得免 而一祖有顯官者 厥類非一也 但以府院君後 可以應免事 言于兵曹 使報政府”

위 사료는 사족 가운데 전가사변 대상에서 빠질 자의 범위가 꾸준히 넓어지던 현상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무단한 죄를 범해 전가사변 대상이 된 사족 가운데 앞서 살핀 세 가지 면제 조건에 들지 못한 자들이 순순히 처벌을 받을 리 없었다. 위 자료에 나오는 延僊이 바로 그런 처지였다. 그는 증조부가 좌명공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기도 전가사변을 면제해달라고 상소하였다. 삼정승은 내외 4조에 비록 현관이 없을지라도 연정은 공신 자제로서 분명한 사족이니 응당 제외해야 하겠으나, 入居事目에는 공신 자제를 가리킨 조목이 없으니 국왕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회계하였다. 이에 중종은 연정이 부원군의 후손이니 면제해주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두 가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f-4, f-5, f-6에서 살핀 내용이 사족의 범주를 법으로 규정한 게 아님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사족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연정 같은 경우는 사족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위 f-7 자료에서는 연정도 엄연히 사족이라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족이라는 전체 집합에는 세 가지 조건에 들지 못하는 자가 많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나도 사족인데 나는 왜 전가사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되는가라는 항변이 많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f 사료들이 모두 그런 사정을 생생히 전한다. 요컨대, 전가사변형 기사에 나오는 사족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사족의 신분을 법적으로 규정한 자료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入居節目의 내용은 그때그때 조금씩 바뀐 듯하다. f-7 기사가 1625년(중종 20)의 일인데, 이로부터 18년이나 지난 1543년에도 조정에서는 여전히 입거 규정을 논의하였다. 병조가 마련한 法案은 다음과 같다. 아래 사료를 보자.

f-8: 병조 당상관이 入居人의 절목 건으로 아뢰었다. “豪强品官으로 향곡에서 멋대로 폐단을 부리는 자, 庶人과 賤口로서 자신의 豪富함을 믿고 土族을 능멸한 자, 동거하는 婢夫·雇工 이외에 軍役을 피한 양민을 강제로 점유한 자, 公私賤을 숨겨두고 부리는 자, 土豪로서 公債 25石 이상을 받고도 바치지 않은 자, 綱常罪를 범한 情理가 매우 무거운 자, 文記를 위조하여

간사한 짓을 함이 현저한 자, 한 사람이 여러 곳에서 非理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자, 鄉吏 및 담당 書員으로서 元惡을 범한 자, 各浦의 鎭撫가 鎭將을 우롱하여 민간을 침탈하는 폐단을 일으키는 자, 兩界에서 도망하여 온 변방 백성을 許接한 자 등은 모두 다 적발하여 입거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는 곧 大事이기에 本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육조와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그리하라고 전교하셨다.⁴⁸⁾

위 사료는 병조에서 전가사변형에 해당하는 鄉曲武斷罪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자료이다. 이들 죄목에 하나라도 걸리면 전가사변형을 받는데, 사족이 걸려들 죄목이 상당수이다. 앞서 살핀 f群 사료들은 바로 이렇게 걸려든 사족이라도 전가사변을 면해줄 조건을 논의하고 규정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밑줄 친 죄목 곧 “庶人과 賤口로서 자신의 豪富함을 믿고 士族을 능멸한 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庶人으로서 豪富하다면, 양천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상층 양인’ 곧 사족일 텐데, 어떻게 “庶人賤口 恃其豪富 凌蔑士族者”라는 죄목이 가능할까? ‘같은 신분’인 사족을 능멸했다고 사형 다음의, 그리고 본인의 유배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全家徙邊刑에 처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f-9: 의정부가 의논하였다. “入居元事目を 살피건대, ㉠士族일지라도 豪強・士豪의 죄라면 다 면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을유년(1525년)의 承傳에 문무과 출신자, 내외 (4조)에 다 顯官이 있는 子孫, 그리고 자신이 生員・進士인 자는 모두 入居시키지 말고 次律로 죄를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조정이 이 몇 가지를 들어서 승진을 받들었으니, 어찌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반드시 일의 마땅한 것을 참작해서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 시행하더라도 면할 자는 많지 않으니, 그 승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다.⁴⁹⁾

48) 『중종실록』 100권 38년 2월 13일 정해(6). “兵曹堂上以入居人節目啓曰 豪強品官 武斷鄉曲 作弊無忌者 庶人賤口 恃其豪富 凌蔑士族者 同居婢夫雇工外 避軍役良民冒占者 公私賤容隱役使者 士豪多受公債二十五石 以上不納者 罪犯綱常 情理深重者 僞造文記 奸詐見著者 一人於數處 非理好訟者 鄉吏及用事書員 犯元惡者 各浦水軍鎭撫 操弄鎭將 侵漁作弊者 兩界逃移邊民許接者 竝皆抄發 入送爲當 而此乃大事 本曹不可擅便爲之 請與議政府六曹 同議施行 傳曰可”

49) 『중종실록』 101권 38년 12월 26일 병신(3). “政府議: “考據入居元事目 雖士族若豪強士豪之罪 則似皆難免 但乙酉年承傳內, 文武科出身人 及內外俱有顯官人子

위 사료는 을유년(1625년)에 마련한 규정에 따라 그대로 입거를 시행함이 좋겠다는 의정부의 의논이다. 이때 의정부에서 이런 논의를 다시 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밑줄 친 ㉠과 ㉡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전가사변 형물에 걸려든 사족이 이번에 특히 많은데, 그들을 을유년의 절목에 따라 처결해도 빠져나갈 자(사족)는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을유년 절목에 따라 처리해도, 徙民 정책에서 필요한 入居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에서 “면할 자가 많지 않다”라는 표현에서 者가 바로 士族임은 문맥상 매우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f-9 사료를 통해 우리는 중종 재위 말년(1638) 당시 사족이면서도 을유년 절목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입거한 자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리해 보자. 이 4장에서 살핀 중종 대 전가사변형 관련 사족의 지위를 종합해 보면, 입거를 면제받을 조건에 나오는 顯官 운운하는 내용은 사족의 신분을 법으로 정한, 다른 말로 양인과 구분하기 위한 규정인 전혀 아니었다. 사족일지라도 을유년의 특별 감형 조건에 들지 못해 전가사변을 당한 사족이 많았다. 요컨대, f군 사료의 핵심은 사족 가운데 전가사변형을 면제해 줄 대상을 특별히 선정한 것이지, 그것이 곧 사족의 신분을 규정한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f군 사료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여 사족이 16세기 전반에 이르러 마침내 법적으로 양인과 다른 지배 신분층이 되었다는 학설은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15세기 지배 신분층의 성격을 놓고 1970년대부터 학계에서는 논쟁이 자못 뜨거웠다. 하지만 신분 개념과 방법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

孫 及當身生員進士 并除入居 以次律定罪云 其時朝廷 舉此數條 以奉承傳 豈無所以 必斟酌事宜而爲之 今雖依此施行 應免者不多 其承傳仍用何如 … 傳曰 如啓”

에, 반상제 학설과 양천제 학설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아주 간단하였다. 조선 초기(15세기)에 士族이라 불린 집단의 신분이 과연 良人이었는지, 그래서 15세기에는 양천제 학설에서 주장하듯이 혈통에 기초한 특권 신분층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초기에도 사족은 양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별개의 신분이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먼저 역사학계에서 그동안 활용한 신분 구분의 요소 내지는 지표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배 신분층을 연구할 때는 법제적 요소만 강조해서는 실상에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움을 논하였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최고 지배 신분층의 기준을 법으로 일일이 명시한 사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혈통에 기초한 특권적 지배 신분층은 전근대 사회에서 엄연하였다. 따라서 지배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非법제적 요소, 이를테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요소도 두루 살펴야 함을 역설하였다.

방법론으로는 15세기 조선 초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해주는 『조선왕조실록』에서 “士族”의 용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근대 사회의 신분 구조를 논할 때 흔히 활용하는 非법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런 프리즘으로 사족의 용례를 살폈다. 또한 같은 초기(15세기)라 할지라도 성종 대(1469~1494)는 “초기”의 성격이 적잖이 희석된 시기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기에, 그 이전의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조선 초기의 사족은 애초부터 일반 양인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층이었음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아울러 중종 대(1506~1544) 조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全家徙邊刑 관련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사족의 의미도 천착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학계 일부에서 주장한 바, 곧 15세기까지는 사족이 특별 신분층이 아니라 양인 신분이었는데, 중종 대에 이르러 법적으로 양인과 다른 특권 신분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학설이 사료 오독에 따른 심각한 오류임을 논증하였다.

전근대 3000년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신분제라 하면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때는 대개 법제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피지배층에 대한 법적 규제가 법률로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을 초월한 존재인 지배 신분층을 다룰 때는 법제적 접근만으로는 무의미하다. 굳이 법제적으로만 보자면 고려도 양천제 사회였다. 그런데 우리는 고려를 귀족사회라 부르는 데 익숙하다.

아울러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삼국시대 이래 전근대 한국 역사에서 유독 조선 초기(15세기)에만 세습적·특권적 지배 신분층이 없었을까? 엄청난 내전이나 혁명도 없던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려가 귀족사회였음을 부정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고려가 망할 즈음 귀족 층은 자신들의 특권적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스스로 농민과 같은 신분인 良人이 되었던 말인가? 정녕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장 세계사를 새로 집필해야 할 테다.

조선 초기(15세기)에 국한해 볼 때 천인이 아닌 양인 신분이라면 누구라도 과거에 응시하여 출세할 수 있었다는 이해는 사실적 오류임을 이 논문에서 재차 확인하였다. 그런데 백번 양보하여 설사 그랬을지라도, “양인이면 누구나”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면 곤란하다. 심지어 15세기 조선을 “양인사회”라고 확언한 연구자도 있다. 그런데 15세기 당시 조선의 노비는 전체 인구에서 무려 40%를 웃돌았다. 양인이라고 해도 인구의 절반을 살짝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참고로, 동시대 명나라의 노비 인구 비율은 아무리 많게 잡아도 5%를 넘지 않았다. 95% 이상이 양인이던 사회였다. 이런 최소한의 비교사적 검토도 없이 “양인이면 누구나”만 강조하는 주장이 매우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주제어

사족(sajok), 양인(yangin), 양반(yangban), 신분(social status), 조선 초기(early Chosŏn)

<투고: 2025년 05월 26일, 심사종료: 2025년 06월 11일, 게재확정: 2025년 06월 27일>

/Abstract/

The Social Status of the *Sajok* (Confucian Elites) in Fifteenth-Century Early Chosŏn Korea

Kye, Seung Bum

Since the 1970s, scholarly debates over the nature of the dominant status group in fifteenth-century Chosŏn Korea have been marked by considerable intensity. Yet in the absence of a shared conceptual framework or methodological consensus concerning the notion of “social status,” the two prevailing paradigms—the pansangje (反常制) theory and the yangch’ŏnje (良賤制) theory—have remained fundamentally at odds. This article revisits a core question at the heart of this debate: whether the group designated as *sajok* (士族, Confucian elites) in early Chosŏn were simply yangin (良人, free commoners), as advocates of the yangch’ŏnje theory assert—thereby suggesting the absence of a hereditary privileged class in the fifteenth century—or whether the *sajok* constituted, from the outset, a socially distinct and structurally differentiated stratum within the broader yangin category.

To address this issue, the study undertakes a close analysis of occurrences of the term *sajok* in th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Chosŏn wangjo sillok), the most comprehensive and authoritative record of early Chosŏn’s sociopolitical landscape. In doing so, it foregrounds non-statutory indicators of status—extra-legal factors widely utilized in global historiography on premodern social hierarchies—as an interpretive lens through which to reassess the *sajok*’s status ident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far from being undifferentiated members of the yangin class, the *sajok* constituted a privileged elite, distinguished from ordinary commoners in multiple

dimension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dynasty.

The article further interrogates the meaning and usage of sajok in the context of long-running deliberations over the penalty of chŏn'ga sabyŏnh yŏng (全家徙邊刑, exile of entire households)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jong (1506 - 1544). Through this inquiry, it critically evaluates a widely accepted interpretation in the field—that the sajok only acquired distinct legal status and formal privileges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By demonstrating that such a view rests on a fundamental misreading of primary sources, this study reveals it to be a significant historiographical error, thereby reaffirming the existence of a socially distinct elite class from the early Chosŏn period.

참고 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2. 단행본

계승범, 『중종의 시대: 조선의 유교화와 사림운동』 (서울: 역사비평사, 201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3: 양반관료국가의 사회신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서울: 역사비평사, 2001).

김영모, 『조선 지배층 연구』 (서울: 고현, 1962).

김영모, 『현대사회 계층론』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김영모, 『조선·한국 신분계급사』 (서울: 고현, 2013).

유승원, 『조선초기 신분제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7).

이기백, 『한국사 신론』 (서울: 일조각, 1967, 1976, 1990, 1999).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서울: 일조각, 1980).

조우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3).

Ch'oe, Yǒng-ho, *The Civil Examinations and the Social Structure in Early Yi Dynasty Korea, 1392-1600* (Seoul: Korean Research Center, 1987).

Pettid, Michael J., *Korean Cuisine: An Illustrated History* (Chicago: Reaktion Books, 2008).

3. 논문

- 계승범, 「양반사회 개념의 탄생과 확산, 그 사학사적 고찰」, 『한국사학사학보』 47 (2020).
- 김성우, 「양천제설의 대두와 조선 초기 사회구조 이해」, 『한국사연구』 146 (2009).
- 김필동, 「신분 이론 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 1991)
- 박진훈, 「조선 兩班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 『한국사연구』 146 (2009).
- 송준호,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I)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69 (1976).
- 송준호, 「조선양반고: 조선조사회의 계급구조에 관한 시론」, 『한국사론』 4 (정신문화연구원, 1983).
- 유승원, 「조선시대 ‘양반’ 계급의 탄생에 대한 시론」, 『역사비평』 79 (2007).
- 이병휴, 「양반이란 무엇인가」, 『한국사 시민강좌』 29 (2001).
- 이성무, 「조선초기 사회신분사연구의 재검토」, 『역사학보』 102 (1984).
- 이우성, 「이조 사대부의 기본성격」, 『민족문화 연구의 방향』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 이태진, 「조선시대의 양반: 개념과 연구 동향」, 『학예지』 3 (육군사관학교, 1993).
- 전형택, 「보충군 입역규례를 통해 본 조선초기의 신분구조」, 『역사교육』 30·31 (1982).
- 정두희, 「조선 전기」, 『역사학보』 104 (1984).
- 지승중, 「신분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 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8).
- 지승중, 「조선 전기 사회사 연구의 동향: 가족·향촌사회·신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최이돈, 「조선초기 협의의 양인의 용례와 신분: 역리와 염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1 (2009).

- 최이돈, 「조선초기 서얼의 차대와 신분」, 『역사학보』 204 (2009).
- 한영우, 「조선초기의 상급서리 ‘成衆官」」, 『동아문화』 10 (1971).
- 한희숙,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충』 34 (1988).
- 한희숙, 「조선초기 양천제론의 정립 의미」, 『한국사연구』 146 (2009).
- 허 준, 「조선왕조의 건국과 건국 주체 세력: 신진사대부론을 둘러싼 국내외 학계의 주요 쟁점」, 『서강인문논총』 71 (2024).

해방 직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통시대 국토 재현

임 중 명*

I. 서론: 해방 직후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한국사 교과서	IV. 전통시대 선상(線狀)의 국경과 입체적(立體的) 국토의 구성
II. 전(前)근대 국경·국토 재현의 국가적 문제성	V. 결론: 해방 직후 국경·국토·국가 재현의 당대적 함의
III. 민족 공간 내 이(異)민족의 민족화와 위계적 결연	

초록

식민지 해방 직후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특히 국토 민족주의가 급격하게 고조되었다. 하지만, 해방 직후 현실의 제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한에서는 대중의 ‘사회적 부랑성(浮浪性)’과 ‘탈(脫)민족화’(de-nationalization)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를 맥락으로 하여, 한국사 교과서는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 역사 설명에서 국경선으로 구획된 국토를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영토 국가의 항상적 존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교과서에 의해 실제 재현된 국토의 모습은 경계선조차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개방적 영토’였다. 그와 같은 형태의 국토상(像)은 영토 국가 존재의 전(全)역사적 항상성 재현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무효로 하였다. 더군다나, 비선상(非線狀)의 국경상은 경역(境域)에서 여진인과 같은 언어·문화 공동체(ethnic)가 한국인들과 혼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민족 공간’으로의 ‘국토’, 특히 국토로서 한반도 재현이라는 민족주의 의제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는 문제 자체를 소거하고자 했다. 예컨대, 교과서는 ‘고구려의 구경(舊境) 회수’나 ‘조종(朝宗)의 강토 교수’라는 의구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imcmcyong@hanmail.net

적(依舊的) 측면을 강조해 ‘조선 조정의 여진인 거주지 경략’을 정당화하는 한편 ‘경략’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심지어 교과서는 ‘인간 부재(不在)’를 전제하는 ‘개척’과 같은 언어 채용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여진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 또한, 교과서는 한반도 남부 지역 주민들의 북방 이주와, 여진과 조선조와의 조공-책봉 관계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교과서는 전통시대 왕국 등의 지배 영역을 보여주면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의 모습을 변형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교과서는 고대 왕국 등의 지배 영역이 선상(線狀)의 경계선에 의해 구획되었다고 서술하여, 그것이 영토 국가였다고 강변하는 한편 그것의 근대성까지 암시하였다. 그와 같은 기시착오적(記時錯誤的) 노력은 한반도 및 그 인접 지역의 왕국 등을 영토 국가로 표상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또한 영토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적’(international) 공간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국토적·국제적 공간화는 당대 그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 등이 영토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영토 국가 존재의 전(全)역사적 항상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당대 한국인들의 국토 민족주의 의식, 나아가 민족주의 의식을 높이고, 그들의 고조된 민족주의 의식을 통해 당대 민족주의적 의제를 정당화하는 한편 그들 삶을 규율하려는 노력이었다. 바로 이것이 전통시대 한반도의 국토화가 가진 해방 직후 당대적 함의라 할 수 있다.

I. 서론: 해방 직후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한국사 교과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의 일제 패망과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조선 해방은 한국인의 국가 건설 욕망과 민족주의의 급격한 고조를 낳았다. 민족주의, 특히 전후 일층 강화되는 ‘언어·문화 공동체 중심의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는 특정 언어·문화 공동체(ethnic)가 주체적으로 근대 국가-민족성과 영토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를 수립하고자 열망을 강화하였다. 바로 이러한 열망이 영토·국토를 중심으로 하는 ‘흙(영어, soil; 독어, Boden)의 민족주의’를 낳으면서, 해방 직후 일반 사회에서의 ‘국토 구명(究明)운동’의 전개와 학교에서의 국토·향토 학습의 강화 등을 낳았다.¹⁾ 하지만 국토·영토 민족주의 강화가 단순히 해방 직후 민족주의 고조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국토 민족주의 강화는 당시 민족주의를 통해 대중을 규율하고자 하는 엘리트들의 권력적 기획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당대 대중의 ‘사회적 부랑성’(浮浪性)과 그것의 ‘국가·사회적 문제성’은 시사적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전후 일본 제국의 해체와 언어·문화 공동체 중심의 민족 국가 체제 수립의 과정에서 ‘송환’(repatriation)이라는 형식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다. 이처럼 민족화(nationalization)라는 함의를 갖는 국제적 인구 이동에 이어서 도시 등지로의 인구 집중 등

1) 임종명, 『脫식민지 시기(1945~1950년)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 193 (2006); 임종명, 『脫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지리교육과 국토표상』, 『한국사학보』 30 (2008a). 덧붙이면, 당대 남한 지역 엘리트들은 ‘국민’과 ‘주권’, 그리고 ‘국토’를 국가 구성의 3요소로서 이해하였다. (임종명, 앞 논문 (2006), 89쪽) 이와 같은 국가학 역시 해방 직후 ‘국토·영토’에 대한 관심의 인식론적 배경을 이룬다. 덧붙이면, 해방 직후 전봉덕의 국가학에서는 ‘영토’와 ‘국토’가 구별적으로 이해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봉덕, 『法學通論』 (서울: 국제문화관, 1947), 65, 67~68쪽) 이와 같은 양(兩)개념의 구별적 이해와 사용에 유의하면서도, 본 논문은 그 양자를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하에서 그와 같이 사용한다.

대규모 사회적 인구 이동이 있으면서 ‘사회적 부랑성(浮浪性, vagrancy) 강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아가 송환된 이들이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일본이나 만주 등 원래 거류지(居留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탈(脫)민족화(de-nationalization)의 모습까지 나타났다.²⁾

이를 배경으로 하여 학생이나 일반 대중에게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강조·강화하는 학교 내 지리교육과 학교 바깥의 국토 관련 운동 등이 이루어졌다. 그렇다 한다면, 국토 관련 운동은 종전/해방 직후 강화된 국제적·일국적 인구 이동이 규율 지배 질서를 위협하는 당대 부랑화 현상에 대한 엘리트의 대응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학생과 일반 대중의 국토·향토 의식 배양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국제적 이동·유동성을 억제하는 한편 그들에 대한 규율적 지배를 강화해 남한의 국가·사회적 지배 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남한 엘리트들의 권력적 노력이었다.³⁾

이와 같은 국토 민족주의의 정치성에 유의하면서, 본 논문은 해방 직후 남한 지역에서 발간된 한국사 교과서가 재현·표상(representation)한 영토성을 검토한다. 해방 직후 한국사 교과서는 당시 고조된 민족주의 열망, 또는 그 고취의 필요성을 맥락(context)으로 하여 “민족적/국민적 주체 생산”이라는 “과제를 의식”한 “텍스트”였다. 이러한 특성은, 예컨대, 1947년에 최남선이 발간한 『中等國史』에서도 확인된다. 그 교과서 역시 당대 민족주의적 목적, 즉 “국민정신 함양이라는 국민교육 상의 목적”, 달리 표현하면, ‘함양된 국민정신을 소유한 국민의 생산’이라는 목적에 따라 ‘제작’된 것이었다.⁴⁾

2) 임종명, 앞의 논문 (2008a), 230-233쪽.

3) 임종명, 앞의 논문 (2008a), 234쪽.

4) 임종명, 『해방 직후(1945~1948) 남한의 한국사 중등교과서와 전사형(戰士型) 국민 구성』, 『역사연구』 48 (2023), 97-98쪽. 본문 중의 ‘국민’이나 ‘민족’이 모두 영어 nation의 역어(譯語)라는 점에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더군다나, 해방 직후 ‘언어·문화 공동체 중심의 민족주의’ 의제가 언어·문화적 존재로서의 ‘민족’(ethnic)을 정치적 주체인 ‘국민’(nation)으로 변형시킬 것을 목적했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당시 ‘민족’과 ‘국민’은 상통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의하여, 본문의 ‘민족’·‘국민’과 관련한 진술은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민족주의적 의식하에 제작된 한국사 교과서에서 국경선에 의해 구획된 국토의 제시는 교과서 서사에 있어서 핵심적 관심사이자 문제 의식이기도 했다. 예컨대, 1946년 진단학회가 편(編)한 『國史敎本』은 발해 시조 고왕(高王) 이후 10대 선왕(宣王)에 이르는 동안의 초기 발해 역사 설명에서 가장 먼저 “周圍의 여러 族屬을 평정하여 廣大한 領域을 차지” 하였다고 이야기한 다음 곧바로 “國境”이라는 용어를 통해 발해의 ‘국토’를 특정하였다.⁵⁾ 이처럼 『國史敎本』은 ‘국경’ 등의 언어를 통해 고조선 등 한반도와 그 인접 지역에 존재했던 정치체들이 여타 정치체와 구별·구획되는 ‘국토’를 가진 국가이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더군다나, 해방 직후 교과서들에서 ‘국토’의 ‘다과’(多寡)는 그 왕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하였다. 예컨대, 최남선의 『中等國史』는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 재위 기간 동안의 ‘판도(版圖) 확장’을 근거로 하여 당시를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감정(勘定)하였다.⁶⁾ 마찬가지로, 이병도의 1948년 6월간(刊) 『새국사교본』 역시 “국토를 개척”한 것을 근거로 백제의 근초고왕 시기를 “가위[(可謂) 전성시대]라고 판정하였다.⁷⁾ 이처럼 해방 직후 교과서들에서 국토의 개척과 그 다과가 왕조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할 정도로 국토는 중시되었다. 이처럼 당시 교과서는 자신의 사회진화론에 기초해서 ‘국토’를 중심으로 과거 전통시대 왕조·왕국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교과서 서사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였던 ‘국토’의 핵심적 요소는 ‘국경(선)’이다. “근대 국가”는 ‘인구’(population)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단일 주권의 배타적·독점적 행사를 자신의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영토를 선적(線的的)[(linear)]으로 획정·확정하는 국경선의 존재”이다. “국경선은 기본적으로 타국의 영토와 자신의 것을 구획·구분하는 분리의 선(線)인 동시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복수 국가들의 영토들이 만나는 선”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보이는 “분리와 연결이라는 이중성은 국경선을 모순적인 선으로 만

5) 진단학회 편, 『國史敎本』(서울: 미군정청, 1946), 18쪽.

6) 최남선, 『中等國史』(서울: 동명사, 1947), 12쪽.

7) 이병도, 『새국사교본』(서울: 동지사, 1948), 22쪽.

들고, 국경선에 연접(連接)한 지대인 변경” 또는 ‘경역’(境域)을 “문제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즉 ‘변경’ 또는 ‘경역’은 “국가 수호라는 점에서는 닫힌 공간이지만 타국과의 교통이라는 점에서는 열린 공간”이다. 이러한 속에서 국가와 그 엘리트들은 “변경을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위험스런 문제적 공간’으로 상상”하였다.⁸⁾

근대 시기 문제적 공간으로 상상된 경역은, 전통시대의 경우, 선적(線的)인 공간이 아니었다. 통차이 위니짜꾼(Thongchai Winichakul)은 전통시대의 왕국이, 근대 국가와는 달리, “경계 지어지지 않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그의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에 따르면, “왕국의 ‘경계들’”이 “불연속적”이었고, 또 “서로 맞붙지 않고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왕국”에는 “고정된 국가 경계”나 “경계선”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이 “경계 지어지지[도] 않았”고 따라서 “두 국가 사이의 구분 개념도 없”었다고 한다.⁹⁾ 이는 전통시대에 ‘연속적인 선에 의해 고정된 경계선’ 자체가 없었고, 그 때문에 ‘왕국’ 자체도 ‘경계선에 의해 구분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전통시대 경계선과 왕국의 모습은 왕국 등 전통시대 정치체의 역사를 재현·표상하는 역사서나 역사부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

그러한 필요성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해방 직후 교과서 내 언어와 서사, 그리고 지도 등을 자료로 하여 교과서에서 재현·표상된 ‘국경(선)’과 ‘경역’, 그리고 ‘국토’ 등의 모습(像)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의식은 기존의 역사 교과서 관련 연구의 그것과는 궤(軌)를 달리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제도적 측면에서 교과서 서사와 ‘교수요목’ 또는 ‘교과 과정’ 등의 상관성이나, 역사 교육과 연구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서사의 사실성 내지 실체성, 또 교과서에서 보이는 역사·세계 인식 등을 연구 초점으로 하여왔다.¹⁰⁾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역사 교과서를 특정 권력 관

8) 임종명, 『중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변경의 미학적 재현』, 『역사연구』 33 (2017), 13쪽.

9) 통차이 위니짜꾼 저, 이상국 역,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서울: 진인진, 2019), 156-159, 163쪽.

계 속에서 생산되어 그 관계를 생산·재생산하는 하나의 담론체로 이해하고 역사 교과서의 권력적 기능 등에 유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과서 내 정치적 경계선과 지배 영역 등과 관련한 언어나 서사, 또 지도 등 시각 자료에 의해 생산·형성된 관련 이미지를 검토하고 그 이미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 관련 작업에서 직접적 자료는, 물론, 지도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자료이다. 하지만, 해방 직후 남한의 도서 출판 관련 상황으로 말미암아 당대 출간된 교과서에는 시각 자료가 근소하다. 예컨대, 해방 직후 미군정의 ‘의뢰’에 따라 김상기와 이병도가 각각 ‘상고·중고편’과 ‘근세·최근세편’을 쓰고 진단학회가 편한 한국사 교과서 『國史敎本』에는 “[그] 編纂이 倉猝간에 되어 插畫와 地圖를 넣지못”하였다.¹¹⁾

물론, 지도 등 시각 자료가 교과서 등에 수록되지 못했던 문제는 이후 개선된다. 예컨대, 1948년 중순 이병도는 자신이 발간한 『朝鮮史大觀』에서 “參考文獻 其他 插圖는 本書에는 省略하고 別著 『새국사교본』에 [삽도 등을] 많이 실었으니 그것을 參照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새국사교본』에는 ‘적지 않은’ 시각 자료가 수록되어 있었다.¹²⁾ 그러한 시각 이미

10) 예컨대,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서울: 선인, 2006); 김상훈,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8), 150-346쪽; 류시현, 『해방 후 최남선의 중등 역사 교과서의 집필과 세계사 인식: 『세계역사요령』(1949)을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9 (2023); 조영광, 「해방 후 첫 官認 교과서 『國史敎本』의 한국고대사 서술 분석」, 『한국민족문화』 70 (2019); 전미현, 「미군정기 중등 국사교과서의 체제·내용과 역사인식 고찰」,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12); 上山 由里香(우에야마 유리카), 「이병도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1915-1954년 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7), 159-183쪽 참고.

11)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범례’. 『國史敎本』은 “臨時 高級用”, 또 “中等 내지 專門[학교]程度”에서, 나아가 “國民學校 敎員의 參考用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12) 이병도, 앞의 책 (1948), 『序에 대신하여』 1쪽. 참고로, 이병도는 1949년 “문교부 소정(所定)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에 따라 자신의 『새국사교본』을 저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생활(역사)』을 출간하였는데, 그 교과서 역시 그것의 원판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插圖”과 “地圖”를 담고 있다. 이병도, 『우리나라의 생활(역사)』 (서울: 백영사, 1949(1955)), ‘머리말.’

지 자료는 언어·문자 자료와 함께 해방 직후 남한 지식 엘리트들이 상상한 국토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그들의 국토상, 나아가 그들의 국토 관련 기획(project)을 보여준다.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해방 직후 발간된 한국사 교과서의 언어 자료와 시각 자료를 자료로 하여, 그것들이 낳는 이미지상 효과를 검토한다.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국경선과 그 주변 지역(경역), 또 국토, 그리고 국경선·경역·국토가 낳은 근대국가의 특성, 즉 ‘지리체(Geo-body)’라는 성격, 나아가 그와 같은 근대 국가성을 시각적으로 물질화한 지도, 이들 모두 공간 관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¹³⁾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교과서에서 재현된 전통시대 왕국 등 정치체의 경계선과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이것들로 구성되는 정치적 지배 공간의 이미지, 특히 그것들의 선형성(線形性)(linearity)과 공간적 속성, 즉 평면성과 입체성, 그리고 경계선 지대 거주민의 집단적인 언어·문화적 혼종성(混種性)(ethnic hybridity) 등에 유의한다.¹⁴⁾ 이에 따라 먼저 국사 교과서에서 재현된 국경, 그리고 이것으로 구성되는 국토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II. 전(前)근대 국경·국토 재현의 국가적 문제성

13) ‘지리체’라는 근대 국가의 특성, 그리고 지도 등이 자아내는 공간적 이미지, 또 민족 상상·생산에 있어 공간적 이미지가 갖는 중요성 등은 통차이 위짜꾼, 앞의 책 (2019);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New York: Verso, 1983(1991)), pp. 170-178 참고.

14) 본문 중의 ‘평면성’, ‘입체성’과 관련해서 덧붙이면, 근대 국토는, 그것의 일 요소인 ‘영공’(領空)에서 단적으로 표현되듯이, 일정(一定)의 체적(體積)·부피를 갖는 입체적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국토는 ‘수평성’(horizontality)과 함께 ‘수직성’(verticality)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유의하여, 본문에서 소개된 것처럼, 본 논문의 주된 관심 중 하나는 ‘지배 영역의 평면성과 입체성’이다. 참고로, 위의 진술은 현대 정치지리학자 뮤어(Richard Muir)가 “국가의 주권들이 수직적으로 맞닿아 지표를 가르는 곳에 경계가 존재한다.”(강조, 인용자)라고 하였던 통찰에 힘입은 것이다(Muir, Richard, *Modern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Wiley, 1975), p. 119, 통차이 위짜꾼, 앞의 책 (2019), 155쪽 재인용).

먼저 주목할 것은 교과서에서 재현된 국토가, 근대 국가에서와는 달리, 상호 접하고 있는 국경선에 의해 구획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새국사교본』에 수록된 ‘위씨(衛氏)조선시대도’(〈그림 1〉)에서 시사된다.¹⁵⁾ ‘도’(圖)라는 표현 그대로 그림인 앞 지도는 ‘위만(衛滿) 조선 시대’ 당대의 조선과 임둔, 진번, 그리고 연 등 각각의 지배 지역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만 조선 등 각각의 지배 지역들은 분명한 경계선으로 구획·밀봉(密封)된 공간이 아니라, 경계선조차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개방적 영토’였다. ‘개방적 영토’라는, 일종의 형용 모순적 언어 용례가 시사하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상상되는 국토, 즉 ‘연속적인 국경선 철조망과 감시탑·초소 등에 의해 폐쇄된, 또는 밀봉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림 1〉
위씨(衛氏)조선시대도

근대적 시각에서는 낯선 국토의 모습은 다른 교과서의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고구려 영양왕 때 있었던 ‘중국 지역의 수(隋) 나라의 제2차 입구(入寇)’ 당시 초기 전황에 관한 『國史敎本』의 다음 서사는 시사적이다.¹⁶⁾ 즉,

15) 이병도, 앞의 책 (1948), 8쪽.

16) 전통시대에 있어 ‘중국’(中國)은 오늘날과 같은 국가 정치적 호명이 아니라 ‘동양’(Orient)과 마찬가지로 역사·문화적으로 상상·구성된 지역 호명이었다고 판단

隋軍은 遼河를 건너 遼東 각처의 要城을 攻擊하였으나 우리軍이 곧세게 지키자 어찌할수가 없었다. 이에 저편에서는 어느곳보다도 高句麗의 서울 平壤을 치는것이 勝利의 捷徑이라 하고 于伸文 宇文述등이 精銳 三十萬五千으로써 鴨綠江을 건너 平壤을 향하여 쳐 들어온다. (강조, 인용자)¹⁷⁾

여기에서 수군은 요동 각처에 있는 고구려의 주요 성들을 함락하지 못한 채 그 성들을 그대로 지나치거나 우회하여 압록강 너머 평양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고구려 방비가 선형(線形, linear)이 아니라 “각처의 要城”, 즉 ‘주요 군사 거점 지역들에 설치된 성(城)’을 중심으로 한 거점 중심의 것이었음을 보여준다.¹⁸⁾

그런데 거점 중심의 경역 방비 태세가 고구려조(朝)의 것만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것은 고려 왕조에서도 확인된다. 『國史敎本』은 ‘제3차 거란의 입구(入寇)’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시 고려조(高麗朝)가 “鴨綠江南岸一帶에 여러 鎭城을 쌓아 西北方 經營에 힘”(강조, 인용자)써 “매우 契丹을 刺戟”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¹⁹⁾ 여기에서 우리는 ‘서북방 경영’, 즉 ‘서북방 지역의 일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진성’(鎭城)에 의해 공간적인 방식으로-선형적(線形的) 방식이 아니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것은 『國史敎本』의 ‘윤관의 여진 정벌과 구강(舊疆) 회수’ 서사에서도 목격된다. 그것은 “定平의 城을 넘어 北으로 나아가 女眞의 巢窟

된다. 이에 기초해서 본문에서처럼 ‘중국 지역’ 운운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이하의 진술에서 그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그리고 앞의 ‘역사·문화적 지역 호명’ 운운은 왕언메이(王恩美)가 “1949년 이전”의 “중국”이 “지리적·문화적 개념. 지명.”이었다는 진술에 힘입은 것이다(왕언메이(王恩美) 저, 송승석 역, 『한국화교-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서울: 학고방, 2013), 48쪽).

17)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13쪽.

18) 고구려의 거점 중심의 공간적 경역 방비 태세가 당(唐) 태종의 ‘입구(入寇)’와 관련된 『國史敎本』의 서사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는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14쪽 참고.

19)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8쪽.

20) 유열, 『현대 학생우리말사전』 (서울: 현대사, 1949), 90쪽 ‘경영’; 문세영, 『中等朝鮮語辭典』 (서울: 삼문사, 1949), 18쪽 ‘경영’.

을 衝擊”하고 “지역에 (咸興 저편) 英州 吉州以下 九城을 쌓아 舊疆의 一部를 回收하였다.”(강조, 인용자)라고 기술하였다.²¹⁾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윤관 지휘 하의 ‘정벌군’이 ‘성을 넘어 북으로 나가 여진 소굴을 공격하였다’라는 서사이다. 그것은 ‘고려조 정평 지역의 성’과 그 북방의 ‘여진 소굴’ 사이에는 선상(線狀)의(linear)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성과 소굴이 서로 거리를 두고 대(對)하여 있음’을, 따라서 ‘성과 소굴 사이에는 공활(空豁)한 지역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의 ‘윤관의 구강 회수’ 서사에서는 ‘일부 구강(舊疆) 회수’ 조치가 ‘구성(九城) 축조’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함흥 너머의 구강 회수 조치가 국경선 구축이 아니라 군사 시설인 구성 축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다. 이처럼 해방 직후 교과서는 고려조 시기 함흥 등 강역(疆域) 건너의 지역이 ‘장성(長城)이나 목책(木柵) 등 선적 형태의 국경선 구축의 방식’이 아니라 ‘진성(鎭城)이나 성(城)’이라는 군사 시설의 축조와 거점 지역 건설’을 의해 강역화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강역이 선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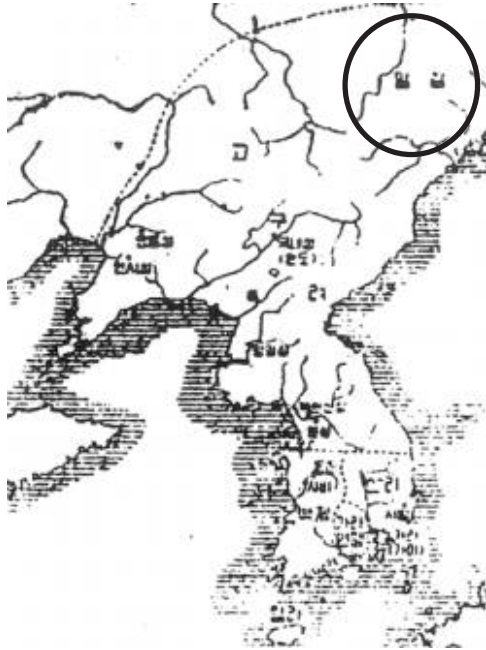
하지만 선적으로 구획되지 않은 형태의 강역상(像)은 국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국토’는 “국경선이라는 선에 의해 타국의 국토와 구별·구획되는 공간”을 의미한다.²²⁾ 그런데 근대 세계에서 국경선은 한편에서는 “여권, 출입국관리법(immigration law), 검사, 외환 통제 등” 검사와 통제 등 폐쇄적인 것이 연상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철조망과 울타리”와 같이 밀봉(密封)하는 것이 떠오르는, 선상(線狀)의 것이다.²³⁾ 이런 상황에서, ‘철조망과 울타리’와 같은 선상(線狀) 구조물의 부재는 국경선은 물론이고 그것에 의해 구획되는 국토, 나아가 국토가 핵심적 구성물인 국가의 존재에 대한 상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국사 교과서에서

21)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40쪽.

22) 임종명, 앞의 논문 (2008a), 208쪽.

23) Mitchell, Timothy, “Economy, and the State Effect,” George Steinmetz ed,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90.

읍루의 주체로 정체화(identification)된 ‘숙신’ 내지 “숙신족(肅愼族)”이, 앞 교과서에 따르면, “한씨[(韓氏)]조선[* 소위 ‘위만 조선’]시대” 당시 “만주 동편” “松花江流域에 居住하던 種族”이었지만, 그 ‘종족’은 고구려 광개토왕에 의해 “복속”되었다고 한다.²⁶⁾



〈그림 3〉 고구려 전성시대

“숙신의후예”는 이후, 예컨대, 고구려 영양왕조(朝)에는 “말갈(靺鞨)”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였다고 한다. 말갈은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칭해진 장수왕 시기에는, ‘고구려 전성시대’(〈그림 3〉)에서처럼, 고구려 판도 내 만주 동남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었다.²⁷⁾ 이처럼 “고구려에 속하였던”, 내지는 “服屬”된 것으로 제시된 ‘말갈족’은 “옛 고구려의

26) 이병도, 앞의 책 (1948), 10, 22쪽;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8쪽.

27) 이병도, 앞의 책 (1948), 23쪽.

유민”과 함께 발해를 일으키었다.²⁸⁾ 그들은 발해 멸망 이후 “女眞族”으로 다시 고쳐 불리지면서, “松花江以東에 살던 女眞(靺鞨을 이때에는 女眞이라 부름)族은 많은 部落에 나뉘어 比較的 自由로운 生活”을 하면서 “여러 부족으로 활거(割據)상태를 이루”고 살았다.²⁹⁾ 이러한 속에서, “그들의 生活圈은 점점 동남으로 뻗어 나와 西北으로는 鴨綠江東岸과 東北으로는 咸興부근까지 미치게 되”었다.³⁰⁾

여진족 “生活圈”의 한반도 확대는 고려 왕조 시기 ‘여진인’들의 한반도 내 거주를 의미했다. 즉 그들은 “東南滿洲와 우리의 鴨綠江流域 及 咸境道(咸興以北)일대에 흩어져” (“金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部落生活”을 하였다.³¹⁾ 이에 따라 고려 조정에서 “特히 咸境道 方面의 女眞人을 東蕃 또는 北蕃이라 하고 鴨綠江 方面의 그것을 西蕃이라 불렀”을 정도로 그들의 존재는 고려조에서도 의식되었다.³²⁾ 그와 같이 의식된 ‘여진인’의 존재성은 특정 지역과 결부되어 교과서에서 확인되기까지. 예컨대, 『國史敎本』은 ‘윤관의 여진 정벌’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曷懶甸(咸興地方인듯)의 女眞”을 언급한다.³³⁾ 이것은 추정의 형태로 당시 “흑수여진(黑水女眞)”이 함흥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조정은, 교과서에 따르면, 예종 때 “女眞征伐을 決行”해, ‘함흥 너머 영주(英州)와 길주(吉州) 등에 9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자, “女眞의 세력”으로서 “松花江의 支流인 阿勒楚喀[아륵초개; 만주어, 알추카(alcuka)] 流域에 (哈爾濱의 南方)에 살던 完顔部”가 “一面으로 九城을 침노하며 一面으로 和를 請하여 九城의 還付를 빌”었다. 이러한

28) 이병도, 앞의 책 (1948), 46쪽;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9쪽.

29)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6, 39쪽; 이병도, 앞의 책 (1948), 57쪽.

30)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9쪽.

31)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쪽.

32)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쪽.

33)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8-39쪽.

34) ‘갈라전’(曷懶甸)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고려시대 흑수여진(黑水女眞)이 살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0634>) (검색일: 2025.06.30.)

상황에서 고려 조정은 “九城은 지키기가 어렵다 하여 女眞의 入貢을 條件으로 九城을 내어주”었다.³⁵⁾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고려 왕조기에 여진인들이 “촌락”을 이루어 한반도 동북 방면의 ‘함흥 이북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재현되고 있었다.

여진인들의 한반도 북부 지역 거주는 교과서의 조선 왕조 관련 서사에서도 계속해서 재현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國史敎本』의 ‘근세(이씨 조선) 전기(태조-명종)’의 ‘제2장, 대외 관계’ 중 소절 ‘2.야인(여진)과의 관계’는 시사적이다. 그것은 “滿洲族인 女眞을 이때에는 흔히 野人”이라 칭(稱)한다고 소개한 다음 ‘동북 방면(함경도)의 야인’과 ‘서북 방면(압록강)의 야인’의 문제를 나누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麗末 以來 李太祖[이성계]의 經略에 依하여 (그들을) 豆滿江 外로 몰아내어 처음으로 江內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후 그들이 年年 北界를 소란케 하므로 太宗 때에는 할수없이 後退의 策을 써서 지금 鏡城以北의 땅을 버리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³⁶⁾ 이는 앞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세종의 ‘북변(北邊) 6진 개척’ 시기까지, 즉 태종조와 세종조 사이에 ‘동북 방면 함경도 경성 이북’ 지역이 야인의 “땅”으로, 거기에는 여진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왕조 시기 한반도 서북 지역 내 야인 내지 여진인의 존재 또한 교과서에서 재현된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조 압록강 상류 지역에 설치된 4군의 변천사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은 시사적이다. 『새국사교본』은 ‘태종 때의 강계부(江界府)와 여연군 설치, 그리고 세종 때의 우예군 등 3군 가설(加設), 이를 통한 서북계(西北界) 4군의 완성’을 알린다. 하지만 곧바로 그 교과서는 “그후 4군의 땅은 방비의 곤란으로 정신(廷臣)간에 철폐(撤廢)의 논(論)이 일어나 단종(端宗)때에 먼저 우예·여연·무창의 3군을 파(罷)하고 세조때에는 나머지 1군인 자성마저 파하였다.”라고, ‘방비 곤란으

35)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9-40쪽. 참고로, “阿勒楚喀”은 오늘날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 남부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된다.
<https://en.wiktionary.org/wiki/%E9%98%BF%E5%8B%92%E6%A5%9A%E5%96%80> (검색일: 2025.06.30.)

36)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94-95쪽.

로 인한 4군 철폐’를 학생 독자에게 알려주었다.³⁷⁾ 더욱이 『國史敎本』은 “世祖는[*가] 西邊을 侵寇하는 建州野人(波猪江方面) 李滿住等에게 數次 소탕(掃蕩)의 打撃을 주어 마침내 그 괴수를 목 베”는 등의 “大捷을 올린 일”이 있었지만 “西邊北邊의 小小한 外患은 後에도 끝일 사이가 없었다.”라고 결론 맺는다.³⁸⁾ 이것은 ‘북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변’ 지역에서도 ‘여진·야인’이라 불려진 만주족이 세조 이후에도 ‘작은 규모의 환(患)들’을 계속해서 야기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서는 ‘야인’(野人)이라 통칭될 정도로 “文化程度가 자못 낮”아 “劣等視”되던 “民族”의 한반도 내 존재가 계속해서 재현되었다.³⁹⁾

‘열등한 민족의 한반도 내 존재’는 당시 민족사의 구성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 교수 손진태가 1947년에 쓴 「國史敎育의 基本的 諸問題」는 시사적이다. 그 글은 “二, 民族에 關한 諸 問題”에서 “우리民族의 祖先族들이 [중국 북방에서] 東來定住하던 (滿洲와 半島內에) 그 때로부터 朝鮮民族史는 出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⁴⁰⁾ 이것은 ‘한반도’가 ‘만주’와 함께 ‘조선민족사 출발’의 공간으로 의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는, 앞서서처럼, 만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역시, 그 북부 지역에서, ‘열등 민족과의 혼거’ 상(相)을 재현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민족 혼거’ 재현은 근대 이래 민족의 공간으로 상상되어 온 한반도 지역의 민족성을 부인하는 것이자, 역사 교과서가 실천하고자 했던, 최소한 한반도를 민족 공간화하려는 국토 민족주의 의제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Ⅲ. 민족 공간 내 이(異)민족의 민족화와 위계적 결론

37) 이병도, 앞의 책 (1948), 128-129쪽.

38)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96쪽.

39)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쪽.

40) 손진태, 「國史敎育의 基本的 諸問題」, 『朝鮮敎育』 1(2) (1947), 이상길·오만석 공편,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판 Ⅲ』 (과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20쪽.

‘민족 공간 내 이민족의 존재’라는 문제적 상황 앞에서 먼저 교과서는 문제 자체를 무효로 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새국사교본』은 ‘고려 태조의 북진책(北進策)’ 관련 소절에서 “될수있으면 옛날 고구려의 구경(舊境)마저도 회복”하고자 했다는 태조의 관련 노력을 보여준다. 즉, 그 교과서는 태조가 “북방개척(開拓)에 일찍부터 부절(不絶)한 노력(努力)과 주의(注意)”를 기울였다고 하여, ‘북방 개척’을 ‘고구려 구경 회복 목적의 북진책’과 연결했다. 이어서 교과서는 “발해의 유민(遺民)으로 귀부(歸附)를 잃은 여진의 거주지(住地)를 경략하여 태조 만년(晩年)에는 서북으로 청천강하류와 동북으로 영흥(永興)지방에까지 다달았다.”라고 학생 독자들에게 전하였다.⁴¹⁾ 이처럼 교과서는 ‘고구려 구경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고려 태조의 여진인 거주지 경략’을 정당화하였다.

이처럼 의구(依舊)를 통해 정당화된 ‘여진인 거주지 경략’의 모습은 교과서 도처에서 목격된다. 예컨대, 『國史敎本』은 조선조 태조의 ‘두만강 내지(內地)의 차지’ 이후 ‘그 바깥 땅(외지)으로 축출’된 야인들이 “年年 北界를 소란케 하므로 太宗때에는 할수없이 後退의 策을 써서 지금 鏡城以北의 땅을 버리기까지 하였다”라고 하여 ‘민족 공간의 축소’를 상황론으로 변명한다. 이어서 그 교과서는 세종이 그의 재위 중 “廷臣間에 또 [경성 지역으로부터의] 後退의 議가 제기되었을 때, “大王은 祖宗의 舊疆을 寸土라도 주릴수 없다하여 이에 反對”하고, 나아가 김종서로 하여금 “이 方面의 經營을 담당케하여 마침내” 종성(鍾城) 등지의 “北邊六鎭을 完成”하였다고 독자들에게 전해 준다.⁴²⁾ 이러한 서사에서 ‘6진의 완성’은 세종의 입으로 표현된 ‘예전 조선의 강역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었다. 이처럼 ‘고구려의 구경’이나 ‘조종의 강토’라는 의구적(依舊的) 측면에서 ‘조선 조정의 여진인 거주지 경략’은 정당화되었다.⁴³⁾

41) 이병도, 앞의 책 (1948), 60쪽.

42)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95쪽.

43) ‘6진 완성’은 의구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개척’이나 ‘주권 행사’라는 측면에서도 정당화되었다. 예컨대,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96쪽.

‘세종조의 여진인 거주지 경략’ 서사는, 교과서에서, ‘조선인의 6진 이주’ 이야기로 이어진다. 즉, 『國史敎本』은 “六鎭은 新開拓地인만큼 住民의 充實을 必要로 하므로 南方 諸道の 人民을 前後 이곳에 移住케 하였다”고 기술해, ‘한반도 남쪽 인민이 신개척지에 이주해 살게 되었음’을 밝힌다.⁴⁴⁾ 여기에서 ‘남쪽 인민의 이주’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개척’이라는 표현이다. 앞의 의구적인 ‘6진 경략 정당화’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세종 임금의 조상인 태조가 예전에 차지했던 두만강 내지’를 ‘회수(回收)한 땅’, 즉 수복지(收復地)라고 표현되어야 했다. 그렇지만, ‘6진’ 지역은 교과서에서 사전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그렇지만 사람들 삶의 목적에 따라 그들에 의해 개발·발전되어야 할 지역이나 사업 등’을 의미하는 ‘개척지’, 그것도 ‘신개척지’로 호명되었다.⁴⁵⁾ 이러한 것은 그 지역에서 ‘경략’ 직전까지 거주하던 주민, 즉 여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그 지역을 무주공간(無主空山)의 공활지(空豁地)로 변형·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그 지역 자체가 탈(脫)여진화되고 대신 한민족의 관점에서 민족화되면서, ‘한반도라는 민족 공간 내 이민족의 존재’라는 문제는 ‘아예’ 소거되었다.⁴⁶⁾

인구 측면에서 보이는 문제적 상황의 해소 노력은 ‘이민족의 민족화’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예컨대, 『國史敎本』은 고려 왕조 시기 여진인들이 “高麗를 가르켜 上國 또는 『父母의 나라』라 하”였다고 한다. 또, 『새국사교본』은 “[각각 고려의 동북과 서북에 있던] 동서여진은 다 고려를 대국(大國)으로 섬기”고 심지어 “북만(北萬)의 여진인 완안부(完顔部)의 추장(酋長) 영가(盈歌), 오아숙(烏雅束)의 부자(父子)도 자칭 고려인의 자

44)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95쪽.

45) 본문의 ‘개척지’ 어의 해설이 해방 직후 사전에서 제시된 ‘개척’의 어의에 유의한 것으로,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① 거친 땅을 처음으로 일우어 논밭을 만들고, 살도록 열어 나감. ② 남이 아직 손대지 않은 학문이나 일을 처음으로 손대어 발전시킴.”(강조, 인용자)이다(유열, 앞의 사전 (1949), 54쪽 ‘개척’(開拓)). 덧붙이면, ‘개척’이 학문·사업 등의 분야에서 “처음으로 손대어 발전시킴”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 단어는 ‘발전주의’와도 관련된 것이다.

46) 본문 진술에 유의할 때, 6진은 민족적 의미에서 ‘(신)개척지’였다.

손이라 하여 호의(好意)를 표”하였다고 학생 독자들에게 전한다.⁴⁷⁾ 이는 여진인의, 그것도 추장급(級) 인물들의 입과 생각을 빌어 고려인과 여진인을 부모와 자식, 내지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결연시켜, 양자를 혈연적 동족 집단, 또는 당대 용어로는 동일 겨레·민족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가 여진인을 고려인과 동족 집단으로 정체화하여 자신의 서사가 초래한, ‘이민족의 민족 공간 내 존재’라는 문제 상황을 처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는 여진인과 고려인의 민족적 결연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도가 ‘애초’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려 왕조기의 ‘한민족’(the Korean nation)이 하나의 “民族”으로 정체화되고 있던 여진인을 내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 대 민족의 결합’은 당대의 ‘한국인의 단일 민족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여진인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와 중국 지역의 주요 왕조였던 금(金)과 청(淸)의 정치적 언어·문화 집단(ethnic)이었다. 그 때문에, 여진인은 교과서의 관련 서사에서도, 예컨대 “元來 文化程度가 자못 낮은 民族”(강조, 인용자)에서처럼, “民族”으로 호명되어 ‘민족’으로 정체화되고 있었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여진인과 고려인을 같은 민족으로 정체화하는 것은,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이었다.⁴⁹⁾

47)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쪽; 이병도, 앞의 책 (1948), 78쪽. 덧붙이면, 『새국사교본』에 따르면, 오야숙은 “대금황제(大金皇帝)라 일컬었던 금(金)의 태조 아골타(阿骨打)의 형으로서 “부족 통일의 웅심(雄心)이 움지여” “동여진의 땅을 아울러 고려와 접경”한 인물이었다(이병도, 앞의 책 (1948), 78쪽).

48)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쪽.

49) 물론, 본문 중 앞에서 보았듯이, 『새국사교본』이 추장급 여진인의 입을 빌려 ‘여진인’을 ‘고려인’으로 정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진태 역시 앞 책 발간 시기 앞뒤로 해서 공간된 논문과 1년 후 자신의 교과서에서 ‘금(金) 황실의 시조가 고려 출신으로 금과 고려가 종종적으로 서로 가깝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金史를 國史에 넣자”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의 교과서에서 그와 같이 기술하였다(손진태, 『國史教育 建設에 대한 構想-新民主主義 國史教育의 提唱-』, 『새교육』 1(2) (1948.09), 이상길·오만석 공편, 『한국교육사료집성: 현대편 I』 (서울: 선인, 2002), 60쪽; 손진태, 1949, 『우리나라 생활(역사부분)』 (서울: 을유문화

그렇다면, 교과서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민족의 민족 공간 내 존재’라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가? 이와 관련해서 고려 왕조기 고려와 여진 양자의 관계를 재현하는 교과서 서사는 시사적이다. 먼저 『國史敎本』과 『새 국사교본』은 고려 조정이 ‘문화 수준이 저열’한 “女真人”에 대해서 “대개 撫摩策을 썼”다고 한 뒤 ‘여진족 부장(部長)들’ 중에는 그들 스스로가 “上國 또는 『父母의 나라』”라고 하였던 고려에 “歸化하는 자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고려를 대국(大國)으로 섬기어 때때로 무리를 이끌고 귀화(歸化)하는 자도 많”았다고 이야기한다.⁵⁰⁾ 이것은 고려와 여진의 상호 관계 및 여진인의 대(對)고려 의식, 나아가 고려 조정의 정책과 ‘대륙의 정세’ 등으로 말미암은 여진인의 고려 귀화 사실을 학생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고 현재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교과서에서 ‘여진인들이 고려를 상국 내지는 대국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진과의 관계에서 상국·대국으로의 고려 정체화는 교과서에서 조공(朝貢) 관계로의 양자 결연으로 발전된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적인 것은 ‘여진 부락 추장·부장의 고려 입공(入貢)’ 관련 서사이다. 교과서들은 “高麗初期부터 各部落의 酋長들은[*이] 많이 入貢”하고, 또 ‘동번(東蕃)(동여진) 서번(西蕃)(서여진)의 사절이 “[고려의 팔관 의식에] 와서 方物(方物)을 바치고 축하를 올렸다.”(강조, 인용자)라고 이야기하였다. 나아가, 교과서들은 “[여진의] 部長들 가운데에는 貢物을 바쳐 來附하는 者가 많”(강조, 인용자)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文宗 時代”와 숙종조의 ‘여진인 부장들의 고려 내부(來附) 상황’을 거론하였다.⁵¹⁾

앞의 교과서 서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입공’ 관련 서사이다. 위 서사에 보이는 “入貢”은, 당대 사전에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또 ‘조공’이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에 예물이나 물건을 바치던 일”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입공’을 포함한 위 서사는 ‘여진 부락 추장들’이 고려 조정에 대해 ‘조공’의 예(禮, courtesy)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군다

사, 1949), 104쪽).

50)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63쪽; 이병도, 앞의 책 (1948), 78쪽.

51)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2-63, 39쪽.

나, 그와 같은 의례 준행(準行)상(相)은 “감사·수령(監司·守令)들이 임금께 바치던 지방의 산물”과 “궁중·정부들에 상납하는 물건”을 각각 뜻하는 ‘방물’과 ‘공물’, 그리고 그것들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상납’ 등의 채용에 의해 일층 구상화(具象化)되었다.⁵²⁾ 이처럼 교과서는 ‘여진 부락’과 고려 조정의 양자 관계를 조공 관계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구상화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양자의 조공 관계가 고려 조정의 일방적 수혜(受惠)의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 조정에로의 여진 추장·부장의 내부(來附) 상황을 전하는 『國史敎本』의 서사는 시사적이다. 그에 따르면, 고려 조정에서는 ‘내부’(來附), 즉 ‘와서 복종’하는 “[여진족] 各部落의 酋長” 내지는 “女眞部長”에게 “大匡 將軍等”의 “號” 내지는 “官職”을 주고 “特히 功이 있는 者에게는 姓名까지 附賜”하였다고 한다.⁵³⁾ 나아가, 고려 조정은 “그들[여진 부장]의 入貢에 대해서도 恣히 一定한 時期와 員數를 定해 주”고, 그들의 “貢物”에 대해 “그들의 生活에 必要한 것을 價賜品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⁵⁴⁾ 이것은 마치도 전통시대 중국 왕조와 이웃 왕조 사이의 관계, 즉 ‘조공-책봉 관계’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려 조정과 여진 촌락의 양자 관계를 ‘작은 조공체제’(micro tributary system)로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려 조정과 여진 촌락은 교과서에서 ‘책봉과 조공’이나 ‘복속의 주체와 대상’으로 상호 관계 맺어졌다.

그와 같은 양자 결연 역시 ‘한반도라는 민족 공간 내 이민족의 존재’라는 사실의 문제성을 약화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진인이

52) 문세영, 『修正增補 朝鮮語辭典』 (서울: 조선어사전간행회, 1940), 1,302쪽 ‘입공’(入貢), 638쪽 ‘방물’(方物), 160쪽 ‘공물’, 829쪽 ‘상납’(上納), 1426쪽 ‘조세’(租稅); 유열, 앞의 사진 (1949), 988쪽 ‘조공’(朝貢).

53)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9, 63쪽. ‘내부’(來附)는, 당대 사전에서, “들어와 복속(服屬)하는 것”을, 또 오늘날 사전에서는, “와서 명령이나 의사에 복종함”을 뜻한다(문세영, 앞의 사진 (1940), 306쪽 ‘내부’(來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48608&supid=kku000062393>) (검색일: 2025.06.30.). 이와 같은 사전적 어의에 유의하여 본문 중 ‘와서 복종’ 운운의 표현은 이루어졌다.

54)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63쪽.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주체인 한, ‘여진인의 한(韓)민족화’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는 고려·여진의 ‘조공·책봉’ 관계 재현을 통해 고려의 ‘대국성·상국성’을 시위하는 한편 여진의 ‘사대성’을 보여주어 그것의 ‘자주성·독립성·주체성’을 부인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공·책봉’ 관계 자체가 관계 형성의 주체인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공·책봉 관계로의 고려·여진 결연과 이를 통한 양자의 관계적 정체화(relational identification)가 ‘민족 공간 내 이민족 존재’의 문제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IV. 전통시대 선상(線狀)의 국경과 입체적(立體的) 국토의 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 자체에 대한 변형, 이를 통한 공간성의 변질이 시도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새국사교본』이 ‘기자(箕子) 조선’을 부인하는 서사이다. 그 교과서는 먼저 ‘기자(箕子)동래(東來)설’을 부인하면서 ‘기자 조선’ 대신 ‘한씨조선(韓氏朝鮮)’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교과서는 그것의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씨조선(韓氏朝鮮)이 한창 성(盛)할때는 그 영토(領土)가 서쪽으로 지금 요하유역(遼河流域)에 다달아 중국의 연[(燕)]나라와 지경[(地境)]이 가까워졌”(강조, 인용자)다고 하였다.⁵⁵⁾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달아”나 “가까워졌”다는 표현이다. 그것들은 ‘한씨 조선’과 ‘중국 지역의 연(燕)’이 서로 접(接)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당시 고대 왕조의 강역(疆域) 사이에는 ‘주권’-오늘날 표현을 빌린다면-이 행사되지 ‘비(非)국가적 공간’, 또는 ‘빈(空) 공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역’들로 이루어진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모습은 국경선을 따라 각각의 국토들이 서로 접하면서 국가들이 서로 마

55) 이병도, 같은 책 (1948), 7쪽.

주하고 있는 오늘날 국경 지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⁵⁶⁾

이에 유의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앞의 서사, 특히 “지경”(地境)이라는 언어의 채용은 주목된다. 그 표현은 “땅과 땅을 나누는” 운운의 사전적어의 해설에서처럼 ‘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⁵⁷⁾ 그와 같은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 ‘지경’의 채용은 ‘영공’(領空)이라는 이름으로 지표면 이상의 공간까지 ‘국토’로서 ‘수직적으로 경계 짓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상의 공간을 구획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공간 구획은 전통시대 정치체들의 지배 공간을 ‘체적(體積) 또는 부피를 가진 입체(立體)적인 것’-근대 국토가 ‘영공’을 포함하는 것에서처럼-으로가 아니라 평면적인 것으로 재현·표상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는 ‘지경’ 등의 채용 속에서 고대 정치체의 지배 공간을 지표면 중심의 것으로 평면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국사교본』은 고대 동아시아 ‘한씨 조선’과 ‘중국 지역의 한(漢)’ 사이에 존재했던 ‘빈 공간’, 즉 ‘비(非)국가적 공간’을 삭제하였다. 즉, 그 교과서는 “[한씨 조선의] 마즈막 임금 준왕(準王) 때에는 중국에 한(漢)이 일어나 옛날 연(燕)의 땅을 차지하매 패수[(溍水) * “지금청천강”]로써 조선과의 경계를 삼았다.”라고 하였다.⁵⁸⁾ 이것은 패수라는 선형(線形)의 자연물을 ‘한씨 조선’과 ‘중국 지역의 한(漢)’이 마주하는 경계로 제시하면서 양자 사이의 빈 공간을 삭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두 정치체의 영토가 선상(線狀)의 경계선에 의해 구획되면서도 양자가 서로 맞붙어 있었다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왕국과 같은 고대 정치체가 국경선에 의해 상호 구별·구획되는 국토를 가진 정치체, 요컨대 영토 국가였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56) 본문 진술은 “경계 지어지지 않는 왕국”에 관한 통차이의 앞의 책 서술을 참고한 것이다(통차이 위짜꾼, 앞의 책 (2019), 특히 155-160쪽).

57) ‘지경’이 당대 사전에서 축자적(逐字的)으로 “토지의 경계”라고 설명되기도 했다(문세영, 앞의 사전 (1940), 1481쪽 ‘지경’). 하지만, 유열의 사전은 ‘지경’의 어의를 “땅과 땅을 나누는 살피.”를, 또 ‘살피’는 “두 물건의 사이를 지은 표”라고 해설하여 ‘지경’의 대상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었다(유열, 앞의 사전 (1949), 1026쪽 ‘지경’, 609쪽 ‘살피’).

58) 이병도, 같은 책 (1948), 8쪽.

영토 국가로의 고대 정치체 표상은 『國史敎本』에 의해 일층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교과서는 ‘후조선’(後朝鮮) 역사 관련 소항목에서 “準王때에 일찌기 歸化하여 西部 國境땅에서 勢力을 모두고 있던 燕人 衛滿”이라고 하여 “國境”(강조, 인용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⁵⁹⁾ 여기에서 보이는 ‘국경’은, 원래, 그것으로써 구획되는 국토를 구성하는 한편 그 국토를 여타의 국토와 선적으로 구별하고, 나아가 국토를 갖춘 영토 국가로 일 정치체를 재현·표상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된 ‘후조선’은, ‘국경’이라는 언어의 채용에도 불구하고, 국경선과 같은 선(線)에 의해 구획된 국토를 가진 영토 국가가 아니었다.

이 점에서 고대 정치체의 영토는 무엇보다도 선적(線的)으로 재현되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사적인 것은 ‘삼국의 패권 다툼’ 중 “半島 制霸에 힘”쓰는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 당시의 “版圖”를 설명하는 『中等國史』(1947)의 구절이다. 그 구절은 광개토왕이 “南에서는 臨津江·漢江의 中間인 江華·楊州·加平의 線을 版圖로 건우어 들이고”(강조, 인용자), 장수왕이 “南境을 太白山·俗離山·牙山灣의 線에까지 擴張”(강조, 인용자)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⁶⁰⁾ 이것은 ‘선’이라는 언어를 통해 ‘전성기’ 고구려의 ‘판도’와 그것의 확장을 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판도 남쪽 경계가 선상화(線狀化)된 고구려 판도의 북쪽 경계 또한 선형화(線形化)된다. 북경(北境)의 선상화는 시설물 축조 관련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국사교본』은 ‘고구려와 당(唐)과의 충돌’ 과정을 설명하면서, 고구려 영류왕(榮留王)조 631년에 “고구려에서는 이[* ‘당 태종의 세계 지배 야망’]에 대한 방비(防備)의 책(策)으로 16년의 세월을 요(要)하여 서변(西邊)(요하연변(遼河沿邊))에 천여리(千餘里)의 장성(長城)을

59) 진단학회 편, 앞의 책, 3쪽. 덧붙이면, 김상기가 집필한 『國史敎本』 ‘고대편’은 ‘고조선’을 ‘전조선’, ‘후조선’, ‘위만 조선’으로 구분해 고조선 전체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4쪽). 또한, 앞 교과서에서 위만을 연인(燕人)이라 한 것은 이병도의 『새국사교본』에 의해 의심된다. 이 교과서는 위만이 “조선인 계통의 자손인듯하다”라는 추정에 기초해 『國史敎本』의 관련 진술에 이의를 제기하였다(이병도, 앞의 책 (1948), 9쪽).

60) 최남선, 앞의 책 (1947), 12쪽.

쌓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⁶¹⁾ 이것은 당과 고구려를 나누면서 천여 리(里)에 걸쳐 이어져 있는, 고구려 서쪽의 ‘방비선’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는 그것의 판도 남쪽과, 북쪽 일부가 선상화되었다.

고구려 경계의 선상화는, 당연히도, 고구려와 경쟁하던 신라와 백제 등의 경계를 선형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신라와 백제 등 ‘삼국’의 선상화는 앞에서 본 지도 형태의 그림 ‘고구려 전성시대’를 통해 이루어진다.⁶²⁾ 그림은 『새국사교본』이 ‘고구려의 전성시대’라고 칭했던 장수왕 때의 고구려 판도를 점선 처리를 통해 시각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도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당대 신라와 백제, 그리고 가라 연맹국의 판도 또한 선적으로 시각화였다. 점선을 통한 ‘삼국’의 판도 시각화, 역으로 한반도와 그 북부 지역의 시각적 판도 구획은 한반도를 점선이라는 형태의 선을 통해 왕조별로 구획된 공간으로 재현하였다. 비록 단속적인 점선(點線) 형태로 이루어진 선적 공간으로의 재현은 각각 왕조의 판도를 근대인에게 익숙한 국토에 근사(近似)한 것으로, 또 삼국 시대 당시의 한반도를 선적으로 구획된 국토들로 구성된 공간으로 구상화(具象化)하는 것이었다.

전통시대 왕조 판도의 선상화는 발해 왕조의 그것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國史敎本』은 ‘제10대 선왕’ 무렵의 “領域”이 “東은 東海에 達하고(沿海州), 北은 黑龍江과 松花江이 境界가 되었으며, 西는 松花江의 北流로부터 開原에 이르는 線이 國境이었고, 南은 咸南의 龍興江附近에서 新羅와 接하였다.”라고 설명한다.⁶³⁾ 여기에서 흑룡강과 송화강이라는 자연물의 선적(線的)인 강줄기가 발해의 북쪽 ‘경계’를, 송화강 북류로부터 개원까지의 ‘선’이 서쪽 ‘국경’을 이루었다. 이처럼 발해 왕조의 ‘영역’을 규정하는 북·서쪽의 경계 내지 국경은 서로 ‘선형의 국경선’으로 재현되었다.

61) 이병도, 앞의 책 (1948), 27쪽.

62) 이병도, 앞의 책 (1948), 23쪽.

63)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18쪽.



〈그림 4〉 오도양계도

경계의 선적 재현은 한반도 내 ‘단일 왕조’로 출범한 고려 왕조의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루어진다. 『國史敎本』과 『새국사교본』은 덕종 때 “요(遼)뿐아니라 여진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의 경역[(境域)]”을 방비하기” 위해 “鴨綠江口로부터 반도를 횡단”해 “동해안의 도련포(都連浦)까지 연장 약 1000리의 동해안의 도련포(都連浦)(지금 정평(定平)의 광포(廣浦))에 이르는 연장(延長) 약 1000리의 장성을 쌓기 시작하여 다음 정종 10년에 완성하였”다고 이야기한다.⁶⁴⁾ 덕종조의 천리장성 축성 이야기는 『새국사교본』에 수록된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그림 4〉)에 의해 시각화된다.⁶⁵⁾ 그 그림은 벽돌 모양의 성곽 기호로 동해안 도련포부터 압록강 입구를 연결하면서 고려 왕조 판도의 북쪽 ‘경역’(境域)을 선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왕조 판도의 선적 이미지화’는 “몽고의 제국주의하(帝國主義下)에 굴복된 이후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과서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國史敎本』은 “蒙古兵이 侵入할 때에 趙暉와 卓靑等이 本國을 배반하고 亂을 일으켜 鐵嶺以北의 땅을 蒙古에 붙이”(강조, 인용자)고 “西北에 있어서는

64)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31, 39쪽; 이병도, 앞의 책 (1948), 69-70쪽.

65) 이병도, 앞의 책 (1948), 68쪽.

崔坦이라는 者가 叛하여 平壤 以北의 六十城으로 移 蒙古에 降伏”해 몽고가 “그[평양] 一帶를 管轄하고 慈悲嶺으로서 國境으로 삼”(강조, 인용자)었다고 이야기한다.⁶⁶⁾

이어서 『새국사교본』은 당시 자연 지형의 이미지를 “판도(版圖)의 모양”에 전사(傳寫)한다. 즉 그 교과서는 “철령(鐵嶺)과 절령(岳嶺)(자비령) 이북의 땅이 몽고의 소유(所有)가 되”었다가 “고려의 요청으로 절령(岳嶺)이북의 땅”이 “도로 고려에 돌아왔으나, 철령이북의 땅은 약 100년간 몽고 판도(版圖) 안에 들어 있었다.”(강조, 인용자)라고 설명하였다.⁶⁷⁾ 여기에서 제시된 ‘철령’과 ‘절령’, 또는 ‘자비령’ 중의 ‘령’(嶺)은, 사전적(字典的)으로, “제” 또는 “고개”와 함께 “연속한 산악”(連山)을 지칭한다.⁶⁸⁾ 이러한 사전적 어의가 철령과 절령(자비령)에 적용될 수 있다면, 앞의 구절들은 ‘연산’(連山)이라는 언어적 합의 역시 가진 ‘철령’, ‘자비령’ 등의 자연 지형을 빌어 판도의 경계, 또는 “國境”을 선적으로 이미지화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었다.

자연 지형을 통한 선적 이미지화는 조선조 세종의 “英雄的 事業”을 설명하는 『國史敎本』에 의해서도 시도되었다. 그 교과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세종이 종성·온성·회령·경원·경흥·부령의 ‘북변 6진을 완성’하고 ‘두만강변에 장성’을 쌓아 “國防을 嚴히 하였다.”(강조, 인용자)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장성’이라는 인공적 축조물과 함께 ‘두만강변’이라는 선상(線狀)의 자연물이 ‘국방’과 연관해 등장한다. 이는 장성뿐만 아니라 강과 그 주변 지역 또한 국방과 관련시키면서, 그것들이 국방의 전초선(前哨線), 즉 ‘국경선’으로 연상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방, 국경선과 맥락적으로 연결된 자연물은 『새국사교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국가화’된다. 그 교과서는 세종이 북계와 서계에 각각 6진과 4군의 설치를 통해 “국방을 엄히하는 동시에 압록·두만의 양강을 기리 국경하(國境河)”로 하는 “획기적 사업”을 통해 “조선이 압록 두만의

66)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52쪽.

67) 이병도, 앞의 책 (1948), 93쪽.

68)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1991), 396쪽.

양강을 자연경계로 삼아 그이남의 땅을 완전히 판도안에 넣”(강조, 인용자)였다고 하였다.⁶⁹⁾ 여기에서, “압록 두만의 양강”, 특히 ‘국경하’라는 표현에서, ‘국경’이 선적인 형태인 강과 결합되면서 국경은 선적인 이미지를 띄게 되었다. 국경의 선적 이미지화는 단종과 세조 때의 “4군 철폐”의 의미를 부연하는 구절, 즉 “[그것이] 국방(國防)선의 후퇴에 불과하였다”(강조, 인용자)에서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졌다.⁷⁰⁾ 여기에서 압록강·두만강이라는 자연물은 ‘국경하’라는 어구에 의해 ‘국경’으로, 즉 국가의 경계로 정치화되었다. 이처럼 국가와 연결되며 정치화된 자연물은 다시 ‘국방선’이라는 언어에 의해 국방과 연결되어 정치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공간’으로 의미화되고 동시에 선적으로 이미지화되었다.

선적으로 이미지화된 ‘지경’(地境)은 전통시대 왕조의 ‘판도’(版圖)를 타 왕조의 판도와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 세종때의 ‘북계’(北界) 상황을 전하는 이병도의 이야기는 시사적이다. 그는 『國史敎本』에서 ‘세종대왕’이 “西北方面”에 “西邊四郡을 完成”하고, “東北方面”에 “六鎭[을] 開拓”하는 것에 의해 “朝鮮의 北界가 이때에 完全히 豆滿江과 鴨綠江의 上流에까지 達하”(강조, 인용자)였다고 하였다.⁷¹⁾ 이것은 세종 때에 자연물인 두만·압록 양강의 상류에까지 이르는 ‘계선’(界線)에 의해 조선의 북쪽 경계 내지 지경이 형성되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4군’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國防線”이라고 표현한 것이 시사하듯이, 강이라는 자연물로 표현된 계선은 ‘국가를 지키는 선’이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국방선’이라는 표현은 앞의 계선이 ‘국가’와 연관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 즉 이병도의 『새국사교본』은 “조선이 압록 두만의 양강을 자연경계로 삼아 그이남의 땅을 완전히 판도안에 넣

69) 이병도, 앞의 책 (1948), 118쪽, 128-129쪽. ‘판도’는, 오늘 날 사전에 따르면,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이나 범위’를 의미한다.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74862&supid=kku000350543>
(검색일: 2025.06.30.)

70) 이병도, 앞의 책 (1948), 118쪽.

71) 진단학회 편, 앞의 책 (1946), 95-96쪽.

기는 이 세종대왕의 사업이었다.”라고 하였다.⁷²⁾ 여기에서 ‘압록·두만 양강은 자연경계가 되고 그것을 경계로 그 이남의 땅은 완전한 판도’로 되었다. 이제, ‘자연경계는 완전한 판도를 구획하는 경계’가 되어 ‘완전한 판도’를 낳게 되었다. 이처럼, 선적 형태의 자연물은 ‘국방선’이 되고 ‘국경선’이 되어 ‘국토’를 낳았다.

V. 결론: 해방 직후 국경·국토·국가 재현의 당대적 함의

지금까지 보았듯이, 식민지 해방 직후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특히 국토 민족주의가 급격하게 고조되었다. 하지만 해방 직후 현실의 제반 어려움으로 남한에서는 대중의 ‘사회적 부랑성(浮浪性)’과 ‘탈(脫)민족화’(de-nationalization)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사 교과서는 근대 이전의 전통시대 역사 설명에서 왕국과 같은 전통 정치체의 지배 영역을 국경선으로 구획된 국토로 재현·표상해, 이것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하는 국가로 왕국 등을 재현·표상하고, 국가의 전(全)역사적인 항상적 존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교과서에 의해 실제로 재현된 전통시대 정치체의 지배 영역은 국경선과 같은 연속적인 선에 의해 구획·구별되었던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연속적이고 폐쇄적인 경계선이 보이지 않는 일종의 ‘개방적 공간’이었다. 그와 같은 지배 영역의 모습은 한반도와 그 인접 지역, 특히 전자를 국토로 표상하고자 했던 교육 목적을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선적(線的)이지 않은, 그래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porous) ‘지배 영역 간 경계’의 모습은 경역(境域)에서 여진인들과 같은, 공동 언어·문화의 집단(ethnic)이 단독으로, 또 한국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는 민족의 공간이라고 전제했던 한반도와 그 인

72) 이병도, 앞의 책 (1948), 128-129쪽.

접 지역을, 특히 한반도를 국토로 재현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의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적 상황을 맞아, 먼저, 교과서는 문제 자체를 소거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교과서는 ‘고구려의 구경(舊境) 회수’나 ‘조종(朝宗)의 강토 회복’이라는 의구적(依舊的) 측면에서 ‘조선 조정의 여진인 거주지 경략’을 정당화하면서 그 ‘경략’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인간 부재(不在)’를 전제·상정하는 ‘개척’ 등과 같은 언어의 사용을 통해 인구적 측면에서 경략 직전 해당 지역의 거주민, 즉 여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 나아가 교과서는 한반도 남부 지역 주민이 회수된 구경 지역에 이주하고, 또 여진인이 한(韓)민족과 조공/책봉 관계로 결연(結緣)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노력이 ‘민족 공간 내 이민족 존재’의 문제성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 자체에 대한 가공을 통한 공간성 변형이 시도된다. 즉 교과서는 언어나 서사 등을 통해 전통시대 왕국 등의 지배 영역을 연속적이고 폐쇄적인 국경선으로 구획되는 국토로 재현·표상하였다. 이러한 것은 고대 왕국 등 전통시대 정치체가 선적인 국토를 가진 정치체, 즉 영토 국가였다고 강변하면서, 그것의 근대성까지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시착오적(記時錯誤的, anachronic)인 주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의 고대 국가들이 연속된 국경선으로 밀봉된 영토를 가진 국가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들은 선적 공간으로의 지배 영역 재현을 통해 한반도와 그 인접 지역에 존재했던 왕국 등의 전통시대 정치체를 영토 국가로 표상하는 한편 그 지역 또한 선적인 국토·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적(international) 공간으로 변형·변질시키고자 하였다.

전통시대 한반도와 그 인접 지역의 국토화는 다양한 함의를 가진 것이었다. 먼저, 그것은 국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고대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해왔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서사는 전통시대 한반도와 그 인접 지역 내 한국인 왕국을 영토 국가로 규정해 전통시대에도 영토 국가가 계속해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은 영토 국가가 고대 이래로 항상 존재한 실체라고 주장해 국가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영토 국가, 나아가 국가의 절대화는 해방 직후 당대적 함의를 갖는 것이다. 먼저, 그것은 민족주의의 핵심 의제였던 민족 국가 수립과 연관된 것이다. 그 의제는 세계적인 반(反)식민주의를 고창하던 미·소의 전쟁 승리를 직접적 계기로 하로 남한에서 식민주의 이후의 정치적 의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 승리자는 소위 ‘다민족 국가’였고 종전 직후 초기적 냉전은 보편주의적 이념의 상호 경쟁이라는 양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언어·문화 공동체를 단위로 한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의제의 권위는 당시 의심되고 비판되기도 하였다.⁷³⁾

더군다나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의제는 국가 수립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이라는 문학 텍스트라는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회의나 무정부주의적 상상 앞에서 국가 존재의 당위성·필연성이 회의·의심되고 심지어 비판되기도 했다.⁷⁴⁾ 이러한 상황에서 국사 교과서는 국가 존재의 전(全)역사적 항상성을 강변하여 그것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국사 교과서는 당대 학생들과 잠재적 소비자, 즉 일반인들에게 절대화된 국가에의 헌신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바로 이것이 국가의 전(全)역사적인 항상적 존재를 강조하는 것의 당대적 맥락이자 그것의 역사적 함의였다.

<투고: 2025년 05월 25일, 심사종료: 2025년 06월 14일, 게재확정: 2025년 06월 27일>

73) 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 『사충』 67 (2008b).

74) 채만식, 『눈이야기』 (1946), 염상섭 외, 『해방문학선집』 (서울: 종로서원, 1948), 254-261쪽; 임종명, 『소설과 해방 직후: 익숙함과 낯섬』, 21세기리더형 역사학교육사업단, 『지역 교류 문화론 역사』 (광주: 심미안, 2008c), 256-260쪽; 장세기, 『戰爭없는社會』 (서울: 대성출판사, 1949).

주제어

해방 직후 국사 교과서(post-colonial Korean history school textbook), 국토, 국토 민족주의(soil(Boden in German) nationalism), 선적 국경선(linear national border), 한반도 국토화(the nationalization of Korean peninsula), 근대 영토 국가(modern territorial state), 여진(Jurchen), 조공/책봉 관계(tributary and appointment relation)

/Abstract/

The Post-colonial Representations by Korean-history School Textbooks of Pre-modern Kingdoms' Domains

IM, Chongmyong

In post-colonial South Korea, Korean-history school textbooks, showing contemporarily galvanized nationalism, especially 'soil'(Bodien in German) nationalism, represented national land(國土) demarcated by border even in the traditional days. The representation was meant to show school students that there had always been the modern, territorial state. Yet, the national land represented by the textbook was a kind of 'open territory' with no borderline. Such a representation invalidate its original purpose of constructing national land, and contradicted the idea of national land, even the land per se. What was more, the representation suggested that the border areas (境域) were inhabited by ethnics such as the Jurchen people as well as the Korean one. Such a representation was a threat to the nationalist agenda of representing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area in Manchuria as 'a national space'.

Facing the unexpected representation, to begin with, the school textbook, attempted to erase the problem. For an instance, the textbooks, appealing to past history such as 'the retrieval of the border area of old Koguryŏ', or 'the defense of the territory inherited from royal ancestors', represented 'the conquest by Chosŏn Korea of the Jurchen people's abode'. And, in terms of population, Korean-history textbooks, denying the existence of the Jurchen people who had lived in the areas right before the conquest, showed

their readers that some Korean people who had lived in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migrated to the conquered area, and, more significantly, that the Jurchen formed their relation of tributary and appointment with the Korean people.

Moreover, history school textbooks chang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e domain of pre-modern Korean kingdom carried with itself. And then, the textbooks, narrating that even domain of ancient East Asian polity was demarcated by linear border, argued that the polity was a territorial state which had its own 'national land'(kukt'o) with linear border. In doing, the history books, representing the domain of premodern polity as the linear space, abstracted the place of Korean peninsula of the ancient time, e.g. during the Three Kingdom Age into the space composed of linear demarcated national land of each kingdom.

Nationalization of premodern Korean peninsula was geared to define the contemporary Korean kingdoms or dynasties as the territorial state characterized by the national land while sophisticating position that such a state had continually existed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This was the post-colonial efforts to foster contemporary Koreans' nationalism, and, in specific, their 'soil' nationalism. This constituted the post-colonial historical implication the nationalization of premodern Korean peninsula assumed.

참고 문헌

1. 단행본

- 김상훈, 『해방 직후 국사교육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2018).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서울: 선인, 2006).
- 문세영, 『中等朝鮮語辭典』 (서울: 삼문사, 1949).
- _____, 『修正增補 朝鮮語辭典』 (서울: 조선어사전간행회, 1940).
- 손진태, 1949, 『우리나라 생활(역사부분)』, (서울: 을유문화사, 1949).
- 유열, 『현대 학생우리말사전』 (서울: 현대사, 1949).
- 이병도, 『새국사교본』 (서울: 동지사, 1948).
- _____, 『우리나라의 생활(역사)』 (서울: 백영사, 1949(1955)).
- 이상길·오만석 공편, 『한국교육사료집성: 현대편 I』 (서울: 선인, 2002).
- _____,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편 III』 (과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 (서울: 민중서림, 1991).
- 왕언메이(王恩美) 저, 송승석 역, 『한국화교-냉전체제와 조국 의식』 (서울: 학교방, 2013).
- 장세기, 『戰爭없는社會』 (서울: 대성출판사, 1949).
- 전봉덕, 『法學通論』 (서울: 국제문화관, 1947).
- 진단학회 편, 『國史敎本』 (서울: 미군정청, 1946).
- 최남선, 『中等國史』 (서울: 동명사, 1947).
- 통차이 위짜꾼 저, 이상국 역,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서울: 진인진, 2019).
- Anderson, Benedit, *Imagined Communities* (revised edition) (New York: Verso, 1983(1991)).

2. 논문

『사학지』 제66집 (2025. 06)

- 손진태, 「國史教育 建設에 대한 構想-新民主主義 國史教育의 提唱-」, 『새 교육』 1(2) (1948.09), 이상길·오만석 공편, 앞의 자료집(2002).
- _____, 「國史教育의 基本的 諸問題」, 『朝鮮教育』 1(2) (1947), 이상길·오만석 공편, 앞의 자료집(1997).
- 채만식, 「논이야기」, 염상섭 외, 『해방문학선집』 (서울: 종로서원, 1948).
- 류시현, 「해방 후 최남선의 중등 역사 교과서의 집필과 세계사 인식: 『세계역사요령』(1949)을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9 (2023).
- 임종명, 「脫식민지 시기(1945~1950년)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 193 (2006).
- _____, 「脫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지리교육과 국토표상」, 『한국사학보』 30 (2008a).
- _____,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大韓民族)」, 『사충』 67 (2008b).
- _____, 「소설과 해방 직후: 익숙함과 낯섬」, 21세기리더형 역사학교육사업단, 『지역 교류 문화론 역사』 (광주: 심미안, 2008c).
- _____, 「종전/해방 직후(1945.8~1950.5) 남한 담론 공간과 변경의 미학적 재현」, 『역사연구』 33 (2017).
- _____, 「해방 직후(1945~1948) 남한의 한국사 중등교과서와 전사형(戰士型) 국민 구성」, 『역사연구』 48 (2023).
- 조영광, 「해방 후 첫 官認 교과서 『國史敎本』의 한국고대사 서술 분석」, 『한국민족문화』 70 (2019).
- 전미현, 「미군정기 중등 국사교과서의 체제·내용과 역사인식 고찰」,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2012).
- 上山 由里香(우에야마 유리카), 「이병도의 한국사 연구와 교육: 1915-1954년 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7).
- Mitchell, Timothy, "Economy, and the State Effect," George Steinmetz ed,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3. 사이트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0634> (검색일: 2025.06.30.).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48608&supid=kku000062393> (검색일: 2025.06.30.).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74862&supid=kku000350543> (검색일: 2025.06.30.).

<https://en.wiktionary.org/wiki/%E9%98%BF%E5%8B%92%E6%A5%9A%E5%96%80> (검색일: 2025.06.30.).

히타이트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구약성서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

유 윤 중*

I. 시작하는 말	IV.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다윗의 전염병(삼하 24장)
II.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	V. 맺는 말
III.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초록

본 연구는 고대 서아시아의 두 가지 중요한 문헌 - 히타이트 제국의 무르실리 2세(재위 기원전 1321-1295년)가 기록한 다섯 편의 전염병 기도문과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기록 -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대 사회가 전염병을 이해하고 대응한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무르실리 2세가 통치했던 시기에 약 20년간 전염병이 하티 땅 전역에 퍼져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무르실리 2세는 그 전염병을 멈추기 위하여 신탁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의 기도문에 나타난 원인은 그의 아버지인 수필룰리우마 1세가 죽인 소투드할리아의 억울한 피, 말라강의 제의 소홀, 이집트와 체결했던 조약의 위반이었다. 이에 무르실리 2세는 하티 땅의 다양한 신에게 호소해 전염병을 멈추고자 하였다. 무르실리 2세는 왕의 범죄가 신들의 분노를 가져오고, 그 결과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신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전 복구 및 성전 건설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구약성서 사무엘하 24장은 야웨의 알 수 없는 진노로 시작한다. 그리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yoonjongyoo@hanmail.net

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부추겼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였고, 그의 신하 요압은 인구조사를 시행 후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가 계수 되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언자 갓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였다.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퍼져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 야웨의 사자가 나타나 전염병이 멈추었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야웨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재앙이 그쳤다. 제단이 마련되었던 그 공간에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다.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 사이에 나타난 유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의 진노와 전염병 사이의 관계이다. 전염병을 신의 진노로 신이 내린 보이는 심판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전염병과 왕과의 관계이다. 전염병이 신의 진노로 내린 재앙이라면, 신이 진노한 이유는 왕의 범죄 때문이다. 왕이 죄를 범한 이유를 찾아야 그것에 적합한 제의를 행할 수 있다. 왕 한 명의 죄로 인하여 온 땅에 재앙이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셋째, 전염병과 제의와의 관계이다.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는 신에게 제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무르실리 2세는 희생제사, 성전복구, 성전제건 등을 약속하였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곳에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무르실리 2세의 성전건축 약속이라는 주제와 유사하다.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작품의 성격이다.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는 무르실리 2세의 동시대의 작품인 반면,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는 후대에 기록 및 편집의 과정을 거친 해석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는 다윗 이야기의 결론인 동시에 열왕기상 6-9장의 솔로몬 성전건축과 연결된다. 둘째,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는 다신교 신앙을 배경으로 하며,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는 일신교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염병의 원인 및 제의에 이르기까지 야웨의 주도가 두드러지게 강조된다.

I. 시작하는 말

1905/6년에 아나톨리아의 보가즈코이(Bogazköy), 즉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하투샤 발굴이 이루어져 잊힌 제국의 역사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발굴을 통하여 드러난 그 지역은 ‘하티의 땅’으로 불리었다. 하지만, 기원전 1180년 무렵 제국이 무너진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진 이후 그 후계자들이 북부 시리아 지역으로 이동해 신히타이트 국가로 12세기부터 8세기까지 역사를 이어갔다. 신히타이트에 관한 기록이 고대 서아시아의 텍스트에 등장할 뿐이다. 구약성서에 *ḫitti*(헷사람)/*ḫittīm*(헷 사람들)으로 약 57회 나와 히타이트와 구약성서와의 관계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¹⁾ 이 글은 히타이트 제국의 무르실리 2세(1321-1295)가 남긴 ‘전염병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의 전염병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한 후 유사성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각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사무엘과 히타이트 문헌들과의 관계는 꾸준히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호프너(Harry A. Hoffner)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삼상 17장)과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 3세(1267-1237)와 카스카인과의 전투를 비교 분석하였다. 압도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하투실리 3세와 다윗을 비교한 후 전쟁에서의 영웅적 승리가 두 왕의 왕권을 둘러싼 정당성을 확고하게 만든 변증으로 해석하였다.²⁾ 태가르-코헨(Taggar-Cohen)은 사무엘상 20-22장과 히타이트 문헌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원전 2000년대 후기 왕권과 충성 개념에 근거한 법적 체계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사무엘상 20장)는 히타이트 청동판에 기록된 왕족 간의 관계와 비교되며, 놉의 제사장들에 대한 처형(사무엘상 22장)은 CTH 264에 규정된 대로 왕의 신하들이 충성 서약을 위반한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1) 이에 관한 자세한 참고문헌은 다음을 보라. Yoon-Jong Yoo, “Hittite Heritage of Jerusalem in the Old Testament,” 『서양고대사연구』 72 (2025).

2) Harry A. Hoffner, Jr., “A Hittite Analogue to the David and Goliath Contest of Champions?,” *CBQ* 30.2 (1968), pp.220-225.

해석하였다.³⁾ 사무엘서를 다윗왕권을 위한 변증이라는 주장⁴⁾을 히타이트 문헌의 텔레피누와 하투실리 3세의 변증을 비교한 연구는 크넵(Andrew Knapp)에 의하여 이루어졌다.⁵⁾

로스트(Leonhard Rost)가 왕위계승 설화라는 장르를 지적하고, 그 장르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배치되었다는 주장을 한 후,⁶⁾ 사무엘하 21-24장은 왕위계승 사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므로, 사무엘의 부록으로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해석되어 왔다. 다만 사무엘하 21-24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통일된 문학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은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한다. 부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사무엘하 21-24장을 다윗 왕조 신학의 위선을 드러내고 해체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윗 또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처럼 야웨께 기도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⁷⁾ 고(Grace Ko)는 사무엘하 21-24장이 이전에 나오지 않은 갖가지의 자료를 단순히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동심원적 구조로 되어있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⁸⁾

필자는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아라우나'(Araunah)의 명칭이 후리어(Hurrian) 어원적 유래를 가지며 '주인'을 의미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아라우나가 원래 여부스인 사회에서 왕과 제사장 직책을 수행했으나,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 정치적 권한은 상실한 반면 제사장 직분은 '사독'(Zadok)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었다는 역사적 가능성을 제

3) Ada Taggar-Cohen, "Political Loyalty in the Biblical Account of 1 Samuel XX-XXII in the Light of Hittite Texts," *VT* 55.2 (2005), pp.251-268.

4) P. Kyle McCarter, Jr., "The Apology of David," *JBL* 99/4 (1980), pp.489-504.

5) Andrew Knapp, "David and Hattushili III: The Impact of Genre and a Response to J. Randall Short," *VT* 62 (2013), pp.261-275; *Royal Apologetic in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GA: SBL Press, 2015).

6) Leonhard Rost,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Sheffield, UK: Almond Press, 1982).

7) Walter Brueggemann, "2 Samuel 21-24: An Appendix of Deconstruction?," *CBQ* 50 (1988), pp.383-397.

8) Grace Ko, "2 Samuel 21-24: A Theological Reflection on Israel's Kingship," *OTE* 31/1 (2018), pp.114-134.

시하였다.⁹⁾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사무엘하 24:16-25의 본문은 히타이트의 종교적 전통이 어떻게 구약성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려 준다고 주장하였다.¹⁰⁾ 윤동녕은 대리왕 제의와 관련해 고대 메소포타미아 및 히타이트의 예를 소개하면서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내러티브에서 다윗이 ‘대리왕’ 제의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¹¹⁾

지금까지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전염병과 히타이트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의 관계를 직접 심도 있게 다룬 비교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연구의 대부분은 전염병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면서 표면적으로 언급해 왔다.¹²⁾

II.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¹³⁾ 기도’

1. 무르실리 2세와 전염병

무르실리 2세(Mursili II, 기원전 1321-1295년)는 히타이트 신왕국 시대

9) Yoo, op.cit, pp.4-5.

10) Yoo, op.cit, pp.7-11.

11) 윤동녕, 『대리왕 제의의 관점에서 본 다윗 왕의 위기극복 과정』, 『구약논단』 57집 (2015), 143-146쪽을 보라.

12) Gábor Suloy, “Breach of Treaties in the Ancient Near East,” *International Law* 19 (2017), pp.1-26. 특히 pp.11-15, 19-22를 보라. Hacı Çoban, “The Hittite Period (The Second Millennium B. C.) Plague Epidemic in Anatolia,” *Journal of Current Researches on Social Sciences* 9/4 (2019), pp.233-244.

13) 전염병을 가리키는 히타이트어는 *henkan*으로 ‘운명,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단어의 어근은 *hai(n)k/hi(n)k* ‘수여하다, 부여하다’로 원래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부여된 것’ 즉 ‘죽음’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히타이트 본문에서 *idalu henkan* ‘나쁜 운명/재앙’으로 나온다. 유행성 전염병(pandemic)을 나타내는 히타이트 표현은 *pankuš markištuwaš henkan* “대규모의, 갑작스런 죽음”이다. 히타이트에 문헌에 나타난 전염병에 관하여 다음을 보라. Matteo Vigo, “Plague, Pandemics, and Divine Punishment among the Hittites,” in *Inter-Disciplinary Intergrated Disaster Administration on Covid-19 Pandemic* (Dokuz Eylül Üniversitesi Yayınları (2021), p.15.

(기원전 1400-1180년경)의 왕이었다. 히타이트 신왕국은 기원전 1400-1350년의 혼란기를 거쳐 수필룰리우마 1세(Suppiluliuma I, 재위: 기원전 1350-1322년) 치세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수필룰리우마 1세는 그의 아버지 투드할리야 3세(Tudhaliya III)를 대신하여 군사 원정을 주도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영토를 확장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미탄니 왕국을 공격해 칼카미스(Karkamis)를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키즈와트나(Kizzuwatna), 북쪽으로는 카스카(Kaska), 서쪽으로는 아르자와(Arza)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당시 히타이트와 대적할 만한 유일한 세력은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였다. 기원전 1327년경, 수필룰리우마 1세의 장군들이 카데쉬(Kadesh)를 점령하자, 이집트의 외교사절이 히타이트 군영을 찾아와 이집트 여왕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이 편지는 엘 아마르나 시대의 파라오 투탕카멘(Tutankhamun)의 과부였던 앙케세나문(Ankhesenamun)이 보낸 것으로, 히타이트 왕자와의 결혼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나의 남편이 죽었고,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왕께서 많은 아들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왕께서 아들 중의 하나를 준다면, 그를 나의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그를 나의 신하가 아니라 나의 남편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¹⁴⁾

수필룰리우마 1세는 그 편지가 왕자를 인질로 삼으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여왕은 분노의 답장을 보냈고, 수필룰리우마 1세는 이집트 여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잔난자(Zannanza)를 이집트에 보냈다. 하지만 히타이트 왕궁은 잔난자가 이집트로 가는 도중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 즉위한 파라오 아이(Ay)로부터 자신은 무고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분노한 수필룰리우마 1세는 히타이트 군대를 동원해 이집트 지역의 영토를 침략하여 많은 이집

14) Harry A. Hoffner, "Deed of Šuppiluliuma," *Contexts Of Scripture*, Vol. I (1997). p.190.

트 포로를 잡아 하티 땅으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발생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약 20년간 하티 땅 전역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칼카미스 정복 6년 후에 수필룰리우마 1세는 전염병으로 사망하였고, 그의 후계자로 왕이 된 아르누완다 2세 또한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¹⁵⁾ 당시 히타이트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의 곳곳에 이미 전염병이 만연한 상태였다. 엘 아마르나 문서에 따르면 바벨론, 알라시아(키프로스), 비블로스, 므깃도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였다.¹⁶⁾

무르실리 2세는 수필룰리우마 1세의 다섯 아들 중 막내였다. 그의 아들 텔레피누(Telipinu)를 알렘포의 왕으로, 다른 아들인 피야실리 혹은 샤리-쿠슈(Piyassili/Sharri-Kushuh)를 칼카미스의 왕으로 임명하였다. 또 다른 아들인 잔난자는 이집트로 가는 길에 살해당하였다. 수필룰리우마 1세가 죽은 후 왕이 된 아르누완다 2세 또한 전염병으로 죽었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은 무르실리 2세가 왕이 되었다. 당시의 상황은 전염병과 가뭄으로 인한 기근마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린 무르실리 2세가 왕이 되자, 체결되었던 국가들과의 조약도 무시되었고 전통적인 대적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무르실리 2세의 통치 후반부에 이르러 전염병이 더 악화하여 하티 땅 전역에 퍼졌다. 지역의 많은 신전은 방치되었다. 무르실리 2세는 전염병이 신의 분노에 의한 심판으로 이해하였고, 분노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무르실리 2세는 히타이트 왕들 가운데 자료를 가장 많이 남긴 왕이었다. 그가 남긴 기록은 전염병 기도 외에, 10년 연대기(Ten Year Annals, CTH 61), 칙령,¹⁷⁾ 외교문서,¹⁸⁾ 10년 차에 일어난 일식(Eclipse), 찬송

15) Billie Jean Collins, *The Hittites and Their World* (Atlanta, GA: SBL, 2007), pp.48-49.

16) 유성환, 『고대 서아시아의 팬데믹: 제1차 세계화 시대의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52 (2022), 55-63쪽을 보라.

17) CTH 57, 64, 65.

18) CTH 62, 66, 67, 68, 69. 또한 다음을 보라. Gary Beckman, *Hittite Diplomatic Texts* (SBL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Series 7; Atlanta, GA: 1995), pp.59-86.

(Hymn)¹⁹⁾ 등이 있다.

2.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는 다섯 편으로 CTH 378.I, II, III, IV, 379에 나온다.²⁰⁾ 또한 전염병과 관련된 제의는 CTH 394, 407, 410에 나온다. 그 외에도 조약체결에서 전염병이 나오기도 한다(CTH 106). 이 글에서는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를 중심으로 다루며 필요에 따라 관련된 본문도 언급할 것이다. 다섯 편으로 분류된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의 연대 순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의 순서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며, 임의로 순서를 다르게 배치하기도 한다.²¹⁾ 이 글에서는 기존의 순서에 따라 기도의 주요 내용을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들과 전염병의 원인이 될만한 과거의 죄와 전염병이 종결된 후 드리게 될 제의와 결심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도는 신들의 회합인 만신전의 모든 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하티 땅에 전염병이 20년간 창궐했음을 알리고, 신탁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아내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수필롤리우마 1세(투드할리야 3세의 아들)가 귀족과 군대를 동원해 합법적인 소(小) 투드할리야(Tudhaliya the Younger)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수필롤리우마 1세와 투드할리야 3세 및 소 투드할리야 사이의 관계는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수필롤리우마 1세가 투드할리야 3세의 아들이며, 소 투드할리야와는 형제 혹은 이복형제로 알려져 있다.²²⁾ 또한 수필롤리우마 1

19) CTH 376, 377.

20) 이 글에서 필자는 싱어(Itamar Singer)의 본문에 따른다. Itamar Singer, *Hittite Prayers* (Atlanta, GA: SBL, 2002), pp.56-69. 반면 베크만(Gary Beckman)은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를 네 편으로 소개한다. Gary Beckman, "Plague Prayers of Muršili II," *COS* 156-160.

21) 싱어는 3, 2, 1, 4, 5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22) Trevor Bryce, *The Kingdom of Hitti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54-155; Mark Weeden, "The Hittite Empire," in Karen Radner *et al*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Vol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pp.574-475.

세의 아내인 헤티(Henti)가 ‘위대한 왕의 여왕이자 딸’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투드할리야 3세의 사위였다고 보기도 한다.²³⁾ 무르실리 2세는 아버지의 시대는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한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고 번영을 누렸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소 투드할리야가 흘린 피로 인하여 아버지와 대신들이 죽었고, 하티에 전염병이 돌았고, 인구가 줄었다고 한탄한다. 아버지의 잘못에 대하여 무르실리 2세는 고백한다. 아버지가 소 투드할리야를 죽였고 피의 속죄를 위한 제의를 행하였지만, 하티 땅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아뢴다. 자기도 피의 제의를 하였지만 하티 땅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자백한다. 피 흘림으로 인하여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무르실리 2세는 자신이 성전을 복구하고, 신을 달래기 위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한다.

둘째 기도는 하티의 폭풍 신(Storm-god of Hatti)에게 드린다. 무르실리 2세는 자기 아버지의 시대, 자기 형의 시대에도 역병이 계속되어 사람이 계속 죽었고, 자신이 신들의 제사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고백한다. 20년간 하티 땅에 계속되었지만,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통해한다. 모든 신에게 간구하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애통해한다. 신탁이나 꿈이나 신의 사람으로도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신탁을 통하여 오래된 두 토판을 찾았다. 무르실리 2세는 말라강(Mala River) 제의와 관련된 토판 하나를 찾았다. 하티에 사람이 죽어간 이후 말라강 제의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두 번째 토판은 쿠루스탐마(Kurustama) 도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히타이트가 쿠루스탐마 사람들을 이집트에 넘기기로 하였다.²⁴⁾ 따라서 하티의 폭풍 신이 이집트인과 하티 사람들 간에 조약의

23) Boaz Stavi, “The Geneology of Suppiliuma 1,” *Altorientalische Forschungen* 38 (2011), pp.228-230.

24) 이 조약은 Krustama 조약으로 불리며 CTH 134에 파편적으로 남아 있어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으며, 무르실리 2세의 연대기, 아마르나 편지 31, 41, 라암 세스 2세와 하투실리 3세의 평화조약의 14번째 줄 등에 남아 있다. 수필룰리우마 1세의 등극 전에 체결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을 보라. Dorrie Davis, “An Early Treaty of Friendship between Egypt and Hatti,” *The Bulletin of*

증인이 되었고, 하티의 폭풍 신의 서원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하티 사람들이 상류 지역으로 가면서 갑자기 신들의 서원을 위반하였다. 무르실리 2세의 아버지인 수필룰리우마 1세는 보병과 전차를 보내어 암카(Amqa) 땅의 이집트 국경 지역을 공격하였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수필룰리우마 1세에게 와서 그의 아들을 보내면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고 했고, 수필룰리우마 1세는 아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살해하였다. 수필룰리우마 1세의 아버지는 분노해 이집트 영토로 가서 이집트인을 공격했고, 이집트 보병과 전차를 파괴하였다. 하티의 폭풍 신은 수필룰리우마 1세가 이기도록 판결하였고, 그가 이집트 보병과 전차를 패배시켰다. 이집트 포로들이 하티로 끌려왔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죽었다. 그후 하티 땅의 사람들이 죽었다. 무르실리 2세가 받은 신탁은 다음과 같았다.

이집트인들과 하티인들이 하티의 폭풍 신에 의한 서원에 매여있어서 하티의 폭풍 신이 이 사태를 일으켰는가? 담나사라(damnassara) 신들²⁵⁾이 나의 주, 폭풍신 신전에 있었으므로 하티인들이 (서원의) 말을 위반하였고, 이것이 나의 주 하티의 폭풍 신의 분노의 원인이 되었는가?²⁶⁾

무르실리 2세는 아버지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심판은 자신의 때에 발생했음을 알았고, 하티의 폭풍 신 앞에 그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하티의 폭풍 신을 위한 서원 제물을 바쳤다. 또한 말라강으로 가서 하티의 폭풍 신에게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무르실리 2세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시대에 전염병이 퍼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죄를 고백한 후 하티의 폭풍 신을 위한 제의를 행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자비를

the Australian Centre for Egyptology 1 (1990), pp.31-37.

25) 신전 내부를 수호하는 신들로 로마의 Panātes와 유사하다. 다음을 보라. H. Craig Melchert, "Hittite Damnaššara 'domestic'/'Damnaššreš 'household deities,'" *Journal of Ancient Near East Religions* 1 (2001), pp.150-157.

26) Singer, op.cit., p.59. 이집트와의 연약 파괴와 관련된 기록은 무르실리 2세가 남긴 다음의 기록을 보라. Harry A. Hoffner, Jr., "Deeds of Šuppiluliuma," in *COS I* (1997), pp.185-192.

베풀어 전염병이 물리가도록 간구하였다.

셋째 기도는 태양의 여신 아린나(Arinna)에게 드린다. 전염병이 신의 허락으로 하티 땅에 온 후에 20년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아린다. 만일 하티 땅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신들에게 제물용 빵과 음료를 드릴 수 없다고 호소한다. 무르실리 2세는 제사장이자 종으로 신에게 간청한다. “오 신이여, 당신이 나의 죄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왜 당신은 우리에게 빵과 음료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티 땅에 자비를 베풀어, 하티 땅에 전염병이 사라져 이전처럼 번영하게 하소서.”²⁷⁾

넷째 기도는 신들의 회합에게 드린다. 고귀한 폭풍 신으로 시작하여 30 지역의 신들을 부름으로 시작한다. 할아버지인 투드할리아 2세 시대에 하티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한다.²⁸⁾ 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줄어들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소가 소홀히 다루어졌으며 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린다. 이어서 무르실리 2세는 성전이 있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자신이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신이든지 성전이 없다면 그를 위해 성전을 세울 것이며, 어떤 신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신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²⁹⁾ 무르실리 2세는 ‘내 땅과 보병, 전차,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이 계속 죽어간다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하며,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며 자비를 간청하였다.³⁰⁾

다섯째 기도가 전염병 기도인지 아닌지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보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이 기도의 정확한 장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도는 신들의 유형에 따라 분류된 신들의 회합에게 드린다. 이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자신이 이집트 지역을 침범했다는 위반 사항에 대한 무고함을 드러낸다. 자신은 폭풍 신이 정한 경계를 넘어선 적이 없으며,

27) Singer, op.cit., p.57.

28) T. Bryce, *The Kingdom of the Hittite*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158. 브라이스는 이 기록이 후대의 역사적 회고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29) Singer, op.cit., p.65.

30) Singer, op.cit., p.66.

땅의 경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 이집트 왕이 죽었지만, 자신은 이집트 왕이 그 땅에 대해 어떤 항변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³¹⁾

3. 전염병 기도에 나타난 종교적 의미

히타이트는 ‘1000신의 땅’으로 불릴 만큼 조약, 전쟁, 법률 등 모든 영역에 종교가 히타이트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³²⁾ 히타이트에서 어떤 개인이 신에 대해 죄를 지으면, 신의 분노로 질병이 걸린다고 믿었다. 다만 그 죄가 무엇이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였다. 그 죄를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제의를 통하여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질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왕이 잘못을 저지르면, 신이 분노하여 하티 땅에 재앙을 내린다고 믿었다. 왕은 하티 땅의 모든 신을 섬겨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서, 왕이 죄를 지어 하티 땅이 부정하게 된다면, 대체사장인 왕을 심판하는 대신에, 신들이 전염병의 형태로 하티 땅 전역을 심판할 수 있다고 믿었다.³³⁾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 다섯 편은 모두 하티 땅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음을 소상하게 이야기한다. 이 기도는 신/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의 형식이며, 신에게 호소하는 탄원시이다. 이 기도에 의하면 무르실리 2세는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왕의 잘못에 대한 신의 형벌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탁을 통하여 다각도로 유추해 설명한다. 설욕(Sulyok)은 무르실리 2세의 역병 기도의 본질을 책임(responsibility), 심판(punishment), 배상(restitution)이라고 설명하지만,³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설욕의 분류에 따

31) Singer, op.cit., pp.66-68.

32) Gregory McMahon, “Theology, Priests, and Worship in Hittite Anatolia,”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vol.3 (New York: Scribners, 1995), p.1985.

33) McMahon, ibid, p.1988.

34) Gábor Sulyok, “Breach of Treaties in the Ancient Near East,” *International Law* 19(2017), p.15.

라 구체적으로 전염병 기도에 나타난 종교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책임

전염병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른 제의를 신에게 드려 전염병을 물리치고 하티 땅을 원상복구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신탁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수필룰리우마 1세가 그의 형제이자 합법적인 소 투드할리야를 죽였기 때문에 신들의 회합이 결정해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풀이하였다.

둘째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신탁을 통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두 개의 옛 토판을 찾아 전염병의 원인을 설명한다. 하나는 말라강 제의를 다루었다. 이전의 왕들은 말라강 제의를 하였지만, 하티 땅에 사람들이 죽어간 이후, 말라강 제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자백한다.³⁵⁾ 즉 말라강 제의를 소홀히 다루어서 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한다. 둘째 토판에서 무르실리 2세는 아버지인 수필룰리우마 1세가 이집트와의 조약을 어기고 이집트 영토였던 암카를 공격해 이집트와의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다섯째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이집트와 관련된 토판을 다시 언급하면서 폭풍 신에 의하여 정해진 국경에 대해 어떤 것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집트 왕이 그 땅의 경계에 관하여 항의할 때 자신은 어려서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아뢴다.³⁶⁾ 하지만 둘째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한다.

35) 히타이트 텍스트에서 말라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며, 히타이트의 자연적인 국경을 의미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강으로 고대 왕국 때부터 정치적 및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다음을 보라. Yasemin Arikan, "The Mala River and Its Importance According to Hittite Documents," *Studi Micenei Ed Egeo-Anatolici* 49 (2007), pp.39-48.

36) Singer, op.cit., p.67.

나의 아버지 또한 죄를 지었고 그가 나의 주 하티의 폭풍 신의 말을 어겼다.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의 죄가 그의 아들에게 온다. 나는 신들과 하티의 폭풍 신에게 그것을 고백하였다.³⁷⁾

무르실리 2세의 기도 다섯 편에 의하면, 전염병의 원인을 하나로 국한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소 투드할리아의 부당한 죽음, 말라강의 제의 소홀, 이집트와의 조약 위반이었다. 그러므로 무르실리 2세는 하티의 폭풍 신 뿐만 아니라, 신들의 모임, 하티 땅의 모든 지역 신들까지 소환해 전염병을 제거해 달라고 탄원한다. 결론적으로 무르실리 2세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수필룰리우마 1세의 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왔지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가 곧 자신의 죄라고 인정한다.

2) 심판

무르실리 2세는 이 전염병에 대하여 신이 내린 것임을 확신하며 이같이 말한다. 즉 전염병은 죄로 인하여 신과의 관계가 악화하여 신이 보이는 형태로 내리는 심판이라고 믿었다.

당신께서 전염병을 하티 땅에 허용하였고, 하티는 전염병으로 심각한 억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의 때, 나의 형의 때, 내가 신들의 제사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티 땅의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³⁸⁾

이 전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문헌학적 및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야토병(野兎病, tularemia)으로 알려져 있다.³⁹⁾ 무

37) Singer, op.cit., pp.59-60. 이 개념은 에스겔 18장의 주요 신학적 이슈로 나온다. 에스겔 18장과 히타이트 조약과의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hn B. Geyer, "Ezekiel 18 and a Hittite Treaty of Muršiliš II," *JSOT* 12 (1979), pp.31-46.

38) Singer, op.cit., p.56, 57.

39) 유성환, 앞의 논문 (2022), 66쪽.

르실리 2세는 그의 아버지 수필룰리우마 1세 및 그의 형 아르누완다 2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1321년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에 나타난 대로 전염병은 그의 아버지 수필룰리우마 1세 때에 발생해 그의 형 아르누완다 2세도 죽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하티 땅에 발생한 것은 1322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집트가 통치했던 고대 서아시아 지역은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이 하티 땅에도 퍼져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무르실리 2세의 아내인 가술라위야(Gassulawiya)도 무르실리 2세의 재위 9년인 1312년, 그의 아들인 피야실리(Piyassili)도 1315년에 치명적인 질병, 즉 전염병으로 희생되었다.⁴⁰⁾ 무르실리 2세가 통치한 지 20년이 지난 1300년 무렵까지 여전히 하티 땅은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텔리피누에게 드리는 무르실리 2세의 찬송과 기도에 다음과 같은 탄원이 나온다. “하티로부터 악한 열병, 전염병, 기근, 메뚜기가 물러가게 하소서...일부 사람들이 당신의 경작지, 포도원, 정원과 숲을 버려두며,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경작자, 포도원 재배자, 정원사, 곡식을 가는 여인을 잡아잡니다.”⁴¹⁾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어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 기근이 퍼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혼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 배상(restitution)

전염병 제의는 화난 신을 달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전염병으로부터 회복을 위하여 20년간 수년간 배상 제의를 20배 이상 충분히 드렸지만, 전염병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배상 제의가 더 필요해 꿈으로 알려주면 더 드리겠다고 서원한다.⁴²⁾ 배상 제의는 빵과 음료,⁴³⁾ 달래는 선

40) Philip Norrie, “An Account of Diseases in the Near East During the Bronze Age—An Historical View,”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SW, 2014), p.82.

41) Singer, op.cit., pp.55-56.

42) Singer, op.cit., p.60.

43) Singer, op.cit., p.57.

물⁴⁴⁾로 이루어졌다. 넷째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신전이 있고, 성전 물품이 없다면 물품들을 회복할 것이며, 성전이 없다면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한다. 신들이 파괴되었다면, 신들을 위한 신상을 세우겠다고 서원한다.⁴⁵⁾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구체적인 제의는 군대에서 이루어졌다. 적의 땅에 들어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적의 땅의 분노한 신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현재 풀리샤(Puliša) 전염병 제의 (CTH 407),⁴⁶⁾ 아셀라 제의(CTH 394),⁴⁷⁾ 우하무와(Uḫamuwa) 전염병 제의(CTH 410)⁴⁸⁾ 본문이 남아있다. 전염병 제의에 따르면, 대적의 땅에서 포로로 잡은 남녀 각 한 명과 황소와 암양 각 한 마리를 택하여 전염병의 대체제 및 소지자로 삼았다. 남녀에게 왕의 옷을 입혀 신에게 선물로 드려 신의 분노를 달래고 신과의 화해하고자 하였다. 제의를 마치고 남녀와 동물 제물은 대적의 땅으로 돌려보냈다.⁴⁹⁾ 이 제의의 의미는 악(전염병)을 원래의 곳으로 되돌리는 의식이다. 이 제의는 구약성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 속죄일의 희생양 제의⁵⁰⁾ 및 사무엘상 5-6장에 나오는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제의⁵¹⁾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4) Singer, op.cit., p.63.

45) Singer, op.cit., p.65.

46) Billie Jean Collins, "Puliša Ritual Against Plague," *COS*, p.161; David P. Wright, *The Disposal of Impurity: Elimination Rites in the Bible and in Hittite and Mesopotamian Literature*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4), pp.45-50.

47) Wright, *ibid*, pp.50-55.

48) Collins, "Uḫamuwa's Ritual Against Plague," *COS*, p.162; Wright, op.cit., pp.55-57.

49) Wright, op.cit., p.45.

50) Wright, op.cit., pp.31-74.

51) P. Kyle McCarter, *1 Samuel* (AB 8; New York: Doubleday, 1980), p.138; Victor A. Hurowitz, "The Return of the Ark (1 Samuel 6) and Impetrated Ox Omens (STT 73:100-140)," in eds. Mayer Gruber *et al*, *All the Wisdom of the East* (Fribourg, Switzerland: Academic Press, 2012), pp.177-186.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에도 전염병 제의에 나타난 사항이 드러나 있다. 무르실리 2세는 전염병이 전쟁 중에 대적인 이집트가 통치하던 북 시리아의 암카에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⁵²⁾ “전염병을 하티 땅에서 대적들의 땅으로 보내소서”라고 탄원한다.⁵³⁾ 이 기도에는 전염병 제의에서 전염병을 원래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III. 사무엘하 24장의 전염병

1. 사무엘하 24장의 배경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 21-24장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 단락들은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동심원 구조(concentric structure) 또는 교차 대구법(chiastic structure)을 이루고 있다. 특히 21:1-14와 24장은 서로 대응되며, 재앙과 속죄라는 공통 주제를 다룬다.

- A. 사울의 범죄와 그에 대한 속죄(삼하 21:1-14)
- B. 영웅들의 명단과 그들의 업적(삼하 21:15-22)
- C. 다윗의 찬송시(22:1-51)
- C'. 다윗의 예언시(23:1-7)
- B'. 영웅들의 명단과 그들의 업적(23:8-39)
- A'. 다윗의 범죄와 그에 대한 속죄(24:1-25)⁵⁴⁾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울은 사무엘상 9-31장에 중심적인 인물로 나온다. 9장-12장에서 사울은 왕이 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13장 이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 사무엘에 의하여 폐위되고, 새로운 인물 다윗과

52) Singer, op.cit., p.58.

53) Singer, op.cit., p.57, 63,

54) A. A. Anderson, 『사무엘하』 (WBC 성경주석 11; 솔로몬, 2001), 412쪽.

갈등을 벌이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다. 반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 사무엘하 10장까지 승승장구한다. 하지만 사무엘하 11-12장의 다윗과 밋세바 사건 이후, 그의 삶과 집안이 풍비박산 나며 추락한다. 사무엘하 20장에서 세바의 반란을 마지막으로 다윗의 집안과 이스라엘에서의 혼란이 마무리된다.

사무엘하 21장과 24장은 각각 사울과 다윗의 범죄에 대한 야웨의 속죄 문제를 다룬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의 범죄로 인한 속죄문제를 다룸으로써 열왕기상 6-9장의 솔로몬 성전 건축 및 제의를 통한 속죄의 주제로 연결된다.

2. 사무엘하 24장 분석(인구조사, 전염병, 속죄제의)

사무엘하 24장의 구조는 1) 인구조사(1-9절), 2) 전염병(10-17절), 3) 속죄 제의(18-25절)로 이루어져 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이야기의 결론이지만 쉽게 답변할 수 없는 많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다. 의문은 1절부터 시작된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⁵⁵⁾ 야웨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앤더슨은 1절에서 ‘다시’라는 단어는 21:1-14와 연결되며, 야웨의 진노의 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제안한다.⁵⁶⁾ 본문은 야웨의 진노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명령한다. 즉 다윗이 죄를 짓도록 야웨가 다윗의

55) 이 본문은 후대의 역대기 사가에게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 사건을 주도한 자가 야웨가 아니라 사탄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대상 21:1).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aul E. Dion, “The Angel with the Drawn Sword (II [sic] Chr 21, 16): An Exercise in Restoring the Balance of Text Criticism and Attention to Context,” *ZAW* 97 (1985), pp.114-117; Ryan Stokes, “The Devil Made David Do It...Or Did He? The Nature, Identity and Literary Origin of the *Satan* in 1 Chronicles 21:1,” *JBL* 128(2009), pp.91-106.

56) Anderson, 앞의 책 (2001), 462쪽. ‘다시’는 야웨의 분노로 시작하는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두 이야기가 따로 존재하다가 어떻게 각각 현재의 위치로 재배치되었는지에 관한 본문의 형성사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한다.

마음을 부추겨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브알세바에서 단까지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고, 요압은 9개월 20일 동안 전 지역의 인구 조사 후 다윗에게 보고한다. 그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이었다. 인구 조사의 결과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인구 조사의 목적이 군사적인 이유였음을 나타낸다.

인구 조사 후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삼하 24:10)

다윗이 죄를 고백한 후 예언자 갓이 등장해 7년 기근, 석 달 동안의 도망, 3일 동안의 전염병 중 하나의 재앙을 선택하라고 하자 다윗은 인간 가해자보다는 하나님이 더 은혜로울 것으로 판단하여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는 전염병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한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고, 다윗은 말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삼하 24:17)

이에 선지자 갓이 등장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웨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한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마당과 번제를 위한 소와 도구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 장소와 번제물을 구

입하였다.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야웨는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쳤다(삼하 24:18-25).

3.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종교적 의미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전염병의 종교적 의미를 설욕(Sulyok)이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의 본질로 규정한 책임(responsibility), 심판(punishment), 배상제의(restitution)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책임

이스라엘에 내린 전염병의 책임은 다윗의 인구 조사에 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야웨의 부추김이었다. 야웨의 부추김은 야웨의 진노에 있다. 다만 야웨의 진노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야웨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다. 24장에서는 야웨의 진노를 유발한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21:1의 ‘다시’라는 표현은 21:1-14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왕의 죄로 인하여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예는 사무엘하 21장에서도 나온다.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과의 언약을 무시하여 다윗 왕의 시대에 3년간의 기근이 임하였다(삼하 21:1). 따라서 왕의 죄로 인하여 온 나라와 백성이 희생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였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한다(24:10).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가 왜 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다.⁵⁷⁾ 다만 요압은 인구 조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오십만 명이었더라”(삼하 24:9). 따라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인구 조사였음을 암시

57)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가 왜 죄가 되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야웨보다는 군사적 힘에 의존하는 다윗의 믿음 부족, 숫자를 세는 것과 이름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고대의 금기 관습(taboo, 출애굽기 30:12의 위반 등 다양한 이론이 있다. 다음을 보라. Song-Mi Suzie Park, “Census and Censure: Sacred Threshing Floors and Counting Taboos in 2 Samuel 24,”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5 (2013), pp.21-41.

하며, 군사적인 힘에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신 7:7, 17)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심판

다윗이 죄를 범하였지만,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쳤다. 그것은 24:1에서 야웨가 진노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는 최초의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전염병에 희생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단에서 브엘세마까지 7만 명에 이르렀다. 군사적인 목적의 인구 조사와 전염병과의 관계는 고대 서아시아 및 히타이트의 전염병의 발병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전염병은 군대 내의 집단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며, 군사적인 접촉이나 포로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옮겨진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그것이 전염병이었다고 설명한다(삼하 24:13-14).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이 먼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의 추적 결과 인구 조사가 지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무엘하 24장은 야웨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3) 배상제의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재앙으로 선택하면서 야웨의 사자가 나타나 백성들을 쳤다.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야웨는 재앙 내린 것을 뉘우치고 멈추게 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타난 야웨의 사자를 본 다윗은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삼하 24:17)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언급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요청한다.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을 멈추기 위하여,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치라고 요청한다. 다윗의

이 말은 윤동녕이 지적한 대리왕의 역할로 볼 수 있다.⁵⁸⁾

예언자 갓이 나타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웨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권고하였고, 그 권고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에 야웨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듣고 재앙을 그쳤다(삼하 24:25).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표현은 사무엘하 21:14에도 나온다. 죄로 인한 재앙, 즉 기근이나 전염병은 제의적인 부정(impurity)에서 유래됨을 말해준다.

IV.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다윗의 전염병(삼하 24장)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 재앙 사이에는 전염병이라는 공통 주제가 나온다. 전염병을 둘러싼 원인과 신과의 관계, 전염병 제거를 위한 제의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차이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1. 유사성

1) 신의 진노와 전염병

무르실리 2세는 전염병이 온 국가에 퍼져 사람들이 죽어 나가자 그 원인을 신의 진노로 파악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한다. 신탁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그의 아버지 수필릴리우마 1세가 소 투드할리야를 살해한 것, 말라강의 제의 소호, 이집트와의 언약 위반 때문으로 풀이하고 각각에 대하여 왕의 책임을 아뢴다. 전염병의 원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풀이한다. 히타이트는 다신교 사회여서, 무르실리 2세는 호소의 대상이 되는 신도 하티의 폭풍신, 태양 여신 아린나, 만신전의 신들로

58) 윤동녕, 앞의 논문 (2015), 143-146쪽.

다양하게 나온다. 하지만 무르실리 2세는 전염병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신의 진노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범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 죄를 고백하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한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진노로 시작한다. 그 진노로 이스라엘을 치고자 한다.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곧바로 야웨는 다윗을 부추겨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한다며 야웨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왕의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매개체가 전염병이다. 따라서 전염병의 원인이 다윗의 인구조사이며, 다윗의 인구조사는 야웨의 진노로 인한 것이라는 논리로 전개된다. 하지만 야웨가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한 원인만으로는 이스라엘을 쳐야 할 이유가 충분치 않아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24:1에 제기된 이스라엘을 향한 야웨의 진노는 알 수 없다. 다만 사무엘하 24장은 전염병의 원인을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만, 무르실리 2세의 기도문에는 전염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 전염병과 왕의 관계

무르실리 2세는 국가적인 전염병의 원인을 백성이 아니라 왕에게서 찾았다. 무르실리 2세는 신탁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수필룰리우마 1세의 범죄로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범죄 모두 자신의 아버지 시대에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무르실리 2세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이를 수 있다는 당시의 종교적 개념에 의하여 신에게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무르실리 2세는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티 땅에 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왕의 잘못으로 온 땅에 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풀이한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라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자, 전염병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땅에 퍼졌다. 다윗의 잘못이지만 그 재앙의 희생자는 7만 명의 백성이었다. 왕으로서 다윗은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자신을 쳐 달라고 요구한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은 왕의 잘못이 온 백성과 온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전염병과 제의

무르실리 2세의 기도문은 제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지만,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는 신에게 제의를 실행해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신에 대한 헌신과 제의의 복원 및 성전건축을 약속한다. 넷째 기도에서 무르실리 2세는 신전 물품들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다. 전염병의 원인이 왕의 범죄로 인한 신의 진노에 있으므로, 왕은 신을 달래기 위한 제의를 드리겠다고 다짐한다. 히타이트에서 왕은 동시에 대제사장이기도 하였다. 또한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전염병을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개념이 드러난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야웨의 사자가 안내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⁵⁹⁾ 따라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곳이 야웨가 임하였던 공간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될 터가 되었다. 야웨가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는 언급은 땅의 부정함을 없앴다는 것을 알려준다 (삼하 24:25; 참고, 삼하 21:14).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통하여 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성전 정화 및 성전건축의 주제가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2. 차이점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은 신의 진노, 전염병, 배상 제의에 있어서 유사성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난다.

59) 역대상 21:28-22:1은 아라우나를 오르난으로 칭하며, 역대하 3:1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한다.

1) 역사적 사료와 내러티브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와 사무엘하 24장은 문서의 성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무르실리 2세의 전염병 기도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동시대의 역사적 사료이다. 3000년 이상 땅속에 묻혀있다가 후에 발굴되었으므로 무르실리 2세 시대의 1인칭으로 된 작품이다. 반면 사무엘하 24장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에 나오는 사건의 역사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다윗 시대에 발생했던 전염병 사건에 신학적 메시지를 담은 담론이다. 그러므로 전염병이라는 재앙 모티프를 신명기 역사서 내의 거대 구조인 솔로몬 성전건축 내러티브(왕상 6-9장)와 연결되어 속죄라는 주제의 토대를 형성한다. 또한, 다윗의 잘못으로 전염병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지고 7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성전건축과 연결된다. 즉 성전건축은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이었으나, 성전을 통한 속죄의 은혜는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24:1의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알 수 없는 진노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속죄 계획과 연결된다.

2) 다신교와 일신교

히타이트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다. 무르실리 2세의 기도에도 나오듯 많은 신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 또한 다양하게 나온다. 어느 한 신의 결정 혹은 신들의 회합의 결정으로 풀이한다. 이 차이는 일신교와 다신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일신교는 다신교와는 달리 신과 왕 사이의 계약 및 충성도에 있어 매우 밀접하므로 다윗은 모든 사건의 원인을 야웨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24장에서 전염병의 원인인 인구조사 및 전염병의 전개 과정과 제의를 통한 해결에 야웨의 주도성이 두드러진다.

V. 맺는 말

구약성서와 히타이트와의 관계에서 유사성은 종교 및 제의와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후르/헷 족속의 한 분파로 이해할 수 있는 여부스족 제의의 영향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기원전 1180년 무너진 히타이트 제국의 왕가들은 북시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도시 국가 형태로 기원전 700년 무렵까지 그 역사를 이어갔다. 기원전 1275년 히타이트 제국 시기에 무와탈리 2세와 이집트의 라암세스 2세와 카데쉬 전투를 벌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한 가나안 지역은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전쟁에 휩싸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히타이트 전통이 구약성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구약성서는 일신교 및 유일신교적 관점에서 히타이트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의 다양한 전통을 재해석하였다. 하지만 고대 서아시아의 다양한 전통의 흔적이 구약성서 속에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서에 남아 있는 전염병 사건은 히타이트 전통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그 흔적의 한 예이다.

주제어

무르실리 2세(Mursili II), 전염병(plague), 히타이트(Hittites), 다윗(David), 인구조사(census), 사무엘하 24장(II Samuel 24)

<투고: 2025년 05월 22일, 심사종료: 2025년 06월 06일, 게재확정: 2025년 06월 27일>

/Abstract/

The Plague Prayer of Hittite Mursili II and the Plague Narrative in 2 Samuel 24 of the Old Testament

Yoo, Yoon Jong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five plague prayers composed by Mursili II, king of the ancient Hittite Empire, with the plague narrative in 2 Samuel 24 of the Old Testament, analyz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uring Mursili II's reign, a devastating plague ravaged the land of Hatti for nearly twenty years, claiming countless lives without respite. In response, Mursili II sought to identify the cause through divine oracles. His prayers reveal three key reasons for the plague: the unjust bloodshed of Tudhaliya the Younger, murdered by Mursili's father, Suppiluliuma I, the neglect of rituals at the Mala River, the violation of a treaty with Egypt. Mursili II appealed to multiple Hittite deities, believing that the plague was a manifestation of divine wrath provoked by royal sin. To appease the gods, he confessed his father's crimes, pledged to restore neglected temples, and promised new constructions.

The plague in 2 Samuel 24 begins with Yahweh's unexplained anger, prompting David to conduct a census of Israel—an act portrayed as divinely incited yet sinful. After Joab completes the census, David repents, and the prophet Gad delivers Yahweh's judgment: a three-day plague that kills 70,000 Israelites. The plague halts when David builds an altar at Araunah's threshing floor, offering sacrifices. This site later becomes the foundation of

Solomon's Temple.

The similarities between Mursili II's Plague Prayers and the plague narrative in 2 Samuel 24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clear connection between divine wrath and plague. In both accounts, the plague is understood as visible divine judgment inflicted by the gods (or God) as an expression of anger. Second, both texts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gue and the king. The plague is portrayed as a calamity brought about by divine wrath, and this wrath is provoked specifically by the king's transgression. Identifying the reason for the king's sin was crucial to performing the appropriate rituals of atonement. Both cultures believed that the sin of a single king could bring disaster upon the entire land. Third, both narratives highlight the connection between the plague and ritual sacrifice. To stop the plague, ritual acts of appeasement had to be performed.

Mursili II promised sacrificial offerings, temple restoration, and temple reconstruction to the Hittite gods. David offered burnt offerings and peace offerings at Araunah's threshing floor, which later became the site of Solomon's Temple. This parallels Mursili II's theme of temple construction as part of atonement.

The differences between Mursili II's Plague Prayers and the plague narrative in 2 Samuel 24 can be summarized in two main aspects. First, it is the nature of the texts. Mursili II's Plague Prayers represent contemporary compositions from his own reign, while the plague narrative in 2 Samuel 24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later recording and editorial interpretation. Consequently, the plague account in 2 Samuel 24 serves both as the conclusion to David's story and as a literary bridge connecting to Solomon's temple construction narrative in 1 Kings 6-9. Second, their theological frameworks differ fundamentally. Mursili II's prayers emerge from a polytheistic religious context, whereas 2 Samuel 24's narrative is firmly rooted in henotheistic belief. This distinction manifests most

clearly in how each text portrays divine agency – while Mursili addresses multiple deities in his appeals, the biblical account consistently emphasizes Yahweh’s singular sovereignty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the plague’s causation to its ritual resolution.

Despite differing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both texts share a common ancient Near Eastern motif: plague as divine punishment, resolved through royal repentance and ritual. The contrasts highlight unique theological priorities—Hittite inter-god dynamics versus Israel’s covenantal henotheism.

참고 문헌

1. 단행본

- Bryce, Trevor., *The Kingdom of Hitti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Collins, Billie Jean, *The Hittites and Their World* (Atlanta, GA: SBL, 2007), pp.48-49.
- Rost, Leonhar,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Sheffield, UK: Almond Press, 1982).
- Singer, Itamar, *Hittite Prayers* (Atlanta, GA: SBL, 2002)

2. 논문

- 유성환, 「고대 서아시아의 팬데믹: 제1차 세계화 시대의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52 (2022), 41-72쪽.
- 윤동녕, 「대리왕 제의의 관점에서 본 다윗 왕의 위기극복 과정」, 『구약논단』 57집 (2015), 126-155쪽.
- Brueggemann, Walter. “2 Samuel 21-24: An Appendix of Deconstruction?,” *CBQ* 50 (1988), pp.383-397.
- Gábor Sulyok, “Breach of Treaties in the Ancient Near East,” *International Law* 19 (2017), pp.1-26.
- Hoffner, Harry A., “Deed of Šuppiluliuma,” *Contexts Of Scripture*, Vol. I (1997), p.74, 190.
- Hoffner, Jr., Harry A., “A Hittite Analogue to the David and Goliath Contest of Champions?,” *CBQ* 30.2 (1968), pp.220-225.
- Ko, Grace. “2 Samuel 21-24: A Theological Reflection on Israel’s Kingship,” *OTE* 31.1 (2018), pp.114-134.
- McMahon, Gregory, “Theology, Priests, and Worship in Hittite

- Anatolia,” in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vol.3 (New York: Scribners, 1995), p.1985.
- Park, Song-Mi Suzie. “Census and Censure: Sacred Threshing Floors and Counting Taboos in 2 Samuel 24,”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5 (2013), pp.21-41.
- Stavi, Boaz, “The Geneology of Suppiliuma 1,” *Altorientalische Forschungen* 38 (2011), pp.228-230.
- Taggar-Cohen, Ada, “Political Loyalty in the Biblical Account of 1 Samuel XX-XXII in the Light of Hittite Texts,” *VT* 55.2 (2005), pp.251-268.
- Vigo, Matteo. “Plague, Pandemics, and Divine Punishment among the Hittites,” in *Inter-Disciplinary Intergrated Disaster Administration on Covid-19 Pandemic* (Dokuz Eylül Üniversitesi Yayınları, 2021), pp.14-23.
- Wyatt, Nicolas. “ ‘Araunah the Jebusite’ and the Throne of David,” *Studia Theologica* 39. 1 (1985), pp.39-53.
- Yoo, Yoon Jong. “Hittite Heritage of Jerusalem in the Old Testament,” 『서양고대사연구』 72집 (2025), pp.1-23.

기층의 국가권력: 관감서(官箴書)를 통해서 본 남송시기 국가의 역량

이 석 희*

I. 서론

II. 남송 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재검토

III. 왜 기층의 국가권력인가?

IV. 결론

초록

이제까지 주목되지 않은 남송 시대의 중요성과 비교사에 있어 가지는 시대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논문은 남송 국가의 수취적, 강제적, 행정적 역량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중국사와 비교사에 있어 남송이 차지해 왔던 자리에 문제화를 제기하고, 후반부엔 남송-원-명초의 관감서를 비교함으로써 국가의 역량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 예시를 보이려 한다. 첫째, 남북송간의 군대 규모를 비교해 보면, 남송대 국가의 강제적 역량이 북송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남송대 국가 세수의 상당량을 담당하던 상세, 주과, 염과의 성장을 검토해 보면, 남송의 수취 역량 또한 매우 왕성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형량이 가장 곤란한 행정적 역량의 경우, 필자는 남송이 지폐를 통해 팽창하는 경제를 지탱할 만큼 섬세한 경제 이해도를 보여주었으며, 그 관료들은 이전의 어느 시대에 비해서도 행정을 처리할 다양한 기술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제시했다. 국가의 역량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시사하는 한 방법으로, 이 논문은 남송의

* 럿거스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sukhlee@history.rutgers.edu

** 논문의 심사를 맡아 세심한 지적을 해 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 특히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국내 선행연구를 지적해주신 심사위원분께 감사한다. 이 글의 수정 시에 참고한 해당 논문을 구해준 신재호에게도 감사한다.

관잠서 『주렴서론』, 원의 『목민총고』, 명초의 『목민심감』을, 특히 재정과 구황에 관한 논설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남송의 지방관은 번성하던 상업경제와 시장의 세력을 활용해서, 원대와 명초의 지방관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남송대 국가의 역량이 기존에 전제되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음을 시사하며, 남송이라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 서론

필자는 2024년 1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의 역량” state capacity에 관한 학제적 회의에 참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회의에는 필자를 비롯한 역사학 전공자뿐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 국가의 역량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참가했는데, 필자는 남송대(1127-1279) 국가의 역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당시 학회에서 발표한 글을 얼마간 수정한 것이다.

현대 국가의 경우, 그 역량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화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¹⁾ 그러한 정량적 데이터가 부재하는 전근대 국가에 관하여, 그것도 12-13세기의 국가 역량을 측정하려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 정치학자, 역사사회학자들은, 방대한 양의 2차 연구성과를 종합함으로써, 국가의 성립과 그 변모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의 성과를 쌓아왔다.²⁾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를 주로 다루며 추상의 낮은 단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편이지만 여전히 스스로가 발견한 사실의 큰 의미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 연구자로서, 필자는 지방행정에 초점을 둔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남송시기 국가 역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

1) 현대 국가의 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에 관해서는 Jonathan K. Hanson and Rachel Sigman, “Leviathan’s Latent Dimensions: Measuring State Capacity for Comparative Political Research,” *Journal of Politics* 83.4 (2021), pp.1496-1506을 참조.

2) 대표적인 연구로는 R. Bin Wong,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Victoria Tin-bor Hui,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그리고 Yuhua Wang, *The Rise and Fall of Imperial China: The Social Origins of State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등이 있다.

써 추상의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비교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남송 국가의 “수취적extractive, 강제적coercive, 행정적administrative” 역량을 논함으로써, 해당 시대의 중요성과 그것이 비교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새롭게 질문하려고 한다. 그런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자는 우선 중국사와 비교사 분야에서 남송이 가지는 위치를 다시금 문제화problematize하고, 이어서 지방관을 위해서 씌어진 관감서(官箴書)가 어떻게 국가역량에 접근하는 데에 통찰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II. 남송 사회에 대한 거시적인 재검토

재미 중국사 연구자인 고 류자건(劉子健James Liu)이 중국사에서의 남송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은 1985년이였다.³⁾ 이후 남송대에 관한 주요한 연구성과가 다수 나왔지만, 국가의 형성이나 장기적 경제발전에 관심을 둔 비교사가들에게 남송은 여전히 관심을 벗어나 있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관한 영미권의 가장 권위있는 학자 한명이 남송을 “국가가구가 사회로부터 후퇴”하는 시기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비교사가들 역시 남송대에 국가기구의 권한과 활동이 쇠퇴했다고 추정했는지도 모른다.⁴⁾

3) 劉子健, 『略論南宋的重要性』, 『兩宋史研究彙編』 (臺北: 聯經出版, 1987). 이 논문에서 저자가 주장한 구체 내용은 다방면에서 비판적으로 극복되었다.

4) “사회로부터 국가기구가 후퇴”한 시기로 남송을 해석한 연구자는 로버트 하임즈(Robert Hymes)이고, 이러한 해석은 그의 첫번째 저서인 *Statesmen and Gentlemen: The Elite of Fu-chou, Chiang-hsi, in Northern and Southern Su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에서 “실증적”으로 논구되었다. 이후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수정과 도전이 이어져 왔는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필자의 *Negotiated Power: The State, Elites, and Local Governance in Twelfth-to Fourteenth Century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4)가 있다.

예컨대, 980년에서 1850년에 이르는 시기 중국과 유럽의 1인당 GDP를 비교한 연구에서, 브로드베리(Stephen Broadberry), 관(Hanhui Guan), 리(David Daokui Li) 삼인 공동저자는 남송 시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⁵⁾ 이점에 있어서는 중국 제정시기 전체에 걸쳐 국가의 재정 역량을 탐색한 귀창(Qiang Guo)의 연구나, 송과 명의 국가 수입을 비교한 리우광린(劉光臨)의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⁶⁾ 영국에서 활동하는 경제사가인 켄트 덩(Kent Deng)이 송을 중국에서 재정국가가 성립된 두개의 “일시적 순간 one-off moments” 중의 하나로 제시하긴 했지만, 그는 압도적으로 북송 시기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남북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⁷⁾ 최근 리처드 본 글랜(Richard von Glahn)은 남송대 국가를 “상조적 재정국가 synergistic fiscal state”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중상주의적 재정국가 mercantilist fiscal state”라고 정의한 신법(新法) 시기의 북송대 국가는 물론, “섭정 국가 providential state”라고 한 명청대의 국가와도 구분했다.⁸⁾ 하지만 본 글랜 역시 신법 시기 이전의 북송과 남송이 지정학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조건이 판이하게 달랐고 그에 따른 행정적 대응이 달랐음에도,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

정량적인 경제사 연구에서 남송을 생략해 온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중앙정부의 기관들과 전국적 세수(稅收)를 검토할 수 있는 1차 자료

5) Broadberry, Guan, and Li, “China, Europe, and the Great Divergence: A Study in Historical National Accounting, 980–185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8.4 (2018).

6) Qiang Guo, “Essays in Political Economy of State Institutions and Fiscal Capacity in Historical China,”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20). 劉光臨, 『宋明間國民收入長期變動之蠡測』, 『清華大學學報』(2009.3).

7) Kent Gang Deng, “Imperial China under the Song and late Qing,” in Andrew Monson and Walter Scheidel eds., *Fiscal Regime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remodern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322–27, p.336.

8) Richard von Glahn, “Modalities of the Fiscal State in Imperial China,” *Journal of Chinese History* (2020.4).

들이 풍부한 북송과 비교했을 때, 남송의 경우, 특히 13세기에 들어선 이후로는, 파편적인 자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예컨대, 송대 사회경제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는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의 기사는 1224년에서 끝이 난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국가 역량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왜 여전히 남송시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하는 것인가?

우선 첫번째로, 남송은 중국사에서 “중국”의 국가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진 이웃 국가와 끊임없이 군사적·재정적 경쟁을 해야 했던 드문 시기였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⁹⁾ 1004년 “천연의 맹” 이후, 서하(西夏)와의 비교적 소규모의 분쟁을 겪었을 뿐인 북송에 비해, 남송 국가는 금(金)과, 그리고 금 멸망 이후엔 몽골제국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1127년 북송 멸망 이후 금과의 충돌은 1142년에 이르기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른바 “소흥의 화의” 이후로도, 금에 의한 전면적 침입이 1161-62년에 다시 발생했고, 1206년엔 한탁주(韓侂胄, 1152-1207)에

9) 이런 점을 지적한 이는 “대분기”로 유명한 케네스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이다. 그의 “Ten Years After: Responses and Reconsiderations,” *Historically Speaking* 12.4 (2011), p. 20을 참조. “전쟁이 국가를 만들었다”고 유럽 근대국가의 형성을 논한 역사사회학자 찰스 틸리(Charles Tilly)는 “중국은 반란과 내전으로 점철된 거대한 땅이 되었지만, 여러 국가 사이의 전쟁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00-1992* (Cambridge, MA.: Blackwell, 1992), p. 72를 참조. 물론 이러한 주장은 사료의 검토없이 2차 연구성과에 의존해서 내려진 매우 “비역사적인 ahistorical” 것이지만, 비교사적으로 국가의 형성을 연구하는 정치적 사회학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일 틸리의 비역사적인 주장을 논박할 중국사의 한 시기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송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송 국가 자체가 50여년에 걸친 오대십국국의 경쟁의 산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틸리의 국가형성 패러다임이 중국의 제정시기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논하며 중국사에서도 전쟁이 국가를 만들었음을 강조한 틴-보어 후이(Tin-bor Hui)가 송대를 완전히 건너 뛰고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Victoria Tin-bor Hui, “How Tilly’s State Formation Paradigm is Revolutionizing the Study of Chinese State-making,” in Lars Bo Kaspersen and Jeppe Strandshjerg eds., *Does war make state?: investigations of Charles Tilly’s historical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282-94를 참조.

의한 무모한 북벌이 있었다. 1234년 금이 몽골에 의해 멸망한 이후로도, 남송은 40여년에 걸쳐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전쟁 기계”를 상대해야만 했다. 중요한 것은 금과 몽골이 남송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북방의 유목 군대” 이상이었던 사실이다. 공성전에 대한 대비는 물론 수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남송은 중국사에서 가장 전운이 짙게 드리운 시대였고, 남송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전쟁 경제 war economy”였다.¹⁰⁾ 그 결과 남송은 북송 보다 더 군사화되어 있었고, “만개한 군사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¹¹⁾

팽창하는 상업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가장 선진적인 농업 지대를 차지한 남송이 금과 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부유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송은 우월한 병참능력만으로 북방의 적들을 쉽사리 압도할 수 없었다. 이점에서 남송은 17-18세기 준가르 제국을 상대했던 청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¹²⁾ 남송이 북송의 3분의2밖에 되지 않는 숫자의 현(縣)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¹³⁾ 남송이 마주해야 했던 도전의 규모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찰스 틸리의 주장처럼, 진정 “전쟁이 국가를 만든” 것이었다면,¹⁴⁾ 중국사의 그 어떤 시기도 남송 보다 더 좋은 예를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남송은 대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숫자는 1167년 83만6천

10) 이 점에 대해서는 William Guanglin Liu, “The making of a fiscal state in Song China, 960-127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68.1 (2015), pp.69-70을 참조.

11) Peter Lorge, “Military institutions as a Defining Feature of the Song Dynasty,” *Journal of Chinese History* 1 (2017), p.275.

12) 청과 준가르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틸-보어 후이의 연구를 참조.

13) 이 점에 대해서는 Ruth Mostern, “Dividing the Realm in Order to Gover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e Song State (960-1276 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p.222를 참조.

14) 역사사회학에서 유명한 이 명제는 틸리의 1975년도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다. Charles Tilly,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In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42.

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물론 이 숫자는 1049년에 최고치에 이른 북송대 군대 최대 규모의 59%에 불과하다.¹⁵⁾ 그러나 남송의 인구가 북송의 약 60%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그 군대의 규모도 인구에 대략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송의 경우 군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1102년, 북송의 병력 총수는 61만명이었다고 추산된다. 청민성(程民生)은 남송이 말년에도 60만에서 70만에 이르는 병력을 유지했다고 추정한다.¹⁶⁾ 군대의 규모가 국가의 “강제적 역량 coercive capacity”의 한 지표가 된다면, 남송의 강제적 역량은 북송대에 비해 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습적인 군호(軍戶)에 의해 유지되던 원과 명의 군대와는 달리, 송의 군대는 월급을 수령하는 “직업 군인”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 송은 그 대부분의 시기 동안 대규모의 병력에 대한 보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대규모의 전투병력에 대한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남송 조정은 1141에서 1145년에 걸쳐 회하와 양자강 사이와 사천 지역에 총령소(總領所)를 설치하였는데, 프랑스의 송대 경제사가인 크리스티앙 라무르(Christian Lamouroux)는 호부의 통제 하에 놓여진 네 곳의 총령소를 통해 남송 조정이 재정 권력을 회복하고, 그 자원을 통제하며 군-민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고 논했다.¹⁷⁾ 실제로 남송 정부는 왕조 말기에 이르기까지 총령소 휘하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강서로(江西路)와 절서로(浙西路)에서부터 대량의 미곡을 양회지방으로 운송하여 비축하고 있었다.¹⁸⁾

그러나 전방에 배치된 대규모 전투병단을 유지함은 물론, 정부는 각 지

15) 程民生, 『宋代兵力部署考察』, 『史學集刊』 (2009.5), 73쪽.

16) 청민성, 앞의 논문 (2009.5), 67쪽, 70-71쪽.

17) Christian Lamouroux, “Fragmentation and Financial Recentralization: The Emergence of the Four General Commands (1127–1165),” in Hilde de Weerd and Franz-Julius Morche eds., *Political Communication in Chinese and European History, 800–1600*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1), pp.137–38.

18) 汪聖鐸, 『宋代轉般倉研究』, 『文史』 (2011.2); 小林晃, 『南宋晚期對兩淮防衛軍的駕馭體制-從浙西兩淮發運司到公田法』, 『過程·空間: 宋代政治史再探研』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7).

방에 주둔하고 있는 상당수의 군대도 유지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절동로(浙東路) 온주(溫州)의 경우, 2,722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급료와 기타 보급문제는 온주 주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방주둔군 유지는 지역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송대 지방재정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 의하면, 남송대 지방정부는 과도한 재정 집권화 또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부재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 곤란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고 한다.¹⁹⁾ 그렇다면, 그렇게 빈곤한 지방정부는 근 3천명에 달하는 “직업군인”의 유지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유명한 사공학과 사상가인 섭적(葉適, 1150-1223)은 자신의 고향인 온주 정부가 주치(州治)에서 반경 30리 이내에 약 10만 무(畝)의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²⁰⁾ 섭적의 기획은 다음과 같았다. 30무 이상을 소유한 모든 가구는 주 정부에 스스로의 토지 보유량의 반을 팔아야 한다. 지주층의 협력에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팔고 남은 반의 토지에 대해서 양세(兩稅)를 25% 감면해 주도록 한다. 일단 매입이 완수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모아진 토지는 정부 관리하의 장원으로 전환되어, 소작농들에게 경작시킨다. 그렇게 되면 1무당 1강(扛, 송대 기준으로 1.5석)의 소작료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섭적의 계산에 의하면 온주에서 98,125무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주정부 관할 하의 장원에서 거두는 1년의 소작료는 98,125강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19) Lee, op.cit., pp.125-27.

20) 지방 주둔군의 유지와 보급을 위해 공적 장원을 세워야 한다는 섭적의 제안에 관해서 가장 상세한 연구는 스도 요시유키(周藤吉之)의 『南宋末の公田法』(上) 『東洋學報』 35 (1953), 33-36쪽. 영어로는 Winston Wan Lo, *The Life and Thought of Yeh Shih*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74), pp.107-09.

섭적이 계산한 온주 주치 부근의 토지소유 실태

토지 소유규모	호구 수	구매될 토지량
30-150무	1,636	49,490 무
150-400 무	268	29,683 무
400-1,000 무	37	9,886 무
1,000-2,760 무	12	9,066 무
전체	1,953	98,125 무

예상되는 소작료 98,125강 중에서 74,375강은 병사들과 행정관련 인원의 월급, 기타 보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23,750강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관해 둔다. 섭적은 전체 장원을 관리 운용하는데 76명의 인원이 필요하리라 예상했다. 현전 30관(貫)으로 1무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추산했으므로, 98,125무의 장원을 마련하려면 2,943,750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문제는 당시 어느 주 정부도 이 정도 규모의 현전을 별도로 마련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섭적은 소유자에게 지역 내에서의 얼마간의 특권을 부여하는 관작과 승첩(僧牒)을 팔아서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군병에 대한 봉급과 보급을 새로 구입되어 마련된 토지의 소작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 정부는 주 전체 주민의 세금을 1/3 줄일 수 있고, 감면된 세금의 반만 가지고도 주의 1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섭적은 계산했다.²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제안이 책상물림 학인의 비현실적 계획이 아니라, 온주 주치 주변 7개 향(鄉)의 토지대장과 조세대장 및 온주에 배치된 군병의 규모에 대한 확실한 정보 위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²⁾ 그러나 섭적의 기획이 온주에서 실제 시행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구매되어야 할 토지를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하고, 정부가 발행한 관작이나 승첩으로 구매가격을 지불하고, 소작료를 관리해서 매달 지

21) 葉適, 『葉適集』, 『後總』(北京: 中華書局, 2013), 850쪽.

22) 葉適, 『葉適集』, 『買田數』, 858-68쪽. 섭적이 온주 출신이자 영향력있는 정치가이며 명망있는 학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획을 제안할 때 관료였던 것은 아니다.

역내 주둔군에 대한 월급과 기타 보급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를 넘어서는 역량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섭적의 기획은 여전히 경제학자의 백일몽에 불과했던 거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그의 기획이 제안되고 40여년이 지나 남송 정부가 그와 대단히 유사한 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남송 정부는 전방에 배치된 군대의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미곡을 사들이던 화적(和糴)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1159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원칙상 자발적으로 미곡을 팔고자 하는 이들에게 시장가격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미곡을 수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적은 거의 반강제적인 미곡 수매로 변질되었고, 지급금도 현전에서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겪고 있던 지폐로 대체되었다. 남송 말기에 이르러 몽골의 압박이 증가하자, 정부는 화적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1년에 화적으로 수매하는 미곡의 양은 1260-64년에 8백만 석에 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량으로 증가된 화적량은 두가지의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했다. 첫째는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가격에 억지로 쌀을 팔아야 하는 백성들의 불만이 증대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미곡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계속해서 지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1234년 이래 심각해지기 시작한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다. 악화되는 인플레이션은 지폐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급속도로 저하시켰고, 지폐에 대한 불신은 화적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²³⁾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남송 정부가 도입한 문제의 제도는 다음 아년

23) 화적 제도에 대해서는 시마스에 카즈야스(島居一康), 『宋代稅政史の研究』(東京: 汲古書院, 1993), 459-73쪽; 김영제, 『唐宋代 上供의 중대과정 - 특히 常平倉 · 和買 · 和糴 등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36 (1991), 123-136쪽. 남송 후기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Richard von Glahn,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p.45-46. 단평입락(端平入洛) 이후의 과도한 회자(會子) 발행에 대해서는, 정일교, 『남송시기 전쟁이 화폐에 끼친 영향 - 端平入洛시기 會子の 발행량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36 (1991), 294-299쪽.

공전법(公田法)이었다. 공전법의 최초 제안자가 온주 출신으로 섭적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류량귀(劉良貴)였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섭적의 기획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²⁴⁾ 공전법이 포고됨에 따라, 정부는 200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소유분의 3분의 1을 구매해서, 절서로에 1천만무의 공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던 6-7백만석의 소작료는 군비를 충당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었다.²⁵⁾ 공전법의 입안인들은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다섯 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 민중의 불만 소재인 화적을 없앨 수 있고, 2) 전방 군대에 대한 보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3) 과도한 지폐의 발행을 중지할 수 있고, 4) 물가를 안정화시키며, 5) 화적의 주요 피해대상이 되었던 부실(富室)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애초의 제안을 얼마간 수정한 뒤에, 남송 정부는 결과적으로 절서로 내 6개 주에서 3백5십만 무의 토지를 구매했고, 여기서 확보한 2백5십만석의 소작미는 절서로 전체의 화적량에 달했다.²⁷⁾ 그 결과, 남송의 전방 군단은 1275년까지 안정적인 보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절서로의 화적은 완전히 중지되었으며, 지폐의 발행량도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처럼 감소하게 되었다.²⁸⁾ 요컨대, 앞서 확인한 바 있는 대규모의 남송 군대는 정부의 효율적

24) 류량귀의 배경에 대해서는 方誠峰, 「南宋末年的公田法與道學家」, 『中華文史論叢』 (2023.1), 140-44쪽을 볼 것. 동시대인인 황진(黃震 1213-1281)도 공전법이 섭적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황진, 「興葉相公」, 『黃震全集』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3), 7책, 2284쪽. 조동원은 공전의 최초 제안자를 가사도(賈似道) 본인이라고 파악한다. 「公田法の諸問題」, 『釜大史學』 30 (2006), 749쪽.

25) 주밀(周密 1232-1298), 『齊東野語』 (北京: 中華書局, 1983), 313쪽. 영어로는 Herbert Franke, "Chia Ssu-tao (1213-1275): A 'Bad Minister'?" in Arthur Wright and Denis Twitchett eds., *Confucian Personali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pp.229-31을 볼 것.

26) 『齊東野語』, 313쪽.

27) 宮崎市定, 「賈似道略傳: 支那古今人物略傳」 (二), 『東洋史研究』 6.3 (1941), 66-67쪽.

28) 「南宋末の公田法」 (上), 58쪽. Christian Lamouroux and Richard von Glahn, "Public Finance," in Debin Ma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Cambridge*

인 수취 역량에 의해 왕조말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자는 공전법이 정부의 수취 역량 일반을 보여주기 보다는 멸망 직전에 있던 제국의 마지막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⁹⁾ 남송 정부의 수취 역량을 가늠할 전국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자는 이제까지 무시되어 왔던 남송의 수취 역량을 재고할 수 있게끔 하는 몇가지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남송 정부의 수취 역량

송 정부가 전국적 세수에 있어 갈수록 비농업적 간접세에 더욱 의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⁰⁾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북송대의 신법 시기에 극점에 달한 뒤, 남송대가 되면 신법기의 “중상주의적” 정책들이 폐기되었다고 한다. 몇몇 연구들이 정부의 재정 역량이 11세기 이후 단선적으로 쇠퇴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해에 바탕하고 있는 듯 하다.³¹⁾ 남송대에 신법의 “중상주의”적 기조가 비판되고, 애초엔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추가적인 세수 수취로 변질되었던 경제 정책들이 - 특히 청묘법(靑苗法) - 폐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의해 덜 주목받았던 사실은 남송이 신법 시기에 제정된 세수의 정액을 여전히 유지했고, 신법이 도입한 보갑제(保甲制)를 지속해서 시행했으며, 신법의 모역법(募役法)이 폐지되었음에도 모역법을 위해 도입되었던 면역전(免役錢)과 조역전(助役錢)을 계속해서 징수했다는 것이다.³²⁾

Economic History of China,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p.357.

29) 대표적으로 테라지 준(寺地遵), 「南宋末期、公田法の背景」, 『史學研究』 231 (2001).

30) Liu, op.cit.; von Glahn, op.cit.

31) Guo, “Essays in Political Economy of State Institutions and Fiscal Capacity in Historical China,” p.78; Yuhua Wang, *The Rise and Fall of Imperial China*, p.53.

32) 야기 미쓰유키(八木充行), 「南宋地方財政の一檢討」, 『集刊東洋學』44 (1980), 47 쪽. 역전과 조역전은 모역법을 통해 고용된 직역인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취되었던, 신법기에 새롭게 도입된 세금이다. 따라서 모역법이

미증유의 외적 위협과 대면했던 남송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그 어떤 기회도 놓칠 수 없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³³⁾ 물론 남송 정부가 면역전과 조역전을 세액만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표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필자는 남송의 재정적 역량을 거칠게나마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아래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량경야오(梁庚堯)에 의하면, 강남 지역 주요 주군(州軍)의 상업세는 남송대에 150%에서 무려 981%까지 증가했다.

남송대 강남 지구의 상세 수입³⁴⁾

	1077년 상세(商稅)	남송대 상세	
		세수	연도
항주	183,814 관	420,000 관	1265-74
진강(鎮江)	37,503	206,298	1208-24
상주(常州)	64,953	135,784	?
소흥(紹興)	66,207	105,314	1201
명주(明州)	26,947	76,192	1227
화정(華亭)현	10,618	48,464	1193
강음(江陰)군	4,272	41,907	1228-33

량경야오가 검토한 6개 주군 가운데 양자강 남안에 위치해서 전방 군단의 보급기지로 중요 역할을 담당했던 진강과 강음 두곳이 550%와 981%라는 가파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본 글란이 지적하고 있듯이, 위의 데이터는 강남 지역경제의 놀라운 활력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비록 강남만큼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리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국가 세수의 또다른 주요 자원이었던 술 전매 수입에서도 유사한 발전

폐기되고 나면, 이론상 면역전과 조역전의 징수도 중지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33) von Glahn, *The Economic History of China: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256.

34) 이 표는 본 글란이 량경야오의 1997년 연구에 바탕해서 작성한 것이다. *The Economic History of China*, p.266.

기층의 국가권력: 관잠서(官箴書)를 통해서 본 남송시기 국가의 역량 125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남북송 술 전매 수입³⁶⁾

연도	전매 수입
1041-48	17,100,000 관
1077 (신법 시기)	13,108,918
1100 (신법 시기)	11,560,000
1162	14,000,000
1173	13,320,00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술 전매 수입은 북송 경력(慶曆) 연간에 1천7백여만관을 넘어서 그 정점에 달했다. 주목할 사실은 남송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효종(孝宗) 재위기의 수입이 1천3백여만관에서 1천4백만관으로, 신법이 행해지고 있던 휘종(徽宗) 연간의 수입을 상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이 1천3백여만관이 북송대 최고 수치의 78%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남북송의 영토와 인구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인구 대비 뚜렷한 증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송대 국가 세수의 최대 원천이었던 소금 전매 수입³⁷⁾은 어떨을까? 여기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북송의 멸망과 더불어 송이 8개의 염 산지 가운데 4곳을 상실했다는 사실이다.³⁸⁾

35) 리화웨이(李華瑞)에 의하면, 술 전매 수입은 전체 화폐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宋代酒의生産和征權』(保定: 河北大學出版社, 1995), 401쪽.

36) 리화웨이, 같은 책, 352-54쪽.

37) Cecilia Lee-fang Chien, *Salt and State: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Songshi Salt Monopoly Treatise*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4), p.33.

38) Chien, *Ibid.*, p.70.

남북송 소금 전매 수입³⁹⁾

연도	소금 전매 수입	전국적 화폐수입
1050년대	9백1십만관	3천7백만관
1068-1085 (신법 시기)	2천만관	6천만관
1101-1125 (신법 시기)	4천만관	8천만관 이하
1160년대	2천3백만관	6천만관
1163-1189	3천1백만관	약 8천만관
1195-1224	2천2백만관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160년대, 남송 효종기의 소금 전매 수입은, 4개 염 산지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북송 신종기의 수입을 상회하고 있다. 상세와 술 전매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소금 전매 수입도 북송대에 비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상세, 술 소금 전매 수입의 증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상세의 경우, 남송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도의 도시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적인 추산에 의해도, 이 시기 도시화의 정도는 1840년대 양자강 하류 지역이나 1800년 유럽의 경우 보다 더 높았다.⁴⁰⁾ 도시 공동체의 확대는 상세뿐 아니라 술 전매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고,⁴¹⁾ 남송 정부는 북송대에 전매 시행 지역이 아니었던 곳까지 술 전매를 확산시킴으로써 수입을 증대시켰다.⁴²⁾ 소금 전매는, 12세기 후반 개발된 생산기법의 혁신을 통해 50-60%의 생산량 증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생산 증가는 곧 전매수입의 증대로 이어졌다.⁴³⁾

남송대의 전국적인 양세(兩稅)액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시기 정부의 수취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그 어떤 노력

39) 이 표는 Chien, op.cit., p.36에 의거해서 작성되었다. Chien은 왕성두어(汪聖鐸)의 1995년 연구를 참고했는데, 필자는 왕의 연구를 접할 수 없었다.

40) G. William Skinner, "Introduction: Urban Development in Imperial China," in G. William Skinner ed.,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28; von Glahn, op.cit., pp. 250-51.

41) Liu, op.cit., pp.55-57.

42) 리화웨이, 같은 책 (1995), 236쪽.

43) Chien, op.cit., p.72.

도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송이 세수의 더 많은 부분을 간접세를 통해 징수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앞서 검토한 세 분야의 세수 증대는 남송의 재정 역량이 왕성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시장 매커니즘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없었다면,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2. 남송 정부의 행정 역량

전근대 국가의 행정 역량을 실증적으로 empirically 측정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나, 남송대 국가의 행정 역량이 어떠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증 자료는 존재한다. 예컨대, 남송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던 지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1세기 이상 유지할 수 있었다.⁴⁴⁾ 남송이 유통시켰던 지폐인 회자(會子)는, 시장의 조건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은 채 유일한 합법적 화폐로 강제되었던 원대의 중통초(中統鈔)나 명초의 대명보초(大明寶鈔)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⁴⁵⁾ 남송대 정부는 지역 상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던 관행을 권역내 화폐 정책으로 채택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고, 관료들은 유통되고 있던 현전과 지폐 수량의 적절한 비율을 산정하는 새로운 통화 이론을 개발시키기도 했다.⁴⁶⁾

사회학자 씨다 스카치폴(Theoda Skocpol)에 의하면, “국가기구에게 최상의 상황이란, 관료로서의 커리어가 높은 사회적 위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섬세한 기술적 훈련을 받은 엘리트 대학 출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관료

44) 지폐가 처음 도입된 것은 북송대였지만, 12세기 중반까지 지폐의 유통은 사천 四川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다.

45) Liu, op.cit., p.68.

46) 이 새로운 통화 이론을 “칭제(稱提)”라고 한다. “칭제”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 Zhihong Liang Oberst, “Chinese Economic Statecraft and Economic Ideas in the Song Period (60–1279),”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6), pp.411–21을 참조. 남송 화폐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Richard von Glahn, “Paper money in Song–Yuan China,” in R.J. van der Spek and Bas van Leeuwen eds., *Money, Currency and Crisis: In Search of Trust, 2000 BC to AD 2000* (London: Taylor and Francis, 2018), pp.253–54, p.262.

군으로 유입되고, 큰 야망과 높은 성취도를 갖춘 관료들이 국가기구 이외의 직장을 찾지 않는 것”이다.⁴⁷⁾ 스카치폴이 말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남송대 국가기구에 완벽하게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남송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3세기말이 되면 해시(解試) 응시자가 무려 40여만명에 달하게 되었지만,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전시(殿試)를 치르고 진사가 되는 이의 숫자는 여전히 5백여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관직이 가져오는 비할데 없는 영예와 특권 때문에 극히 적은 수의 예외를 제외하곤 관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과거는 제국 내 최고의 엘리트층 미래의 관료로 선발한다는 점 외에도, 제국의 문화적 통합에도 기여했다. 점차 많은 지역적 엘리트들이 과거에 응시함에 따라서 그들이 국가기구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던 이들은 전국적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⁴⁸⁾

스카치폴의 묘사와 관련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남송 정부의 관료로 선발된 이들이 “섬세한 기술적 훈련 sophisticated technical training”을 갖추고 있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남송 정부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송대의 과거는 응시자의 유가 경전에 관한 지식과 문장 능력만을 테스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책문(策問)을 통해 그들이 제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원용하여 어떻

47)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16.

48) 이점을 강조한 학자는 비벌리 보슬러(Beverly Bossler)이다. 그의 *Powerful Relations: Kinship, Status, and the State in Sung China (960–1279)*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9), p.208을 볼 것. 보슬러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중국의 엘리트들이 “과편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정치학자 왕위화(Yuhua Wang)의 주장과 배치된다. Wang, “China’s State Development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APSA-CP Newsletter* XXIX.2 (2019), pp.55–56.

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만들어내는지를 더욱 중시했다.⁴⁹⁾ 이에 더하여, 남송대에 어떻게 유능한 지방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술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주현 단위 지방정부의 업무 전반을 다루는 『주렴서론(晝簾緒論)』이나 『주현제강(州縣提綱)』 같은 관잠서를 필두로, 역사상 저명한 살인 사건의 판결문을 모은 『절옥귀감(折獄龜鑑)』이나 『당음비사(棠蔭比事)』, 남송 당대의 저명한 지방관들의 민사 소송 판결문을 선별해서 묶은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清明集)』, 지방관을 위한 법의학 저서인 『세원록(洗冤錄)』, 그리고 지역 차원의 기근 구제 방법을 담은 『구황활민서(救荒活民書)』 등이 모두 남송대에 출현했고, 현임관뿐 아니라 관료가 되고자 하는 사인층을 독자층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후술하듯, 이러한 가이드 북의 내용은 지방행정의 요체들을 담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남송대의 관료들이 그 이전의 어떤 시대 보다 더 “기술적인”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제한된 분야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가리키는 다양한 “식”(式)의 편찬을 통해서도 확인되듯, 송 정부는 문서 전달을 통한 행정의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⁵⁰⁾ 그리고 관리들로 하여금 개별 사항에 관련된 법률을 용이하기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법 분야의 서리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남송 정부는 사안별로 분류된 법률서인 조법사류(條法事類)를 편찬 출판하기 시작했다. 조법사류는 중요한 조칙, 령(令), 격(格), 식을 주제에 따라서 선정하고 재배치한 법률서이다.⁵¹⁾ 명청대 연구자인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에 의하면, 청대의 관리들

49) 남송대 과거의 제3장에서 출제되던 책문(策問)의 중요성, 그리고 책문 대비용 “참고서”들의 유행에 대해서는 힐다 드 베르트(Hilde de Weerd)의 *Competition over Content: Negotiating Standards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in Imperial China (1127–127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을 참조.

50) “식”은 남송대 이후엔 사라지게 되는 법의 종류이다. Brian E. McKnight, “Patterns of Law and Patterns of Thought: Notes on the Specifications (shih) of Sung Chin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2.2 (1982), p.323, pp.326–27, p.330.

51) Miyazaki Ichisada,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uring the Sung

과 비교해 볼 때, 남송의 관리는 자신들의 법률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조칙,령,격,식등을 존중하고자 했다.⁵²⁾ 남송대의 관리들이 막스 베버가 말하는 의미에서 “격식에 맞추는 정의 formal justice”를 실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후대의 관리들에 비해 더 나은 관찬 가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법률과 규칙을 준수할 수 있었다.⁵³⁾

강제적, 수취적, 행정적 역량에서 남송 정부는 명청대는 물론이려니와 신법기의 “중상주의적” 국가와도 흥미로운 대조점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국가의 역량을 지역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인가?

III. 왜 기층의 국가권력인가?

국가기구가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검토하면, 전국적인 데이터에 보이는 그 모든 숫자들이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숫자들이 당시를 살고 있던 관료나 민중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설령 비교적 신뢰할 만한 전국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가기구가 지역 사회에 작동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게 해야만 중앙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문서에 적혀진 것과 실무관료나 민중들이 직면했던 현실 사이에 존재했을

Dynasty,” in Jerome Alan Cohen, R. Randle Edwards, and Fu-mei Chang Chen eds., *Essays on China's Legal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57.

52) Kishimoto Mio, “Property Rights, Land, and Law in Imperial China,” in Debin Ma and Jan Luiten van Zanden eds., *Law and Long-term Economic Change: A Eurasian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p.76. 이와 같은 특징은 송대의 관감서에서도 드러난다.

53) Debin Ma, “Law and Economy in Traditional China: A ‘Legal Origin’ Perspective on the Great Divergence,” in *Law and Long-term Economic Change*.

격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에 13세기에 나온 관잠서인 『주렴서론』을 역주해서 출판을 준비중이다. 현의 행정에 관해서 집필된 이 책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이용하고, 지방 관료기구와 지역 공동체의 기존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행정을 펼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⁵⁴⁾ 따라서 이 책은 경제의 가장 초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경제의 가장 정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관잠서도 그렇듯, 『주렴서론』은 “현실” 보다는 “당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당위”를 학자나 사상가들이 생각해 낸 순혈주의적 이상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오해이다. 이 책이 그려 보이는 “당위”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 지침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다. 남송 후반의 지방 행정이 『주렴서론』에 그려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순진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이 당시의 어떤 현에서도 실제 완수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렴서론』은 1권(卷) 15편(篇)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54) 이후의 논의는 필자가 역주한 원고의 “서론”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주렴서론』의 구성

편	제목	내용
1	盡已	지방관의 자기 수양
2	臨民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
3	事上	상사를 섬기는 법
4	僚案	동료
5	御史	서리를 다스리는 법
6	聽訟	소송을 처리하는 법
7	治獄	감옥 관리
8	催科	징세
9	理財	재정 운용
10	差役	직역의 배당
11	賑恤	기근구제
12	用刑	형벌 적용
13	期限	각종 기한 고지
14	勢利	지역내 유력자를 상대하는 법
15	遠嫌	혐의를 피하는 법

명청시대 관감서에 익숙한 이들이 보기에 위의 목차에서 특이한 점이란 그리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주렴서론』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남송대 국가 역량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먼저 책의 “리재”편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같은 목적에서 이 책의 특징을 원대 후기에 나온 『목민충고』(牧民忠告), 명초의 『목민심감』(牧民心鑑)의 내용과 비교할 것이다.⁵⁵⁾

현령(縣令) 혹은 지현(知縣)을 위한 가이드북인 『주렴서론』에 독립된 “리재”편이 담겨 있다는 점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 이점이 남송 국가를 이후 왕조의 국가와 구별해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청대사 연구자 피에르-에티엔느 빌(Pierre-Étienne Will)은 “심각한 자금부족을 겪고 있던 [청대의] 지방 행정”을 강조하며, 지방 차원에서 “창조적인 자금확보”란 사실 우리가 흔히 “부패”라고 부르는 관행과

55) 『목민충고』의 저자는 장양호(張養浩 1269-1329)이며, 서문은 1355년도 작이다. 『목민심감』은 주봉길(朱逢吉, 1403년 사망)이 지었고, 1404년에 출간되었다. “충고”는 2권 10편, “심감”은 2권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를 바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⁵⁶⁾ 이런 점에서 볼 때, 17세기에 출간된 가장 포괄적인 관감서인 『복혜전서』(福惠全書)조차 재정 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장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목민충고』와 『목민심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관감서들의 저자들이 재정 운용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중요한 재정에 관한 별도의 논의가 없는 것일까?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인 재정 운용의 여지란 거의 불가능했다고 판단했기에 별도의 장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원-명-청에서는 불가능했던 그것이 남송대엔 가능했던, 내지는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립서론』에 의하면, 현 정부는 술 전매와 상세(商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흑자를 마련할 수 있고, 그 흑자를 통해 제반 행정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다. 각종 술 전매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징발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금 전매와 비교할 경우, 보다 많은 재량권이 지방정부에게 허락되었다.⁵⁷⁾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절동로 명주(明州)의 주정부가 지역 내의 주고(酒庫: 전매용 술을 빚는 술도가)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적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그렇게 확보된 재정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사업에 자금을 대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⁵⁸⁾ 주립서론은 동일한 전략이 현 단위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관영 주고를 운영하거나 주고의 운영권을 지역내 민

56) Pierre-Étienne Will, "Officials and Money in Late Imperial China: State Finances, Private Expectations, and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in Emmanuel Kreike and William Chester Jordan eds., *Corrupt Histories*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4), p.40.

57) 『宋代酒의生産和征權』, 400쪽; Chien, op.cit., p.37.

58) Lee, op.cit., pp.130-33. 필자의 논점은 김영제의 선행연구, 『南宋中後期 地方財政의 一側面: 慶元府의 酒稅收入과 ‘府’財政의 擴大過程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에 계발받은 바 크다.

간에게 경매하는 방식으로 술 전매를 관리했다. 공인된 술 전매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가되지 않은 술의 양조와 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그런데 『주렴서론』은 불법적으로 양조된 술의 판매를 적발해서 처벌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 내 소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는 공인 양조주의 양과 질을 제고시켜 불법 양조주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판매 실적이 증대되었을 경우 공인 양조주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포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에서 제조해 파는 술이 양도 많고 맛있기까지 하다면, 누가 사주를 사먹으며 스스로 죄에 걸리려 할 것인가? 전매와 관련된 금령이 엄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백성들은 설사 [사주를 사먹으라고] 압박을 받아도 또한 따르지 않을 것이다.

官醞既多且旨，誰肯私飲以自速辜？故雖榷禁不嚴，驅之亦不從矣。⁵⁹⁾

『주렴서론』은 문제를 “공무원처럼” 바라 보는 대신, 그래서 오로지 단속과 처벌에만 집중하는 대신,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술 전매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글란이 남송 시기 국가는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세수를 극대화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을 때, 그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를 논하고 있었던 것이지만,⁶⁰⁾ 현 단위에서의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와 유사한 논리는 이동하는 상인들이 현경(縣境)을 통과할 때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에 비례해서 거두던 상세 징수에도 적용되었다. 상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지정된 세장(稅場)을 우회해서 이동하려는 상인들을 너무 엄격하게 적발 처벌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상인들로 하여금 해당 현을 피하게 만들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더 적은 양의 세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주렴서론』은 현 정부가 곳곳에 방을 붙여서

59) 『晝簾緒論』, 閔建飛 等 編, 『宋代官箴書五種』 所收 (北京: 中華書局, 2019), 184 쪽.

60) von Glahn, op.cit., p.254.

낮은 세율로 상세를 거두리라는 점을 이동하는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개별 상인에게서] 거두는 양은 적을지라도, [현을 거치기 위해] 오는 상인들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거두게 되는] 상세는 자연히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해당 현의 길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겠는가? 蓋取之雖少, 而來者則多, 課利自然盈衍, 孰不願出其塗哉?”⁶¹⁾ 요컨대, 『주렴서론』은 현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허용하면서 시장의 세력을 활용하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근 구제를 논하는 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근과 그에 따르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주렴서론』의 논의는 환자가 있는 가호에 약과 생활비를 지급한다거나, 노숙인들을 고용해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아픈 집안을 돌보게 한다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과 장례식 비용을 지급하고, 발생할지도 모를 도적에 대비해서 보오(保伍)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집을 잃고 유랑하는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쌀을 대여해 주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흥미있는 것은 『주렴서론』이 흉작이나 기근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현내 부호들로부터 돈과 곡식을 빌어다가 피해 가호에게 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갚게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현성 외부의 향촌 지역에 대해서, 『주렴서론』은 현 정부가 상호(上戶)층⁶²⁾과 협력하여 그들로부터 돈이나 곡식을 빌어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거나 상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작인들에게 직접 곡식을 대여해 주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기근 구제라는 명목하에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주층을 괴롭히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추가 징세의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기근 구제에 있어 현 정부의 역할이 관리-조정인에 한정되었던 것이

61) 『書簾緒論』, 190쪽

62) 송은 자영농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등록했는데, 1등호와 2등호를 “상호”라고 불렀다.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렴서론』은 현성(縣城) 안에서
서의 구제 활동의 경우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전제한
다. 하지만 거기에서조차,

[정부가 직접 상황을 타개하려 하기 보다] 오히려 정부의 비축 자금을 싸진
경영 가호에게 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현 바깥으로 나가서 쌀을 사오게
한 뒤 그 쌀을 [현성 내부의 인호들에게] 팔게 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인
호 입장에서] 사먹을 수 있는 쌀이 있기만 하다면, 그 판매가에 제한을 두
어서는 안 된다. [쌀 판매가를 정부에서 강제로 내리지 않으면 쌀이 폭주해
들어올 것이며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저렴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
면 광혜창을 열지 않아도 괜찮게 된다.⁶³⁾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강서로
(江西路) 무주(撫州)] 금계현의 현령으로 2년간 있는 동안 흉년을 만났었는
데, 다만 이 정책을 시행해서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현의 수
령으로서] 몰라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却以官錢貸米鋪戶，令其往外郡邑販米出糶。但要有米可糶，却不可限其價直，
米纔輻輳，價自廉平，雖無待開廣惠倉，可也。若先君宰金谿兩年，值歉，只行此
策，民用無饑，不可不知也。⁶⁴⁾

백성들이 고통받는 기근기에 미곡 상인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무시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현 정부
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을 피해지역으로 몰려들 수 있게 하고, 상인들
간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가격을 인하시켜서 백성의 목숨을 구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렴서론』은 현성 거주민을 위해 가옥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에 대해서 논한다. 임대료 인하 명령은 지현이 부임했을 때, 지현의
생일, 지현의 승진, 또는 그가 추천서를 받았을 때 집행되곤 했었다. 많은

63) 광혜창은 미곡을 비축하고 내다 팔면서 가격을 조절하는 기구로, 지방 차원에
서 상평창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광혜창에 대해서는 von Glahn,
“Community and Welfare: Chu Hsi’s Community Granary in Theory and
Practice,” in Robert P.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eds.,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243.

64) 『晝簾緒論』, 190쪽.

경우 다만 며칠간의 임대료가 인하될 뿐이었고, 그 자체엔 큰 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년 이상의 임대료 인하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주렴서론』은 이런 조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런 조치를 내리는 이들은] 임대료가 너무 인하되면, 누구도 자신의 가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가옥이 무너지고 수리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면,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는 부자와 빈자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不知僦金既已折闕，誰肯以屋予人？積至塌壞傾摧，不復整葺，而民益無屋可居矣。是蓋不知貧富相資之義者也。⁶⁵⁾

미곡의 가격을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미곡 상인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 정부가 임대료를 너무 강제적으로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집주인들로 하여금 가옥을 임대하지 않게끔 하여 결과적으로 임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에게 도리어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렴서론』에 의하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동력을 완전히 자유롭게 방치해도 안 되지만, 그것을 억압하려 해도 안 된다. 정부는 사람들의 이익 추구 심리를 이용해서, 관계된 모든 이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인위적 시장 artificial market”이 작동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한다.⁶⁶⁾

『주렴서론』은 기근 구제에서나 재정 운용에 있어서나 정부가 시장을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일관된 논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비슷한 분량과 편장 배치를 가진 원대의 『목민총고』나 명초의 『목민심감』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65) 『晝簾緒論』, 190쪽.

66) “인위적 시장”에 관한 논의는 18세기 기근 구제 방식에 관한 피에르-에티엔느 빌의 연구를 참조. Will, “Discussions about the Market-Place and the Market Principle in Eighteenth-Century Guangdong,”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 7 (1999), pp.352-53.

『목민충고』와 『목민심감』의 구성

『목민충고』 (1355)			『목민심감』 (1404)		
1	排命	임명을 받음	1	謹始	시작을 성실히
2	上任	취임에 즉해서	2	初政	처음에 해야 할 일
3	聽訟	송사 처리	3	正家	집안을 바로잡음
4	御下	아랫사람 부리기	4	莅事	업무에 임함
5	宣化	교화를 베품	5	宣化	교화를 베품
6	愼獄	옥사를 신중히	6	聽訟	송사 처리
7	救荒	기근구제	7	徵科	징세
8	事長	윗사람 섬기기	8	營繕	신축과 보수
9	受代	교대와 인수인계	9	事上	윗사람 섬기기
10	居閑	업무에서 떠날 때	10	馭下	아랫사람 부리기
			11	交人	교대와 인수인계
			12	備荒	재황에 대비하기
			13	善終	완전한 마무리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예시하듯 목민충고와 목민심감은 지방 정치에 관해 주립서론과는 대단히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그것이 국가 권력의 제한된 범위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에게 위의 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목민충고』의 경우 징세에 관한 독립된 편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원조가 현전으로 징수되던 하세(夏稅)를 사실상 없애고 세습적인 직업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세제(稅制)가 한층 단순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⁶⁷⁾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목민관을 위해 지어진 관감

67) 원대의 세제에 관해서는 劉光臨, 『制度與數據之間: 宋元明之際兩稅的去貨幣化進程-以溫州樂清爲例』, 鄧小南 主編, 『宋史研究諸層面』(北京: 中華書局, 2020), 443쪽, 450쪽, 456쪽. 본 글란에 의하면, 원조는 [남송대] “상조적 재정국가의 기

서가 지역 인구를 어떻게 분류하고 등록하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공지하고, 어떻게 세금을 거두어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고, 어떻게 납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랍다. 그리고 원대에도 술 전매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전 시대인 남송에서 술 전매가 어떻게 지방 재정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환기할 때, 지방 재정의 일환으로 술 전매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⁶⁸⁾

『목민충고』와 『목민심감』의 기근구제 항목이 공허하게 느껴질 만큼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도 주렴서론과는 판이한 대조를 보여준다. 예컨대 『목민충고』는 과거의 관료들이 취했던 구제의 사례를 열거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방법이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 채택되었으며 어떤 방법이 현재에 적용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⁶⁹⁾ 『목민심감』의 경우엔 더 추상적인데, 기근에 대비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서 그친다: 풍년일 때 여유분을 비축해 두고, 실제 상황을 지방관이 직접 나가 조사한 뒤에 사실에 바탕한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하라는 것 뿐이다.⁷⁰⁾ 언제 어떻게 비축을 하며,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외에 현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근 구제 방법에 대신해서, 두 관잠서는

능을 와해시키고, 공물수취라는 약탈적 형태에 중국을 종속시켰다.” 그의 “Modalities of the Fiscal State,” p.22을 참조.

68) 필자가 원대 경원로(慶元路)에서 편찬된 3종의 지방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 정부가 주고를 운영해서 행정에 자금을 대는 데에 쓴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양인민(楊印民)에 따르면, 원조는 사주에 대한 금령을 한층 강화시켰다. 「從權酷到散辦: 元代酒課征權政策的調适及走向」, 『中國社會經濟史研究』(2009.2), 36-37쪽을 참조. 술 전매는 원대 이후 폐기되었다. Peter Golas, “The Sung fiscal administration,” in John W. Chaffee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5, Part Two: Sung China, 960-127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187-88.

69) 『三事忠告』(사고전서본), 권2, 5上-6下.

70) 이 글의 집필 당시 필자가 참고할 수 있었던 『목민심감』은 하야시 히데이치(林秀一)에 의한 일본어 역주본이다. 『牧民心鑑』(東京: 明德出版社, 1973), 215-17쪽.

신령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한다. 『목민충고』의 “구황”편에는 ‘기도’에 관한 절이 별도로 존재하고, 다른 절에서는 지방관의 인품과 덕성이 어떻게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했는지 보여주는 과거의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⁷¹⁾ 이와 유사하게, 『목민심감』도 기근 구제에서 지현이 해야 할 첫번째 임무로 신령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을 제안한다. 지현이 전야의 실태로 조사하려 나가는 것은 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이다.⁷²⁾ 원대와 명초의 관잠서는 각종 행정적 과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지방관의 인품과 행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시기 지방 단위에서의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더욱 제한되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비하여 『주렴서론』이 제시하고 있는 기근 구제의 방책들은 동위(董煟, 1217년 사망)가 『구황활민서』에서 제안한 바 있는, 백성들의 이익 추구 행위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절을 가져오게 하고, 국가는 시장에 하나의 참여자로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공명하고 있다.⁷³⁾ 현 단위의 재정 관리와 구황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사적 이익 추구하고 시장 경제 매커니즘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는 주렴서론의 논리는 고도로 발달한 상업 시장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고, 기층 단위의 국가권력이 이를 이용하여 행정의 목표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71) 『三事忠告』, 권2, 7上-8上.

72) 『牧民心鑑』, 210쪽.

73) 동위의 사상에 대해서는, Robert Hymes, “Moral Duty and Self-Regulating Process in Southern Sung Views of Famine Relief,” in *Ordering the World* 가 상세하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는 Helen Dunstan, “A Different Trajectory: Market-Consciousness in Chinese Political Economy, 800–1800,” *Journal of Chinese History* (2020.4), pp.55–56.

이 글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비교적 단순하다. 구미의 중국사 연구에 있어 남송 시대는 심각한 국가기구의 “후퇴”를 노정하는 시기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형성에 관한 비교사적 또는 학제적 연구에서도 남송 시기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필자는 비교사적 학제적 연구에서의 남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제까지 과소평가되어 왔던 그 시기 정부 역량의 탄력성을 예시하고자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송대사 연구자들은 재정집권화로 상징되는, 세수에 목말라하는 수탈적인 국가를 묘사해 왔다.⁷⁴⁾ 이에 비해 영어권의 송대사 연구자들은 정규적인 양세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채, 지방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여러 분야를 점차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던 지방 유력층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정부를 보여주었다.⁷⁵⁾ 이 상반되는 남송대 정부상 사이에서, 필자를 포함한 극히 소수의 연구자만이 남송 정부가 지역 사회나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탐구해 왔을 뿐이다.

그것이 관료 기구의 제한된 효율성 때문이던 조세 저항 때문이던, 남송 정부가 양세를 정액에 맞추어 거두는 데에 고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왕조가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송 세수의 반 이상이 여러 전매나 상세 등 간접세를 통해 확보되었으며, 중앙의 관료들은 성장하는 경제를 신용화폐fiduciary currency를 통해 뒷받침할 만큼 정교하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왕조말까지 70여만에 이르는 대규모의 군대에 보급을 이어갔고, 현임관과 퇴임관을 막론하고 이전 시대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치의 기술을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더 거대한 제국과의 군사적 경쟁으로 인해 가능해졌거나 필요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⁷⁶⁾ 이

74) 대표적으로는 빠오 웨이민(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研究』(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75) 대표적으로는 Robert Hymes, *Statesmen and Gentlemen: The Elite of Fu-chou, Chiang-hsi, in Northern and Southern Sung*.

76) 이러한 상황은 주변 영토를 차례차례 정복해서 외환의 근원을 제거한 뒤엔 재정이나 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골몰할 이유가 줄어들었던 청 제국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점에 대해서는 Debin Ma and Jared Rubin, “The

러한 거시적인 특징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주렴서론이라는 13세기 중반에 탄생한 관감서는 현 단위의 지방 정부에서도 유연성 있는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당위”를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원대의 목민충고와 명초의 목민심감과의 비교는 남송대 기층 단위의 국가권력이 훨씬 더 섬세하고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남송대 국가의 역량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지만, 전근대 재정국가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은 여전히 흥미롭다. 남송의 인상적인 국가 역량은 왜 이후의 왕조에 의해 계승되거나 발전되지 않았을까? 원대에 일어난 변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계속되는 전쟁에 의해 촉발되는 국제적인 국가 형성state formation의 경쟁이 사라지게 된 것을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무언가도, 어쩌면 더욱 중요한 것이, 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송 중기부터 명초까지의 강남 지구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연구한 리차드 본 글란은 몽골 통치하에 강남 경제가 쇠퇴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논했다. 원조 통치 아래에서도 시장 경제가 계속 번성했음은 사실일 것이다.⁷⁷⁾ 그러나, 국가가 사회와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본 글란 본인이 지적하듯,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원 정부는 지역 사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고, 과거를 통해 최고의 인재를 관료로 선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⁷⁸⁾ 남부 지역에서의 통치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⁷⁹⁾ 원 정부는 시

Paradox of Power: Principal-agent problem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in Imperial China (and other absolutist regim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7 (2019), p.278.

77) von Glahn, “Towns and Temples: Urban Growth and Decline in the Yangzi Delta, 1100–1400,” in Paul Jakov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78) 과거제도가 1315년에 부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로도 전체 사회에 가진 영향력은 미미했다.

79) 이 점에 대해서는 오타기 마츠오(愛宕松男), 『元の江南支配と漢民族社會』, 『元

장을 내버려 두긴 했어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거시적 조절은 거의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층의 레벨에서도 국가의 재정적 행정적 권력은 남송대에 비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었다.⁸⁰⁾ 원은 이렇게 남송대 국가의 특징을 선명하게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대조점을 제공한 다. 따라서 그 세금 정책, 경세 사상,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적용되었는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주제어

남송(Southern Song), 국가 역량(State Capacity), 비교사(comparative history), 주림서론(Zhoulian xulun),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

<투고: 2025년 05월 09일, 심사종료: 2025년 06월 18일, 게재확정: 2025년 06월 27일>

朝史』(東京: 三一書房, 1988), 164-65쪽. 오타기가 말하는 “지배의 궤약성”은 피어 브리스(Peer Vries)의 “취약한 기반 국가 weak infrastructural state”와 유사하다. von Glahn, “Modalities of the Fiscal State,” p.8.

80) Lee, op.cit., pp.244-59.

/Abstract/

The State at the Grassroots: Approaching the State Capacity of the Southern Song through Local Officials' Handbooks

Lee, Sukhee

This paper examines the extractive, coercive, and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the Southern Song (1127–1279) to call attention to the poorly acknowledged significance of the period and its relevance to comparative studies. In so doing, this study first problematizes the place of the Southern Song in Chinese and comparative history, and then goes on to argue how local official's handbooks can provide insights into approaching state capacity. First by comparing the number of troops between the Northern Song and the Southern Song,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uthern Song state's coercive capacity did not diminish. By exploring the three important areas of indirect taxation during the Southern Song - commercial taxes, the incomes from the liquor monopoly, and the revenues from the salt monopoly, which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state revenues, I suggest that the extractive capacity of the Southern Song state was robust, which directly challenges our conventional image of it. As for its administrative capacity, I show that the Southern Song state was sophisticated enough to sustain an expanding economy with fiduciary currencies and that its officials, both incumbent and aspirant, were equipped with various technologies of government better than ever before. To show how this state capacity operated at the local level, I then move on to the comparison of local official's handbooks from the Southern Song, the Yuan, and the early Ming period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ir accounts of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famine relief. Zhoulian xulun, a Southern Song handbook, shows that local officials during the Southern Song were able to intervene in local society, by capitalizing on the flourishing commercial economy and market forces, in a far more active way than their Yuan and Ming successors. All of my findings 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tate capacity of the Southern Song was more powerful than previously argued and prompts us to reconsider the place of the Southern Song in Chinese history.

참고 문헌

1. 사료

『牧民心鑑』 (東京: 明德出版社, 1973).

『三事忠告』 사고전서본.

『葉適集』 (北京: 中華書局, 2013).

『齊東野語』 (北京: 中華書局, 1983).

『畫簾緒論』, 閔建飛 等 編, 『宋代官箴書五種』 소수. (北京: 中華書局, 2019).

2. 단행본

李華瑞. 『宋代酒의 生産和 征權』 (保定: 河北大學出版社, 1995).

島居一康. 『宋代稅政史의 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3).

愛宕松男, 『元朝史』 (東京: 三一書房, 1988).

Lee, Sukhee. *Negotiated Power: The State, Elites, and Local Governance in Twelfth-to Fourteenth Century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4).

Lo, Winston Wan. *The Life and Thought of Yeh Shih*.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74).

3. 논문

劉光臨. 「宋明間國民收入長期變動之蠡測」, 『清華大學學報』 (2009.3).

———. 「制度与數據之間: 宋元明之際兩稅의 去貨幣化進程-以溫州樂清爲例」, 鄧小南 主編, 『宋史研究諸層面』 (北京: 中華書局, 2020).

劉子健. 「略論南宋의 重要性」, 『兩宋史研究彙編』 (臺北: 聯經出版, 1987).

- 宮崎市定. 「賈似道略傳: 支那古今人物略傳」(二), 『東洋史研究』 6.3 (1941).
- 周藤吉之. 「南宋末の公田法」(上) 『東洋學報』 35 (1953).
- 八木充行. 「南宋地方財政の一検討」, 『集刊東洋學』44 (1980).
- 楊印民. 「從榷酤到散辦: 元代酒課征榷政策的調适及走向」,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9.2).
- 汪聖鐸. 「宋代轉般倉研究」, 『文史』 (2011.2).
- 程民生. 「宋代兵力部署考察」, 『史學集刊』 (2009.5).
- 小林晃. 「南宋晚期對兩淮防衛軍的駕馭体制-從浙西兩淮發運司到公田法」, 『過程·空間: 宋代政治史再探研』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7).
- 寺地遵. 「南宋末期、公田法の背景」, 『史學研究』 231 (2001).
- 方誠峰. 「南宋末年的公田法與道學家」, 『中華文史論叢』 (2023.1).
- Chien, Cecilia Lee-fang. *Salt and State: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Songshi Salt Monopoly Treatise*. (Ann Arbor: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04).
- Deng, Kent Gang. "Imperial China under the Song and late Qing," in Andrew Monson and Walter Scheidel eds., *Fiscal Regime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remodern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Dunstan, Helen. "A Different Trajectory: Market-Consciousness in Chinese Political Economy, 800–1800," *Journal of Chinese History* (2020).
- Hanson, Jonathan K. and Rachel Sigman. "Leviathan's Latent Dimensions: Measuring State Capacity for Comparative Political Research," *Journal of Politics* 83.4 (2021).
- Hui, Victoria Tin-bor. "How Tilly's State Formation Paradigm is Revolutionizing the Study of Chinese State-making," in Lars Bo Kaspersen and Jeppe Strandshjerg eds., *Does war make state?: investigations of Charles Tilly's historical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Kishimoto Mio. "Property Rights, Land, and Law in Imperial China," in Debin Ma and Jan Luiten van Zenden eds., *Law and Long-term Economic Change: A Eurasian Perspectiv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Lamouroux, Christian. “Fragmentation and Financial Recentralization: The Emergence of the Four General Commands (1127–1165),” in Hilde de Weerd and Franz-Julius Morche eds., *Political Communication in Chinese and European History, 800–1600*.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21).

Lamouroux, Christian and Richard von Glahn. “Public Finance,” in Debin Ma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China*,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Liu, William Guanglin. “The making of a fiscal state in Song China, 960–127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68.1 (2015).

Ma Debin. “Law and Economy in Traditional China: A ‘Legal Origin’ Perspective on the Great Divergence,” in *Law and Long-term Economic Change*.

Ma Debin and Jared Rubin, “The Paradox of Power: Principal-agent problems and administrative capacity in Imperial China (and other absolutist regim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7 (2019).

McKnight, Brian E. “Patterns of Law and Patterns of Thought: Notes on the Specifications (shih) of Sung Chin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2.2 (1982).

Miyazaki Ichisada.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uring the Sung Dynasty,” in Jerome Alan Cohen, R. Randle Edwards, and Fu-mei Chang Chen eds., *Essays on China’s Legal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omeranz, Kenneth. “Ten Years After: Responses and Reconsiderations,” *Historically Speaking* 12.4 (2011).

Skocpol, Theda.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Tilly, Charles.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In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 von Glahn, Richard. "Community and Welfare: Chu Hsi's Community Granary in Theory and Practice," in Robert P. Hymes and Conrad Schirokauer eds., *Ordering the World: Approaches to State and Society in Sung Dynast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_____. "Towns and Temples: Urban Growth and Decline in the Yangzi Delta, 1100–1400," in Paul Jakov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 _____. *The Economic History of China: From Antiquity to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_____. "Paper money in Song-Yuan China," in R.J. van der Spek and Bas van Leeuwen eds., *Money, Currency and Crisis: In Search of Trust, 2000 BC to AD 2000* (London: Taylor and Francis, 2018).
- _____. "Modalities of the Fiscal State in Imperial China," *Journal of Chinese History* (2020.4).
- Wang Yuhua. "China's State Development in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APSA-CP Newsletter* XXIX.2 (2019).
- Will, Pierre-Étienne. "Discussions about the Market-Place and the Market Principle in Eighteenth-Century Guangdong," 『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 7 (1999).
- _____. "Officials and Money in Late Imperial China: State Finances, Private Expectations, and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 in Emmanuel Kreike and William Chester Jordan eds., *Corrupt Histories. Rocheste*,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4).

피타고라스 정리와 서학중원설에 대한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의 견해

방 인*

- | | |
|---------------------------------|-----------------------------------|
| I. 서론 | IV.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도미니크 파르
냉의 견해 |
| II. 서학중원설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 | V. 결론 |
| III.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조아킴 부베의
견해 | |

초록

본 논문은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동서양 학문 교류를 촉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타고라스 정리가 단순한 수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조명한다. 제2장에서는 서학중원설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를 서술하였는데, 특히 강희제가 1704년(강희43년) 10월 24일(양력: 1704년 11월 21일)에 반포한 『어제삼각형추산법론(御制三角形推算法論)』이 서학중원설의 전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3장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조아킴 부베의 견해』에서는 조아킴 부베가 중국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에서는 라이프니츠와의 왕복서신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 필사본(Ms. 1173),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중국의 고대 신앙과 성경 및 기독교 전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고록)을 중심으로 부베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4

* 경북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bangin@knu.ac.kr

장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도미니크 파르냉의 견해』에서는 도미니크 파르냉이 서학중원설에 대해 취한 관점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필자의 논문은 서학중원설의 전개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하였던 프랑스 국적의 예수회 신부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가졌던 관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조아킴 부베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해 매우 상세한 이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학중원설의 전개과정에서 프랑스 출신 예수회 신부들의 역할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서론

서양철학사에서 피타고라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시초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우주와 인간의 삶을 수학적 질서와 연결지어 이해하려는 철학적 접근을 한 최초의 사상가로 간주된다. 피타고라스의 사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서양 철학과 수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으로,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정리이다. 이 정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서양 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7세기와 18세기에 중국에 파견되어 서양 과학과 철학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양 수학의 상징적인 성과 중 하나인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국에 소개하며 동서양 학문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소개된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국의 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서학중원설을 촉발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명청대의 중국 학자들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주비산경』에 나오는 구고법(勾股法)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다. 구고법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관계를 다룬 법칙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러한 발견으로 말미암아 서양 과학 지식이 독창적이고 우월하다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 관점은 도전받게 되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파스칼 삼각형 등 서구 기하학의 핵심적 내용들이 본래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서학중원설이라고 한다. 서학중원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전해준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거꾸로 전파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서구과학의 독창적 성과라는 도미니크 파르냉과 같은 예수회 선교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학계에서는 서학중원설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대부분 중국의 지식인들의 반응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서학중원설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또 다른 축인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서양 선교사들 중에

서도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은 이러한 학문적 논의에 깊이 관여하며, 동서양 학문 교류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 최근에 한기(韓琦)는 「고대 수학 문헌에 대한 재고: 명청대 학자들의 『주비산경』에 대한 비판적 성찰 (*Rethinking the Ancient Mathematical Text: Ming-Qing Scholar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Gnomon of the Zhou Dynasty*)」¹⁾이라는 논문에서 예수회 신부 도미니크 파르냉이 서학중원설에 대해 취한 관점을 소개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이러한 빈 공간을 메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파르냉 이외에도 중국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에 역할을 한 다른 예수회 선교사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조아킴 부베의 사례는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동서양 학문 교류를 촉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피타고라스 정리가 단순한 수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제2장에서는 서학중원설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를 서술하였는데, 특히 강희제가 1704년(강희43년) 10월 24일(양력: 1704년 11월 21일)에 반포한 『어제삼각형추산법론(御制三角形推算法論)』이 서학중원설의 전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3장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조아킴 부베의 견해」에서는 조아킴 부베가 중국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통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라이프니츠와의 왕복서신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 필사본(Ms. 1173),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중국의 고대 신앙과 성경 및 기독교 전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고록)을 중심으로 부베의 피타

1) HAN Qi, “Rethinking the Ancient Mathematical Text: Ming-Qing Scholar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Gnomon of the Zhou Dynasty”, Agathe Keller·Karine Chemla ed, *Shaping the Sciences of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 (Springer, 2024).

고라스 정리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4장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도미니크 파르냉의 견해」에서는 도미니크 파르냉이 서학중원설에 대해 취한 관점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필자의 논문은 서학중원설의 전개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하였던 프랑스 국적의 예수회 신부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가졌던 관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조아킴 부베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해 매우 상세한 이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학중원설의 전개과정에서 예수회 신부들의 역할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서학중원설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명대에 입국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된 서양수학에 대한 정보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큰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1607년에 마테오 리치(1552-1610)는 서광계(徐光啓, 1562-1633)와 함께 크리스토퍼 클라비우스(Christopher Clavius, 1538-1612)가 저술한 유클리드의 『원론』(Elementorum Libri XV)(1574)의 15권 중에서 앞의 6권을 번역하여 『기하원본(幾何原本)』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제1권의 47번째 명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의 정사각형은 직각을 포함한 두 변의 정사각형의 합(합)과 같다”로 제시되어 있다. 서광계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주비산경』의 구고법(句股法) 사이의 유사성에 관해 언급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서 밑변(Base)·높이(Perpendicular)·빗변(Hypotenuse)에 상응하는 『주비산경』의 용어는 구(句)·고(股)·현(弦)이다.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가 『기하원본』을 번역할 때, 구(句)·고(股)·현(弦)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주비산경』에 나오는 용어를 빌려온 것이다. 서광계는 『기하원본』을 번역한 이

후 1609년에 『구고의(勾股義)』를 출판하였다.²⁾ 서광계는 전통 중국 수학에는 엄격한 증명이 전혀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유클리드에 의지하여 치명적인 결함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³⁾ 서광계는 『구고의』의 「서(序)」에서 “『주비산경』의 수장(首章)은 『구장산술』의 구고장(句股章)의 비조(鼻祖)가 된다(周髀首章, 九章句股之鼻祖)”고 극찬하였다.⁴⁾ 그는 서학증원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의 서학증원설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서학증원설은 황종희(黃宗羲, 1610-1695), 방이지(方以智, 1611-1671), 왕석천(王錫闡, 1628-1682), 왕부지(王夫之, 1619년-1692), 매문정(梅文鼎, 1633-1721) 등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방이지는 서양의 역법이 비록 정밀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중국 고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고, 왕석천도 서양 역법은 “모두 중국의 옛 법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悉具舊法之中)”을 창신(創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⁵⁾ 반면에 매문정은 왕석천의 저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서학을 폄하하는 견해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매문정은 시헌력(時憲曆)을 최고의 역법으로 평가했으며, 서광계와 예수회 선교사들의 중서융합 이론을 지지했다. 그는 『기하원본』을 면밀히 연구한 후 『기하통해(幾何通解)』를 썼다.⁶⁾ 그리고 『기하통해』의 제목 옆에 “구고로써 『기하원본』의 근본을 해석함(以句股解幾何原本之根)”이라는 부제(副題)를 달았다. 실제로 이 저서의 집필 의도는 고구(句股) 이론을 적용하면

2) HAN Qi, *Rethinking the Ancient Mathematical Text*. Shaping the Sciences of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 Agathe Keller and Karine Chemla ed, (Springer 2024), p.123.

3) OGAWA Masahiro, "Xu Guangqi and the Chinese Translation of Euclid's Elements : Some Problems of Terminology and their Cultural Context", *Journal of Hermeneutic Study and Education of Textual Configuration(HERSETEC)*, 5(1) (2011), p.31.

4) “周髀首章, 九章句股之鼻祖”(『徐光啓全集』, 第五冊, 「句股義序」, 上海古籍出版社, 2020, 56쪽).

5) 임종태, 「이방의 과학과 고전적 전통-17세기 서구과학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그 변천」, 『동양철학』 제22집 (2004), 210쪽.

6) 梅文鼎 撰, 『幾何通解』, 『梅氏叢書輯要』, 卷十八. 光緒2, (1876).

유클리드 기하학의 16가지 명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데 있었다. 그는 『기하통해』의 서두(序頭)에서 “『기하원본』에서는 구고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이론은 구고와 다름없다(幾何不言句股, 然, 其理並句股也)”고 말했다. 매문정의 태도는 전통 중국 수학에는 엄격한 증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던 서광계의 태도와는 상반된다.⁷⁾ 매문정은 『역학의문(曆學疑問)』과 『역학의문보(曆學疑問補)』⁸⁾에서 서주(西周)시대 말기에 천문역산(天文曆算)을 담당하던 주인(疇人)의 자제들이 흩어져서 고대 중국 성인들의 문헌과 의기(儀器)들을 가지고 이적(夷狄)의 땅으로 갔다고 한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⁹⁾을 근거로 강희제의 주장을 뒷받침했다.¹⁰⁾ 매문정의 서학중원설은 대진(戴震, 1724-1777), 전대흔(錢大昕, 1728-1804), 완원(阮元, 1764-1849) 등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매문정의 뒤를 따라 서양식식의 중국기원설에 대한 확장된 사례를 찾으려고 시도했다.¹¹⁾ 매문정은 강희제의 신뢰를 받았으며, 강희제가 1704년(강희43년) 10월 24일(양력: 1704년 11월 21일)에 『어제삼각형추산법론(御制三角形推算法論)』을 반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¹²⁾ 강희제는 이 글에서 역법이 원래 중국에서 나와서 극서(極西)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6백여자에 달하는데, 다소 긴 문장이지만 서학중원설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헌이므로 여기서 전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맹자가 말하기를, “규(規)와 구(矩)는 사각형과 원형의 완전함이요, 성인(聖人)은 인간 윤리의 완전함이다.”¹³⁾ 규(規)·구(矩)·방(方)·원(圓)은 수학의 근

7) OGAWA Masahiro, *Xu Guangqi and the Chinese Translation of Euclid's Elements*, Journal of Hermeneutic Study and Education of Textual Configuration(HERSETEC), 5(1) (2011), p.31.

8) 梅文鼎, 『歷學疑問補』 卷1, 「論中土歷法得傳入西國之由」.

9) “幽厲之後, 周室微, 陪臣執政, 史不記時, 君不告朔, 故疇人子弟分散, 或在諸夏, 或在夷狄. 是以此祿祥廢而不統.”(『史記』, 『曆書』).

10) 梅文鼎, 『歷學疑問補』 卷1, 「論中土歷法得傳入西國之由」.

11) 함영대, 「18~19세기 西學中源論의 전개와 그 함의」, 『漢文古典研究』, 第40輯 (2020), 248쪽.

12) 安大玉, 「周髀算經과 西學中原說」, 『韓國實學研究』 제18권 (2009), 713쪽.

본이며, 태극(太極)과 양의(兩儀)의 변화의 기초임을 더욱 알 수 있다. 하(夏)·상(商)·주(周) 삼대(三代)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들은 해와 달의 차고 기울어짐과 칠정(七政)¹⁴⁾의 불규칙성을 고찰하였으며, 조수(鳥獸)와 초목(草木)의 계절적 변화를 살폈다. 또한 윤달을 세우고 사시(四時)를 정함으로써 국가의 모든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 번영하게 되었으니(庶績咸熙)¹⁵⁾ 이것이 어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겠는가? 옛 사람들은 선기(璿璣)¹⁶⁾로써 칠정(七政)을 측정하였고, 측량함으로써 남북(南北)의 방향을 정하며, 동지(冬至)와 하지(夏至)를 관찰함으로 태양의 회전을 밝혔으며,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였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의 교식(交食)¹⁷⁾, 능범(凌犯)¹⁸⁾, 그리고 입차(入差)¹⁹⁾, 청기(淸氣)와 몽기(濛氣)²⁰⁾의 지기(地氣)에 대해 연구하였다. 만약

-
- 13) 『맹자』 「이루장(離婁章)」에 나오는 구절이다. 맹자가 말했다. “컴퍼스(規: compass)와 직각자(矩: square)는 원과 사각형을 그리는 데 가장 완벽한 도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인은 인간 사회의 윤리를 완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이다.”(孟子曰, “規矩, 方員之至也。聖人, 人倫之至也; 離婁章句 上).
- 14) 칠정(七政): 일월오성(日月五星), 즉 해, 달, 목성(木星), 화성(火星), 토성(土星), 금성(金星), 수성(水星)의 5개의 별을 가리킨다.
- 15) 서적함희(庶績咸熙): 많은 공적(功績)이 모두 흥성하게 일어났음을 가리키며, 뛰어난 정치적 업적을 묘사하는 말이다. 『상서(尙書)』의 「우서(虞書)요전(堯典)」에 나온다. “제요(帝堯)가 말씀하시기를 “아! 너희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야! 기(基)는 366일이니, 윤달을 사용하여야 사시(四時)를 정하여, 해를 이루어 백공(百公)을 다스려서 모든 공적이 다 빛나게 될 것이다.”하셨다.(帝曰: “咨! 汝羲暨和. 基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 成歲. 允釐百工, 庶績咸熙.”)(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전통문화연구회, 2002. 26쪽).
- 16) 선기(璇玑): 고대 동양 천문학에서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관찰하기 위한 개념 또는 기구를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혼천의(渾天儀)가 선기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 17) 교식(交食): 천문학에서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교(交)’는 ‘서로 교차한다’는 의미이며, ‘식(食)’은 ‘가리다’ 또는 ‘어두워지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식은 천체가 서로 겹치거나 가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 18) 능범(凌犯): 천문학에서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로지르거나 지나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달이나 행성이 어떤 별이나 천체의 앞을 지나가는 경우, 혹은 행성이 황도(黃道)를 넘어서는 경우나 어떤 천체가 특정 경계를 침범하는 움직임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 이와 비슷하게 엄폐(掩蔽, Occultation) 현상과 연관될 수 있으나, 엄폐는 천체가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를 뜻하고, 능범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 19) 입차(入差): 관측된 수치와 이론적 수치 사이의 차이를 가리킨다.
- 20) 몽기(濛氣): 안개·아지랑이 등의 자욱하게 피어 오르는 기(氣)를 가리킨다.

측량이 없었다면, 이를 상세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측량이 있더라도 계산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원(圓)으로 여러 각을 포함하고(圓容衆角)²¹⁾, 정사각형에 여러 각을 포함시켰으며(衆角容方)²²⁾, 정사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의 구(勾)와 고(股)를 포함시켰다.²³⁾ “구(勾)가 3이고, 고(股)가 4이며, 현(絃)이 5이다”라는 관계는 직각삼각형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고, 이는 한 각이 90도이고,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이며, (세 각의 도수를 합치면) 반원(半圓)인 180도를 이룬다. 만약 직각이 아니어서, 90도보다 크거나 작다면, 구고(勾股)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²⁴⁾ 설령 일부터 직선 도형으로 만들어 우연히 직각이 되더라도 이것은 수학의 심오한 경지(堂奧)가 아니므로 논할 가치가 없다.²⁵⁾ 고대인들이 “여러 각이 하나의 원으로 귀결됨(衆角歸圓)”²⁶⁾이라는 원리를 이해하

-
- 21) “圓容衆角(圓容衆角)”: “원은 여러 각(角)을 포괄한다”는 뜻이다. 원을 그리면 그 안에 여러 개의 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각 점을 서로 연결하면 무수히 많은 각도를 만들 수 있다.
- 22) “衆角容方(衆角容方)”: 정사각형은 네 개의 직각(90도)으로 구성된 도형이다. 이 네 각은 정사각형의 네 꼭짓점에서 만나는 각이다. 이 각들도 모두 ‘각’이므로, 정사각형은 여러 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사각형 내부에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같은 다른 도형들을 배치할 수 있다.
- 23) “자방이삼각구고재기중의(自方而三角勾股在其中矣)”: “정사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의 구(勾)와 고(股)를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직각삼각형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정사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각삼각형의 빗변(弦)과 밑변(勾), 높이(股) 사이의 관계는 정사각형을 통해 시각적으로나 계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직각삼각형의 빗변(현弦)이 될 수 있다.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나누면 두 개의 동일한 직각삼각형이 생기며, 이때 밑변(勾)과 높이(股)는 정사각형의 변 길이에 따라 정의된다.
- 24) 만약 직각이 아니라면 ‘구’와 ‘고’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 25) 여기서 강희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이 90도일 때만 성립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이 90도라면 나머지 두 각의 합은 90도가 되며, 세 각의 총합은 반원(半圓)의 각도인 180도와 같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만약 삼각형의 각이 직각이 아니고, 90도보다 크거나 작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데, 그것은 삼각형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삼각형을 일부터 조작하거나 맞춰서 직각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수학적 원리가 아닌데, 이런 방식은 단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 수학적으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 강희제는 이 설명을 통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라는 특정 조건에서만 정확히 적용되며, 억지로 만들어낸 경우는 진정한 수학적 원리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 26) “衆角歸圓(衆角歸圓)”: 달력의 근본 원리는 천체의 움직임(원형 궤도)을 관찰

지 못했다면, 역법의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며, (천문학적 관찰과 계산의 기반이 되는) 팔선(八線)²⁷⁾의 구조도 또한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모두 당시에 사람들이 단순함을 따르고 복잡함을 두려워했으며, 공명과 출세를 중시하고 하늘의 뜻을 공경하며 자연의 시기(時期)를 따르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고 묻지 않아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강희제 초기에는 역법(曆法) 문제로 인해 서로 논쟁과 송사(訟事)가 벌어져, 서로 혈뜯고 고발이 이어져서 마침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 죽은 자의 수(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강희제 7년(1668년)에 윤달을 세우고 신력(新曆)을 반포한 후에 흠천감(欽天監)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여 12월에 한 번 더 윤달을 추가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논란이 일어나 사람들이 반발하였고, “달력은 고대로부터 있었지만, 한 해에 윤달을 두 번 둔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러 왕(王)과 구경(九卿)이 다시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궁중에는 역법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다. 짐(朕)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 속에 통한(痛恨)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마친 후 남은 시간에 천문과 달력 연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과 계절을 계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중각귀원’은 복잡한 각도와 관측이 결국 하나의 중심적 원리(즉, 원형 운동)에 의해 통합됨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 27) 팔선(八線): 문자 그대로 ‘여덟 개의 선’을 의미하며, 하늘을 여덟 방향으로 나누거나 특정 선으로 구분하여 천문 현상과 관련된 기준점으로 삼는 개념이다. 고대 중국의 천문학에서 팔선은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계산하거나 관측하기 위해 특정한 기준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고대인들은 팔선을 기준으로 하여 천체의 위치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계절, 시간, 방향 등을 결정했으며, 이러한 개념은 농업, 의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팔선은 대체로 천구(天球) 또는 관측상의 지평선을 중심으로 정의되며, 대략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팔선은 하늘을 여덟 방향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동(東), 서(西), 남(南), 북(北), 동북(東北), 동남(東南), 서북(西北), 서남(西南)으로 구획된 선으로서 이를 통해 천체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기록하거나 계산할 때 활용되었다. 둘째, 팔선은 천구를 기반으로 한 특정 기준선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는 천문 관측에서 중요한 선으로 황도(黃道), 적도(赤道), 백도(白道), 북극, 남극, 춘분점(春分點), 추분점(秋分點) 등이 포함된다.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수학이 도입되면서, 팔선은 구면삼각법(spherical trigonometry)에 의해 연구되었다. 구면삼각법은 서양 기하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구면삼각법의 삼각함수는 평면삼각법과 구별된다. 구체 위에 점 세 개를 찍으면 구면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구면삼각법이란 그 변과 각의 관계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가리킨다. 『신법산서(新法算書)』(1592)와 『수리정운(數理精蘊)』에서는 구면삼각법의 삼각함수 값이 팔선표(八線表)로 정리되어 있다.

에 몰두하였다. 2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역법(曆法)의 대강을 이해하여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역법을 말하는 자들이 고법(古法)과 신법(新法)의 차이를 말하였으나, 그 역법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였다. 역법은 원래 중국으로부터 나와서 극서(極西)로 간 것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측량과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매년 수정과 개선을 거듭하며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명칭과 조목(條目)이 다를지라도 달력의 근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법의 정밀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정말로 관련된 것은 해마다 수정과 계산을 엄밀하게 하고, 방(方)과 원(圓) 및 여러 각도를 추산하며, 경도(經度)와 위도(緯度)의 이합(離合)²⁸⁾을 측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법(曆法)을 실행한다면, 천 년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폐단이 생기겠는가? 삼각법은 원과 사각형 및 여러 각(角)의 관계를 지극히 정밀하게 밝히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버리고 다른 방식을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이며, 역법은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당(唐)나라의 일행(一行, 683-727)과 원(元)나라의 곽수경(郭守敬, 1231-1316)은 회회력(回回曆)을 빌려와서 약간 윤색(潤色)하여 일시적으로 맞추었을 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산술(算術)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의견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역법은 측량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추산(推算)으로 완성된다. 역법을 백성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일식이나 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에 맞추어 검증한다면 어떻게 여러 사람들(衆人)의 관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²⁹⁾

28) 경도(經度)와 위도(緯度)의 이합(離合)이라는 표현은 주로 천문학에서 천체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개념은 천체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라는 좌표 체계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특정 천문현상이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 활용된다. ‘이(離)’는 천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특정 위치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가리키며, ‘합(合)’은 천체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특정 위치에서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9) “孟子曰：規矩，方圓之至，聖人，人倫之至。益見規矩方圓乃數學之根本，太極兩儀之變化也。三代以上，人心尚實，有學必精，所以考定日月之盈縮，七政之參差，鳥獸草木之應侯，又以閏月定四時，庶績咸熙者，豈偶然哉？古人璣璣齊七政，表度准南北，察兩至明太陽之回轉，識二分爲寒暑之變遷，日月星辰交食，凌犯，入差，清濛地氣之考，苟非測量，難得其詳。有測量而無推算，勢不可成。所以古人以圓容衆角，衆角容方，自方而三角勾股在其中矣。勾三股四絃五者，以直角而論，乃一角九十度，並兩角又九十度，卽成半圓一百八十度也。若非直角出入九十度內外者，勾股所不能推，雖分作直形，湊合偶成，亦非數家之堂奧，何足論哉！上古若無衆角歸圓，何能得曆之根，而成八線之表？皆因習俗就易畏繁，以功名仕宦爲重，敬天授時爲輕，故置而不問，以至如此。康熙初年間，以曆法爭訟，互爲訐告至於死者，不知其幾。康熙七年閏月，頒曆之後，欽天監再題，欲加十二月又閏，因而衆論紛紛，人心不服，

『삼각형추산법론』은 강희제가 재위(在位) 시에 간행된 『어제문집(御制文集)』 제3집 권19와 청말에 편찬된 『강희정요(康熙政要)』에 수록되어 있다.³⁰⁾ 『삼각형추산법론』에는 만문본(滿文本)과 한문본(漢文本)과 만한합벽본(滿漢合璧本)이 있다. 한문본은 강희 43년 10월 24일(1704년 11월 21일)에 공개되었고, 만주어 번역본도 같은 날 번역되었다. 만문본은 만주족 출신 학자 화소(和素, 1652-1718)³¹⁾에 의해 번역과 교정이 이루어졌으며, 한문본은 상대적으로 짧아 600여자에 불과하다. 이 글의 요지는 서양 역법의 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것을 잃지 않고 잘 발전시킨데 반해서 중국인들은 과거의 훌륭한 전통을 상실했다는데 있다. 이것이 이른바 서학중원설이다. 강희제가 주장한 서학중원설은 역법(曆法)은 원래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극서(極西)로 전파된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서양삼각산의 문제는 서학중원설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알지브라(algebra)’도 역시 서학중원설과 관련이 있다. 강희제는 강희 50년(1711) 정월에 “산법(算法)의 원리는 모두 『역경』에서 나온 것이다. 서양의 산법도 역시 좋기는 하지만, 원래 그것은 중국의 산법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서양사람들은 산법을 ‘아이주파이(阿爾朱巴爾)’라고 부르는

皆謂從古有曆以來，未聞一歲中再閏。因而諸王九卿等再三考察，舉朝無有知曆者。朕目睹其事，心中痛恨，凡萬幾餘暇即專志於天文曆法，二十餘載，所以略知其大概，不至於混亂也。論者以古法今法之不同，深不知曆，曆原出自中國，傳及於極西，西人守之不失，測量不已，歲歲增修，所以得其差分之疏密，非有他術也。其名色條目雖有不同，實無關於曆原，所系於歲修察考之密，方圓衆角之推算，測量經緯之離合，則曆法行之千年，何弊之有？三角者，圓方衆角之盡精微易曉，舍此而他求，必至混亂，曆不可成矣。唐一行，元郭守敬，不過借回回曆少加潤色，偶合一時而已，亦不能行久。可見出於意見，非有根基於算術也。曆本於測量，終於推算，授之於民時，驗之於交食，豈能逃於衆目之所觀乎？”(『三角形推算法論』, 『康熙禦制文集』, 卷19)

30) 王揚宗, 『康熙三角形推算法論簡論』, 『或問』 12 (2006), 117-123쪽.

31) 화소(和素, 1652-1718): 자는 존재(存齋) 또는 순덕(純德)이며, 완안씨(完顏氏)로 청나라 강희 연간의 만주 양황기(鑲黃旗) 출신이다. 그는 만문과 한문에 모두 능통하였으며 번역에 뛰어났고, 청대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만주족 번역가로 평가받았다.

데, 그것은 동방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³²⁾ 여기서 ‘아이주과이’라고 한 것은 ‘알지브라(algebra)’의 음역(音譯)으로서 대수학(代數學)을 가리킨다. ‘알지브라’라는 명칭은 825년 아랍의 수학자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콰리즈미(Muhammad ibn Musa al-Khwarizmi, 780-850)의 저서 『알자브르 왈무카발라(al-jabr wal-muqābala: 완성과 평형에 의한 계산의 간결한 책)』에서 유래했다.³³⁾ 알콰리즈미의 저서는 12세기에 라틴어로 “Liber algebrae et almucabala(완성과 평형에 의한 계산의 책)”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이로부터 “알지브라(algebra)”라는 말이 나왔다. 강희 42년(1703)에 제르비용(Jean-François Gerbillon, 張誠, 1654-1707), 부베, 앙트완 토마(Antoine Thomas, 安多, 1644-1709), 도미니크 파르낭 등이 강희제에게 서양수학을 가르칠 때에 대수학도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³⁴⁾ 그런데 서양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아랍을 동방이라고 한 것이지, 강희제가 생각했듯이 중국에서 발원한 것은 아니다.

서학중원설에 관한 강희제의 견해는 매문정(梅文鼎)의 손자 매곡성(梅穀成, 1681-1764)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매곡성은 『수리정온(數理精蘊)』(1723)³⁵⁾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32) “夫算法之理，皆出于『易經』，西方算法亦善，原系中國算法，彼稱爲‘阿爾朱巴爾’者，傳自東方之謂也。”((清)蔣良駒 撰，『東華錄』，卷二十一，中華書局，1980，348쪽).

33) 여기서 “al-jabr”는 “보완, 복원” 등의 의미를 가지며 “알지브라(algebra)”의 어원이 되었다.

34) 오순방, 『명말청초 천주교 예수회 선교사의 천주교 중문소설과 색은과 문헌 연구』, (서울: 숭실대 출판부, 2019), 165쪽.

35) 수리정온(數理精蘊): 총 53권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초등 수학 총서로 정식 명칭은 ‘어제수리정온(御製數理精蘊)’이며, 통상 ‘수리정온’으로 약칭된다. 이 총서는 청 강희제가 명령하여 1713년(청 강희 52)에 착수되어 진후요(陳厚耀), 하국종(何國宗), 명안도(明安圖), 매각성(梅穀成) 등이 완성하였다. 강희제 말년인 1722년에 완성된 뒤 『율력연원』에 포함되었으며 강희제 사후인 옹정제 원년 1723년 정식으로 간행되었다. 이 총서에서는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기하원본』, 명 말에 탕약망과 서광계 등이 완성한 『숭정역서(崇禎曆書)』 등 한역된 서양 수학 이론을 중국 전통 수학과 결합하여 발전시켰다.

우리 청조가 건국한 이후로 먼 나라 사람들이 중화문명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아담 샬, 페르비스트, 앙투안 토마, 그리말디 등이 잇따라 역법(曆法)을 다스리고 산학(算學)을 밝히면서, 도수(度數)의 이치를 점차로 자세히 갖추어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근원을 물어보면, 모두 본래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³⁶⁾

매곡성은 『명사(明史)』의 「역지(曆志)」에서 서학중원설을 다시 거론하였다.³⁷⁾

서양의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온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구라파인(歐羅巴人)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역법 체계는 이슬람(回回)들의 역법과 동일하지만, 더 정확했다. 과거 여러 왕조의 역사적 기록을 검토해 보면, 역법에 대해 아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서역(西域)에서 왔으며, 동쪽, 남쪽, 북쪽 지역에서 온 역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당(唐)의 『구집율(九執律)』, 원(元)의 『만년력(萬年曆)』, 홍무(洪武) 연간³⁸⁾에 번역된 『회회력(回回曆)』은 모두 서역(西域)에서 온 것이다.³⁹⁾ 요임금이 회씨(義氏)의 회중(義仲), 회숙(義叔) 형제와 화씨(和氏)⁴⁰⁾의 화중(和仲), 화숙(和叔) 형제에게 각각 춘하추동의 사계절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런데 회중(義仲), 회숙(義叔), 화숙(和叔)에게는 각각 동쪽, 남쪽, 북쪽을 관장하도록 하고, 동쪽으로는 우이(隅夷)⁴¹⁾,

36) 我朝定鼎以來，遠人慕化，至者漸多。有湯若望、南懷仁、安多、閏明我，相繼治理曆法，闡明算學，而度數之理，漸加詳備。然詢其所自，皆云，本中土所流傳。『數理精蘊』。

37) Qiong Zhang, *Making the New World Their Own - Chinese Encounters with Jesuit Science in the Age of Discovery*, (Leiden&Boston: Brill, 2015). p.200.

38) 홍무(洪武):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주원장(朱元璋)의 즉위 이후의 연호이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창건한 해는 1368년이며, 1398년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홍무 연間は 1368년에서 1398년까지를 가리킨다.

39) 구집율(九執律)은 당(唐)나라 때 서역에서 전해진 천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된 역법이다. 구집율은 특히 중앙아시아와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년력(萬年曆)은 원(元)나라에서 중앙아시아의 천문학을 기반으로 제작된 만년력이며, 역시 서역에서 유입되었다. 회회력(回回曆)은 홍무(洪武)연간에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적 지식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이슬람 달력이다. 회회력은 서역의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중국에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40) 회화(義和): 『상서(尙書)』 「요전(堯典)」에 따르면, 중국 고대의 요제(堯帝) 때에 회씨(義氏)는 해를 맡은 관직이었고, 화씨(和氏)는 달을 맡은 관직이었다.

남쪽으로는 교지(交趾)⁴²⁾, 북쪽으로는 삭방(朔方)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화중(和仲)에게는 서쪽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특별한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곧 중국 문명의 영향이 그 당시 매우 서쪽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주나라 말기에 이르러 주인(疇人)의 자제(子弟)들이 모두 흩어졌다. 서역(西域)과 서수(西陲)⁴³⁾는 중국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남쪽과 동쪽은 바다에 의해 차단되었고, 북쪽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이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직 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책과 천문도구들을 가지고 갔다. 구라파는 무슬림 국가들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그들의 풍습은 이슬람교도들과 유사하지만,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애착, 그리고 경쟁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이슬람교도들을 능가했다. 따라서 구라파인들의 역법 체계는 원래 이슬람교도의 것과 같은 출처에서 기원했지만, 그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를 조정하여, 결국 이슬람교도들이 구라파인들의 정확성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구라파인들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희씨(羲氏)와 화씨(和氏) 형제들의 천문학 기록이 더 이상 중국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 남아 있던 우리의 고대 천문학 서적은 『주비산경』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라파인들에게) 배움을 구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유용한 것들을 받아들여, 천 년 넘게 잃어버린 전통을 다시 되살리고자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공자(孔子)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 “제사의 예법이 수도에서 사라지면, 변방의 사람들에게서 그 지식을 찾아야 한다.”⁴⁴⁾

매곡성의 서학중원설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문헌은 『주비산경』이다. 『

41) 우이(隅夷): 고대 신화 전설에서 해가 뜨는 곳(陽谷)을 가리킨다. 이후에 조선과 일본 등 동방의 나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쓰였다.

42) 교지(交趾): 지금의 베트남 지역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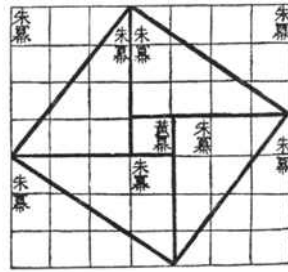
43) 서수(西陲): 서쪽 부근. 또는 서쪽의 변두리를 뜻한다. 여기에서는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4) “西洋人之來中土者，皆自稱歐羅巴人。其曆法與回回同，而加精密。嘗考前代，遠國之人言曆法者多在西域，而東南北無聞。唐之『九執律』，元之『萬年曆』，及洪武間所譯『回回曆』，皆西域也。蓋堯命羲和仲叔分宅四方，羲仲、羲叔、和叔則以隅夷、南交、朔方爲限，獨和仲但曰：『宅西』，而不限以地，豈非當時聲教之西被者遠哉。至於周末，疇人子弟分散。西域、天方諸國，接壤西陲，百若東南有大海之阻，又無極北嚴寒之畏，則抱書器而西征，勢固便也。歐羅巴在回回西，其風俗相類，而好奇喜新競勝之習過之。故則曆法與回回同源，而世世增修，遂非回回所及，亦其好勝之慾爲之也。羲和既失其守，古籍之可見者，僅有『周髀』範圍，亦可知其源流之所自矣。夫旁搜採以續千百年之墜緒，亦禮秀求野之意也，故備論也。”(『明史』，卷31，志第七，曆)

『주비산경』에서는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구(勾)라고 하고, 높이를 고(股)라고 하고, 빗변을 현(弦)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勾)의 제곱과 고(股)의 제곱의 합은 현(弦)의 제곱이다(勾股冪合以成弦冪)”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강희제가 “구(勾)가 3이고, 고(股)가 4이며, 현(絃)이 5이다”라는 관계를 언급한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직각삼각형의 3:4:5의 비례에 해당한다.



勾股冪合以成弦冪



서학중원설의 지지자들은 『주비산경』은 상대 말기에서 주대 초기(BC.1100~BC.1000)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주비산경』에서는 상(商)의 대부(大夫) 상고(商高)와 주공(周公)이 구고법(句股法)에 관해 토론하고 있는데, 이들이 살던 시기는 피타고라스(BC.570~BC.495)보다 대략 5백년 이상 앞선다. 황종희(黃宗羲, 1610~1695)가 『주비산경』에 나오는 구고법(句股法)은 상대(商代) 말기와 주대(周代) 초기의 학술적 유산(遺産)인데 서양인들이 “훔쳐간 것(竊)”이라고 단정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⁴⁵⁾

그러나 현대의 문헌비평가들에 따르면 이 문헌의 성립 시기는 대략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이다. 이엄(李儼)과 두석연(杜石然)은 『중국수학사』에서 양웅(揚雄, BC.53~AD.18)과 채옹(蔡邕, AD.133~192)이 『주비산경』을 언급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주비산경』이 대략 기원전 1세기에

45) “勾股之術乃周公商高之遺而後人失之，使西人得以竊其傳”(全祖望, 『梨洲先生神道碑文』, 『黃宗羲全集』, 第十二冊, 浙江古籍出版社, 2012.).

서 기원후 1세기 즉 서한 말에서 동한 초에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그러나 손평안(孫宏安)은 『주비산경』에 ‘계칩(啓蟄)’⁴⁷⁾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주비산경』의 성립 시기를 서한(西漢) 시기인 기원전 157년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그의 주장은 한경제(漢景帝, BC.157~BC.141 재위) 유계(劉啓)의 이름을 피휘(避諱)하기 위해 ‘계칩(啓蟄)’이 ‘경칩(驚蟄)’으로 고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⁴⁸⁾ 따라서 이러한 학설에 따르면 구고법은 피타고라스보다 오히려 후대에 성립된 학설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주비산경』의 최종 성서(成書) 시기에 대한 가설일 뿐이며, 주공(周公)과 상고(商高)가 구고법(句股法)에 대해 대화한 부분이 실제로 주대(周代)의 유법(遺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헌비평의 약점은 한 두 개의 단어를 근거로 해서 문헌의 전체 성립 시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고대의 문헌은 하나의 문헌 안에 서로 다른 시기에 성립된 여러 개의 층(層, layer)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구약 성서가 여러 시기에 성립된 문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어떤 나무가 가장 최근에 싹튼 잎을 근거로 삼아 그 수령(樹齡)이 몇 년 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잎은 고목나무에 새로난 잎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비산경』도 단일한 문헌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립시기가 각각 다른 층들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오문준(吳文俊)은 『주비산경』의 형성과정을 그 내용에 따라 3가지 역사시기, 즉 서주초기·춘추전국·서한초기로 나눈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주비산경』의 성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고(句股)에 관한 학설은 『구장산술(九章算術)』의 제9권에도 나온다.

46) 李儼·杜石然, 안대옥 옮김, 『중국수학사』, (서울: 예문서원, 2019), 47쪽.

47) “啓蟄八尺五寸四分。小分一”(『周髀算經』)

48) 孫宏安, 『中國古代數學思想』, (大連: 大連理工大學出版社, 2008), 33쪽.

49) 吳文俊 主編, 『中國數學史大系』, 第1卷,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386-390쪽.

삼국시대의 인물인 유휘(劉徽, 220-280)는 그 서문에서 주공(周公)이 예(禮)를 정하고, 구수(九數)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전(流傳)하여, 지금의 『구장(九章)』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시황의 분서(焚書)로 말미암아 경서(經書)와 술수(術數)에 관한 책들이 흩어지고 손괴되었다. 그후로 전한(前漢) 시대 초기에 장창(張蒼, ?-BC.152)과 경수창(耿壽昌, ?-?)이 『구장산술』의 편찬에 관여하였다.⁵⁰⁾ 따라서 이 책의 성립시기의 하한선은 전한 시대가 되며, 그 상한선은 주대(周代)의 주공(周公) 시기가 된다. 그런데 장창 등이 구문(舊文)의 유잔(遺殘)에 의거해서 증수(增修)와 산보(刪補)를 하였는데, 그 논한 바에 근어(近語)가 많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방전(方田)」과 「쇠분(衰分)」 장에는 진(秦) 나라 시기의 명칭과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균수(均輸)」 장은 한무제가 균수관(均輸官)을 설립한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⁵¹⁾ 『구장산술』이 지금과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세기 무렵이며, 그 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거치면서 전해져 내려왔다. 『구장산술』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어(近語)가 많은 것은 최종적 문헌의 편찬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도 구문(舊文)의 유잔(遺殘)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어(近語)를 근거로 그 문헌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고 문헌의 경우에 문헌 성립 시기의 하한(下限) 뿐 아니라 상한(上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비산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강희제가 서학중원설을 주장하면서 하필 삼각형의 추산법(推算法)을 거론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는 강희제가 서양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가 서양선교사들로부터 수강했던 기하학 강의에서 삼각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685년에 강희제는 페르비스트(Verbiest) 신부가 추천한 앙트완 토마(Antoine Thomas, 1644-1709)⁵²⁾로부터 기하학, 삼각법, 대수학 지식을 배

50) 이춘호, 『완역 구장산술』, (서울: 경문사, 2024), 13쪽.

51) 이엄(李儼)·두석연(杜石然), 『중국수학사』, 안대욱 역, (서울: 예문서원, 2019), 59쪽.

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수학개요(Synopsis Mathematica)』⁵³⁾를 바탕으로 강희제에게 기하학, 삼각법, 대수학 지식 등을 강의했다. 강희제는 특히 기하학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숙달했으며, 로그 계산 법칙을 익혀, 로그표와 삼각함수표를 활용한 계산을 능숙하게 수행했다.

둘째, 역법(曆法)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천문 관측을 통해 태양과 달과 별의 위치를 계산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삼각형의 작도법이 필수적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단순한 직각삼각형의 정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수학 이론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그 확장된 형태는 평면삼각법(plane trigonometry)⁵⁴⁾ 및 구면삼각법(spherical trigonometry)⁵⁵⁾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⁵⁶⁾ 특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출발한 구면삼각법은 지구 중심에서 하늘의 천구(天球)를 모델링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발전한 코사인(cosine) 법칙과 사인(sine) 법칙은

52) 앙트완 토마(Antoine Thomas, 1644 - 1709)는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신부로, 17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였다. 하지만 그는 전문 수학자라기보다는 천문학과 역법(曆法)에 관심을 가진 학자형 신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가 주로 연구한 분야는 천문학, 역법, 지리학이었으며,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과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의 뒤를 이어 청나라 궁정에서 천문학을 담당했다.

53) 앙트완 토마의 저서 『수학개요(Synopsis Mathematica)』는 1685년 프랑스 북부의 도에(Douai)에서 출판된 수학 교과서로, 예수회 선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 수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예수회 선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학 및 천문학 교과서로, 서양 과학 지식의 동아시아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코임브라 대학에서의 강의 경험과 실천적 관측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천문학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우주론을 소개하지만, 대수학은 제외되어 있다. 이 저서는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널리 활용된 중요한 교육 자료였다.

54) 평면삼각법(plane trigonometry): 평면 위에서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며, 구면에서 사용되는 구면삼각법과 구별된다. 평면삼각법은 직각삼각형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사인(sin), 코사인(cos), 탄젠트(tan) 등을 이용한 직각삼각형 계산법을 가리킨다.

55) 구면삼각법(spherical trigonometry): 구(球)의 표면에서 삼각형의 변과 각을 다루는 삼각법을 가리킨다. 구면삼각법은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지만, 구면삼각법 자체는 이미 원나라·명나라 시기에 이슬람 천문학을 통해 중국에 일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6) Minghui Hu, *China's Transition to Modernity: The New Classical Vision of Dai Zhe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7). p.129.

천체 간의 각 거리 계산을 가능하게 했고, 별과 행성의 운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케플러(Johannes Kepler, 1571-1630)가 타원 궤도를 발견할 때 거리 계산, 좌표 변환, 타원의 기하학적 특성 분석 등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기본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⁷⁾ 예를 들어, 타원의 궤도를 분석할 때, 다양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며, 타원의 두 초점과 행성의 위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삼각형의 변 길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필요했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는 거리 계산, 좌표 변환, 타원의 기하학적 특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강희제는 서양의 삼각법과 천문학 지식을 받아들여 중국의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삼각형 작도법과 관련된 서양 과학의 지식이 중국에 정착되게 된다. 그런데 강희제가 서양수학을 배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조아킴 부베이다. 강희제가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을 본격적으로 배운 것은 삼번(三藩)의 난(亂)을 평정한 몇 년 후, 즉 1688년에 제르비용과 부베 등 프랑스 선교사들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였다. 이 때 사용한 서양수학 교재는 『기하원본(幾何原本)』과 『산법원본(算法原本)』 등이었다. 제르비용과 부베는 1691년부터는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가 번역한 『기하원본』 교재 대신에 예수회 신부 파르디(Ignace-Gaston Pardies, 1636-1673)가 쓴 『기하학 원리』(Elémens de géométrie, 1671)를

57)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는 케플러는 기하학이 우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믿었으며, 피타고라스 정리를 포함한 수학적 법칙이 신이 창조한 조화로운 우주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케플러는 그의 저서 “우주의 신비(Mysterium Cosmographicum)”(1596)에서 행성들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사용했으며,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케플러는 그의 저서 “육각형 눈송이에 대하여(De nive sexangula)”(1611)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황금비(golden ratio)를 수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으며,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두 가지 보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행성들의 궤도 운동에서 원운동뿐만 아니라 타원 운동을 고려했는데, 이때에도 직각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다.(Fink, Karl. *A Brief History of Mathematics: An Authorized Translation of Dr. Karl Fink's Geschichte der Elementar-Mathematik*. Translated by Beman, Wooster Woodruff; Smith, David Eugene (2nd ed.).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03). p.223).

번역해서 사용했다. 파르디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원론』을 기반으로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여러 도형을 통해서 독자들이 비례 관계와 정리 간의 연결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례(比例, proportion)의 개념을 활용했는데, 이 접근법은 단순히 도형의 면적 계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내의 비례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셋째, 역법(曆法) 투쟁과 역옥(曆獄)과의 관련된 정치적 이유이다. 청대 초기에 순치제(順治帝) 시기에 예수회 선교사들은 명대 때부터 사용해오던 대통력(大統曆)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역법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아담 샬(湯若望, Johann Adam Schall von Bell)은 새로운 달력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순치제는 1645년에 시헌력(時憲曆)을 공식적으로 역법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순치제가 사망하고 강희제가 즉위한 후에 양광선(楊光先, 1597-1669) 등의 전통 천문학자들과 일부 조정 대신들이 서양 역법을 배척하며 시헌력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1665년(강희제 4년) 1월 16일에 대통력과 시헌력에 의거해서 예측한 일식(日蝕)이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양광선, 오명환(吳明烜), 아담 샬(湯若望, Johann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 등이 자금성 오문(午門) 앞에 소집되었다. 시험 결과 양광선과 오명환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고, 실제 일식시간에 가장 근접한 예측을 한 것은 아담 샬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권 내부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과학적 정확성만으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시헌력을 반대하던 양광선 등의 세력은 아담 샬과 예수회원들을 고발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아담 샬이 처형당하게 되어 있던 1665년 4월 16일에 북경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아담 샬과 페르비스트가 투옥되어 있던 감옥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잘못된 판결에 대한 하늘의 징벌로 여겨 아담 샬은 석방되었으나, 감옥에서 겪은 극심한 고통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1666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역옥(曆獄)을 일으켰던 양광선(楊光先, 1597-1669)은 흠천감정(欽天監正)이 되었으나 1668년에 파면되었으며, 이전의 사건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무고죄(誣告罪)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령을 이유로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으며, 1669년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망했다. 역법 문제는 강희제 7년(1668년)에 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발단은 흠천감에서 12월에 한 번 더 윤달을 추가하려고 한 사건이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조정대신들 중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강희제는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황제 자신이 과학 지식이 없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성했다.

그런데 1665년에 일식의 공개 관측이 실행되었을 때, 강희제는 11살의 소년에 불과했다. 그리고 1668년(강희7년)에 윤월(閏月)과 관련하여 역법의 개정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보정대신(輔政大臣) 오배(鰲拜, Aobai)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강희제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 그러나 강희제가 1669년(강희8년)에 오배를 숙청하고 강희제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예수회 선교사들을 다시 중용하고, 시헌력을 복원시켰다. 이로 인해 서양식 역법이 공식적으로 다시 채택되었으며, 청나라의 공식 역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헌력의 채택은 서양과학의 정밀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인식되었으며,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일반 백성들의 일상에는 직접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강희제가 즉위한 후에 서양 역법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회 선교사들을 재기용하면서 역법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강희제가 『삼각형추산법론』을 발표한 1704년에는 역법과 관련된 논쟁이 잦아든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강희제가 이 글을 반포한 의도는 무엇인가? 첫째, 역법은 원래 중국으로부터 나와서 극서(極西)로 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측면이 있다. 둘째, 서양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역법을 측량과 계산을 통해 끊임없이 개량해 나갔다는 점에서 서양역법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강희제는 『삼각형추산법론』을 반포함으로써 전통주의자를 달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발전된 서양 역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중의 정치적 책략을 구사한 것이다. 매문정은 웅사리(熊賜履)⁵⁸⁾에게 보낸 시(詩)에서 강희제의 『삼각형추산법론』이 제가(諸家)의

취송(聚訟)⁵⁹⁾을 종식(終熄)시켰다고 칭송했다.

황제께서 지으신 『삼각형론(三角形論)』을 삼가 읽어보니, 옛 사람들의 역법(曆法)이 서토(西土)에 전해졌고, 그 곳 사람들이 이를 익혀 더욱 정밀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천자의 말씀이 찬란하니,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투어 결말이 쉽게 나지 않는 논쟁을 종식시킨 것이다.⁶⁰⁾

1704년의 『삼각형추산법론』의 발표 이후에도 강희제의 서양수학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았다. 강희제는 하루의 공식 업무를 마친 후에는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서양 선교사들을 황실로 초청하여 수학 수업을 들었다. 수학과 기하학은 천문 연구에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법(曆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강희제로서는 반드시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희제는 자신에게 수학을 가르친 서양 선교사들 중에서 특히 부베를 신뢰하였다. 강희제는 부베에게 『역경』을 연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는데, 그것은 “산법(算法)의 원리는 모두 『역경』에서 나온 것이다(夫算法之理, 皆出于易經)”라는 그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베는 강희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역경』 연구에 전념하여, 많은 역학 저술을 펴내게 된다. 그리고 부베가 작성한 기하학적 도표들은 강희제의 증제로 『주역절중』의 편찬책임자인 이광지(李光地)에게 전달되었다. 『강희조만문주비주절회편(康熙朝滿文朱批奏折匯編)』에는 강희제가 위정진(魏廷珍, 1669-1756)⁶¹⁾과 왕란생(王蘭生, 1679-1737)⁶²⁾을 통해 내려보낸 서양 선교사들의

58) 웅사리(熊賜履, 1635-1709): 자(字)는 경수(敬修), 호북성(湖北省) 효감시(孝感市) 출신이며, 순치 15년(1658)에 진사가 된 유명한 학자이자 명신이다.

59) 취송(聚訟):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져 결말이 나지 아니함.

60) “伏讀聖制三角形論, 謂古人曆法流傳西土, 彼土之人習而加精焉爾。天語煌煌, 可息諸家聚訟。”(梅文鼎, 『續學堂詩抄』 卷4, 『上孝感相國』 四首, 乾隆刊本, 北京中國科學院圖書館藏.)

61) 위정진(魏廷珍, 1669 - 1756): 자(字)는 군벽(君璧)이다. 강희 44년(1705년)에 거인(舉人)에 합격하고, 이후에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로 임명되었으며, 남서방(南書房)에서 일강기거주관(日講起居注官)을 맡았다. 옹정제 시기에는 호남순무(湖南巡撫), 예부상서(禮部尙書), 병부상서(兵部尙書), 조운총독(漕運總督) 등의 직을 거쳤으며, 건륭제 때에는 좌도어사(左都御史), 공부상서(工部尙書)를 맡았

역학자료를 이광지가 전달받고 검토한 정황이 담겨 있다.

신(臣) 이광지(李光地)가 삼가 아뢰옵니다. 이번 달(本月) 초팔일(初八日)에 위정진(魏廷珍)과 왕란생(王蘭生)의 친필기록을 접했습니다. 황상(皇上)께서는 서양(西洋)의 세 폭의 도(圖)와 한 편의 도설(圖說)을 꺼내어, 신에게 보도록 명(命)하시었습니다. 신(臣)이 그것을 여러 날에 걸쳐 거듭 읽고서 그 의미를 대략 파악하였습니다. 대체로 비례수(比例數)와 그 근원이 같은데, 선천가배지법(先天加倍之法)을 사용한 것은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팔괘(八卦) 및 육십사괘(六十四卦)의 위(位)와 상응하는 것은 더욱 기이(奇異)하고 교묘(巧妙)합니다. (서양인의 해석에서) 공수(空數, 즉 0)를 음(陰)으로 여긴 것은 주자(朱子)의 “양(陽)이 없는 것이 바로 음(陰)이다”라는 설과 부합합니다. 그리하여 곤괘(坤卦)는 모두 공수(空數, 0)로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소옹(邵雍)의 “곤(坤)이 무극(無極)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⁶³⁾

당시의 정황은 이공(李璡, 1659-1733)⁶⁴⁾이 양명시(楊名時, 1661-1737)⁶⁵⁾

다. 저서로는 『과충당시초(課忠堂詩鈔)』와 『벌교절(伐蛟說)』이 있다.

62) 왕란생(王蘭生, 1679 - 1737): 자(字)는 진성(振聲), 탄재(坦齋), 신방(信芳)이며, 악률(樂律), 역산(歷算), 음운(音韻)에 능통하였다. 젊은 시절에 이광지(李光地)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광지의 추천으로 강희 계사년(1713년)에 거인(舉人)이 되었으며, 과거적으로 회시(會試)와 진시(殿試)에 응시할 기회를 얻어 신축년(1721년)에 진사(進士)로 급제하였다. 강희 54년(1715년)에 이광지와 함께 운서(韻書)를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며, 옹정 4년(1726년)에 『음운천미(音韻闡微)』를 완성하였다. 그는 국자감(國子監) 사업(司業)을 대리하였으며, 건륭제 원년(1736년)에 형부시랑(刑部侍郎)으로 승진하고, 예부시랑(禮部侍郎)을 겸직하였다. 저서로는 『교하집(交河集)』이 있다.

63) “臣李光地謹奏。本月初八日，接魏廷珍王蘭生手記。蒙皇上發出西洋圖樣三幅，圖說一篇。命臣觀看欽此。臣反復累日，粗得意旨。大抵與比例數同根，而用先天加倍之法，則從前所未聞，其與八卦·六十四卦之位相應處，尤爲奇巧。其以空數爲陰，則與朱子無陽便是陰之說相合，而以全空當坤卦，又與邵子坤爲無極之說不異也。”(『康熙朝漢文朱批奏折彙編』，第8冊，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中國檔案出版社，1985. p.1171)

64) 이공(李璡, 1659-1733): 자(字)는 강주(剛主), 호(號)는 서곡(恕谷)이다. 안원(顏元, 1635-1704)의 제자이며, 안원과 함께 완리학파(顏李學派)를 형성하였다. 안원은 송명유학을 공리공담(空理空談)에 빠졌다고 비판하였다. 저서로 『주역전주(周易傳注)』, 『서고(筮考)』, 『논어전주(論語傳注)』, 『대학전주(大學傳注)』, 『중용전주(中庸傳注)』 등이 있다.

에게 준 글에도 드러나 있다.

내가 일찍이 (들어서) 알기로는, 공(公, 즉 李光地)께서 [자금성의] 남서방(南書房)에 계실 적에 조정(朝廷)에서 서양삼각산(西洋三角算)에 관련된 문제를 공에게 물었다고 한다. 공께서는 『주역』에 그것을 첨부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서양의 [수학적] 방법이 진실로 엄밀하기는 하지만, (복희, 주공, 문왕의) 세 성인(聖人)의 『역』에 억지로 끌어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⁶⁶⁾

한기(韓琦)는 위에서 언급된 서양삼각산(西洋三角算)이 파스칼삼각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⁷⁾ 그러나 강희제는 『삼각형추산법론』에서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구고현(句股弦)의 3:4:5의 비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광지는 강희제의 명을 받아 『주역절중』의 「계몽부론」에 부배가 보낸 도표들을 대량으로 삽입했는데, 그 중에 파스칼 삼각형에 해당하는 「가배변법도(加倍變法圖)」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대연구고지원(大衍句股之原)」의 도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삼각산에는 파스칼 삼각형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뿐만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도 모두 서학중원설의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양수학사에서 파스칼 삼각형은 블레즈 파스칼 이전에 1세기 앞선 16세기에 독일의 인문학자 아피아누스(Petrus Apianus, 1495~1552)의 『산술(Arithmetic)』에 의해 이

65) 양명시(楊名時, 1661-1737): 자(字)는 빈실(賓實)이며, 호(號)는 응재(凝齋)이다. 이광지(李光地, 1642-1718)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강희 30년(1691)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翰林院) 검토(檢討)의 직을 받았으며, 남서방(南書房)에서 근무했다. 저서로 『역의차기(易義筌記)』, 『시경차기(詩經筌記)』, 『사서차기(四書筌記)』, 『양씨전서(楊氏全書)』 등이 있다.

66) “吾嘗知. 公在南書房, 朝廷出西洋三角算, 問公, 將附周易後. 公曰: 西洋法誠密, 然與三聖人易不必比附.”(楊名時 撰, 『楊氏全書』, 第10冊, 29쪽).

67) 韓琦, 『科學與宗教之間: 耶蘇會士白晉의 易經研究』, 『東亞基督教再詮釋』, (崇基學院神學院, 2004), 424쪽.

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아피아누스 이전에도 1100년경에 페르시아의 수학자 오마르 카이얌(Omar Khayyam, 1048-1131)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파스칼 삼각형은 명나라 수학자 정대위(程大位, 1533~1606)의 저서인 『산법통종(算法統宗)』에 「개방구렴율작법본원도(開方求廉率作法本源圖)」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고, 정대위가 활동했던 시기는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의 시대보다 앞선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나라 수학자 주세걸(朱世傑, 1249-1314)이 1303년에 출판한 저서 『사원옥감(四元玉鑑)』에 나오는 『고법칠승방도(古法七乘方圖)』도 파스칼 삼각형과 동일하다. 주세걸은 이것을 고법(古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삼각형의 기원이 훨씬 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현존하는 중국 문헌 가운데 파스칼 삼각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남송 시대에 1261년에 출판된 양휘(楊輝)의 『상해구장산법(詳解九章算法)』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11세기에 북송의 수학자 가헌(賈憲, c.1010~1070)과 유여해(劉汝諧)에 의해 이 삼각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따지더라도 파스칼 삼각형과 관련하여 서양보다 중국에서 더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스칼 삼각형의 경우는 피타고라스의 삼각형과 달리, 중국 학자들의 서학중원설이 과장되거나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조셉 니덤(Joseph Needham)도 만약 블레즈 파스칼과 아피아누스(Petrus Apianus, 1495~1552)가 주세걸의 『사원옥감』을 보았더라면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⁸⁾

현대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인류 최고의 기록은 이라크의 라르사(Larsa) 지역에서 발굴된 플림프턴 322(Plimpton 322)에서 발견되었다. 이 점토판은 기원전 1800년-1600년경의 바빌로니아 왕조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토판에서 발견된 피타고라스 삼중수(Pythagorean triples) 중에서 가장 큰 수(數)는 [3367, 3456, 4825]인데, 이

68) 조셉 니덤 저, 이면우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서울: 까치, 2000), 69쪽.

사례는 바빌로니아인들이 대규모 수치를 다루는데 산술에 매우 능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리스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 수학적 명제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이게바우어(Otto Eduard Neugebauer, 1899-1990)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빌로니아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⁹⁾ 피타고라스 이후 5세기 동안 어떠한 그리스 책에도 이 법칙을 피타고라스의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고,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도 이 정리는 특정한 저자를 언급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1권의 명제 47로 불리고 있다. 이것은 현대에서 서구문명우위론 혹은 중국문명우위론이 아닌 또 다른 글로벌한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II.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조아킴 부베의 견해

피타고라스는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서구 사상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지표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그는 단순히 수학과 음악의 조화를 연구한 철학자로서의 업적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사상은 이후 서양 지성사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자들은 피타고라스의 철학적 관념과 수학적 원리를 그들의 사상 체계에 통합했으며, 중세 라틴학자들과 기독교 사상가들도 그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아 철학적, 신학적 논의를 발전시켰다. 이와 더불어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 사상에서도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수적 조화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한 접근이 다양한 신비주의적 사유 체계와도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69) 장혜원, 「피타고라스 정리」의 명칭과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Rethinking the Name and Use of Pythagorean Theorem),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 34 No. 6. (2021), p.207.

한편 17세기 말에 루이 14세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 조아킴 부베(Joachim Bouvet, 白晋, 1656-1730)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전달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다. 루이 14세에 의해 국왕수학자로 임명되어 중국에 파견된 부베는 강희제의 수학교사로 일하면서, 서구 철학적 전통을 중국 학자들에게 소개하며 서구와 동양간의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베는 피타고라스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회적으로 언급하지만 피타고라스만을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는 피타고라스를 유클리드 또는 카발라와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이집트인의 상형 문자 전통과 연계해서 언급한 경우가 더 많았다.⁷⁰⁾ 부베는 피타고라스를 단순한 수학자라기 보다는 신비적이고 내밀한 비전(秘傳)을 가르친 지도자로 간주하였다. 피타고라스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수(數)의 본질과 우주의 조화, 영혼의 윤회, 음악과 천체의 관계 등 심오한 개념은 소수에게만 전수되었고, 외부인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다. 부베는 이것을 『사기』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공자의 문도(門徒)가 3천명에 달했지만 그 중에서 육예(六藝)에 능통한 자는 오직 72명에 불과했다고 말한 점과 비교한다. 이처럼 은밀하게 전해지는 심오한 지식을 중시하는 경향은 부베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견되기 이전에 이미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1717년경 베이징에서 작성된 한 글에서, 부베는 자신 이전의 선교사들이 피타고라스 철학, 히브리 신비 철학, 이집트 상형문자와 같은 원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단호히 주장했다. 부베는 중국으로 오면서 히브리 전통의 모세 카발라와 피타고라스 및 플라톤 철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모든 상형문자의 지혜,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고대 족장들의 지혜의 진정한 요소들이라고 말했다.⁷¹⁾

70) Javary, Genevieve. "Le Pere Bouvet a-t-il retrouvé Pythagore en Chine", Actes du IVe Colloque international de Sinologie, Chantilly, (1983). p.195.

71) Richard Smith. *Mapping China and Managing the World: Culture, Cartography and Cosmology in Late Imperial Times*. (New York: Routledge, 2013), p.174.

부베의 사상은 갑자기 돌출해 나온 것이 아니라 유럽사상사의 전통에 기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욤 포스텔(Guillaume Postel, 1510-1581)과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1463-1494)이다. 두 사상가와 부베 사이에는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먼저 기욤 포스텔의 경우를 보면, 그는 동양 문명을 기독교와 융합하려는 초기 사상가 중 한 명이었다.⁷²⁾ 포스텔은 모든 종교와 문화가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며, 이슬람, 유대교, 동양의 전통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진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포스텔은 기독교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동서양의 통합을 모색했는데, 이것은 부베의 중국철학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닮아 있다. 또 히브리어와 같은 고대 언어가 신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았으며, 언어와 문자를 통해 신성한 질서를 이해하려 했다. 이는 부베의 중국 문자와 성경적 기원에 대한 연구와 철학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부베는 카발라(Kabbalah)를 언급할 때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 또는 기욤 포스텔을 인용한다.⁷³⁾ 특히 그는

72) 기욤 포스텔(Guillaume Postel, 1510-1581) : 프랑스의 동양학자, 신비사상가. 언어학자, 천문학자, Cabbalist, 외교관, 교수 및 종교적 보편주의자. 노르망디 바 렌톤 (Barenton) 마을에서 태어난 포스텔은 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파리로 갔다. 고학으로 그리스, 라틴, 헤브라이, 아라비아 등의 여러 언어를 습득. 1535년 터키와 시리아로 여행해서 건문을 넓혀서 귀국, 국왕과 중신의 비호를 받아서 38년에 왕위 교수단에 등용되고, 그리스, 헤브라이, 아라비아 각어를 교수했다. 그러나 42년 국왕의 미움을 사서 실직하고, 이후 20년 정도 유럽, 근동 각지를 방랑, 62년 귀국하자 곧바로 이단 혐의로 체포되고, 죽을 때까지 파리의 수도원에 연금되었다. 그의 저작은 『코란연구』(1543), 『세계화합론』(1544)을 비롯해서 세계지지, 이슬람문화, 천문, 정치, 어학 등 여러 영역에 걸친다. 프랑스 인으로서 처음으로 비그리스도교 문화의 존재와 그 의미를 날카롭게 의식하고, 여러 종교의 합일이나 프랑스 왕제를 핵으로 하는 세계평화의 실현을 꿈꾼 그의 사상은, 독자적인 신비주의적 언설도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친구 그리스도교의 대립항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시대인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가끔 광인취급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포스텔 [Guillaume Postel] (종교학대사전, 1998. 8. 20.)

73) Javary, Genevieve. *“Le Pere Bouvet a-t-il retrouvé Pythagore en Chine”*, Actes du IVe Colloque international de Sinologie, Chantilly, (1983). p.200.

기욤 포스텔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사상은 포스텔의 사상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⁷⁴⁾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와 부베 사이에도 역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피코는 철학적 탐구(이성)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동시에 신비적 체험(직관)을 통해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미란돌라는 「900개의 논제」를 통해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카발라, 기독교 신학 등의 다양한 철학과 종교 전통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카발라의 신비주의 전통을 기독교 신학과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부베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미란돌라가 언어와 상징, 수(數)에 담긴 신비적 의미를 강조한 점은 부베가 『역경』의 패와 기독교적 진리를 연결하려는 시도와 철학적으로 상통한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와 부베 사이에 직접적인 사상적 연결을 입증하는 문헌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미란돌라가 유럽 철학과 신학 전통에 끼친 영향은 광범위하며, 이는 르네상스 이후 신비주의적 경향과 보편적 진리 탐구를 강조한 예수회의 철학적 사상에 녹아들어 부베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수학의 영역에서 부베는 유클리드를 서양 사상의 대가로 언급하며, 그를 통해 서양과 동양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고자 했다. 부베는 유클리드가 정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및 육각형 등의 평면 도형 뿐 아니라 피라미드 형태 등 입체 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수(數)를 다루었다고 높이 평가한다. 부베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보다 수학의 가장 심오한 비밀에 더 다가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⁷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학이라는 최고로 숭고한 학문의 근본 영역은 2천년 동안이나 서구에서 은폐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74) 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liasse 22, fol. 171.

75)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liasse 16. fol. 96.

예를 들어 보에티우스(Boethius, 480~524)가 산술(arithmetic)에 대해 글을 썼을 때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암블리코스(Jamblique Iamblichus: c.245~c.325)⁷⁶⁾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Nicomachus) 윤리학에 의존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처럼 신비주의적이며 신성한 학문을 정립하는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⁷⁷⁾ 거기에 비해서 중국인들은 이 비밀의 지식에 더 근접해 있다. 부베에게 점(點) 형태의 수(數)로 표현되는 하도와 낙서의 수비학은 중국 전통과 서양 전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이다. 특히 낙서는 마방진(魔方陣, magic square)의 초기 형태로 간주되며, 고대 중국의 수학, 철학, 점성술, 그리고 음양오행 사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현대 학자들은 마방진에 내포된 종교적·철학적 의미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상징주의의 풍부하고도 뚜렷한 영역은 여전히 학문적으로 미개척된 채 방치되어 있다. 피타고라스의 체계는 대수학과 기하학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우주의 상징적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부베가 제시한 수비학은 수(數)의 양적 측면이 아닌 질적 측면을 강조한다.

부베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기하학적 도표들 속에서 수비학적(數秘學的) 의미를 탐구했다. 여기서 부베가 탐구하는 기하학은 신성기하학(sacred geometry)이다. 신성기하학은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와 비율이 우주적 질서, 영적 원리, 혹은 신성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체계이다.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수는 그 자체로 신성하며, 음악, 천문학 등에서 나타나는 수의 규칙성도 역시 신성하다.

76) 부베는 북당 도서관에서 이암블리코스(Iamblichus, 약 245~325)의 『피타고라스의 생애』(De Vita Pythagorae)를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베의 제자 푸케도 『피타고라스의 생애』를 그의 과학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책으로 여겼다고 한다.(Noël Golvers, *Reading Classical Latin Authors in the Jesuit Mission in China: Seventeenth to Eighteenth Centuries*, in the *Reception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in East Asia*, Almut-Barbara Renger and Xin Fan ed, (Leiden: Brill 2018), p.63)

77) 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fol.96.

수는 단순히 편리한 계산도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된 실체를 지닌 것이다.⁷⁸⁾ 부베가 기하학을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상징적 기호들 속에서 기하학적 도형들이 어떻게 신성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삼각형은 우주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상징한다. 고대 이집트와 고대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신비한 삼각형의 도형은 우주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부베의 관심은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 1602-1680)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키르허는 17세기 독일 출신의 예수회 소속 학자로서 당시 유럽 학계에서 고대 이집트의 신비와 지혜에 대한 주요 해석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 필사본(Ms. 1173),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중국의 고대 신앙과 성경 및 기독교 전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고록)에는 부베가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의 『오이디푸스 아이집티아쿠스(Oedipus Aegyptiacus)』(1652-1654)에서 발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부베는 이 필사본에서 신비한 삼각형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⁷⁹⁾

달처럼⁸⁰⁾ 아름답고 해처럼 뛰어난 이집트(Aegyptus) 사람들의 우화적이고 신비로운 전통에 따라 호루스(Horus)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다. 다른 전승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호루스는 서로간의 가장 정숙한 사랑의 끈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있는 오시리스(Osiris)와 이시스(Isis)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피질 때에 그도 마찬가지로 불분명하

78) 스티븐 스키너, 김영희, 류혜원 옮김, 『신성기하학』, (열린과학, 2008). 17쪽.

79) 아래의 인용구의 출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아킴 부베의 라틴어 필사본,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f.148)이다. 라틴어 문구의 판독 및 번역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안재원 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안재원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80) 문단이 시작하는 단어 ‘Pulchra’ 앞에 원문의 페이지 번호 [13]이 있다.

지 않는 신적(神的 비의(秘義)의 흔적을 비추어준다. 이는 다음에서 더 엄밀하게 비추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직각삼각형의 모양에서 말이다. 이는 중국인들과 이집트인들의 상형문자적 지혜에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신비한 의미와 관련된 지혜가 두 (문명)에 공통적이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3⁸¹⁾의 배수로 표시된다면, 이는 오시리스의 형태이다. 그리고 4의 배수(밑변)로 표시되는 밑변은 이시스의 특징이다. 이집트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비레에 따라 3의 제곱으로 표시되는 수는 오시리스이고, 4의 제곱으로 표시되는 수는 이시스이고, 두 개의 수와 합쳐져서 5의 제곱으로 표시되는 세번째 변, 즉 빗변은 호루스가 된다. 이처럼 호루스는 기하학의 필연적 법칙에 따라 5의 배수로 표시되거나 혹은 조화와 음악의 발명가인 아폴로(Apollo)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신비로운 삼각형의 조화롭게 결합된 세 변은 그 신의 뜻의 세 가지 형상의 상징이 된다. 거룩한 매개자의 조화로운 덕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화해의 신비이자, 구원을 가져오는 신비를 얼마나 명확히 드러내는지를 아무도 이미 알아볼 수 없었다.⁸²⁾

그러나 이 신비로운 삼각형은 이집트인들의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인들에게

81) ‘ternario’ 다음에 원문의 페이지 번호 [14]가 있다.

82) [13] Pulchra ut luna, Electa ut Sol Aliunde, cum Horus sub forma infantis pingi solitus, iuxta fabulosam et mysticam aegyptiorum traditionem, sit proles Osidirds et Isidis, mutui et castissimi amoris vinculo, ut aiunt, se complectentium; in iis sub hoc respectu spectatis, similiter relucet vestigium non obscurum ejusdem divini mysterii: quod adhuc videtur subtilius resplendere, sub typo mystico trianguli rectanguli, sinarum et aegyptiorum sapientiae hieroglyphicae proprii, et quoad hunc mysticum sensum communis utrisque-si quidem apud Aegyptios latus perpendiculare ternario [14] numero signatum, est osiridis typus; et latus horizontale Isidis characteristicum, sit quaternario numero ab illo diversum, sed cum eo juxta consonantiam quarta est harmonice conjunctum, per tertium latus seu hypotenusam, quinario numero, ex canone geometriae necessario signatam, et juxta traditionem aegyptiorum symbolicam Hori seu Apollinis Harmoniae et musices inventoris: ac proinde in tribus hujus mystici trianguli lateribussic harmonic et conjunctis, et triformis illius numinis symbolici, nemo non jam videre potest, quam speciose resplendeat mysterium salutiferum reconciliationis nostrae, per harmonicas divini mediatoris virtutes completæ.(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f.148)

더 고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최초의 문자와 상형문자의 지혜에 대한 진실된 기록을 거의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연결된 시대의 상징인 어떤 형태들 아래에서 하늘과 땅의 조화가 회복되는지, 혹은 신이 화해하는 사람의 비의(秘義)가 회복되는지를 아주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잠시 뒤에 여러 페이지들에 주어진 그림들을 하나씩 살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지금 이 기록에 행해진 아주 중요한 관찰들에 대한 해명에 특히 집중하고자 한다. (나는) 다름아닌 과거의 예언자들의 시대에 대한 연표(年表)에서 설명한 시대에 대한 해명을 더욱 분명하게 다른 여러 글들에서 밝혀 두었다.⁸³⁾

이 글에서 부베는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의 3:4:5의 비례를 오시리스(Osiris)·이시스(Isis)·호루스(Horus)의 세 신의 조합에 적용한다. 이러한 부베의 발상은 가깝게는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며,⁸⁴⁾ 근원적으로는 플루타르쿠스(Plutarch, 46-120)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플루타르쿠스는 『모랄리아(Moralia)』⁸⁵⁾의 제5권, 「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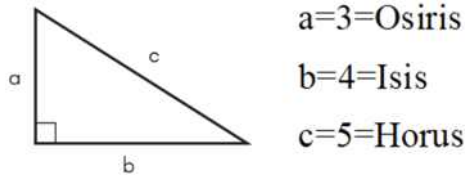
83) Cumvero hoc mysticum triangulum minus sit proprium Aegyptiorum, quam Sinarum, apud quos non multo post Diluvium, videtur velut icertum deposta et servata fuisse sincera monumenta primaevae litteraturae et sapientiae hieroglyphicae; hic diligentius pariter observandum sub quibus chronici symbolici typis cum hoc triangulo connexis, reconditum sit harmonicum caeli cum terra, seu hominis cum Deo reconciliati mysterium, quod ut facilius percipi possit hoc paulo post observabimus, in uno e foliis figurarum nobis et hic nunc considerandarum cum singulari attentione, pro elucidatione praecipuarum observationum in praesenti scripto factarum; nec non pro confirmatione notabiliorum periodorum et epocharum systematis temporum prophetico-rum antea expositi, a nobis in aliis diversis scriptis. (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f.148)

84) 키르허의 저서는 북경의 예수회 도서관 북당(北堂)에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베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는 라틴어 필사본(MS.1173)에서 『오이디푸스 아이킵티아쿠스(Oedipus Aegyptiacus)』로부터 여러 문장을 발췌하였다. (Claudia von Collani, “Cabbala in China”, Roman Malek ed, *From Kaifeng to Shanghai: Jews in China* (Routledge, 2000), p.532).

85) 플루타르쿠스의 『모랄리아(Moralia)』는 도덕 철학, 종교, 문학, 역사, 정치, 과

스와 오시리스』에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를 각각 3:4:5의 수학적 비율에 대응시켰다.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삼각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매우 존중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세상의 본질이 이것과 매우 밀접하다고 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결혼에 관한 수를 공식화해 놓은 것과 흡사합니다. 이 삼각형은 수직선은 3이며, 밑변은 4이고, 빗변은 5입니다. 이 빗변의 거듭제곱은 다른 두 변의 거듭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직선은 남성과 건줄 수 있고, 밑변은 여성과, 빗변은 그 불의 자식과 건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시리스(Osiris)는 기원(起源)으로, 이시스(Isis)는 수용(受用)으로 호루스(Horus)는 완성된 결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은 첫 번째의 완벽한 홀수이며, 4는 각 변이 짝수 2인 정사각형이고, 5는 일부는 아버지를 닮고 일부는 어머니를 닮아 3과 2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을 의미하는 판타(panta)는 5라는 의미의 펜테(pente)에서 유래했고, 수를 셀 때 “다섯씩 센다”라고 말합니다. 5의 제곱은 이집트인들의 알파벳 글자 수와 같고, 아피스(Apis)⁸⁶⁾가 살았던 해의 수와도 같습니다.⁸⁷⁾



학 등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에세이와 연설문 모음집이다. ‘모탈리아’는 라틴어로 ‘도덕적인 것들’이라는 뜻이며, 약 78편의 개별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집트 신화와 관련해서는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를 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이집트와 그리스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86) 아피스(Apis)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숭배된 신성한 황소를 의미한다. 아피스는 주로 멍피스 지역에서 숭배되었으며, 풍요와 다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신성한 황소는 파라오의 화신으로 간주되었고, 특정한 특징을 가진 황소가 선택되어 신성한 대우를 받았다.

87) 윤진, 『플루타르코스, 이시스(Isis)와 오시리스(Osiris)에 관하여(Peri Isidos kai Osiridos) 41~80장의 역주번역』,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서양고대사연구』, 69호 (2024). 163쪽.; Plutarch. *Moralia*. Vol.5. Translated by Frank Cole Babbit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p.135-137.

위의 인용문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오시리스를 기원으로, 이시스를 수용체로, 호루스를 완성된 결과로 비유하였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는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서 각각 높이, 밑변, 빗변에 해당한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수학적 비율과 신화적 상징을 융합하여 더 깊은 철학적, 신비적 의미를 추구했다.⁸⁸⁾ 플루타르코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수학과 신화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키르허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플루타르코스의 『이시스와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종교를 해석할 수 있는 우의(寓意, allegory)의 방법을 제공했으며, 이러한 해석방법은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잘 조화를 이루었다.⁸⁹⁾ 키르허는 플루타르코스의 해석방법에 의존하여 이집트 신화의 신들을 자연·우주·천

88) 고대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조이 하킴(Joy Hakim)은 이집트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라미드를 결코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현재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에서 소장 중인 린드 파피루스(Rhind Papyrus)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린드 파피루스는 1858년에 스코틀랜드 고고학자 알렉산더 헨리 린드(Alexander Henry Rhind)가 이집트 룩소르 근처에서 구매하여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길이 약 5미터, 너비 33cm의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잘 보존되어 있다. 원래 이름은 단순히 “수학 파피루스(Mathematical Papyrus)”였지만, 린드가 소유한 이후 린드수학파피루스(Rhind Mathematical Papyrus)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의 속기 형태의 문자였던 히에라티크 문자로 쓰여져 있다. 약 85개의 수학적 문제와 그에 대한 풀이를 포함하며, 이 문제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린드 파피루스는 약 84개의 수학적 문제와 그에 대한 풀이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린드 파피루스에서 일부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암시하며, 이는 기원전 2000년경의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미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린드 파피루스 중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랐음을 암시한다는 의견도 있다. 토마스 리틀 히스경(Sir Thomas Little Heath)는 이집트 수학의 어디에서도 삼각형 (3, 4, 5)가 직각을 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엘리마오, 전남식, 이동훈 옮김, 『피타고라스의 정리』, (영림카더널, 2017.) 37-40쪽).

89) Daniel Stolzenberg, *Egyptian Oedipus: Athanasius Kircher and the Secrets of Antiquity*, (Chicagi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41.

체와 연결된 상징적 개념으로 해석해 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시스는 이집트의 땅, 달, 지구를 상징하고, 오시리스는 나일강, 태양, 물을 상징한다.⁹⁰⁾

부베는 그의 제자 푸케(Jean Françoise Foucquet, 1665-1741)와 프레마르(Joseph-Henri-Marie de Prémare, 1666-1736)와 함께 이집트 신화에 대한 관심을 공유했다. 푸케는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Moralia)』의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하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⁹¹⁾ 그리고 프레마르는 멜키오르·달라·브리가(Melchior dalla Briga: 1686-1794)⁹²⁾ 신부가 1721년에 『트레부 회보(Mémoires de Trévoux)』⁹³⁾에 게재한 여신 이시스(Isis)의 허리띠(腰帶)⁹⁴⁾에 관한 글을 읽고, 브리가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⁹⁵⁾ 프레마르는 이 편지에서 『역경』을 색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

90) Giuliano Mori, *History ad maiorem Dei gloriam: Ancient Theology in the Seventeenth-Century Jesuit*, (Turin: Fondazione 1563 per l'Arte e la Cultura della Compagnia di San Paolo, 2017). pp.18-19.

91) Noël Golvers, *Reading Classical Latin Authors in the Jesuit Mission in China: Seventeenth to Eighteenth Centuries*, in the *Reception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in East Asia*, Almut-Barbara Renger and Xin Fan ed, (Leiden: Brill, 2018). p.63.

92) 멜키오르·달라·브리가(Melchior dalla Briga: 1686-1794): 이태리 출신의 예수회 신부(R.P.: Révérend Père)이며, 천문학자.

93) *Mémoires de Trévoux* 일반적으로 *Journal de Trévoux*로 알려져 있으며, 공식 명칭은 *Mémoires pour l'Histoire des Sciences & des Beaux-Arts* 이다. 1701년부터 1782년까지 프랑스에서 발행된 영향력 있는 학술 저널이며, 예수회가 주도하여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논문에 대한 비평을 게재하였다.

94) 이시스의 허리띠(tyet): 이집트어로 티엣(tyet)은 ‘번영’ 혹은 ‘생명’을 의미하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상징이다. “이시스의 매듭(knot of Isis)” 혹은 이시스의 허리띠(girdle of Isis)라고도 한다. 티엣은 천의 매듭을 닮았는데, 원래 월경혈(月經血)을 흡수하는데 사용되었던 붕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티엣 기호의 초기 사례는 1940년에 발굴된 헬완(Helwan)의 제1왕조(First Dynasty) 무덤에서 발견되며, 후세에 이시스와 연계되면서 이시스 신성에 있어 중요한 측면인 치유력과 연계되게 된다. 티엣 부적은 이집트 초기 신왕국(BC.1550-BC.1070) 시기에 죽은 자와 함께 매장되었는데, 가장 초기의 사례는 아멘호테프 3세(Amenhotep III)시기에까지 이르는데, 그 이후부터 왕조 시대가 끝날 때까지 미라 붕대 안에 이 부적을 넣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미라 상체 위 붕대안에 묻어 두었다.

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그가 1722년에 에티엔느 푸르몽(Étienne Fourmont)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⁹⁶⁾



Osiris, Nefertari and Isis, Horus and Nefertari from the Tomb of Nefertari (c.1295-1255 B.C.)

부베는 직각삼각형의 신비와 관련된 지혜가 이집트와 중국의 문명에 공통적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부베는 이 신비로운 삼각형은 이집트인들보다는 오히려 중국인에 더 고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부베의 색은주

95) “브리가(Melchior dalla Briga: 1686-1794) 신부가 번역한 여신 이시스(Isis)의 허리띠에 관한 편지」(*Dissertation sur les lettres et les livres de Chine, tirée d'une lettre au R. P. de Briga, interprète de la bande d'Isis*)”는 멜키오르·달라·브리가(Melchior dalla Briga, 1686-1794) 신부가 1721년에 1721년에 『트레부 회보(Mémoires de Trevoux)』에 게재한 글을 읽고, 프레마르가 거기에 대해 쓴 글이다. 이 논문의 제목은 “중국서적과 문자에 관한 한 편의 논문: 브리가 신부가 번역한 여신 이시스(Isis)의 허리띠(腰帶)에 관한 편지에 관하여”이다. 브리가 신부는 이 글에서 자신이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하였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성삼위일체(聖三位一體; Holy Trinity)에 관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마르는 이 글을 읽고, 흥미를 느껴 멜키오르·달라·브리가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프레마르의 색은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그의 색은주의 연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편지에서 프레마르는 『역경』을 색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그가 1722년에 에티엔느 푸르몽(Étienne Fourmont)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龍伯格『清代來華傳教士馬若瑟研究』, (大象出版社, 2009), 158쪽: Knud Lundbaek, *Joseph de Prémare*, Aarhus University Press, pp.21-22.)

96) 龍伯格 같은 글, 158쪽: Knud Lundbaek, *Ibid.*, pp.21-22.

의에 대해 깊이 연구한 폴 룰(Paul Rule)은 “직각삼각형의 신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 연합(hypostatical union of God and man in the mystery of the right angled triangle)”이 부베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⁹⁷⁾ 그러나 리차드 스미스(Richard Smith)는 그것은 오로지 직각삼각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베가 삼각형이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태의 시작(天象地形之始)”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⁹⁸⁾ 사실 부베는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 뿐만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도 중요시했다. 파스칼 삼각형은 꼭지점(vertex)이 위쪽에 위치하고, 수(數)들이 아래로 향해 넓어지며 펼쳐지는 이등변 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다. 파스칼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수 1을 태극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상징한다.

이처럼 신비적이고 신성한 지혜를 강조하는 부베의 취향에 가장 들어맞았던 중국의 경전은 『역경』이었다. 부베는 1704년 9월 15일자 수도원장장 폴 비농(Jean-Paul Bignon, 1662-1743)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경』은 다른 모든 책의 토대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⁹⁹⁾ 그는 『역경』의 상형문자와 상징을 하느님의 우주창조의 비밀을 드러내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서(智慧書)』에 나오는 “주께서는 …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11:20)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역경』이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를 상징과 수치로 풀

97) Paul A. Rule, *K'ung-tzu or Confucius?, The Jesuit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Wellington, Allen&Unwin, 1986), p.163.

98) Richard J. Smith, *Jesuit Interpretations of the Yijing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Revised paper originally prepared for the conference “Matteo Ricci and After: Four Centuries of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the West,” sponsored by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and Beijing University; October 13-16 (2001). p.21.

99) Joachim Bouvet, *Eine wissenschaftliche Akademie für China. Briefe des Chinamissionars Joachim Bouvet S.J. an Gottfried Wilhelm Leibniz und Jean-Paul Bignon über die Erforschung der chinesischen Kultur, Sprache und Geschichte*, (herausgegeben und kommentiert von Claudia von Collani) (Studia Leibnitiana Sonderheft 18), (Stuttgart: 1989), pp.37-38.

어낸다고 주장하였다. 『역경』의 상수학은 만물을 수(數), 무게, 척도 및 조화의 신성하고 은밀한 비율에 의해서 정의한다. 『역경』에는 수학, 음악, 천문학, 의술이 완전한 상태로 축약되어 있으며, 『역경』의 체계와 피타고라스의 수비술(數秘術) 사이에 심오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역경』의 기호의 순차적 배열은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음악과 닮아 있다. 음악의 음조는 우주의 균형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한다. 마찬가지로 괘(卦)는 음악을 구성하는 음조(音調)의 비율을 표현한다.

청대에 이르러 더 많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견되었고, 그들은 한편으로 수학, 천문학, 과학 등의 서양 지식을 중국에 전파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유럽에 전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신은 많은 유럽 학자들이 중국 역사와 문화 전통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라이프니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라이프니츠는 1666년경부터 중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689년에는 이탈리아 예수회 신부 그리말디(Claudio Filippo Grimaldi, 1638-1712)와 서신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1689년 7월 19일에 라이프니츠는 그리말디에게 30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15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고대 중국의 전승에는 증명적 기하학과 형이상학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없는 것인가? 피타고라스가 그것을 위해 백 마리의 소(Hekatombe)¹⁰⁰⁾를 바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정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는가?¹⁰¹⁾

여기서 제사에 백 마리의 소를 바칠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정리란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리킨다. 라이프니츠가 던진 질문의 요점은 고대 중국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과연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아

100)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발견되었을 때,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소 백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축제를 벌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는 동물을 살육하는 것을 혐오했으며, 제례의식에서 제물을 금했기 때문에 황소 제물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엘리 마오, 전남식, 이동훈 옮김, 앞의 책, 63쪽).

101) Gottfried Wilhelm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1689-1714)*,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6), p.13.

마도 그리말디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1697년 12월 2일에 부베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질문을 다시 묻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중국인들이 서구의 기하학과 유사한 어떤 것을 어떤 시기에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合)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인들도 피타고라스의 명제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 전통을 통해서 얻은 것인지 혹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역 또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거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가져온 연역적 증명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지가 궁금합니다.¹⁰²⁾

라이프니츠가 갖고 있었던 의문은 과연 서구의 기하학에서 보여지는 연역적 증명법과 같은 엄밀한 논증적 사유가 중국인들에게도 존재했는가는 문제였다. 라이프니츠는 1697년 12월 2일의 편지에서 그리말디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중국인들의 기하학에는 그리스인들의 기하학에 비교될만한 것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가 생각하기에, 초기 중국인들은 연역적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기하학은 대부분 천문학적 모형을 그리거나 토지 혹은 선박 용량(容量)의 측량 등과 같은 실용적 문제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1697년 12월 2일의 편지에서 라이프니츠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베는 적절한 답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의 산학서(算學書)인 『주비산경』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상응하는 명제가 구고현(句股弦)의 정리라는 형태로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부베는 1693년 7월 8일에서 1698년 11월 2일 사이에 강희제의 특사로 임명되어 프랑스에 다녀왔기 때문에 자기가 중국을 떠나 있던 시기에 삼각형 이론의 기원에 관하여 청나라 조정에서 벌어졌던 토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1701년 2월 15일

102) Gottfried Wilhelm Leibniz, op.cit., pp.144-145.

에 다시 부베에게 편지를 보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질문을 반복했다.

또한 나는 중국인들의 고대 기하학에서 어떤 증명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혹은 다른 비유클리드적 기하학의 명제를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¹⁰³⁾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부베는 1701년 11월 4일에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라이프니츠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었다.

중국인들은 과거에 수학과 기하학, 특히 직각삼각형의 변과 빗변의 놀라운 성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복희의 체계는 수학과 기하학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이유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그들의 책에서 발견되는 내용과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귀속시키는 것이 실제로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아랍인들에게서 전해진 것인지 내가 검토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¹⁰⁴⁾

이 편지에서 부베는 중국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그들의 책에서 발견되는 내용”(ce que l’on trouve à présent dans leurs livres sur cette matière)과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귀속시키는 것”(et qu’ils s’attribuent)이라는 표현이다. 이 구절에서 “그들의 책(leurs livres)”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주비산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비산경』에 나오는 구고현(句股弦)의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정확하게 상응하기 때문이다. 부베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필사본 (Ms.1173),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중국의 고대 신앙과

103) Gottfried Wilhelm Leibniz, op.cit., pp.320-321.

104) Gottfried Wilhelm Leibniz, op.cit., pp.358-359.

성경 및 기독교 전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고록)에서 『주비산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 문헌은 부베의 만년(晩年)¹⁰⁵⁾에 쓰여진 저서이다. 부베가 어느 시점에 『주비산경』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연관성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서학중원설은 강희제가 1704년(강희43년) 10월 24일(양력: 1704년 11월 21일)에 「어제삼각형추산법론(御制三角形推算法論)」을 반포한 것을 계기로 청나라 조정의 중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시기에 부베는 궁정에서 강희제의 수학강의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정(朝廷)의 논의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베는 적어도 1704년 무렵에는 『주비산경』에 구고현(句股弦)의 정리가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베는 고대 중국인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중국인들의 책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진정으로 중국인들 자신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였다. 그리고 서학중원설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서적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랍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지식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베는 중국의 한자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었다. 아타나시우스 키르허(Athanasius Kircher)는 『중국도설(中國圖說)』(China Illustrata)에서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의 주장에 근거해서 복희를 노아(Noah)의 후손이라고 보고, 고대 중국인을 이집트인의 후손으로 간주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문자와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서로 연계되어 발생했으며, “한자의 기초는 은나라(혹은 상나라) 사람들의 조상과 나일강의 아들인 메르큐리우스 트리스메기스투스(Mercurius Trismegistos)¹⁰⁶⁾에 의해 확립되었다.”¹⁰⁷⁾ 부베는 장 폴 비농(Jean-Paul

105) 이 문헌(Lat.1173.f.214)에는 “Pekini stadio Decembris”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단서로 해서 부베가 저술했던 시기와 장소를 추정할 수 있다. “Pekini stadio Decembris”는 “1727년 12월 베이징에서”라는 뜻이다. 라틴어 “stadio”는 장소 혹은 위치를 나타내며, “Pekini stadio”는 “베이징이라는 장소에서” 혹은 “베이징에서”를 의미한다. 부베는 1730년에 사망했으므로, 이 문서가 1727년에 최종적으로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6) 헤르메스(Hermes)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으로, 올림포스 12신 중

Bignon, 1662-1743)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문자의 창시자인 복희는 헤르메스(Hermes), 메르큐리우스 트리스메기스투스(Mercurius Trismegistos), 토트(Thoth), 에녹(Enoch) 등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¹⁰⁸⁾ 그리고 부베는 노아의 대홍수 때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Shem)이 중국에 상형문자의 지식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면 중국의 문자와 『역경』의 지해도 모두 서역(西域)에서 전래된 것이 된다.

이러한 견해는 서학중원설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일종의 한학서원설(漢學西源說)이라고 할 수 있다. 부베의 견해는 청조의 조정에 알려지면서, 냉소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면 화소(和素, 1652-1718)¹⁰⁹⁾는 강희50년(1711) 6월 19일에 강희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부베가 인용한 문장은 모두 중국 책에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서양의 종교라고 하니, 대단히 가소롭다고 평가했다.¹¹⁰⁾ 한기(韓琦)는 부베가 서학중원설을 주장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강희제로 하여금 서학중원설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¹¹¹⁾ 부베는 라이프니츠에게 『역경』을 소개했을

하나이다. 그는 신들의 전령이자 상업, 여행, 도둑, 지혜, 연금술, 점성술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진다. 머큐리(Mercury)는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으로, 로마인들이 그리스 신화를 받아들이면서 헤르메스를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헤르메스와 머큐리는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전승되었지만 역할과 속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같은 신으로 여겨졌다.

107) 아타나시우스·基歇爾(Athanasius Kircher): 『中國圖說』, 張西平·楊慧玲·孟憲謨 譯, 大象出版社, 2010, p.390.

108) Eine wissenschaftliche Akademie für China : Briefe des Chinamissionars Joachim Bouvet S.J. an Gottfried Wilhelm Leibniz und Jean-Paul Bignon über die Erforschung der chinesischen Kultur, Sprache und Geschichte, herausgegeben und kommentiert von Claudia von Collani. p.

109) 和素(1652-1718)는 武英殿 總監造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滿洲人 관리였다. 그는 『西廂記』, 『金瓶梅』 등의 중국 문학작품을 만주어로 번역하였던 지명한 번역가였다.

110) “再看博津所著易經及其圖，意不明白，且視其圖，有倣鬼神者，亦有似畫者。雖我不知其奧秘，視之甚可笑。再者，先後來文援引皆中國書，反稱系西洋教。皇上洞鑑其可笑胡編”：『康熙朝滿文朱批奏摺全譯』，722-723쪽；吳淳邦，『清代初期 예수회 신부 조아생 부베의 索隱派思想과 『易經』研究』(2012), 125쪽

111) 韓琦, 『白晉의 易經研究和康熙時代의 西學中源說』, 『漢學研究』, 제16권, 제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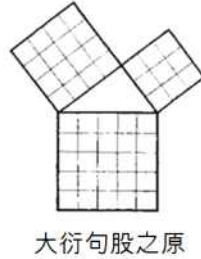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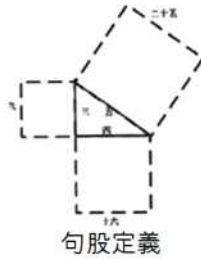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강희제에게 이진법 연구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연구를 소개했다. 현대에서 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 수(數)에 기반한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의존하고 있고, 그 기원은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에까지 소급되기 때문에, 마치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체계가 『역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현대판 서학중원설의 지지자들이 즐기는 이야기 거리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부베로부터 『역경』을 소개받기 이전에 이미 이진법 체계를 개발해 놓은 상태였다. 라이프니츠는 1701년 2월 15일에 부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진법의 개념을 처음으로 자세히 소개했다. 그리고 부베는 1701년 11월 4일에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희육십사괘차서도(伏羲六十四卦次序圖)」를 소개했다. 라이프니츠는 1703년 5월 18일에 부베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20년이 넘도록 이진법에 마음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가 부베가 소개한 『역경』의 패도를 보고 이진법을 개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부베와 편지를 교환한 것이 라이프니츠로 하여금 이진법에 관해 다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연구는 부베의 주역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이프니츠는 1703년 4월 7일에 프랑스 학술원 원장 아베 비농(Abbé Jean-Paul Bignon)에게 편지를 보내 이진법에 관한 자신의 논문의 출판을 의뢰했고, 1705년에 “이진법 산술의 설명(*Explication de l'Arithmétique binaire*)”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보(*Histoire de l'Académie des Sciences*)』에 수록되었다.¹¹²⁾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부베의 필사본 『역약(易鑰)』(Borgia·Cinese, 317-16)에는 『구고정의(句股定義)』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고정의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지칭하는 중국식 명칭이다. 구고(句股)라는 용어는 『주비산경』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필사본을 쓸 시기에 부베는 『주비

(1998). 195쪽.

112) Han Qi, *Knowledge and Power, A Social history of the transmission of mathematics between China and Europe during the Kangxi reign(1662-1722)*, (Seou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s, 4, 2014.) p.1225.

산경』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715년에 출간된 『주역절중』의 「계몽부론」에는 「대연구고지원(大衍句股之原)」이라는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는 『역약』에 나오는 도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¹¹³⁾



여기에서 구고(句股)란 직각삼각형의 밑변[句]과 높이[股]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으면 빗변[弦]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구고법이라고 한다. 구고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즉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광지는 구고법을 대연지수(大衍之數) 오십(五十)의 수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대연지수는 「계사전」 상편의 “대연지수 오십, 기용사십유구(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라는 문장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그리고 오십이란 수는 짐칠 때 사용되는 시초(蓍草) 혹은 서죽(筮竹)의 전체 개수를 가리킨다. 그에 대한 이광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句)가 3이면 그 제곱(積)은 9가 되고, 고(股)가 4면 그 제곱은 16이 된다. 그 현(弦)이 5이면 그 제곱은 25가 된다. 9와 16과 25를 합하면 50이 되니, 이것이 대연지수(大衍之數)이다. 대연지수 50은 구고현(句股弦) 세 면적의 합승과 같다.¹¹⁴⁾

113) 陳欣雨, 『白晉易學思想研究』, (人民出版社, 2016), 120쪽.

114) “句三, 其積九, 股四, 其積十六, 弦五, 其積二十五, 合之五十. 是大衍之數. 函句股弦三面積.”(『周易折中』, 『啓蒙附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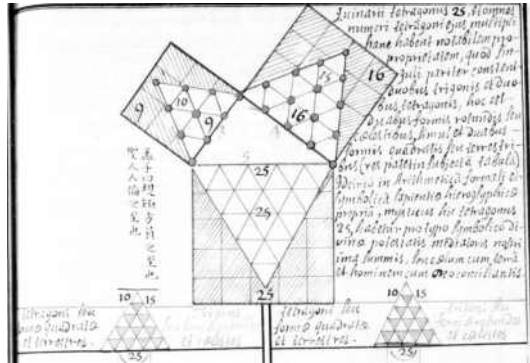
따라서 “대연지수오십(大衍之數五十)”은 구(句)의 제곱과 고(股)의 제곱과 현(弦)의 제곱을 더한 수(數)의 총계와 같다. 『계몽부론』에 많은 기하도표가 포함된 데에는 부배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역약』의 「구고정의」와 『계몽부론』의 「대연구고지원(大衍句股之原)」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배도 처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단지 서양수학의 전통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주비산경』에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상응하는 구고법(句股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부배의 견해를 알려주는 또 다른 자료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 필사본(Lat. 1173)이다. 이 필사본에는 원래 제목이 없었으나 나중에 도서정리과정에서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중국의 고대 신앙과 성경 및 기독교 전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고록)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¹¹⁵⁾ 이 문헌에서 부배는 복희(伏羲)가 『역경』의 팔괘(八卦)와 중국 상형문자를 만든 인물이며, 성스러운 족장 에녹(Enoch)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1719년에 발표했던 명제를 다시 확증한 것이다. 부배는 이 필사본에서 다양한 중국고전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715년에 출간된 『주역절중』도 인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중국의 피타고라스 정리인 구고법(句股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주비산경』도 인용되어 있다.¹¹⁶⁾ 이 문헌의 최

115) 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116) “周髀注, 圓徑一而周三, 方徑一而畫四”(『주비산경』의 注에 圓의 直徑은 1이면, 둘레는 3이 된다. 네모는 직경이 1이면, 둘레는 4가 된다.(Lat. 1173. f.159): “周髀曰人倫之至一也圓方計圓徑而員三方徑爲股且結斜角邪豎五政圓方而邪 徑相通之率 勾廣五而矩共長二十有五 是謂直矩爲者治天下者 此數之所也 注 禹治洪水乃勾股之所 由生也.”(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중성립 시기는 1727년 이후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Anno Domini 1727”¹¹⁷⁾, “Pekini stadio Decembris”¹¹⁸⁾등의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베는 173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 문헌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부베의 생애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필사본에는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25는 사각수(四角數, Square Number)¹²⁰⁾, 즉 한 변이 5인 정사각형의 배수(倍數)이다. 모든 사각수는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는다. 즉 각각의 수는 두 개의 삼각수(三角數, Triangular Number)¹²¹⁾와 두 개의 사각수¹²²⁾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두 개의 정사각형, 즉 지수(地數)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다.(이 점은 첨부된 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¹²³⁾) 따라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산술에서, 특히 지혜의 상형문자와 관련된 산술에서는, 이 신비로운 사각수 25가 신성한 권능의 상징적 형태로 간주된다. 즉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상징으로 여겨진다.¹²⁴⁾

그리고 아래에는 작은 삼각형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라

propheticorum)>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연구보고서』, 33쪽)

- 120) 사각수(四角數, Square Number): 어떤 정수를 제곱하여 얻을 수 있는 수를 가리킨다. 사각수는 점을 이용해 정사각형 형태로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수’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4^2=16$ 은 4×4 의 정사각형 배열을 만들 수 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n^2=n \times n]$ 의 형태를 가지는 자연수 n 의 제곱값을 사각수라고 한다. $[1, 2, 3, 4, 5, 6]$ 의 제곱값은 $[1, 4, 9, 16, 25, 36]$ 이며, 이 수(數)가 사각수이다. 사각수는 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기하학적 해석뿐만 아니라 수론, 조합론 등에서도 활용된다.
- 121) 사각수는 두 개의 연속된 삼각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홀수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4=1+3$, $9=1+3+5$, $16=1+3+5+7$ 과 같다.
- 122) 일부 사각수는 두 개의 사각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5=16+9$ 이며, $100=64+36$ 이다. 그러나 모든 사각수가 두 개의 사각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123) 위의 도표에서 보면, 밑변이 3이면, 그것을 제곱한 수는 9가 되고, 높이가 4이면, 그것을 제곱한 수는 16이 된다. 그리고 빗변이 5이면 그것을 제곱한 수는 25가 된다. 따라서 3, 4, 5의 제곱수 9, 16, 25는 각각 정사각형의 형태가 된다. 9와 16을 합친 수가 25이기 때문에, 결국 넓이 25의 정사각형은 넓이 9의 정사각형과 넓이 16의 정사각형을 합친 넓이가 된다.
- 124) Quinarii tetragonus 25, et omnes numeri tetragoni ejus multiplices hanc habent notabilem proprietatem, quod singuli partier constant duobus trigonis et duobus tetragonis, hoc est duabus formis quadratis seu terrestribus (res patet in subjecta tabula) Idcirco in arithmetica formali et symbolica sapientiae hieroglyphicae propria, mysticus hic tetragonus 25, habetur pro typo symbolico divinae potestatis, seu caelum cum terra et hominem cum Deo conciliantis.

턴어 문구가 적혀 있다.

"tetragoni seu forma quadrata et terrestres"("사각형, 즉 네모난 형태와 지상의 것들")

그리고 도표의 왼 쪽에는 『맹자』 「이루장(離婁章)」의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이 구절은 강희제가 1704년에 반포한 『어제삼각형추산법론(御制三角形推算法論)』의 첫 구절이기도 하다. 부베도 라틴어 필사본에서 이 구절을 즐겨서 인용한다.

맹자가 말했다. “컴퍼스(規: compass)와 직각자(矩: square)는 원과 사각형을 그리는 데 가장 완벽한 도구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인은 인간 사회의 윤리를 완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이다.”¹²⁵⁾

윗 도면의 바로 밑에는 피타고라스의 삼중수(Pythagorean triple)¹²⁶⁾ 및 삼각수(Triangular Number)와 연관된 수치표가 첨부되어 있다.¹²⁷⁾ 수치표의 수(數)들은 질서정연한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수학적 비례 관계와 도형의 구조적 완전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수학적 관계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125) 孟子曰, “規矩, 方員之至也. 聖人, 人倫之至也.(離婁章句 上)

126) 피타고라스의 삼중수(Pythagorean triple)는 세 개의 자연수 (a,b,c)로 이루어진 집합으로, 피타고라스 정리($a^2+b^2=c^2$)를 만족하는 정수 삼중수를 가리킨다.

127) 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f.209.

16+9 (4, 3)	25 (5)	10+15 (4, 5)	1936+1089 (44, 33)	3025 (55)	1485+1540 (54, 55)
64+36 (8, 6)	100 (10)	45+55 (9, 10)	2304+1296 (48, 36)	3600 (60)	1770+1830 (59, 60)
144+81 (12, 9)	225 (15)	105+120 (14, 15)	2704+1521 (52, 39)	4225 (65)	2080+2145 (64, 65)
256+144 (15, 12)	400 (20)	190+210 (19, 20)	3136+1764 (56, 42)	4900 (70)	2415+2485 (69, 70)
400+225 (20, 15)	625 (25)	300+325 (24, 25)	3600+2025 (60, 45)	5625 (75)	2775+2850 (74, 75)
516+324 (24, 18)	900 (30)	435+465 (29, 30)	4096+2304 (64, 48)	6400 (80)	3160+3240 (79, 80)
784+441 (28, 21)	1225 (35)	595+630 (34, 35)	4624+2601 (68, 51)	7225 (85)	3570+3645 (84, 85)
1024+576 (32, 24)	1600 (40)	780+820 (39, 40)	5184+2916 (72, 54)	8100 (90)	4005+4095 (89, 90)
1296+729 (36, 27)	2025 (45)	990+1035 (44, 45)	5776+3249 (76, 57)	9025 (95)	4465+4560 (94, 95)
1600+900 (40, 30)	2500 (50)	1225+1725 (49, 50)	6400+3600 (80, 60)	10000 (100)	4950+5050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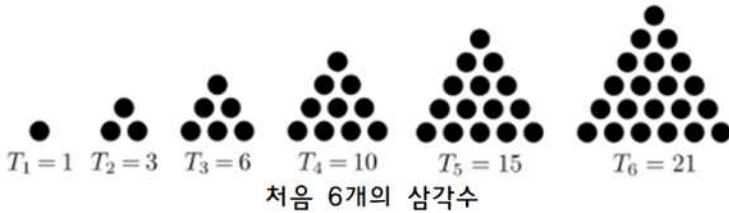
(1)수치표에서 첫째 칸과 둘째 칸의 아래 줄에 적힌 수(數)는 피타고라스 삼중수(Pythagorean triple)에 해당된다. 아래 줄의 수(數)를 제공한 수(數)가 그 바로 위의 수(數)이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예] (4, 3, 5)는 피타고라스 삼중수이며, (16, 9, 25)는 (4, 3, 5)의 제공수에 해당한다.[(4*4)+(3*3)=(5*5)] 마찬가지로 (44, 33, 55)는 피타고라스 삼중수이며, (1936, 1089, 3025)는 (44, 33, 55)의 제공수이다.

(2)수치표의 셋째 칸의 첫째 줄에 있는 수(數)는 삼각수(Triangular Number)이다.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수는 삼각수의 순서를 가리킨다. 피타고라스의 삼각수는 점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했을 때 그 점의 총 개수를 나타내는 수를 가리킨다. 삼각수는 자연수의 합을 기반으로 한 수열이며, 점의 배열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수이다. 삼각

수는 점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했을 때, 각 행에 점이 1개, 2개, 3개, ... n 개로 증가하는 패턴을 따른다. 이 수는 자연수의 합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된다.¹²⁸⁾

$$T_n = \frac{n(n+1)}{2}$$

여기서 T_n 은 n 번째 삼각수를 의미하고, n 은 자연수이다. 예를 들면 부베의 수치표에서 (10, 15) 밑에 (4, 5)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10과 15가 각각 4번째와 5번째 삼각수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한다.



- $n = 1 : T_1 = \frac{1(1+1)}{2} = 1$
- $n = 2 : T_2 = \frac{2(2+1)}{2} = 3$
- $n = 3 : T_3 = \frac{3(3+1)}{2} = 6$
- $n = 4 : T_4 = \frac{4(4+1)}{2} = 10$
- $n = 5 : T_5 = \frac{5(5+1)}{2} = 15$
- $n = 6 : T_6 = \frac{6(6+1)}{2} = 21$

마찬가지로 (1485, 1540) 밑에 (54, 55)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1485와

128) 엘리 마오, 오이켄 요스트 지음, 백형윤 옮김, 『아름다운 기하학』, (서울: 교우, 2017), 13쪽.

1540이 각각 54번째와 55번째 삼각수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에 1485와 1540이 삼각수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

$$\begin{aligned} \bullet \quad T_{54} &= \frac{54 \cdot (54+1)}{2} = \frac{54 \cdot 55}{2} = 1485 \\ \bullet \quad T_{55} &= \frac{55 \cdot (55+1)}{2} = \frac{55 \cdot 56}{2} = 1540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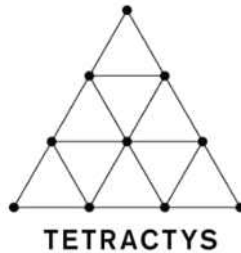
따라서 1485는 54번째 삼각수이고, 1540은 55번째 삼각수가 된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을 따른다. 삼각수는 1, 3, 6, 10, 15, 21, 28, 36, 45, 55 ...의 순서로 이어지는데, 부베의 수치표에서는 100번째 삼각수 5050에서 끝난다. 부베의 도표에서는 위의 왼 쪽의 삼각형에는 큰 삼각형 속에 다시 작은 삼각형이 9개 존재한다. 그런데 큰 삼각형은 밑변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4, 3, 2, 1)의 점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 수(數)를 합하면 10이 된다. 따라서 왼쪽 삼각형 속에 적혀 있는 10은 삼각수를 가리킨다. 오른 쪽에 있는 삼각형의 경우에도 큰 삼각형은 밑변에서부터 위의 방향으로 (5, 4, 3, 2, 1)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수(數)들을 합하면 15가 되므로 15가 삼각수가 된다.

피타고라스의 삼각수와 관련된 또 다른 논의는 1701년 11월 4일에 부베가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인다. 부베는 이 편지에서 몇 개의 한자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인들이 고대에 하느님이 신성(神聖)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²⁹⁾ 그가 분석했던 여러 개의 한자 중에서 ‘재(宰, zai)’자의 경우는 피타고라스와 연관되기 때문에 특별히 흥미롭다. 그는 ‘재(宰)’자가 ‘주재(主宰)’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주(主)’는 적절히 ‘주님이신 왕’을 뜻하고, ‘재(宰)’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를 뜻한다. 두 글자를 합치면 ‘다스리는 주님(Dominus gubernator)’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재(宰)’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번째 부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갓머리 면(𠂇)인데, 이것은

129) 방인, 『조아킴 부베의 중국 문자에서 기독교의 흔적찾기』, 『동서인문』 제20호 (2022), 511-512쪽.

지붕의 형태를 상형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이며, 하늘[天]을 상징한다. ‘재(宰)’자의 중간에 있는 자형(字形)은 ‘입(立)’인데, 이것은 ‘세우다’는 뜻이며,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宰)’자의 가장 아래에 있는 자형(字形)은 십(十)인데, 이 글자는 완전성과 보편성을 상징하는 글자이다. 부배는 수(數) 10의 의미를 피타고라스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재(宰, zai)자의 밑에 있는] 십(十)자는 로마인들과 이집트인들과 마찬가지로 수(數) 10에 해당됩니다. 중국인들은 이 수(數)를 하늘이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의 보편성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타고라스(Pythagoras)가 만물을 그의 유명한 (1, 2, 3, 4)의 네 개의 수(數)의 조합을 더해서 생긴 합(合)이 10이 된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¹³⁰⁾



피타고라스 학파는 삼각수를 수학적 완전성과 조화의 상징으로 보았다. 삼각수 중에서 네 번째 수(數)에 해당하는 수(數) 10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수(數)이다. 10은 ‘테트락티스(Tetractys, Gk. Τετρακτύς)’의 도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삼각수와 테트락티스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 개념이지만, 피타고라스 사상에서는 조화와 완전성이라는 상징적 아이디어로 통합된다. 테트락티스는 그리스어로 4를 뜻하는데, 4는 정의와 질서 혹은 완전한 구조를 상징하는 수(數)였다. 테트락티스는 1, 2, 3, 4의 네 개의 수가 삼각형의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수는 각각 점(点), 선(線), 면(面), 입체(立体)에 상응한다. 밑면에 상응하는 수가 4인데, 피타고라스 학

130) Gottfried Wilhelm Leibniz, op.cit., pp.372-373.

파는 4라는 수를 자연의 네 원소인 불¹³¹⁾, 공기, 물, 땅의 사원소에 연계시켰다. 삼각형의 각 층의 수의 합($1+2+3+4$)은 10, 즉 1 데카드(decad)가 되며, 1 데카드는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완성한다.¹³²⁾ 수 10은 수학적 정의로는 완전수(Perfect Number)¹³³⁾가 아니지만, 사물의 완전성과 신성한 조화를 상징하는 신성한 수이다.¹³⁴⁾ 피타고라스 학파는 테트라티스의 4단계 구조가 우주의 신성한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수 10은 이 모든 개념이 만나는 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피타고라스 철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IV.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도미니크 파르냉의 견해

도미니크 파르냉(Dominique Parrenin, 巴多明, 1665-1741)은 부베가 선 발해서 1698년에 중국에 온 프랑스 국적의 예수회 선교사였다. 파르냉은 1730년 8월 11일에 드 메랑(Jean-Jacques d'Ortous de Mairan, 1678-1771)¹³⁵⁾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과거의 역사가들은 직각삼각형이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기원전 1100년 무렵에 살았던 유명한 주공(周

131) 수(數) 1에 대응되는 요소를 불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132) 스티븐 스키너, 김영희, 류혜원 옮김, 앞의 책 (2008), 18쪽.

133) 완전수(Perfect Number)는 자신의 고유약수(Proper Divisor,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 양의 정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6의 약수(約數)는 1, 2, 3, 6인데,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인 6을 제외하면, 고유약수는 1, 2, 3이 되며, 그 합은 6이 된다. 따라서 6은 완전수에 속한다. 그러나 수(數) 10은 완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수(數) 10의 고유약수는 1, 2, 5이고, 그 합은 8이며 10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1+2+5=8$).

134) 방인, 앞의 논문 (2022), 525쪽.

135) 장 자크 도르투 드 메랑(Jean-Jacques d'Ortous de Mairan, 1678-1771)은 프랑스의 저명한 물리학자, 수학자, 천문학자로서, 프랑스 왕립 과학 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s sciences)의 종신 서기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학문적, 행정적 기여를 했다.

公)에 의해 설명되었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황제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것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식 가운데 하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우(禹) 임금이 이 원리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타고라스는 이 발견의 영광을 최초로 차지한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¹³⁶⁾

위 인용문에서 파르넵은 자기가 얻은 정보의 출처를 돌아가신 황제, 즉 1722년에 세상을 떠난 강희제(1654-1722)에게 돌렸다. 정황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강희제가 서양선교사들로부터 들었던 수학 강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르넵은 강희제에게 서양의 기하학적 개념, 측량법, 그리고 삼각법 등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희제는 그 수업 중에 나왔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신하들에게 전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시 강희제에게 『주비산경』에 직각삼각형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국인들에게 전했을 때에는 선진적 과학문명을 전파해준다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우월감은 고대 중국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리스보다 5백여년이 나 앞서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심하게 흔들렸다. 앞서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비산경』의 성립 시기의 하한(下限)은 대략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이며, 상한(上限)은 주대(周代)의 주공(周公)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만약 『주비산경』이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면, 중국의 구고법은 피타고라스보다 오히려 후대에 성립된 학설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어디까지나 현대에 제기된 것이고, 명청 시기에는 『주비산경』을 주대(周代)의 문헌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거꾸로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136) “On voit des anciens historiens parler du triangle rectangle comme d’une chose commune & expliquée par le célèbre Tcheou-Kong, qui vivoit onze cens ans avant Jesus-Christ. J’ai oui dire au feu Empereur que c’étoit une des plus anciennes connoissances de la Chine, & il y en a qui pretendent que le fameux Yu s’en servit: si cela est, Pythagore n’est pas le premier qui ait eu la gloire de cette decouverte.”(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1703-1776), Nicolas Le Clerc, (Paris, 1734), pp.108-109).

당혹케 하였다. 1730년 8월 11일에 드 메랑에게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한 뒤로 10년이 지난 1740년 9월 20일에 다시 드 메랑에게 편지를 보내 이 문제를 재론했다.¹³⁷⁾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오래전부터 직각삼각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지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대략 기원전 11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주공(周公)의 선조가 그 제자에게 이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관측을 하도록 제자에게 시켰다고 말했으며, 우(禹) 임금이 이를 이용하여 높이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임금은 이 도구를 발명한 것은 아니고, 단지 사용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 어떻게 피타고라스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는 이것을 통해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발명했을까요? (같은 분야의 지식을 독립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그가 인도인들로부터 그것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인도인들은 다시 그것을 중국인들로부터 전수받은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유물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¹³⁸⁾

중국에도 피타고라스 정리와 유사한 이론이 있다는 파르낭의 이야기는 『예수회 선교사 서간집(*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137) HAN Qi, op.cit., (2024), p.132.

138) “Il me semble que je vous ai déjà parlé de l'ancienne connoissance qu'ils avoient du triangle rectangle, de laquelle, selon le temoignage de l'Empereur Cang-hi, on ne pouvoit assigner le commencement. On lit que le predecesseur du fameux Tcheou-cong, qui vivoit environ onze siecles avant Jesus-Christ, disoit a son disciple, qu'avec cet instrument on pouvoit faire plusieurs observations, & que Yu s'en étoit servi pour mesurer les hauteurs. Il n'est pas dit que Yu en fut l'Inventeur, mais qu'il en avoit fait usage. Comment cette connoissance passa-t-elle dans la suite a Pythagore, auquel elle fit tant d'honneur? L'inventa-t-il; car il n'est pas impossible qu'on se rencontre dans les memes connoissances? ou bien l'avoit-il reçu des Indiens, & ceux-ci des Chinois? Pure conjecture; on ne peut rien assurer jusqu'à ce qu'on deterre d'autres monumens que ceux que nous avons pu voir jusqu'ici.”(*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is, 1743, 17 - 8)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esus)」¹³⁹⁾에 실려 프랑스로 전해졌다. 이 책을 읽은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여러 민족의 풍속과 정신에 대한 에세이(*Essais sur les mœurs et l'esprit des nations*)』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창의적인 민족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넘어서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이 유클리드가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원론을 기록하기 몇 세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강희제는 이 황제와 가까이 교류했던 가장 박식하고 현명한 선교사 중 한 명인 파르낭 신부에게, 우(禹) 임금이 삼각형의 직각 성질을 이용하여 한 지방의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3,960년 전의 일이라고 확인했다. 그리고 파르낭 신부는 기원전 1,100년 전에 쓰인 한 책¹⁴⁰⁾을 직접 인용하며, 그 책에서 서구에서 피타고라스에게 귀속된 유명한 정리가 오랫동안 가장 널리 알려진 정리 중 하나였다고 언급된다고 전하고 있다.¹⁴¹⁾

파르낭 뿐 아니라 장 프랑수와 푸케(Jean-François Foucquet, 1665-1741)와 앙트완 고빌(Antoine Gaubil, 1689-1759)도 『주비산경』을 연구했

139) 『예수회 선교사 서간집』은 『예수회 해외 선교사들이 쓴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서신들(*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écrites des missions étrangères, par quelques missionnaires de la Compagnie de Jesus*)』을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140) 여기서 언급된 책은 『주비산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141) “On est étonné que ce peuple inventeur n’ait jamais percé dans la géométrie au-delà des éléments. Il est certain qu’ils connaissaient ces éléments plusieurs siècles avant qu’Euclide les eût rédigés chez les Grecs d’Alexandrie. L’Empereur Cang-hi assura, de nos jours, au père Parenin (sic), l’un des plus savants & des plus sages missionnaires qui aient approché de ce Prince, que l’empereur Yu s’était servi des propriétés du triangle rectangle, pour lever un plan géographique d’une province, il y a plus de trois mille neuf cent soixante années; & le père Parenin (sic) lui même cite un livre écrit onze cents ans avant notre ère, dans lequel il est dit que la fameuse démonstration, attribuée en occident à Pythagore, était depuis longtemps au rang des théorèmes les plus connus.” (Voltaire 1773: 358 - 59); HAN Qi, op.cit., (2024). pp.131-132.

다. 푸케는 『주역』 연구를 도와달라는 부베의 요청을 받아들여 1711년에 북경에 왔으며, 1720년까지 북경에 머물렀다. 그리고 1722년에 중국을 떠나 프랑스로 귀국했는데, 귀국하면서 가져간 책 중에는 명나라 시대에 간행된 『주비산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에는 푸케가 가져간 『주비산경』이 소장되어 있는데,¹⁴²⁾ 여기에는 푸케의 자필 주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중국 문헌들을 인용하고 있다.¹⁴³⁾ 앙투안 고빌(Antoine Gaubil, 1689-1759)도 역시 『주비산경』을 연구했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고대 중국 천문학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푸케와 고빌의 관심은 고대 중국에 천문학과 수학의 전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일부 유럽 학자들의 고대 중국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데 있었다.¹⁴⁴⁾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 문화와 유교 사상을 서양에 알리며 중국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했으며, 예수회를 통해서 서구에 전해진 서학중원설은 서구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유럽이 가진 문화적 우월주의를 비판하며, 중국을 유럽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진 나라로 묘사했다. 그는 중국의 과학이 유럽의 이론 중심적 접근과 달리,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냈다. 예를 들어, 농업과 관개 기술, 의학 발전, 달력 제작 등에서 중국의 실용적 과학이 우수하다고 보았다. 중국의 과학과 학문적 전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볼테르의 저술은 프랑스 및 유럽에서 예수회 신부들이 중국에서 수행한 연구와 중국의 천문학과 수학에 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다면, 서학중원설은 17-18세기 유럽에서 결정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는데 실패했다. 도미니코회(Dominican Order) 및 프란치

142) John W. Witek, *Controversial ideas in China and in Europe: Biography of Jean-François Fouquet, S.J., 1665-1741* (Bibliotheca Instituti Historici S.I., Vol. XLIII.) (Rome: Institutum Historicum S.I, 1982). p.189.

143) HAN Qi, op.cit., (2024). p.130.

144) 같은 책, p.132.

스코회(Franciscan Order) 선교사들은 예수회 학자들의 이러한 견해에 반대했다. 유럽의 주류 학계의 관점에서 보면 17세기 과학 혁명과 그 이후 서양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성취는 중국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프랜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 등의 과학적 방법론과 실험적 접근 방식은 서양 내부의 철학적 전통과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과학 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서학중원설은 마침내 유럽 학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V. 결론

피타고라스 정리는 명대에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에 의해 번역된 유클리드의 『기하원본(幾何原本)』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로 중국과 서양의 문명 사이에서 첨예한 긴장을 촉발함과 동시에 이질적 문명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내었다. 중국 고대의 산학서적인 『주비산경』에는 주나라 주공(周公)과 상나라 대부(大夫) 상고(商高)가 구고법에 관해 토론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에 관한 정리와 같다. 그런데 기원전 1105년 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공의 생존연대는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피타고라스보다 적어도 5백년 이상 앞선다. 황종희(黃宗羲, 1610-1695)가 서양인들이 구고법을 “훔쳐간 것(竊)”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강희제가 1704년에 반포한 『삼각형추산법론(三角形推算法論)』은 청조에서 서양의 역법에 의거한 시헌력(時憲曆)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정치적 투쟁이 발생하면서, 삼각형의 문제가 역법(曆法)과 연관되면서 심각한 정치 투쟁을 촉발했음을 증언해 준다. 그리고 강희제가 『삼각형추산법론』을 반포한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서학중원설을 촉발시킨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하여 프랑스 국적의 예수회 선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양 과학을 중국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동서양 학문적 대화를 촉진하며 새로운 통찰과 지식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조아킴 부베는 강희제의 수학 강의를 맡았으며, 강희제의 권유에 따라 『역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그가 작성한 기하학적 도표들이 『주역절중』의 「계몽부론」에 대량으로 삽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부베-라이프니츠의 왕복서신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부베의 라틴어 필사본(MS. 1173)을 중심으로 부베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견해를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도미니크 파르냉이 서학중원설에 대해 취한 관점을 소개하였다. 즉 서학중원설은 예수회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볼테르와 같은 유럽의 대표적 지식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고대 중국 과학에 대한 유럽학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유럽 학계의 주류는 중국의 과학과 기술 발전이 서양 근대 과학에 직접적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쟁은 유럽 지성계에서 중국 문명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요약하자면 서학중원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비롯한 서구 과학이 중국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서구과학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있던 상황에 처해 있던 중국 지식인들이 서학중원설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중국의 전통수학을 부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전통의 중국 수학에 대한 탐구는 당시에 도입된 서양 수학과 통합됨으로써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생산적 결과를 이루어냈다. 매곡성(梅穀成)이 서양 대수학(代數學)의 차근방(借根方)의 방법으로 전통수학을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에 서구 과학의 기원이 중국에 있다는 확신은 중국 과학이 처해 있는 현실과 당시 유럽의 과학 기술의 진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서학중원설이 전통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찬사를 조장함으로써 중국 과학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주제어

피타고라스 정리(Pythagorean theorem), 서학중원설(the theory of the Sino-Centric Origin of Western Learning), 조아킴 부베(Joachim Bouvet), 라이프니츠(Leibniz), 도미니크 파르냉(Dominique Parrenin)

<투고: 2025년 04월 08일, 심사종료: 2025년 06월 06일, 게재확정: 2025년 06월 27일>

/Abstract/

French Jesuit Missionaries' Perspectives on the Pythagorean Theorem and the theory of the Sino-Centric Origin of Western Learning

Bang, In

This paper examines the perspectives of French Jesuit missionaries on the Pythagorean theorem and explores how their views facilitated intellectu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By analyzing their engagement with the theorem,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ythagorean theorem was not merely a mathematical discovery but also a vehicle for cultural and intellectual fusion, fostering new insights.

Chapter 2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of the Sino-Centric Origin of Western Learning” (西學中源說) and the Pythagorean theorem, with particular emphasis on Emperor Kangxi's 1704 treatise, “Treatise on the Calculation of Triangles” (三角形推算法論), and his role in shaping the development of this theory.

Chapter 3, Joachim Bouvet's Views on the Pythagorean Theorem, examines Bouvet's contributions to the dissemination of the theorem in China. This section analyzes his correspondence with Leibniz, as well as a Latin manuscript (Ms. 1173)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Memoi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cient Chinese Beliefs and Biblical and Christian Traditions).

Chapter 4, Dominique Parrenin's Views on the Pythagorean Theorem, explores Parrenin's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of the

Sino-Centric Origin of Western Learning, focusing on its implications within the broader intellectual discourse.

In conclusion,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erspectives of French Jesuit missionaries,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the Sino-Centric Origin of Western Learning. In particular, Joachim Bouvet's detailed theoretical engagement with the Pythagorean theorem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French Jesuits in facilitating cross-cultural scholarly exchanges during this period.

참고 문헌

1. 사료

『康熙朝漢文朱批奏折彙編』, 第8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中國檔案出版社, 1985).

梅文鼎 撰, 梅穀成 輯, 『幾何通解』, 『梅氏叢書輯要』, (光緒2, 1876).

梅文鼎, 『續學堂詩抄』 卷4, 『上孝感相國』 四首, 乾隆刊本, 北京中國科學院圖書館藏.

_____, 『歷學疑問補』, (新文豐出版公司, 1985).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楊名時 撰, 『楊氏全書』, 南菁高等學堂刻本, 清光緒三十四年至宣統元年 (1908-1909).

李光地 撰, 『禦纂周易折中』, 武英殿, (北京: 康熙54年, 1715).

(漢)趙爽 注; (北周)甄鸞 重述; (唐)李淳風 等 注釋, 『周髀算經』, 二卷. (中華書局, 1936).

玄燁, 『聖祖仁皇帝禦制文集』, 欽定四庫全書本.

Joachim Bouvet, “Mémoires sur le rapport des anciennes croyances des Chinois avec les traditions bibliques et chrétiennes”, NAL(Nouvelle Acquisition Latine) ms.117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1727).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1703-1776), Nicolas Le Clerc, (Paris, 1734).

Voltaire, *Essais sur les mœurs et l'esprit des nations*. Tome1, (Neuchatel, 1773).

2. 단행본

『사학지』 제66집 (2025. 06)

스티븐 스키너, 김영희, 류혜원 옮김, 『신성기하학』 (열린과학, 2008).

李儼·杜石然, 안대옥 옮김, 『중국수학사』 (서울: 예문서원, 2019).

엘리 마오, 오이켄 요스트 지음, 백형운 옮김, 『아름다운 기하학』 (교우, 2017).

엘리 마오, 전남식, 이동훈 옮김, 『피타고라스의 정리』 (서울: 영림카디널, 2017).

이춘호, 『완역 구장산술』 (서울: 경문사, 2024).

조셉 니덤 저, 이면우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서울: 까치, 2000).

徐光啓 撰 朱維錚·李天綱 主編, 『徐光啓全集』 (上海古籍出版社, 2020).

吳文俊 主編, 『中國數學史大系』, 第1卷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孫宏安, 『中國古代數學思想』 (大連: 大連理工大學出版社, 2008).

陳欣雨, 『白晉易學思想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16).

黃宗羲, 『黃宗羲全集』 (浙江古籍出版社, 2012).

Almut-Barbara Renger and Xin Fan(Edited.), *Reception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in East Asia* (Leiden: Brill, 2018).

Antonietta Francini, *Egyptian Numerology: the Pythagorean Triangle and Its Esoteric Meaning* (Rosicrucian Digest, 2009).

Carl A. Huffman, *A History of Pythagorea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Daniel Stolzenberg, *Egyptian Oedipus: Athanasius Kircher and the Secrets of Antiqu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Fink, Karl, *A Brief History of Mathematics: An Authorized Translation of Dr. Karl Fink's Geschichte der Elementar-Mathematik*. Translated by Beman, Wooster Woodruff; Smith, David Eugene (2nd ed.) (Chicago: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903).

Giuliano Mori, *History ad maiorem Dei gloriam: Ancient Theology in the Seventeenth-Century Jesuit* (Turin: Fondazione 1563 per l'Arte e la Cultura della Compagnia di San Paolo, 2017).

- Gottfried Wilhelm Leibniz, *Der Briefwechsel mit den Jesuiten in China(1689-1714)*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6).
- Han Qi, *Knowledge and Power, A Social history of the transmission of mathematics between China and Europe during the Kangxi reign(1662-1722)* (Seou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s, 4, 2014).
- Joachim Bouvet, *Eine wissenschaftliche Akademie für China. Briefe des Chinamissionars Joachim Bouvet S.J. an Gottfried Wilhelm Leibniz und Jean-Paul Bignon über die Erforschung der chinesischen Kultur, Sprache und Geschichte*, (herausgegeben und kommentiert von Claudia von Collani) (Studia Leibnitiana Sonderheft 18), (Stuttgart, 1989).
- John W. Witek, *Controversial ideas in China and in Europe: Biography of Jean-François Foucquet, S.J., 1665 - 1741* (Bibliotheca Instituti Historici S.I., Vol. XLIII.) (Rome: Institutum Historicum S.I, 1982).
- Paul A. Rule, *K'ung-tzu or Confucius?, The Jesuit Interpretation of Confucianism*, Allen&Unwin (Wellington, 1986).
- Plutarch. *Moralia*. Vol. 5. Translated by Frank Cole Babbit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Puette, Michael, *The Ambivalence of Creation: Debates Concerning Innovation and Artifice in Earl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Richard J. Smith. *Mapping China and Managing the World: Culture, Cartography and Cosmology in Late Imperial Times* (New York: Routledge, 2013).

3. 논문

김광호, 「조아킴 부베(Joachim Bouvet)의 수학적 세계 재구-<<중국의 예언전통(Traditiones Propheticae Sinicorum)>>의 <예언자 시대

- 의 비의적이고 특징적인 계산을 위한 새로운 부록을 결들인 상징적 연산의 수식도표(Tabulae formarum numericarum Arithmeticae symbolicae, cum novo supplemento pro computo magico et characterisco temporum propheticorum)>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연구보고서』.
- 안대옥, 『『주비산경』과 서학중원설 - 명말 서학수용 이후 『주비산경』 독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Vol.18 (2009).
- 안재원, 『16-18세기 유럽에서 중국으로 온 책들과 중국에서 유럽으로 간 책들』, 『중국문학』 93 (2017).
- 윤진, 『플루타르코스, 이시스(Isis)와 오시리스(Osiris)에 관하여(Peri Isidos kai Osiridos) 41~80장의 역주번역』, 한국서양고대사역사문화학회, 『서양고대사연구』, 69호 (2024).
- 임종태, 『이방의 과학과 고전적 전통-17세기 서구과학에 대한 중국적 이해와 그 변천』, 『동양철학』 제22집 (2004).
- 장시은, 『명·청대 서양고전 문헌들의 유입 - 『북당(北堂) 도서관 도서목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56 (2021).
- 장혜원, 『피타고라스 정리』의 명칭과 활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Rethinking the Name and Use of Pythagorean Theorem)』,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 34 No. 6 (2021).
- 함영대, 『18-19세기 西學中源論의 전개와 그 함의』, 『漢文古典研究』, 第40輯 (2020).
- 王揚宗, 『康熙三角形推算法論簡論』, 『或問』 12 (2006).
- 韓琦, 『白晉의易經研究和康熙時代의西學中源說』, 『漢學研究』, 제16권, 제1기 (1998).
- _____, 『科學與宗教之間:耶蘇會士白晉의易經研究』, 『東亞基督教再詮釋』 (崇基學院神學院, 2004).
- Claudia von Collani, “Cabbala in China”, Roman Malek ed, *From Kaifeng to Shanghai: Jews in China* (Routledge, 2000).
- HAN Qi, “Rethinking the Ancient Mathematical Text: Ming-Qing Scholar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Gnomon of the Zhou Dynasty”, Agathe Keller·Karine Chemla ed, *Shaping the Sciences of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 (Springer, 2024).

- Javary, Genevieve. “Le Pere Bouvet a-t-il retrouvé Pythagore en Chine”, *Actes du IVe Colloque international de Sinologie* (Chantilly, 1983).
- Minghui Hu, *China's Transition to Modernity: The New Classical Vision of Dai Zhe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7).
- OGAWA Masahiro, “Xu Guangqi and the Chinese Translation of Euclid's Elements : Some Problems of Terminology and their Cultural Context”, *Journal of Hermeneutic Study and Education of Textual Configuration(HERSETEC)*, 5(1) (2011).
- Richard J. Smith, *Jesuit Interpretations of the Yijing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Revised paper originally prepared for the conference “Matteo Ricci and After: Four Centuries of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the West,” sponsored by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and Beijing University; October 13-16 (2001).

남북전쟁 이후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변화와 그 특징

양 홍 석*

I. 서론

II. 노예 없는 주인들

III.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전환

IV. 결론

초록

본 논문은 노예제 대농장제도가 자본주의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되었다. 결정적으로 노예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농장주 모두가 자본주의의 생활방식과는 다른 가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은 전환기 즉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을 거쳐서 재건이라는 과정에서 이른바 역사가들이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라고 부른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알 수 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관행도 자본주의의 요소라고 폄하할 뿐이다. 결국 자본주의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은 전쟁과 노예해방과 재건을 거치는 동안 결국 노예들이나 농장주는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시장과 자본에 접근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본주의로 들어가게 된다.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그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북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체제 즉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원하지 않아도 적응해야 하는 것에 안타까워하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yhistory@hanmail.net

고 체념하고 있다. 주인으로서의 그 의무와 권리를 버리고 철저한 시장 경제인으로 다가가는 자신의 다짐들을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밀려가고 있다. 여기 노예였던 이들도 새로운 해방의 경제에 만족하고 반기지만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야 함에 놀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과연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더 자본주의인가, 노예제도 하에서의 모습들이 더 자본주의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I. 서론

노예제도하의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연구가 없다. 남북전쟁 이전 남부 대농장제도의 노예제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의 역사는 링컨의 노예해방에서 시작하여 재건이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방흑인들이 이루어낸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과 결과에서 흑인들이 보여준 위엄에 대한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¹⁾

이와 같은 선행적 역사서술과 논증과정에서 벗어나 다른 화각으로 보면 또 다른 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기대에서 이 글이 준비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남북전쟁 중에 노예해방이 선언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남부의 대농장제도하에서의 노예제도는 중세 농업적 주종관계와 같이 하나의 유기적 생태학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관습과 제도들이 있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남부의 대농장에서 볼 수 있는 관행과 사적 제재는 지금에 보아도 가혹한 법 집행이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역사가의 발굴이 이루어졌다. 역사라는 것이 호기심 많은 “탐의 눈”과 같다.²⁾

다른 한편으로 노예제도에서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존재에 대해서는

1) Gaines, Kevin, “African-American History,” Eric Foner and Lisa McGirr eds., *American History New*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1), pp.400-420.

2) 노예제도 하에서는 감시와 처벌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Willie Lee Rose, ed., *A Documentary History of Slavery in North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 254; Leonard Black, *The Life and Sufferings of Loenard Black, a Fugitive from Slavery* (New Bedford, MA: Benjamin Lindsay, 1847), p.20; Mark Michael Smith, *Listening to Nineteenth-Century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Shane White and Graham White, *The Sound of Slavery: Discover African American History through Songs, Sermons, and Speech* (New York: Beacon Press, 2001).

열띤 논쟁이 있었다.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존재에서부터 만일 존재한다면 그 성격이 어떠한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민과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시혜인지 또는 주인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를 위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공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사가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의를 쏟아냈고 절묘하고도 기발한 수사학적 방법이 동원되어 볼 만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노예해방과 남북전쟁 이후에 그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³⁾

이렇게 사학사가 전개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최근까지 노예제도 하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시혜적인 온정주의는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 노예제도란 구조 틀 안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인이 노예들에게 줄 수 있었던 해량은 없다는 환원주의가 우세하다. 주인의 경제주의 차원에서 속임수 또는 “의사(疑似)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결과 노예들

3) 노예제도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한 요인으로 특화되어서 수용된다는 차원에서 다음의 연구 저작은 흥미롭다. Larry Tise, *Proslavery: A History of the Defense and Slavery in America, 1701-184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7); William Summer Jenkins, *Proslavery Thought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5); 이른바 남북전쟁 이후 “로스트 고즈”(Lost Cause)라고 부른 “잃어버린 대의명분”과 관련하여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Gaines M. Foster, *Ghosts of the Confederacy: Defeat, the Lost Cause, and the Emergence of the New South, 1865-191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U. B. Phillips, *American Negro Slavery* (New York: D. Appleton, 1918); Daniel Joseph Singal, *The War Within: From Victorian to Modernist Thought in the South, 1919-194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37-57; Eugene D. Genovese, *In Red and Black: Marxist Explorations in Southern and Africa-American History* (New York: Pantheon, 1968), pp.250-298; 최근까지의 노예제도의 사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Mark M. Smith, *Debating Slavery: Economic and Society in the Antebellum Sou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eter Kolchin, *American Slavery, 1619-1877* (New York: Hill and Wang, 1993); Peter J. Parish, *Slavery: History and Historians* (New York: Harper and Row, 1989).

이 최악의 상태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사회로 그려지게 되고 주인과 노예 간의 있을 법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성격과 특징은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분위기이다.⁴⁾

사람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예제도 하에서는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특전과 의식 결정적으로 보시와 혜택을 주인이 보장해 주었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온정주의 특징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최근 역사가들은 그런 정서와 감정을 뿌리 뽑아버리려는 태도이다.⁵⁾

-
- 4)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의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Ira Berlin and Herbert G. Gutman, *Power and Culture: Essays on the American Working Class* (New York: Pantheon, 1987); Michael Tadman, *Speculators and Slaves: Masters, Traders, and Slavers in the Old Sout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9); Walter Johnson,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최근에서는 노예 여성의 첸더와 섹슈얼리티를 통한 비정한 강제를 통하여 주인들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Edward E. Baptist, "'Cuffy,' 'Fancy Maids,' and 'One-Eyes Men': Rape, Commodification, and Domestic Slave Trade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 (December, 2001), pp.1019-1650; Stephanie M. H. Camp, *Closer to Freedom: Enslaved Woman and Everyday Resistance in the Plantation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North Carolina press, 2004); Jennifer M. Morgan, *Laboring Woman: Reproduction and Gender in the New World Slave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4); Sharon Block, *Rape and Sexual Power in Early Americ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 5) 주3번에 더하여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다양한 변주로 해서 이루어놓은 유진 제 노베이지의 역사학은 놀라운 것이었다. Eugene D. Genovese, *The Political Economy of Slavery: Studies in the Society and Economy of the Slave South* (New York: Pantheon, 1965); *The World the Slaveholders Made: Two Essays in Interpretation* (New York: Pantheon, 1969);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Pantheon, 1974); *The Slaveholds' Dilemma: Freedom and Progress in Southern Conservative Thought, 1820-1860*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1);

노예제도 하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역사가들이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예외적 제도”로서의 노예제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제도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착취이다. 그런데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인정하게 되면 노예제도를 수긍하는 것이라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막상 노예제도 하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면 노골적인 저항을 받게 된다.

본 글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생각은 이제 전복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명히 이 제도하에서도 온전히 인간주의적 요소로서 가부장적 온정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증거와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하물며 남북전쟁 이후에도 농장주들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이들에 대해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주인들은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즉 모든 시스템이 전환되는 바로 그 변곡점에서도 온정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전환기 이전에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존재는 더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⁶⁾

The Southern Front: History and Politics in the Culture War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3); Eugene D. Genovese and Elizabeth Fox-Genovese, *Fruits of Merchant Capital: Slavery and Bourgeois Property in the Rise and Expansion of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그 밖에도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중요한 저서는 다음과 같다. Willie Lee Rose, “The Domestication of Domestic Slavery,” *Slavery and Freedom*, ed. William W. Freehl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18-36; Donald G. Mathews, “Charles Colcock Johns and the Southern Evangelical Crusade to Form a Biracial Society,” *Journal of Southern History*, XLI (August, 1975), pp.299-320; Erskine Clarke, *Wrestling Jacob: A Portrait of Religion in the South* (Atlant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9); William K. Scarborough, “Slavery-The White Man’s Burden,” in Harry P. Owens, ed., *Perspective and Irony in American Slavery*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76), pp.103-135.

- 6) Petition, February 12, 1868, South Carolina Governor’s Papper,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Archives; Edward Sparow to Benjamin G. Humphreys, December, 3, 1866, Mississippi Governor’s Papers, Mississippi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역사가들의 논쟁을 풀어보는 경우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남부의 대농장제도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농장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이라고 이해되어왔다.

노예제도가 일면의 모습에서 “자본주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그 자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글은 의문을 제기한다. 노예제도와 대농장제도가 자본주의 경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여전히 논쟁적이고 그 논쟁에서는 쉽게 해답을 찾기 어렵다. 지금은 자본주의라고 보는 관점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에서는 은연중에 노예제도란 세계자본주의 영향 하에 높은 수준에서 자본의 투입과 경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⁷⁾

Department of Archives and History; Richard L. Zuber, *Jonathan Wor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3), p.291; Jonathan Worth to Benjamin S. Hedrick, December 30, 1866, Benjamin S. Hedrick Papers, Duke University; J. G. de Roulhac Hamilton, ed., *The Correspondence of Jonathan Worth* (Raleigh, North Carolina Commis, 1909), vol.1, pp. 417, 421, vol 2, pp.786, 804, 807, 875, 1094 - 1095, 1154 - 1156; Michael Wayne, *The Reshaping of Plantation Society: The Natchez District, 1860-188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3), p.41; James L. Roark, *Masters Without Slaves: Southern Planters in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p.144; Roberta S. Alexander, *North Carolina Faces the Freedmen: Race Relations During Presidential Reconstruction, 1863-6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p.96; Gerald D. Janes, *Branches Without Roots: Genesis of the Black Working Class in the American South, 1862-18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121-127; Geroge P. Rawwick, ed., *American Slave: A Composite Autobiography* (Westport, Connecticut, 1972-79) 9, pt. 8:372, supplement. ser, 9:3452.

- 7) 이 부분에서의 역사가들의 지평 확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 자료는 최근에 노예무역과 거래 그 자체에서 보는 자본주의 방식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시한다. Frederic Bancroft, *Slave Trading in the Old South* (Baltimore, J. H. Furst, 1931); Michael Tadman, *Sepculators and Slaves: Masters, Trades, and Slaves in the Old South*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9); Walter Johnson,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Robert H. Gudmestad,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이유이다. 이 사회에서 농장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노예라고 불리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그렇다.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보다는 전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세적 특징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대한 논의이다.⁸⁾

자본주의적이라고 상정하는 노예제 사회가 해체 되어가고 있는 전환기, 그 변곡점에서 자본주의 “맹아”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과거의 주인과 과거의 노예들이 급격한 변화에 충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으로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반응한다. 양자는 모두 다 전통적 사회 관습과 방식과는 달리 새롭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염려와 혐오,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A Troublesome Commerce: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state Slave Trade (Bar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03); Steven Deyle, *Carry Me Back: The Domestic Slave Trade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Calvin Schermerhorn, *Money over Mastery, Family over Freedom: Slavery in the Antebellum Upper South*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2011); David L. Lightner, *Slavery and Commerce Power: How the Struggle against the Interstate Slave Trade Led to the Civil Wa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8) 주5번과 6번을 참조. 그 밖에 노예제도가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David Brion Davis, *The Problem of Slavery Davis, The Problem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1770-182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pp.357-364; The Problem Davis, *The Problem of the Slavery in Wester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6); *Inhuman Bondage: The Rise and Fall of Slavery in the New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Robin Blackburn, *The Making of New World Slavery: From the Baroque to the Modern, 1492-1800* (London: Verso, 1997); Orland Patterson, *Slavery and Social Death: A Comparative Stud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Scott Reynolds Nelson, “Who Put Their Capitalism in My Slavery?” *Journal of the Civil War Era*, 5 (June 2015), pp.289-310. 여기에 제시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평가에 대해서는 배영수, 『“새로운 자본주의 역사”의 가능성과 문제점』, 『서양사연구』 58 (2018), 129-158쪽; 배영수, 『제9장, 노예제』,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2부 발전과정』 (서울: 일조각, 2022), 170-216쪽 참조.

“어쩔 수 없이”와 같은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실행되는 것에 환영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⁹⁾

이와 같은 여러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전 즉, 노예제 사회가 과연 자본주의적인가 생각하게 된다. 특히나 노예제도 대농장제도를 자본주의이라고 하는 경우도 농장주의 세계경제와 국민경제에 참여와 그 실상에서 찾아본다. 여전히 한쪽으로 본 불완전한 접근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이다. 다른 관점에서 이 사회가 자본주의적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장주가 이제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으로 자본주의적 농업과 그 운영에 진정 몰두하는 점과 함께 지금까지 노예라고 부른 이들의 관점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들은 이제 자유노동을 통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자본주의의 진정한 시작점을 찾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다. 한 사회 집단의 행위주체들이 하나의 구조에서 상호간에 요구되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의 변화이다. 이제 두 개의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개의 계급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던 두 개의 상호 존재들은 이 전환기에서 전통사회에서 관례와 관습으로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노예제도라는 극한 사회에서도 견뎌왔던 이유가 있다. 한 역사가가 “도덕경제”(moral economy)라고 부른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윤리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인 기대와 의무의 존재들이 전쟁과 해방, 재건을 거치면서 다른 방식으로 대면하게 된다. 일련의 역사가들이 “가부장적 온정주의”라고 부른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쪽은 자본과 시장의 기본 원리인 계약과 이익추구로 들어가고 있다. 바로 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덕경제”라는 말, 결정적으로 필자가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에토스”라고 불리는 것에서 변화가 나타난다.¹⁰⁾

9) 주6번 참조.

10) E. P Thom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No.50, (February, 1971). pp.76-136.

일찍이 아날 학파의 역사가가 말했듯이 보이는 영역이 역사를 움직이고 해석하는 것이 다라면 그 사회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여러 자력들과 소란을 놓치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 되어가는 과정의 흐름을 놓치는 우려를 낳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이 전환기에 어떻게 변모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적어도 노예제도 자본주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도 일종의 시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 글의 목적은 전후와 재건기의 이른바 가부장적 온정주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하나, 역사가들의 논쟁점인 노예제도 대농장제도는 자본주의적인가 아닌가 하는 차원의 논쟁으로 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현재 이 부분에서 역사가들의 대세가 되어버린 노예제도가 자본주의적이라는 정언명령식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노예제도 대농장제도 속에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통념상의 자본주의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다지 자본주의적이 아니라는 점에 강조점을 둔다. 전환기를 통한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전통사회가 자본주의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된다.

II. 노예 없는 주인들

대농장지대(plantation belt)라고 불리는 지역은 몇 가지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대는 남부에서 가장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지대이기도 하고 남부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결정적인 지역이고 인구의 대다수가 흑인 노예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운영되는 경제 제도는 소수의 신분이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 집단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인종적인 계서제가 피라미드형을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인종주의가 학교에서 교회, 그리고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는 국가,

11) 페르낭 브로델 지음,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6권, (서울: 까치, 1995-1997).

주라고 번역하는 영역에서도 반영되고, 운영되는 인종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회의 지배자인 백인들을 위한 공화국이 이루어진 것이다.¹²⁾

이와 같은 남부 지역의 여러 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과 그 경제적인 조건과도 연결되어 상호작용된 것이다. 이를테면 남부에서도 대농장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바로 당시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시장에서의 면화 수요에 상응한 것이기도 하였다.¹³⁾

물론 이 지역이 개발되는 것은 단지 이와 같은 면에서만 볼 것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영토 확장과 국가주의의 확장이라는 그들이 말하는 “명백한 운명”과도 엄연히 관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대농장제도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세계 경제 특히 대서양경제와 연결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새롭게 부상하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상에서 최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환금/황금작물을 통한 “보난자”를 기대하는 투기성 작물 재배와 관계된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이 맞물리고 결합되고 일어나게 된다.¹⁴⁾

구체적으로 대농장지대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엄격하고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상하관계 또는 주종관계가 확실히 보장되고 복종이 강제되는 그런 제도적 조건이 요구되었다. 이유는 간단하

12) John F. Hart, “The Role of the Plantation in Southern Agriculture,” *Proceedings, Tall Timbers Ecology and Management Conference*, 16, (1979), pp.1-20; Gavin Wright, “‘Economic Democracy’ and the 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Wealth in the Cotton South, 1850-1860,” *Agricultural History* 44 (January 1970), pp.84-85; Edgar Thompson, *Plantation Societies, Race Relations, and the South: The Regimentation of Population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75), pp.xiii, 9, 55, 69, in Eric Foner, *Reconstruction: America’s Unfinished Revolution, 1863-1877*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8), pp.128-129.

13) Walter Johnson,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Press, 2013), pp.1-208.

14) Ibid.

다. 이 공간에서의 해외 이민으로 또는 국내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정착하여 자신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아니었다. 우선 이주민이나 이민자로 들어온 백인들이 주인들의 반강제적 복종주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 이들 자유 신분의 노동자나 농민들이 이러한 상황 조건을 수용하고 정착하려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¹⁵⁾

여기에 토지 조건도 좋지 않았다. 자연 그대로 유지된 이 미개지를 경작지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규모 협동작업 없이 자연을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서 자영농의 수준과 그 범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만일 토지를 자영농이 불하받는다 하더라도 당시의 조건상 곧바로 토지투기업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우호적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택하고 있었다, 사실 자유노동과 농민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지역보다 환경이 좋고 여기에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지역이 열려 있기에 이 지역에 관심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았다. 도시로 간다거나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기회가 더 있는 다른 개척 시대 즉 서부로 통칭하는 여러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¹⁶⁾

대농장제도와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 같이 미국의 농장주들은 남부의 번영과 그들 자신의 번영은 자유노동, 자유토지 보다는 계급과 신분적인 질서를 더 선호하였고 그것은 예외적인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보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조지아의 한 신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일한 하나의 전제”만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농장주가 노동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우”밖에 없는 것이다.¹⁷⁾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으로 이와 같은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농

15) Ibid,

16) Ibid,

17) *Augusta Transcript* in *New York Times*, November 30, 1865, in Foner. *Reconstruction*, pp.128-129.

장주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그 방식을 유지하기를 관성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에 노예로서 고통받은 이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어가는 이 상황에서 예측관계를 단절하고 자유와 인격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방 노예들은 경제와 노동, 토지제도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참정권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 개의 계급과 신분은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지의 투쟁과 갈등에서 재건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된다.¹⁸⁾

크리스토퍼 G. 메밍거(Christopher G. Meminger)는 남부연합의 재무장관이었다. 그는 1865년 장차 재건에서 무엇이 그리고 어떤 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될지를 예측한다. 그는 말하기를 “아프리카인에게 노동과 노동관계에서 무엇을 주고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 문제가 지역의 정치, 인종 관계, 그리고 “노예해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하게 될 일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자유노동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비슷한 유사 노예제도 차원으로 복귀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⁹⁾

사실 이 전쟁의 비극적인 결말이 남부의 농장주에게 준 충격은 형용하기 힘들 정도가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의 모든 권위와 지위가 사라지고 있었다. 물질 차원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서 심리적인 면에서도 충격을 주고 있었다. 많은 젊고 부유한 자신의 계급과 신분이 “이상한 대의”에 쏠려서 전쟁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목숨을 진정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싸웠다. 그 결과는 알다시피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생명도 지위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없었다.²⁰⁾

18) Hart, “The Role of the Plantation”, Ibid. 1-20; Wright, “Economic Democracy”, Ibid. 84-85; Thompson, *Plantation Societies*, xiii, pp.9, 55, 69, in Foner. *Reconstruction*, pp.128-129.

19) Ibid.

20) Frederic C. Jaher, *The Urban Establishment*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2), pp.399-400; Michael Wayne, *The Reshaping of Plantation*

농장주의 중요한 자원이고 화폐이기도 한 재산이 사라졌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라는 인간동산(人間動産)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늘이 내려앉는 일이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변명과 대의를 개발하여 싸워온 지난 몇 년간의 기간이 허사가 되고 자기 앞에 있는 자신의 소유물인 존재가 생명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평등을 외치고 있고 그런 모습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²¹⁾

여기에 이들은 이 전쟁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진 모든 자금을 투자하였다. 특히 노예제도를 영구히 하고 그 속에서 노예제도 제국을 건설하여 이 나라를 넘어서 저 멀리 서인도제도와 중남미까지 아우려는 제국을 상상하면서 남부 연합에 투자하였다. 남부 연합이 발행하는 채권에 목숨을 걸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전쟁에서 지고 나자 모든 것이 종이쪽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노후 대책이 사라지게 되고 주인님의 이상과 권위를 연결해 줄 수 있었던 약속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유산도 물거품이 되었다.²²⁾

윌리엄 길모어 심슨(William Gilmore Simms)은 이 지역 남부에서는 꽤 알아주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그는 대농장주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노예, 가축, 가구, 책, 그림, 말...금으로 계산하면 150,000달러에 이르는 재산이 날라 갔다”고 한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 때의 가치이지만 지금 수준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자신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충격을 문인은 기억하고 오직 탁월한 그 문필력이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는 데서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줄을 누가 알 수는 있었겠는가?²³⁾

Society: The Natchez District, 1860-188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83), pp.31-38, in Foner. *Reconstruction*, pp.128-129.

21) Ibid.

22) Ibid.

23) Mary C. Oliphant et al, eds., *The Letters of William Gilmore Simm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52-56), 4, p.577, in Foner. *Reconstruction*, pp.128-129.

앨라배마의 대농장지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는 한 개인의 재산이 평균적으로 1860년 기준으로 거의 19,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었다.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1/10로 추락하게 된다. 노예 소유주들 즉 농장주이며 주인님이었던 최고의 신분과 계급이 사라지고 있었다. 모두가 굴욕과 분통을 터트리고 공포와 편집증으로 폭력으로 의존하게 된다.²⁴⁾

통환과 낙담이 이 시대의 농장주들을 사로잡고 있는 분위기였다. 1865년 전쟁의 종결로 일어나는 신분, 지위의 상실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운이었다. 헨리 왓슨 주니어(Henry Watson, Jr.)는 이 전쟁 동안 유럽에 있었다. 1865년 그는 앨라배마로 돌아왔다. 그러나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다. 이웃의 농장주이자 주인님들은 실망감에 빠져서 모든 토지를 팔아버리고 고향을 버렸다. 그들이 마주쳐야 할 상황은 오직 “십중팔구 수치와 오욕, 가난, 결핍에서 그 어떤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부 전역에서 거의 10,000명 이상의 노예 소유주들이 전쟁 이후 고향을 버리게 된다. 이들은 북부지방으로 또는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는 선택을 하였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렵다면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새 농장을 구입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다.²⁵⁾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대다수의 농장주들은 과거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노예들과 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일단 남부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노예제도도 더 이상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24) William L. Barney, “The Ambivalence of Change: From Old South to New in the Alabama Black Belt, 1850-1870,” in Walter J. Fraser, Jr., and Winfred B. Moore, Jr., eds., *From Old South to the New: Essays on the Transitional South*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1), pp.37-38, in Foner. *Reconstruction*, p.129.

25) James L. Roark, *Masters Without Slaves*; Susan B. Eppes, *Through Some Eventful Years* (Macon: J. W. Burke Company, 1926), p.286, in Foner. *Reconstruction*, p.129.

것은 받아들였다. 현실적인 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조정의 기간이 있다는 것과 새로운 인종주의 관계를 모색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⁶⁾

III.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경제주의로 전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장주들이 관습적으로 유지하던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의 지배자로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으로 응당 해야 할 시혜와 연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이 과연 있거나 한 것인가 하는 쟁론은 계속되고 있다. 그 존재의 유무, 그 진정성에 대한 논쟁에서도 분명한 것은 주인들이 노예들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논쟁이 되지 않을 듯 쉽다. 다만 그 이유와 의도가 의무와 양심 그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본주의적 이익 추구하고 경영 차원인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고 대다수의 농장주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현실에서는 더 이상 그런 연민을 기대하는 것은 속절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사회질서에서는 우선 생존의 사활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와 노동, 작업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그들의 경제적 기회가 언제나 변함없이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변화무쌍한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이 되었

26) Billy D. Ledbetter, "White Texans' Attitudes Toward the Political Equality of Negroes, 1865 - 1870," *Phylon*, 40 (September 1979), pp.254 - 255; A. Warren Kelsey to Edward Atkinson, October 1, 1865, Edward Atkinson Papers,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Recollections of Forty Years in the House, Senate and Cabinet* (Chicago: The Wener Company, 1895), vol. 1, p.359, in Foner. *Reconstruction*, p.129.

다. 노예 소유주였던 주인들도 흑인들도 전통적인 상하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연민에 기초한 가부장적 온정주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예 소유주 중에는 인간적 관계와 연민의 정을 지속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미 해방 신분의 자유인이 되어버린 노예들이 그래도 자신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새로운 고용주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과 보호를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고용주와 임금 협상이나 계약조건에서도 과거 주인이 나서서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고 있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법정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를 보고 그를 대신하여 주지사에게 탄원을 작성하는 주인도 있었다.²⁷⁾

인간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말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조너슨 위스는 이른바 대통령 재건기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주지사를 맡고 있었다. 위스는 과거 자신의 소유로 있었던 노예에게 집을 결혼 선물로 주었다. 한 노예가 말과 마차를 구입할 때 담보를 대신 서주는 경우도 있었다. 성가시고 힘든 과정이 요구되는 일에서도 주인은 만사를 버리고 나섰다. 연방군에 참전하여 죽음을 맞은 아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²⁸⁾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존재 자체의 유무로만 역사가들이 논쟁을 이끌어

27) Petition, February 12, 1868, South Carolina Governor's Papers,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Archives; Richard L. Zuber *Jonathan Worth: A Biography of a Southern Unionis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5), p.291, in Foner. *Reconstruction*, pp.130-131.

28) Jonathan Worth to Benjamin S. Hedrick, December 30, 1866, Benjamin S. Hedrick Papers, Duke University; J. G. de Roulhac Hamilton, ed., *The Correspondence of Jonathan Worth* (Raleigh: North Carolina Commis, 1909), No.1, pp. 417, 421, No.2, pp.786, 804, 807, 875, 1094 - 1095, 1154 - 1156, in Foner. *Reconstruction*, pp.130-131.

가는 것은 의미 없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고 그 결과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유무 이전에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발산이 노예해방의 완전한 실현을 받아들인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분명 노예해방을 수용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여전히 백인으로서 아직도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종의 경우에는 관심과 시혜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흑인은 인종적으로 누군가의 보호의 대상이며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문명을 발전, 향유할 수 없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그들 자신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들 자신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버려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²⁹⁾

당시 남부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같음한다. “흑인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이 동시에 주인들도 해방되게 되었다. 바로 지금까지 주인과 노예의 상호관계에서 존재하던 상호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이다. 그래도 있다면 단지 연민, 친절이다.” 그리고 그 연민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전쟁 이후, 노예해방이 일어나자, 서서히 줄어들고 드문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수백 건에 이르는 사례에서 농장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흑인들을 배제하고 있었다. 나이를 핑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농장에서 물리쳤다. 과거의 노예제도 하에서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³⁰⁾

농장주들은 노예들이 과거 대농장 제도하의 노예제도에서 향유하고 있는 “여러 권리” 예를 들어서 의복, 주거지, 자신의 작은 남새밭이나 텃밭 운영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허용해 주었던 것에 비용을 요구한다. 전쟁기간 남부 흑인들을 돕는 제도로서 해방흑인국(Freedmen's Bureau)의 한 공무원이 당시 상황을 증거하고 있다. 이제 “자유노동과 노

29) Ibid.

30) Wayne, *Reshaping of Plantation Society*, p.41; Roark, *Masters Without Slaves*, p.144, in Foner. *Reconstruction*, pp.130-131.

예노동의 유일한 차이”는 사실 “과거 노예제도 하의 흑인들은 무급으로 일을 해야 했다.” 그 상황에서는 최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른바 가부장적 온정주의적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임금을 받지만 “노예제도에서는 결코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그 익숙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돈을 지불하거나 사야 한다”³¹⁾

당시 노예들의 기억도 노동관계와 조건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옷들에 대해서” 주인은 1주일 노동으로 보상을 요구하였다. 주인과 노예 모두가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 시장과 자본주의의 방식이 그들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었다.³²⁾

로버트 톰스(Robert Toombs)는 조지아의 저명한 정치가였다. 그는 노예와 그 가족들에게 토지와 가옥, 노새까지도 제공하는 남다른 인정을 베풀었다. 당시의 이 전환기에 노예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그의 행동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존재 유무를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분명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연민의 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과도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방식과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히 기억되고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그런 틀에서 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았던 특이한 경우로서 기억된 이유이다.³³⁾

모든 기억은 새롭게 그리고 특이한 바로 그 장면을 기억한다. 흑인들도

31) Roberta S. Alexander, *North Carolina Faces the Freedmen: Race Relations During Presidential Reconstruction, 1865-6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5), p.96, in Foner. *Reconstruction*, p.131.

32) Gerald D. Jaynes, *Branches Without Roots: Genesis of the Black Working Class in the American South, 1862-18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121 - 127, in Foner. *Reconstruction*, p.131.

33) Ibid.

과거 주인의 시혜와는 다른 충격적인 장면들을 머릿속에 담아둔다. 전쟁이 끝나고 미주리의 한 흑인은 다음과 같이 그 때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해 볼 때, 그 당시에 몇몇 노예 소유주들 자유를 얻게 된 노예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 수단이 될 만한 것을 챙겨주었던 ...그런 훌륭한 사례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이들 주인 다수가 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이 사회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아래에서 그런 기억이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기억된다.³⁴⁾

이제 더 이상 “양측 그 어느 쪽도 과거의 상호 관계에서 알고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기막힌 농장주의 갈음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제도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의 관습과 문화로서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과거의 전통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흔적은 스며있다. 마치 청동거울처럼 여기저기에 녹슨 유산이 박히고 있었다. 양자 모두가 그런 전통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와 그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종의 시대적 그리고 충분히 전통이 되어버린 관습이 여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관계에서 특별히 의무는 필요치 않는 것이지만, 그런 윤리와 사고는 과거의 사회구조에서 빠져 나와 무의식으로 베여있는 것이었다. 이 과도기에서 이제 그런 관행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놀라운 경우를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었다.³⁵⁾

과거 사회에서 가부장적 온정주의는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쉽게 이해하면 주인은 노예에게 지시하면 그것에 따라

34) George P. Rawick, ed., *The American Slave: A Composite Autobiography* (Westport: Greenwood Press, Inc., 1972 - 79), vol. 9, pt. 8:372, Supplement, Series. 2, 9:3452, in Foner. *Reconstruction*, p.131.

35) Arney R. Childs, ed., *The Private Journal of Henry William Ravenel 1859 - 1887*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47), p.269, in Foner. *Reconstruction*, p.131.

야 하는 그러한 관계 선상에서 여분의 미학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임금협상”과 같은 대결이 속출하게 된다. 과거 노예였던 경우든 주인이었던 경우든 이러한 방식에 적응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몸과 정신 어디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전통적인 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정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고용주와 고용자는 동등한 관계성에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근대적 자본주의 계약을 마주하고 있고, 그 관계로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³⁶⁾

다음 자료는 과거의 주인이었던 경우와 노예였던 경우가 이제 임금 문제를 놓고 대등하게 마주 앉게 되었을 때 주인님들이 느끼는 분노와 수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 장면은 과도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임금 문제로 우리의 노예와 협상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서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³⁷⁾

이런 감정의 글을 쓴 이는 조지아의 한 농장주 딸이 기록한 것이다. 그녀는 과도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과거 주인과 노예였던 경우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주인님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강요하고 들어오는 이 놀라운 광경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노예들이었던 이들과 마주 앉아 임금을 협상해야 하는 자리였다.³⁸⁾

고용주는 무엇보다도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의 가치 즉 임금을 평가하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 1865년 가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백인은 해방 노예를 고용하게 된다. 그들이 새로

36) Ibid.

37) Eliza F. Andrews, *The War-Time Journal of a Georgia Girl* (New York: Andrews, 2014 Reprint of 1908), p.319. in Foner, *Reconstruction*, p.132.

38) Ibid.

은 방식으로 노동 계약을 통하여 조건을 정하게 된 것이다. 주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수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해줄 수만 있게 한다면”라는 전제를 요구한다. 조건을 주인이 결정하여 해결될 수 있을 때만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다. 흑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이 주인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굴욕이지만 여전히 그가 과거의 행동과 관행으로 이 일을 수행한다.³⁹⁾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과거의 유산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여전히 주인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이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과거의 관습인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스며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에서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상호이해와 보상이 응당 시혜의 방식으로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⁴⁰⁾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같은 주에서 있었던 경우이다. 과거 주지사의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도 또한 과거 노예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결정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내 쪽에서 먼저 알아서 할 일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전히 그들의 내성화 된 방식에서는 주인님의 관성이 살아 있었다.⁴¹⁾

그러므로 조지아의 한 농부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해방 노예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면서 자리를 떠나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용서할

39) Eric Foner,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Age of the Civil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99; New Orleans *Times* in New Orleans *Tribune*, June 3, 1865. in Foner. *Reconstruction*, p.132.

40) Ibid.

41) J. G. de Roulhac Hamilton and Max R. Williams, eds., *The Papers of William A. Graham* (Raleigh, NC: State Department of Archives and History, North Carolina. 1957-), vol.6, p.311. in Foner. *Reconstruction*, p.132.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런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간단하게 말해서 북부에서는 거의 일반적인 노동 관행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정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⁴²⁾

몇몇 농장주들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논리를 끌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시장주의를 변명의 도구로 이용할 줄 알았다. 그런 변명 즉 시장주의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과연 이 시대 즉 과도기 이전이 자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시장주의의 수용이 있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볼 때 과거 노예 제도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자본주의로의 변화는 노예제도 하에서가 아니라 이 과도기에 나타나고 있다.

과거 노예제도가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이 주인의 경우에는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세계 경제와 자금의 운용에서 대서양 금융 산업 안에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와 양식에서 보면 그런 방식은 이곳 노예제도 하의 남부의 상황이 아니라, 북부지방의 경우에서 자본주의가 노골적으로 횡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의 문화 윤리 풍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도 바로 북부의 경우이다. 잭슨 시대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업주의와 산업주의 속에서 자본주의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속임의 미학”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다.⁴³⁾

그 시대의 자본주의의 위선과 진실을 소비주의에 담아내고 있는 허만

42) Laura Perry to Grant Perry, February 3, 1869, J. M. Perry Family Papers, Atlanta Historical Society, South Caroliniana Librar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in Foner. *Reconstruction*, p.132.

43) Paul A. Gilje, ed., *Wage of Independence: Capitalism in the Early Republic*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7); Melvyn Stokes and Stephen Conway, eds., *The Market Revolution in America: Social, Political, and Religious Expressions, 1800-1880*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96); Richard Ellis, et, al., “A symposium on Charles Sellers’ *The Market Revolution: Jacksonian America, 1815-1846*,” *Journal of Early Republic* 12, (Winter, 1992), pp.445-476.

멜빌의 <컨피덴스 맨>에서는 충분히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다. 바로 자본주의의 여러 양태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이 이제 이 과도기에 본격적으로 남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위선과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숨기는 주인과 농장주의 경우에서 말이다.⁴⁴⁾

에드워드 B. 헤이워드는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주로 쌀을 재배하는 농장주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들에게 미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발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과거의 책임과 의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정신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주의에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오직 각각의 개인적인 이익 그것만이 나의 노동자가 가진 생각이다. 그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고려를 해주는 경우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짐을 싸게 된다.”라는 논리로 자신을 변호하고 변장하게 된다.⁴⁵⁾

주인이었던 경우에서도 그에 상응하여 노예였던 경우에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과거 농장주의 지위의 일종으로 가부장적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권위가 상실 되어가는 것에 대한 비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익을 위해서 떠나는 노예에 대한 배신을 기회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다. 주인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의 연민과 동정심, 농장의 책임자로서의 그리고 지역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의무와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그가 가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선상에서 해야 할 일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반추하고 있는 분위기가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다.⁴⁶⁾

44) John Bryant, “*The Confidence-Man*: Melville’s Problem Novel,” John Bryant, ed., *A Companion to Melville Studie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6), pp.315-350; 양홍석, 「잭슨시대 “인디언 증오”의 메타피직」 『동국사학』 53 (2012), 473-504쪽.

45) Edward B. Heyward to Katherin Heyward, undated letter(1867), Heyward Family Papers, South Caroliniana Library,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in Foner. *Reconstruction*, p.132.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탐미보다는 그 문제점과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어떤 사회와 세계관에서 살아왔는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불과 오래되지 않았던 과거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그들은 시장주의 가치와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반기고 있었다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노예제도가 “자본주의”라는 주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이제 진정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노동관계와 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앞에서 진정 마음과 몸이 반기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⁷⁾

노예제도 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에 있었던 몇 가지의 자본주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가지고 환원적으로 노예제도 대농장제도가 자본주의 그 자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애매한 변명과 느릿한 수사학과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들로 쉽게 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환원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의 일색이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일리가 있는 경우도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하나 같이 시장주의의 특징으로 경영화 과정과 그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다. 분명 그런 면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세계 경제 시대의 연과 맥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자장과 내성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 자본과 물자의 운영과 유통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예제도가 가진 거래와 유통에서도 충분히 자본주의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적 경제와 생산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46) Ibid.

47) Walter Rodney, “Slavery and Underdevelopment,” *Historical Reflections*, 6 (Summer 1979), 284, in Foner. *Reconstruction*, p.132.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지속성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재건시대에 와서야 총체적 모습에서 시장주의와 자본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노예제도 하의 농장주나 이제 해방 흑인이 된 경우 모두가 새로운 자본주의로 적응하면서 한편에서는 여러 고민과 아우성을, 한편에서는 환희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과연 노예제도 하의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그 안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것에서 자본주의적인 것을 찾아야 할지 이제 해방과 자유의 신장에서 일어나는 이 새 시대 새 경제에서 자본주의적인 것을 찾아야 할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부는 이미 자본주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데도 이후 오면 적어도 재건 과정에서 더하여 산업주의 시대를 “보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자본주의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과연 남부의 노예제도 대농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정의하기 쉽지 않다. 사실 노예제도 경영을 자본주의적이라고 강변하는 경우라면 고대 로마의 노예시장과 제도를 자본주의적이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그 경우에서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IV. 결론

남부 대농장 노예제도 하에서 주인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길고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적이라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가부장적 온정주의라는 실체가 있었지만 결국은 오직 이익 추구를 위한 기획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시된다. 물론 필자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오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이용한다고 해서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왜곡된 환원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보통의 가정을 보자. 가족과 부모가 집을 다스리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만으로 충실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결정적으로 가족은 밥을 먹고 그 밥을 생산하는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서도 당연히 경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오직 경제적인 이해에서만 언급하고 부성과 모성을 버렸다고 하지는 않는다. 19세기 대부분의 백인 가정도 일정 나이에 이르기까지 보통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경제적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 거의 흡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행을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제도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이런 가족을 부성과 모성이 없는 경제착취조직이나 단위로 평가하는 일은 없다.

노예해방과 그리고 전쟁 이후의 여러 상황에서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이 해체되고 진정 과거와는 다른 자본과 시장 시스템이 북부로부터 들어오게 된다. 자본주의가 남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로서 과거의 전통적인 노예제도 대농장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당시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농장주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거 노예였고 이제는 해방 노예라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주인도 진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확연하게 돌진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노예제도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과거 남부의 대농장 노예제도가 “이미 그리고 기왕에” 자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과 노예해방 이후의 이 남부 사회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고 부른 것과는 수준과 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당시는 자본주의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라고 부른 세계와는 다른 지평일 뿐이다.

시간이 흘러서 그 사회가 변화된 이후 즉 전쟁 이후의 재건 기간에서 더 확연하게 자본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재건 초기에 농장주들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경향성의 유입에 그다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

들은 시장주의 가치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노예제도 하에서 남부의 대농장 경제를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 진정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노동관계와 그 양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부 대농장에서 노예제도 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역사가들의 주장은 그 사회에서 몇 가지 요소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수두룩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애매한 변명과 느릿한 수사학과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사가들은 시장주의의 일반적 특징으로 대농장 경영과정에서 분명 자본주의적 요소가 충만하고, 세계 경제 시대의 그 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과 물자의 운영과 유통 결정적으로 노예제도가 가진 거래와 유통에서도 자본주의적이라고 라는 점도 강조한다. 그런데 말이다. 그렇다고 그 사회는 자본주의적 경제와 생산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인다. 바로 가부장적 온정주의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정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 농장주와 흑인 노예 아니 이제는 해방 노예들이 서로 간에 의지하고 기대하는 점을 상기한다면 과연 남부의 대농장과 노예제도 경영이 진정으로 자본주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제어

노예제도, 가부장적 온정주의, 노예해방, 남북전쟁, 대농장제도, 해방 노예, 자본주의

<투고: 2025년 05월 28일, 심사종료: 2025년 06월 19일, 게재확정: 2025년 06월 27일>

/Abstract/

Changes in Paternalism and Its Characteristics after the Civil War

Yang, Hong-Seuk

This paper begins by questioning the claim that the plantation system was capitalist. Crucially, both the slaves and the plantation owners who commanded them were living in a different value system from the capitalist lifestyle. It is patriarchal paternalism that confirms this. One interpretation is that this is an element of capitalism, but I disagree. What's crucial is that in the post-war period, and in this complicated history of this country through emancip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 find that eventually slaves and plantation owners abandoned paternalism and actually gained access to markets and capital. And everyone finds themselves lamenting the fact that the paternalistic warmth of the past no longer exists, and now, under the new system of impor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northern center, they find themselves abandoning paternalistic warmth. They are asking for their own resolutions to give up their economic ethos as owners and become thorough market economists. Then, we can ask this question. Is it capitalism as it appears now, or is it truly capitalism as it was under slavery?

참고 문헌

1. 사료

New York Times, November 30 (1865).

2. 단행본

페르낭 브로델 지음,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6권, (서울: 까치), 1995-1997쪽.

Avery, I. W. *The History of the State of Georgia From 1850 to 1881* (New York, 1881).

Davis, David Brion. *The Problem of Slavery Davis, The Problem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1770-182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Evans, W. McKee, *Ballots and Fence Rails: Reconstruction on the Lower Cape Fear* (Chapel Hill, 1967).

Foner. Eric. *Reconstruction: America's Unfinished Revolution, 1863-1877*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8).

Foster, Gaines M. *Ghosts of the Confederacy: Defeat, the Lost Cause, and the Emergence of the New South, 1865-191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Genovese, Eugene D. *In Red and Black: Marxist Explorations in Southern and Africa-American History* (New York: Pantheon, 1968).

Jenkins, William Summer. *Proslavery Thought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35).

Johnson, Walter.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Johnson, Water.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Press, 2013).
- Henderson, William D. *The Unredeemed City: Reconstruction in Petersburg, Virginia: 1865 - 1874* (Washington, D.C. 1977).
- Kolchin, Peter. *American Slavery, 1619-1877* (New York: Hill and Wang, 1993).
- Nunn, W. C. *Escape from Reconstruction* (Fort Worth, 1956).
- Oliphant, Mary C. et al, eds., *The Letters of William Gilmore Simms*, (Columbia, S.C., 1952-56).
- Perish, Peter J. *Slavery: History and Historians* (New York: Harper and Row, 1989).
- Phillips, U. B. *American Negro Slavery* (New York: D. Appleton, 1918).
- Roark, James L. *Masters Without Slaves: Southern Planters in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77).
- Singal, Daniel Joseph. *The War Within: From Victorian to Modernist Thought in the South. 1919-194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 Smith, Mark M. *Debating Slavery: Economic and Society in the Antebellum Sou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Tise, Larry. *Proslavery: A History of the Defense and Slavery in America, 1701-184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7).
- Thompson, Edgar. *Plantation Societies, Race Relations, and the South: The Regimentation of Populations* (Durham, 1975).
- Wayne, Michael. *The Reshaping of Plantation Society: The Natchez District, 1860-1880* (Baton Rouge, 1983).

3. 논문

- 배영수, 「“새로운 자본주의 역사”의 가능성과 문제점」, 『서양사연구』 58 (2018), 129-158쪽.
- , 「제9장, 노예제」,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2부 발전과정』 (서울: 일조각, 2022), 170-216쪽.
- 양홍석, 「잭슨시대 “인디언 증오”의 메타피직」 『동국사학』 53 (2012), 473-504쪽.
- Gaines, Kevin. “African-American History,” Eric Foner and Lisa McGirr ed., *American History Now*,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11.
- Hart, John F. “The Role of the Plantation in Southern Agriculture,” *Proceedings, Tall Timbers Ecology and Management Conference* 16 (1979).
- Thomson E. P.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No.50, (February, 1971). pp.76-136.
- Wright, Gavin. “‘Economic Democracy’ and the 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Wealth in the Cotton South, 1850-1860,” *Agricultural History* 44, (January 1970).

회 보

단국사학회 연혁

1965. 10. 5. 사학과 교수 학생 동문의 연구 논문지 발간에 합의하고
‘史壇’이라 가칭함
1967. 7. 3. 사학과 연구논문지 ‘史壇’을 ‘史學志’로 개칭하고 題字는
集子키로 합의함
韓濩(號 石峰) 『千字文』에서 集字
(1583, 宣祖 16년 刊, 金晟兩 소장본)
1967. 7. 16. 『史學志』 편집학생을 위촉함.
편집부장: 전성남(4학년)
편집차장: 박혜원(3학년)
편집부원: 송병은(2학년), 이일지(2학년), 고영진(1학년),
김혜재(1학년)
1967. 9. 2. 창간호 발간, 경남 사천지구 패총발굴 보고회 개최(대학싸롱)
1967. 9. 5. 창간호 발행
1967. 11. 24. 제2집 편집회의 개최, 임원 선출(사학과 연구실)
편집부장: 박혜원(4학년)
편집차장: 송병은(3학년)
편집부원: 이일지, 고영진, 김혜재, 오영분, 안정숙
1968. 9. 29. 제2집 발행
1968. 10. 10. 조명화 동문(미광사 대표) 『史學志』 발간기념 6만원 회사
1968. 10. 12. 한동신 동문(영광교회 목사) 『史學志』 발간기념 2만원 회사
1968. 11. 23. 제2집 발행 및 고적조사보고서 제2책 출판 자축회 개최
(가정학관)
1968. 12. 15. 제3집 편집회의 개최, 임원 선출(사학과 연구실)
편집부장: 김혜재(3학년)
편집차장: 오영분(3학년)
편집부원: 최성민(2학년), 안정숙(2학년)

1969. 4. 12. 편집부원 추가 선출
김현자, 서정관, 김내영(1학년)
1969. 7. 4. 제3집 발행
1970. 9. 20. 제4집 편집위원 선출
김은재(4학년), 오영분(4학년), 최성민(3학년), 안정숙(3학년),
서정관(2학년), 태옥자(1학년), 장정길(1학년)
1970. 11. 3. 제4집 발행
1971. 9. 22. 제5집 편집위원 선출
최성민(4학년), 안정숙(4학년), 서정관(3학년), 태옥자(3학년),
지용화(2학년)
1971. 11. 3. 제5집 발행
1972. 10. 16. 제6집 편집위원 선출
윤근(1학년), 윤연중(2학년), 지용화(3학년), 태옥자,
이임덕(4학년)
1972. 11. 3. 제6집 발행
1973. 11. 3. 제7집 발행
1974. 9. 22. 제8집 편집학생 선출
조찬아(4학년), 오명옥(3학년), 박명희(3학년), 김경란(2학년)
1974. 11. 3. 제8집 발행
1975. 9. 22. 제9집 편집학생 선출
강종구(4학년), 오명옥(4학년), 박명희(4학년), 정계숙(2학년)
1975. 11. 3. 제9집 발행
1976. 9. 23. 제10집 편집학생 선출
배은숙(1학년), 차홍도(2학년), 정계숙(3학년), 이초연(3학년),
류재식(4학년)
1976. 11. 3. 제10집 기념호 발간
1977. 11. 3. 제11집 개교 30주년기념호 발행
1978. 11. 3. 제12집 단양신라적성비 특집호 발행
1979. 11. 3. 제13집 중원고구려비 특집호 발행
1980. 11. 3. 제14집 발행

1981. 11. 3. 제15집 발행
1982. 11. 3. 제16집 벽암(碧巖) 박무성 박사 화갑기념논총 발행
1983. 11. 3. 제17집 발행
1984. 11. 3. 제18집 발행
1986. 2. 15. 제19집 발행
1986. 11. 30. 제20집 기념호 발행
1988. 4. 15. 제21집 개교 40주년 및 박무성 교수 정년기념특집호 발행
1989. 6. 10. 제22집 발행
1990. 7. 20. 제23집 발행
1991. 7. 1. 단국사학회 회칙, 1차 개정됨
1991. 7. 20. 제24집 발행
1992. 7. 20. 제25집 발행
초대 회장으로 김원모 교수 피선
1993. 7. 20. 제26집 발행
1994. 7. 20. 제27집 발행
1995. 4. 15. 제28집 용암(龍巖) 차문섭 박사 정년기념논총 발행
1996. 7. 15. 제29집 발행
1997. 9. 21. 제30집 개교 및 사학과 개설 50주년 기념호 발행
1998. 12. 21. 제31집 송병기 교수 정년퇴임기념호 발행
1999. 12. 21. 제32집 발행
2000. 12. 21. 제33집 발행
2001. 12. 21. 제34집 발행
2002. 12. 21. 제35집 발행
2003. 12. 25. 제36집 발행
2005. 8. 31. 제37집 발행
제2대 회장으로 윤내현 교수 피선
2006. 8. 31. 제38집 발행
학회조교에서 학회간사: 박관식으로 바뀜
2007. 8. 31. 제39집 발행
학회간사: 이석빈

2008. 8. 31. 제40집 발행
2009. 8. 31. 제41집 발행
학회간사: 임근실
2010. 1. 1. 단국사학회 회칙, 4차 개정됨
사학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1. 6. 30. 제42집 발행
제3대 회장으로 서영수 교수 피선
2011. 12. 31. 제43집 발행
학회간사: 한실비
2012. 6. 30. 제44집 발행
2012. 10. 12. 우당 이회영 선생 순국 80년 기념 북경 국제학술회의 공동 주관
2012. 10. 31. 단국대학교 개교 65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공동 주최
2012. 12. 31. 제45집 발행
2013. 6. 30. 제46집 발행
제4대 회장으로 최희재 교수 피선
2013. 12. 31. 제47집 발행
2014. 3. 1. 학회간사: 이현아
2014. 6. 30. 제48집 발행
2014. 12. 31. 제49집 서영수 교수 정년퇴임기념호 발행
2015. 6. 30. 제50집 발행
2015. 12. 31. 제51집 발행
2016. 3. 1. 학회간사: 전수진
2016. 6. 30. 제52집 발행
2016. 12. 31. 제53집 발행
2017. 6. 30. 제54집 발행
제5대 회장으로 김영제 교수 피선
2017. 12. 31. 제55집 발행
2018. 3. 1. 학회간사: 나용재
2018. 6. 30. 제56집 발행
2018. 9. 1. 학회간사: 전상우

2018. 12. 31. 제57집 발행
2019. 6. 30. 제58집 발행
2019. 12. 31. 제59집 발행
2020. 6. 30. 제6대 회장으로 박경식 교수 피선
2020. 12. 31. 제60집 발행
2021. 12. 31. 제61집 발행
2022. 3. 1. 제7대 회장으로 김현수 교수 피선
2022. 9. 1. 학회간사: 홍성환
2022. 12. 31. 제62집 발행
2023. 3. 1. 학회간사: 권유진
2023. 12. 31. 제63집 발행
2024. 3. 1. 제8대 회장으로 전덕재 교수 피선
2024. 6. 30. 제64집 발행
2024. 9. 1. 학회간사: 이창현
2024. 12. 31. 제65집 발행
2025. 3. 1. 제9대 회장으로 심재훈 교수 피선
2025. 6. 30. 제66집 발행

단국사학회 회칙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단국사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역사학의 발전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 기관지 『사학지』 발간
- (2) 학회 목적에 부합되는 도서 출판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 및 문화교류
- (5)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 증진
- (6) 기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

(3)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면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4) 기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회지에 논문게재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2) 특별회원은 회지에 논문게재권이 있으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3) 회비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7조(분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2) 이사 가운데 총무, 연구, 섭외, 재무 등의 일을 맡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자격, 선임, 임기)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되며, 이사는 회장단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기 구

제10조(총회)

-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알린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4) 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 개선을 의결한다.

제11조(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의안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 집행한다.

제12조(위원회)

- (1) 본회의 기관지인 『사학지』 출간 및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술 활동 기획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학술 고문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및 행정

제13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 (2) 회비의 액수,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재산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장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행정) 회장은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 5 장 해 산

제15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6조(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사학지』 출판규정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5차 개정 : 2020. 01.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단국사학회 (앞으로 학회로 줄임)의 학회지인 『사학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내용)

『사학지』에 실리는 글은 역사학 연구를 강조하는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독창성을 가진 미발표된 논문,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그 밖의 학회 활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발간시기)

『사학지』의 발간은 연 1회로 하되,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4조 (투고 자격)

『사학지』는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만 투고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5조 (원고 형식)

『사학지』 투고는 원고 작성 요강에 따라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 작성 요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제6조 (원고 길이)

투고 원고 매수는 각주를 포함하여 원고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 게재와 관련된 추가 소요 경비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내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제출 원고)

투고자는 게재를 원하는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 www.dkhistory.re.kr - 또는 학회지에 소정 양식 게재)와 함께 학회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8조 (심사)

투고된 원고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 수정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이 규정의 제15조 (부칙 2 : 논문심사)에서 정한다.

제9조 (투고자 연락 책임)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단, 투고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 저자에게만 통보한다. 주 저자는 투고 원고의 글쓴이 명단 가운데 맨 앞에 표기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게재료)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사학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게재를 위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집)

『사학지』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별쇄본)

게재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해당호의 『사학지』를 3부 우송하며, 해당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할 수 있으나 이에 관련된 소요 경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부칙 : 효력)

이 출판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을 갖는다.

『사학지』 심사규정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1조 (심사과정)

- (1) 투고된 원고는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과 내용의 학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를 받는다. 단, 논문 이외의 글은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며, 게재를 결정하는 최종판정의 권한을 갖는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근접한 분야를 전공하는 편집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선정될 수 있다.

제2조 (심사절차)

- (1)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를 알 수 있는 일체의 단서를 없앤 상태의 원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심사마감일을 미리 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 (심사기준)

- (1)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연구의 독창성,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 자료 활용의 타당성, 학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투고논문의 학문성을 심사해야 한다. (A : 게재, B : 수정 후 게재, C : 수정 후 재심사, D : 게재 불가)
- (2) 심사위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 없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

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평가서에 종합적인 심사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재 판정)

편집위원회에서는 2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심사결과에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A 게재

A·B 수정 후 게재

B·B 수정 후 게재

A·C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D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C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D 새로운 심사위원위촉,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C 수정 후 재심사

C·D 게재불가

D·D 게재불가

제5조 (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6조 (부칙 : 효력)

이 출판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을 갖는다.

『사학지』 투고규정

제정 : 1967. 08. 01

제1차 개정 : 1991. 07. 01

제2차 개정 : 2000. 08. 01

제3차 개정 : 2005. 01. 30

제4차 개정 : 2010. 01. 01

제5차 개정 : 2017. 01. 01

제6차 개정 : 2020. 01. 01

제7차 개정 : 2024. 09. 01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단국사학회의 학회지인 『사학지』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학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사학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논문의 성격) 『사학지』는 역사학과 관련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수록한다.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발행 시기) 『사학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되,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6조(투고 시한) 원고투고 마감일은 매년 4월 말과 10월 말로 한다.

제7조(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논문의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원고의 제출) 투고 원고는 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 www.dkhistory.re.kr - 또는 학회지에 소정 양식 게재)와 함께 학회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10조(게재료) 원고는 1편 당 (일반논문 10만원 / 교내연구비논문 20만원 / 교외연구비논문 30만원)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은 『사학지』의 편집 기준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원어는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적는다(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2)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 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영문초록)(영문으로 된 제목, 저자표시), 5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s)의 순서로 작성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나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하며[예 : ○○○(제1저자)], 주저자로 간주한다.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 ○○○(제1저자)·○

○○(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연결저자)].

-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 (8) Abstract(영문초록)(영문으로 된 제목, 저자표시)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 (9) 모든 낱말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유명사는 붙여 쓴다.
예) (띄어쓰기)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유명사) 朝鮮時代軍制史研究, ○○출판부, 한국○○○학회
- (10) [각주]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 ② 논문(정기간행물)과 저서는 아래의 형식을 따른다.
 - 한, 중, 일의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제목을 「 」 안에, 학술지 명을 『 』 안에 넣고 아래의 방식으로 기입한다.
예) 이성규, 「고대 중국인이 본 한민족의 원류」, 『한국사시민강좌』 32 (2003), 12쪽.
 - 한, 중 일의 동아시아어로 된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고, 아래와 같이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간연도 순으로 기입한다.
예) 이상신, 『서양사학사』 (서울: 신서원, 2001), 55-57쪽.
 -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넣고, 학술지 명은 이탤릭체로 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기입한다.
예) Richard D, McBride II, “Silla Buddhism and the Hwarang,” *Korean Studies* 34 (2010), pp.54-89.
 - 서양어로 된 단행본은 저자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명,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p.38.

③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 혹은 그 외의 범주에 해당하는 글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또는 '같은 글(또는 Ibid.)' 등으로 표기한다.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재인용시 구분히 필요한 사항은 표기해 주고,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은 서지사항은 생략가능하다.

④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역자 이름, 역서 제목, 출판사항 순으로 작성한다.

예) 에릭 H. 클라인 지음, 류광현 옮김, 『성서고고학』 (서울: CLC, 2013), 55 쪽.

⑤ 편서에 실린 논문의 경우 아래의 예처럼 논문 저자의 이름과 논문 제목을 먼저 표기한 후 편자의 이름 뒤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하고, 책 제목, 출판사항 순으로 작성한다.

예1) 서봉수, 『계양산성 발굴과 문자자료』, 윤재석 편, 『동아시아 논어의 전파와 계양산성』 (서울: 주류성, 2021), 239-276쪽.

예2) John Van Seters, "Historiography in Ancient Israel," Andrew Feldherr and Grant Hardy ed.,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ume 1, Beginning to AD 6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76-96.

⑥ 한문 원전 인용의 경우 판본이나 번역본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의 동아시아어 단행본의 범례를 따른다.

⑦ 인터넷자료는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인터넷주소 (검색일자)를 기재한다.

⑧ 그 밖의 사항은 학술지 원고작성의 일반관례를 따른다.

(11) 참고문헌은 각주의 범례를 따르지만 서양어 저자의 경우, 각주와 반대로 성, 이름 순으로 기입한다.

(1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사학지』 연구 윤리 규정

제정 : 2010. 01.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사학회가 발행하는 『사학지』에 대한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의무)

-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 (4) 논문 공동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 (5)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구성과 활동)

-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2) 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 2인 외에 회장과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 (3) 윤리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15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은 서면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학회의 총회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025년 6월 29일 인쇄

2025년 6월 30일 발행

ISSN 1226-1548

편집인

단국사학회

발행인

회장 심재훈

인쇄

동일미디어

02)2265-5502

판권: 본 학회지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단국사학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 1968-2021. All rights reserved by Dankook Historical Society

단국사학회 연회비:	학	생	20,000원
	일	반	30,000원
	기	관	50,000원

대체계좌: 우리은행 1002-761-094998

예금주: 단국사학회 이종수

연락처: 단국사학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사학과 사무실, (우) 16890

전화: 031) 8005-3030

<http://www.dkhistory.re.kr>

史學志

表紙題字解題

韓濩(號 石峰)『千字文』에서 集字
(宣祖 16年・西紀 1583年 刊)

---- 金晟兩氏 所藏 ----

ISSN 1226-1548

SAHAKCHI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Vol. 66

June 2025

CONTENTS

Articles

- The Social Status of the Sajok (Confucian Elites)
in Fifteenth-Century Early Chosŏn Korea Kye, Seung Bum
- The Post-colonial Representations by Korean-history School Textbooks
of Pre-modern Kingdoms' Domains IM, Chongmyong
- The Plague Prayer of Hittite Mursili II and the Plague Narrative in 2 Samuel 24
of the Old Testament Yoo, Yoon Jong
- The State at the Grassroots: Approaching the State Capacity of the Southern
Song through Local Officials' Handbooks Lee, Suekhee
- French Jesuit Missionaries' Perspectives on the Pythagorean Theorem and the
theory of the Sino-Centric Origin of Western Learning Bang, In
- Changes in Paternalism and Its Characteristics after the Civil War
..... Yang, Hong-Seuk

Edited by
Dankook Historical Society
<http://www.dkhistory.re.kr>